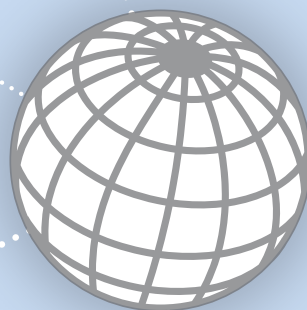


2015

주재국 농업정책 전망

Country of Sojourn
Agricultural Policy Outlook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Contents

중 국

I. 국가개황.....	3
II. 경제동향.....	21
III. 농업동향 및 주요정책.....	31
IV. 관세 및 검역제도.....	47

홍 콩

I. 국가개황.....	55
II. 경제동향.....	58
III. 농업동향.....	73
IV. 관세 및 검역제도.....	78

일 본

I. 국가개황.....	101
II. 경제동향.....	102
III.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117
IV. 관세 및 검역제도.....	134

인도네시아

I. 국가개황.....	143
II. 경제동향.....	146
III.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150
IV. 관세 및 검역제도.....	166

Contents

베트남

I. 국가현황.....	179
II. 경제동향.....	181
III.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189
IV. 관세 및 검역제도.....	220

태 국

I. 국가개황.....	227
II. 경제동향.....	234
III. 농업동향 및 주요정책.....	246
IV. 관세 및 검역제도.....	253

미 국

I. 국가개황.....	265
II. 경제동향.....	267
III.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269
IV. 관세 및 검역제도.....	286

프랑스

I. 국가개황.....	297
II. 경제동향.....	304
III.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313
IV. 관세 및 검역제도.....	334

중 국 <<<<

2015 주재국 농업전망

- I. 국가개황
- II. 경제동향
- III.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 IV. 관세 및 검역제도



I

국가개황

1. 일반사항

- 국가명칭 :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 PRC)
- 건국일 : 1949. 10. 1
- 수 도 : 베이징
- 행정구분 : 23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2개 특별행정구
 - 성(23개) : 하북(석가장), 산서(태원), 요령(심양), 길림(장춘), 흑룡강(하얼빈), 강소(남경), 절강(항주), 안휘(합비), 강서(남창), 산둥(제남), 하남(정주), 호북(무한), 호남(장사), 광둥(광주), 해남(해구), 사천(청도), 귀주(귀양), 운남(곤명), 섬서(서안), 감숙(란주), 청해(서녕), 복건(복주), 대만(대북)
 - 자치구(5개) : 내몽골자치구, 신강위구르자치구, 녜하회족자치구, 티벳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
 - 직할시(4개) : 북경, 상해, 천진, 중경
 - 특별행정구(2개) : 홍콩, 마카오
 - 경제특구(5개) :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頭), 하문(廈門), 해남(海南)
 - 서부대개발지역(12개) :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녜하자치구, 신강자치구, 내몽고자치구, 광서자치구, 서장자치구, 중경 직할시
- 면 적 : 약 960만km² (한반도 면적의 43배, 남한의 약 97배)
 - 남북 : 남사군도(4°N) ~ 흑룡강(52°N), 5,500km
 - 동서 : 파미르고원(73°E) ~ 우수리강(135°E), 5,200km
 - 영해 : 12해리(1958.9.4 선언, 1992.2.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정공포)
 - 국경선 총길이 : 20,280km (한반도, 러시아, 몽골, 중앙아 3국,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 국가와 육지 접경)

□ 인 구 : 1,368백만 명(2014 기준)

구 분	연령별			성별	
	0~14세	15~59세	60세 이상	남자	여자
2010년(A)	19.4%	69.0%	11.6%	51.5%	48.5%
2014년(B)	16.6%	70.1%	13.3%	51.2%	48.8%
증감(B-A)	△2.8%	0.1%	1.7%	△0.3%	0.3%

□ 기 후

- 복잡하고 다양한 기후
 - 중국은 지역과 위도가 넓고 지형의 높이와 지형형태, 산맥의 방향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온과 강우량의 차이가 뚜렷하고 기후 종류가 많음
 - 동부는 계절풍 기후이며(아열대 계절풍 기후, 온대 및 열대 계절풍 기후로 구분함) 서북부는 온대 대륙성 기후, 청장고원은 고한기후
 - 기온으로 구분하면 열대, 아열대, 난온대, 중온대, 한온대 및 청장 고원지역으로 구분되며 건습지역으로 구분하면 습윤, 반습윤, 반건조, 건조지역으로 구분됨
 - 같은 위도인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중국 겨울의 기온은 낮고 여름 기온은 높은 편이며 기온의 차이가 큼. 강우량은 여름에 집중되며 대륙성 기후 특징을 지님

□ 언 어 : 중국어 (지역에 따라 소수민족언어 병용)

- 중국의 일반적 언어는 만다린(보통화)이라 불리는 한족 공동어로 전국 각 민족의 범용 언어임
- 1956. 2. 6. 국무원에서 만다린 추진에 대한 지시를 하였으며 만다린에 대한 정의를 보면 “베이징 언어를 표준어로 하고 중원 북방언어를 기초 사투리로 하며 전형적인 현대 간체 중국어를 문법의 규범으로 한다”고 명시
- 55개 소수민족은 하나의 민족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분적으로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함.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는 약 80여종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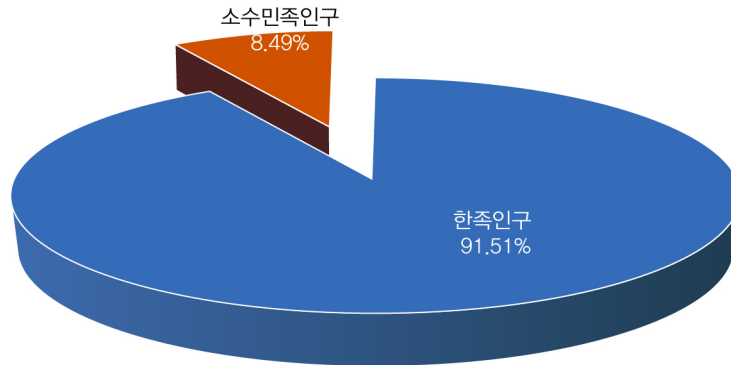
□ 종 교

- 중국은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 국가로 주로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및 기독교를 신봉하며 중국 국민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중국의 종교 신도는 1억 명 내외로 승인을 받고 개설한 종교 활동장소는 약 14만 곳이며 종교인은 36만여 명이며 종교 단체는 550여 개로 종교인을 배양하는 종교학교 100여개를 운영하고 있음
- 불교는 중국에서 2,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불교사찰이 3.3만 여개, 출가한 스님과 여승이 약 20만 명이며 그 중 티벳계 불교의 라마, 여승은 약 12만 명이며 화불 1700여명, 사찰 3,000여개가 있음
- 도교의 발원지는 중국이며 1,7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 중국의 기존 도교 공관은 9,000여개이며 건도와 곤도는 5만 여명이 있음
- 이슬람교는 기원7세기에 중국에 전파되었음. 이슬람교는 중국의 회족, 위구르족 등 10여개 소수민족들이 주로 믿는 종교임. 이러한 소수민족의 총 인구는 2,100여만 명으로 청진사는 3.5만 여개이며 이맘 및 아쿠훈드는 4.5만 여명임
- 천주교는 기원 7세기부터 중국에 전파되었으며 1840년 아편전쟁 후에 대규모로 유입되었음. 중국의 천주교 신도는 550여만 명, 교직인원은 7,000여명이며 교회, 會所가 약 6,000여개가 있음
- 기독교(신교)는 기원 19세기에 중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아편전쟁 후 대규모로 전래되었음. 중국의 기독교 신도는 약 2,305만 명이며 전도사는 약 3.7여만 명, 교회는 2.5만여 개가 있으며 간단한 예배장소는 약 3만여 개가 있음

- 국정공휴일 : 원단(1.1), 춘절(음력1.1), 청명절(4.4), 노동절(5.1), 단오절(음력5.5), 중추절(음력8.15), 국경절(10.1)

□ 민족의 구성 : 한족 91.51%, 소수민족 8.49%

[2010년 중국 민족 구성도 (제6차 중국 인구조사)]



- 2010.11.1일 6차 중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족인구는 1,225,932,641명으로 91.51%이며, 소수민족은 113,792,211명으로 8.49%를 차지함
- 2000년 제5차 전국 인구조사와 비교할 경우, 한족인구는 66,537,177명이 증가(5.74%)하였으며, 소수민족은 7,362,627명이 증가(6.92%)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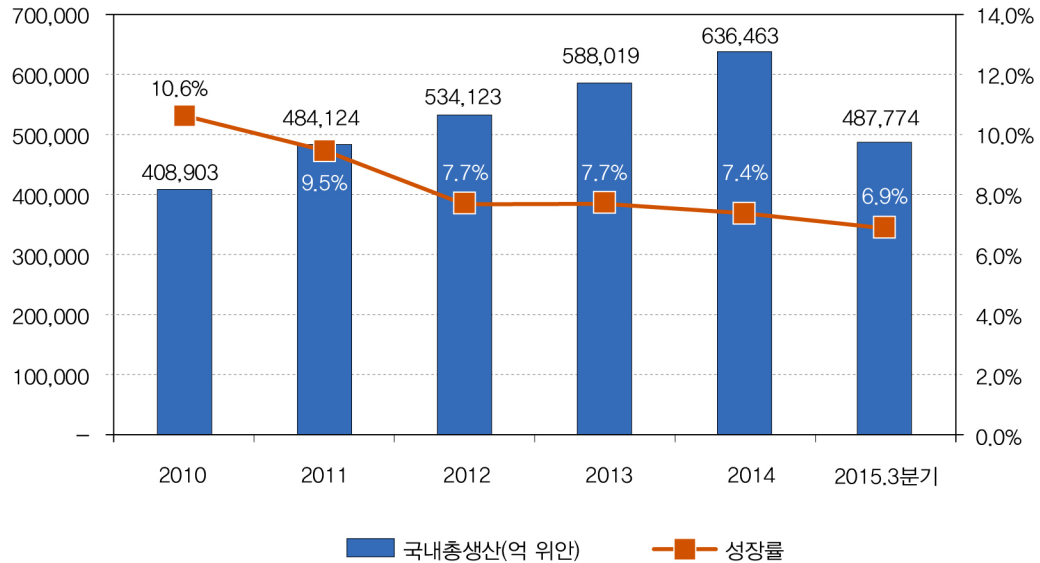
2. 경제상황

가. GDP 및 증가율

〈2010년~2015년 3분기 중국 GDP 총액 및 성장률〉

연 도	국내총생산(억위안)	전년대비 성장률
2010	408,903	10.6%
2011	484,124	9.5%
2012	534,123	7.7%
2013	588,019	7.7%
2014	636,463	7.4%
2015.3분기	487,774	6.9%

[2010년~2015년 3분기 GDP 총액 및 성장률 그래프]



*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 2015년 1~3분기 국내총생산액이 487,774억 위안, 불변가격으로 계산하면 동기대비 6.9% 증가
- 분기별로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7.0%, 2분기 7.0%, 3분기 6.9% 증가
- 산업별로 1차 산업 증가치는 39,195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3.8% 증가), 2차 산업의 증가치는 197,799억 위안(6.0% 증가), 3차 산업 증가치는 250,779억 위안으로 8.4% 증가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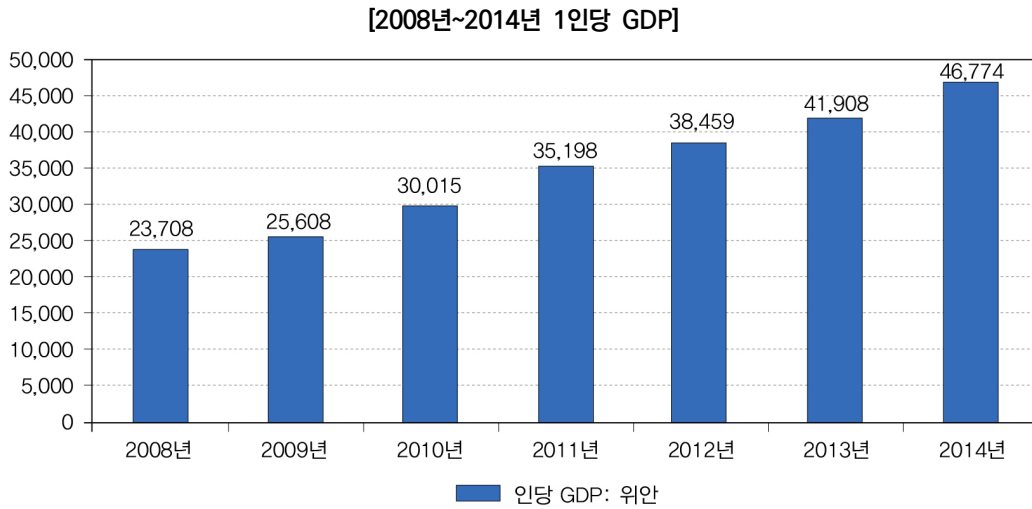
<2015년 1~3분기 산업별 GDP 계산 수치>

산업별	GDP(억위안)	비중(%)	전년 동기대비(%)
합 계	487,774	100.0	6.9
1차 산업	39,195	8.0	3.8
2차 산업	197,799	40.6	6.0
3차 산업	250,779	51.4	8.4

*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나. 1인당 GDP

- 2014년 중국 국민경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국민생활 개선 등 양호한 상태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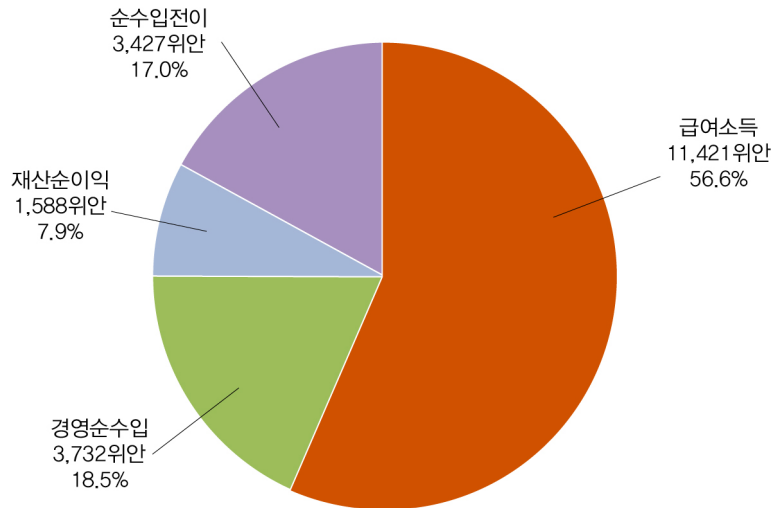


*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다. 전국 주민수입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14년 전국 주민의 1인당 개인가처분 소득이 20,167 위안으로 작년 대비 10.1% 증가했고 물가 상승 요소를 제외하여 실제 8%정도 상승
 - 수입원으로 구분해 보면 임금소득이 11,421 위안으로 56.6%를 차지하고, 경영순수입 3,732 위안(18.5%), 재산순수입 1,588 위안(7.9%), 각종 보조금 3,427 위안(17.0%)으로 구성

[2014년 수입원으로 구분된 전국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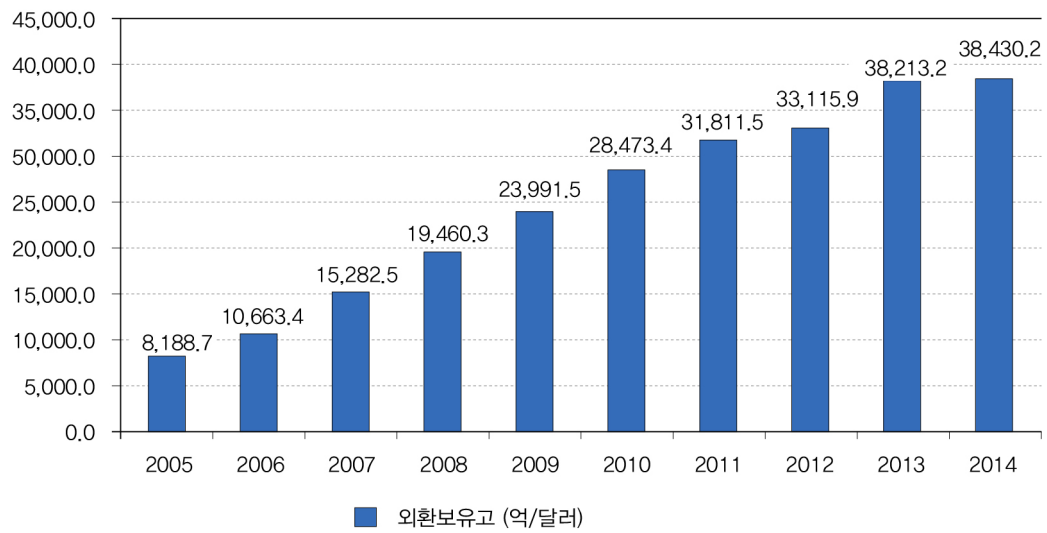


*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28,844 위안으로 작년보다 9% 증가, 물가요소를 제외한 실제 6.8% 증가.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증양값이 26,635 위안이고 실제 10.3% 증가
-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0,489 위안이고 작년대비 11.2% 증가, 물가요소를 제외하면 실제 9.2% 증가.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증양값이 9,497 위안이고 12.7% 증가
-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보면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이 19,968 위안이고, 8% 증가, 물가요소를 제외하여 실제 5.8% 증가. 농촌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이 8,383 위안이고, 12% 증가, 물가요소를 제외하여 실제 10% 증가

라. 외환보유고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6년에 1조 달러를 초과하였고, 2009년에 2조 달러, 2011년에 3조 달러를 초과한 후 2014년에 3조 8,430억 달러를 달성하여 10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2005~2014년 국가 외화 보유 규모〉

년도	금액 (억/달러)
2005	8,188.72
2006	10,663.44
2007	15,282.49
2008	19,460.30
2009	23,991.52
2010	28,473.38
2011	31,811.48
2012	33,115.89
2013	38,213.15
2014	38,430.18

* 출처: 국가통계국

마. 수출입 총액

〈2008~2015년 10월 중국 수출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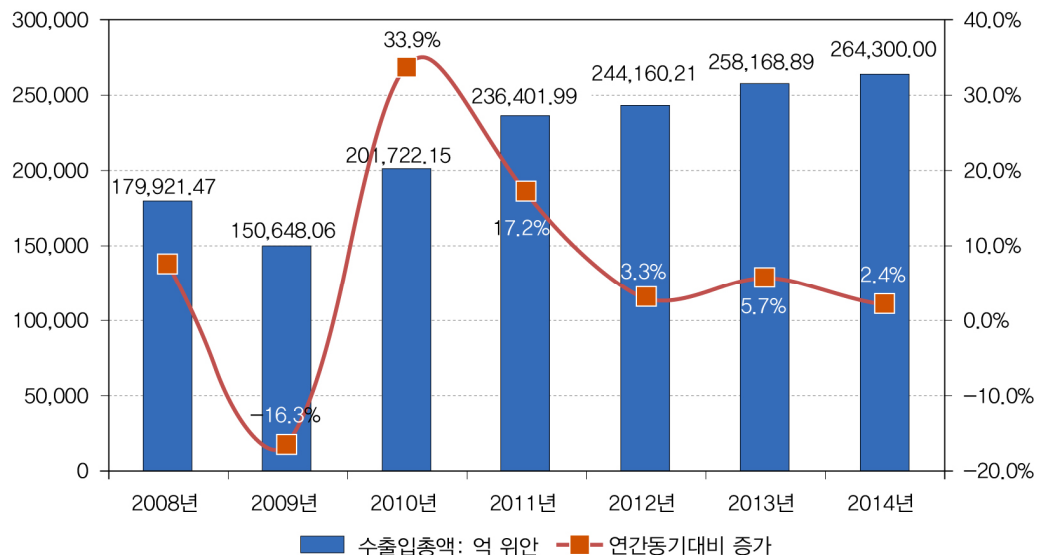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불)

구 분	수출액		수입액		수출입총액 (A+B)	무역수지 (A-B)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10월	1,860,576	-2.30%	1,314,875	-19.20%	3,175,451	545,701
2014년	2,343,222	6.00%	1,963,105	1.10%	4,306,327	380,117
2013년	2,210,772	7.80%	1,941,466	6.80%	4,152,238	269,306
2012년	2,050,109	7.90%	1,817,344	4.30%	3,867,453	232,765
2011년	1,899,314	20.30%	1,741,624	24.90%	3,640,938	157,690
2010년	1,578,444	31.30%	1,393,909	38.90%	2,972,353	184,535
2009년	1,202,047	-15.90%	1,003,893	-11.30%	2,205,940	198,154
2008년	1,428,869	17.30%	1,131,469	18.30%	2,560,338	297,400

* 출처: 한국무역협회

〈2008~2014년 중국 수출입 총액 증가추이〉

(단위: 억 위안)



*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2014년 화물수출입 총액 및 증감〉

구 분	수출액		수입액	
	금액(억위안)	전년대비(%)	금액(억위안)	전년대비(%)
합 계	143,912	4.9	120,423	-0.6
〈 무역 형태별 〉				
▪ 일반 무역	73,944	9.6	68,162	-1.0
▪ 가공 무역	54,320	1.8	32,211	4.5
〈 산업분야별 〉				
▪ 기계제품	80,527	2.6	52,509	0.7
▪ High-tech.기술제품	40,570	-1.0	33,876	-2.2
〈 수출입 총액 〉	264,334	2.3		
〈 무역수지 〉	23,489	—		

* 출처: 국가통계국

〈2014년 주요 상품의 수출량, 금액 및 증가 속도〉

상 품 명	물 량			금 액	
	단위	수량	증감(%)	억위안	증감(%)
석탄(갈탄 포함)	만톤	574	-23.5	43	-35.5
철강	만톤	9,378	50.5	4,350	31.6
방직 원자재 및 제품	—	—	—	6,888	3.8
의류 및 의류 부품	—	—	—	11,445	4.2
신발류	—	—	—	3,455	9.7
가구 및 관련 부품	—	—	—	3,195	-0.7
데이터 자동처리 설비, 부품	만대	19,1836	2.6	11,159	-1.3
핸드폰, 차량용 무선전화	만대	131,199	10.6	7,085	20.2
컨테이너	만개	302	12.1	553	13.0
액정 스크린	만개	245,080	-25.0	1,952	-12.4
자동차	만대	90	-2.8	770	3.5

* 출처: 국가통계국

〈2014년 주요상품 수입량, 금액 및 증가 속도〉

상품명	물 량		금 액	
	수량(만톤)	전년대비(%)	금액(억위안)	전년대비(%)
곡식 및 가루	1,951	33.8	382	20.7
콩(대두)	7,140	12.7	2,474	5.0
식용식물유	650	-19.7	364	-27.3
철광석 및 정광	93,251	13.8	5,748	-12.8
산화알루미늄	528	37.7	118	35.5
석탄(갈탄포함)	29,122	-10.9	1,366	-24.4
원유	30,838	9.5	14,017	2.8
기름 완제품	3,000	-24.2	1,439	-27.7
primary plastic	2,535	3.0	3,167	4.0
펄프	1,796	6.6	741	4.9
철강	1,443	2.5	1,101	4.0
구리 재료	483	7.4	2,188	0.8

* 출처: 국가통계국

〈2014년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입액 및 증가 속도〉

(단위: 억 위안)

국가/지역	수 출 액		수 입 액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유럽연합	22,787	8.3	15,031	9.7
미국	24,328	6.4	9,764	3.1
동남아시아 연합	16,712	10.3	12,794	3.3
홍콩	22,307	-6.6	792	-21.5
일본	9,187	-1.4	10,027	-0.5
한국	6,162	8.9	11,677	2.8
중국 대만	2,843	12.7	9,337	-3.9
러시아	3,297	7.2	2,555	3.7
인도	3,331	10.7	1,005	-4.6

* 출처: 국가통계국

3. 정치상황

가. 정치체제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의 사회주의 국가(93년 신헌법 제1조 규정)
- 정부형태 : 실질적 공산당 일당 통치(형식상 8개 정당존재)
- 의회: 단원제 (전국인민대표대회)
- 정치조직 구분
 - 국가주석 : 시진핑
 -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 : 공산당
 - 입법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 우방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이며, 동 대회의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임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2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들에 속한다. 인민들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의 인민대표대회임. 인민들이 법률에 준수하여 각종 통로 및 형식으로 국가사무, 경제 및 문화사업, 사회사무를 관리’ 하는 것으로 규정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함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 행정구 및 군에서 선발된 대표로 구성되며, 각 소수 민족도 반드시 적당한 정원의 대표가 있어야 함
- 국가 행정기관 : 국무원(총리 : 리커창), 지방각급 인민정부
- 국가 정책자문기관 : 인민정치협상회의(주석 : 자칭린)
- 국가 군사지도기관 : 중앙군사위원회(주석 : 시진핑)
- 국가 사법기관 :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
- 국가 검찰기구 :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전문인민검찰원
-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 민주제당파 및 사회단체

나. 주요정책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표방
-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 건설 등을 모토로 하여 양적 경제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경제발전 추구
- 대륙-대만간 국가통일 실현(1국 2체제 방식)
- 평화공존 5원칙 등을 기조로 하여 반대, 세계평화 옹호
- 유엔가입 : 1971.10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다. 정치제도

- 중국 정치제도는 1949.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면서부터 중국 대륙에서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정권, 정부제도, 국가와 사회관계 등 근본문제를 규범화한 법률, 체제, 규칙 및 관례임
-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국가의 근본 정치제도로, 인민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며, 인민대표는 선발절차로 선출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음
- 중국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다당 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합작제도는 중국 사회주의의 정당체제이고 중국의 기본정치제도 중 하나이며 “장기공존, 상호감독, 간담상조, 영육여공”이 협력의 기본적 방침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 혁명과 건설의 결합이며 중국 정치제도의 특징과 장점을 구현함

4. 한중관계

가. 일반사항

- 한중수교일 : 1992년 8월 24일
-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120,750명으로 나타남

나. 한중 경제동향

〈2005~2015. 10월 한중 양국 수출입 규모〉

(단위: 억 불)

연도	대중수출액(A)	대중수입액(B)	합계(A+B)	차액(A-B)
2005	619.1	386.5	1,005.6	232.6
2006	694.6	485.6	1,180.2	209.0
2007	819.9	630.3	1,450.2	189.6
2008	913.9	769.3	1,683.2	144.6
2009	867.0	542.5	1,409.5	324.5
2010	1,168.4	715.7	1,884.1	452.7
2011	1,342.1	864.3	2,206.4	477.8
2012	1,343.0	808.0	2,151.0	535.0
2013	1,458.7	830.5	2,289.2	628.2
2014	1,453.3	900.7	2,354.0	552.6
2015.10월	1,145.5	751.3	1,896.8	394.2

* 출처: 중국 상무부

-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 무역은 급속히 발전하였는데 2002년 440억불 수준에서 2014년에는 2,354억 불에 달하여 약 5배 이상 성장하였음
- 한국에게는 중국이 일본, 미국을 뛰어넘어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중국에게 한국은 수입 1위, 수출 4위의 세계 4대 무역 파트너 국가가 되었음

다. 한중 FTA 체결 및 발효

□ 한중 FTA 추진경과

- 2014. 11. 10. :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 2015. 2. 25. : 한중 FTA 가서명 완료
- 2015. 6. 1. : 한중 FTA 정식서명
- 2015. 11. 30. :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5. 12. 20. : 한중 FTA 정식 발효

□ 주요 의미

-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
- 중국이라는 거대·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 확보
- 국내 농수산 시장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 기회 마련
- 수출·투자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등 비관세장벽 해소
-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 (도시화 관련 산업, 문화, 유통 등)
- 글로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확대 기대
- 한-중 관계 심화와 (한류)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

□ 주요 협상결과

-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
- 제조업 분야는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

품목군		한국		중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일반 품목 (NT)	즉시	6,108 (49.9%)	418.5억불 (51.8%)	1,649 (20.1%)	733.7억불 (44.0%)
	5년	1,433 (11.7%)	31억불 (3.8%)	1,679 (20.5%)	58.3억불 (3.5%)
	10년	2,149 (17.6%)	173.3억불 (21.5%)	2,518 (30.7%)	312.5억불 (18.7%)
	소계	9,690 (79.2%)	622.8억불 (77.1%)	5,846 (71.3%)	1,104.5억불 (66.2%)
민감 품목 (ST)	15년	1,106 (9.0%)	79.5억불 (9.8%)	1,108 (13.5%)	219.2억불 (13.1%)
	20년	476 (3.9%)	34.1억불 (4.2%)	474 (5.8%)	93.75억불 (5.6%)
	소계	1,582 (12.9%)	113.6억불 (14.0%)	1,582 (19.3%)	312.9억불 (18.7%)
자유화율(NT+ST)		11,272 (92.2%)	736.4억불 (91.2%)	7,428 (90.7%)	1,417.4억불 (85%)
초민감품목(HST)		960 (7.8%)	71.3억불 (8.8%)	766 (9.3%)	250.1억불 (15.0%)
합계		12,232 (100%)	807.7억불 (100%)	8,194 (100%)	1,667.5억불 (100%)

□ 농수산 분야 협상결과

양허 단계	한국 양허				중국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즉시	223	9.96%	327	9.2%	283	19.3%	25	4.0%
(무관세)	102	4.6%	246	6.9%	121	8.3%	16	2.6%
(유관세)	121	5.4%	80	2.3%	162	11.1%	9	1.4%
5년	303	13.5%	16	0.5%	79	5.4%	5	0.8%
10년	176	7.9%	278	7.9%	661	45.1%	85	13.7%
(10년내)	702	31.3%	621	17.5%	1,023	69.8%	115	18.5%
15년	428	19.1%	103	2.9%	232	15.8%	74	11.9%
20년	439	19.6%	612	17.3%	105	7.2%	158	25.4%
20A	2	0.1%	28	0.8%				
20B	1	0.04%	57	1.6%				
(20년내)	1,572	70.2%	1,420	40.0%	1,360	92.8%	347	55.8%
부분감축	35	1.6%	492	13.9%	1	0.1%	19	3.1%
현행관세 +TRQ	21	0.9%	569	16.0%				
협정배제	16	0.7%	77	2.2%				
양허제외	596	26.6%	989	27.9%	104	7.1%	256	41.1%
합계	2,240	100%	3,547	100%	1,465	100%	621	100%

◦ 농업

-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제외 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
- 일부 품목에 한정된 TRQ 제공 및 관세 소폭 감축 등의 보호장치를 활용하여 시장개방 충격 최소화
- 중국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고품질·안전 우리 농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확보
- 우리 30대 주력 수출품목(전체 수출액의 93%)중 21개 품목에 대해 양허 개선
- SPS(위생·검역)분야는 농업계의 우려를 감안,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
-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 수산업

- 주요 대중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수입액 64.3%)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 확보
-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유화율 약 100%(수입액기준)로 완전 개방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제고
-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FTA 특혜관세혜택에서 배제

라. 투자 동향

□ 한중 FTA체결에 따른 한중 투자교류 영향

- 한중 무역액이 더 큰 수치로 성장하고 전자상거래와 해외직구는 한중 무역의 새로운 경제성장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 2014년 한중양국 무역액이 이미 3000억 달러에 달했고 한중 FTA 시행되면 5년내 4000 억달러를 돌파할 가능성
 - 전자상거래는 한중무역의 새로운 성장점이 될 것이며, 지난 2년간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이 한국을 4번이나 방문해 한국기업과 B2C, B2B협력을 추진 중
 - Jingdong, Suning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뒤따라 한국에서 창고를 설립
-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중서부 쪽으로 빠르게 치우치고 있음
 - 2015년 1분기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외국투자 중에 1위이고, 최근 몇 년간 한국기업들의 투자 지역은 이미 동부연해에서 중서부 쪽으로 점차 이동
 - 그러나 한국기업의 서부 전체 투자액이 30억 달러 정도이고 전체 대 중국 투자의 7% 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향후 한국기업들이 서부지역에 투자하는데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
 - 한중 FTA시대에 중국정부에서는 한국기업의 서부투자 확대를 환영하고, ‘일대일로’, ‘장강 경제벨트’ 등도 중국 서부투자에 호재이며, 현재까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등 한국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섬서, 사천, 중경 등 지역에 큰 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중국자본은 한류산업과 역사상 가장 긴밀한 융합이 이뤄지고 있음
 - 2014년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2억 달러, 전년대비 147%증가,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수치이며, 이중 중국자본의 게임, 영상, 오락, 패션 등 한류 특색 산업 및 기업 관련 투자는 대한국 투자의 빠른 성장에 큰 추진력 역할
 - 2014년 부터 중국자본의 한국기업 합병이나 출자는 이미 몇 건이 이루어졌는데,
 - 2014, 3월 텐센트는 5억 달러를 출자하여 유명 게임회사 CJGames의 주주가 됨
 - 8월 Sohu는 8900만 위안을 출자하여 김수현 소속사KeyEast의 6% 넘는 주식 매입
 - 10월에 Huace Media는 3.23억 위안을 투자하여 한국 영화사 N.E.W. 2대주주 됨
 - 11월 텐센트는 Line과 협력 1대1의 비레로 게임회사 33 Creative Lab에 투자
 - 한중FTA 협정 중에 한국이 중국과 영상, 라디오 방송, 다큐 및 애니메이션 관련 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내용 포함
 - 중국자본과 한류산업과의 융합이 앞으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의 중요 특징이 될 것
- 인민폐 관련 한중 양국간의 금융 왕래도 활발해질 전망
 - 2014년 11월, 12월에 서울의 인민폐 청산 서비스와 위안화 대 한화 직거래시장이 연이어 개설되고 이는 FTA시대에 한중 경제무역 왕래에 편리함을 제공
 -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인민폐 결제로 하면 양국기업들에게 3~5%의 비용절감이 가능

II

경제동향

1. 경제지표 및 정책

가. 중국 GDP 성장률 및 전망

〈2006~2015년 중국국내 GDP 및 증가율 통계 분석〉

연 도	국내총생산(억위안)	전년대비 성장률
2006	217,657	12.70%
2007	268,019	14.20%
2008	316,752	9.60%
2009	345,629	9.20%
2010	408,903	10.6%
2011	484,124	9.5%
2012	534,123	7.7%
2013	588,019	7.7%
2014	636,463	7.4%
2015.3분기	487,774	6.9%

* 출처: 국가통계국

- 2015년 하반기에 각종 안정적 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상반기의 거시경제 하락세가 호전되고 4분기에 들어와서 점차 안정세를 보임
- 2015년 연간 GDP 실제 성장률은 6.9% 예측, 2014년 대비 0.4 퍼센트가 하락
- 중국 인민은행 예측에 따르면 2016년 경제성장률은 6.8% 전망
 - 과잉설비, 제조업 이익 하락, 부실대출 비율 상승 등이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부동산시장 회복, 다양한 거시 및 구조개혁 정책, 대외수요 호전 등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 동안 목표성장률은 제시하지 않고 '중고속 성장 유지' 목표만 제시(최저선 6.5%)

나. 물가

〈2013~2015년 중국국민 소비자 가격지수 (CPI) 통계 분석〉

월 별	당월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누적	월 별	당월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누적
2015.10월	101.3	1.3%	-0.3%	101.4	2014.05월	102.5	2.5%	0.1%	102.3
2015.09월	101.6	1.6%	0.1%	101.4	2014.04월	101.8	1.8%	-0.3%	102.2
2015.08월	102.0	2.0%	0.5%	101.4	2014.03월	102.4	2.4%	-0.5%	102.3
2015.07월	101.6	1.6%	0.3%	101.3	2014.02월	102.0	2.0%	0.5%	102.2
2015.06월	101.4	1.4%	0.0%	101.3	2014.01월	102.5	2.5%	1.0%	102.5
2015.05월	101.2	1.2%	-0.2%	101.3	2013.12월	102.5	2.5%	0.3%	102.6
2015.04월	101.5	1.5%	-0.2%	101.3	2013.11월	103.0	3.0%	-0.1%	102.6
2015.03월	101.4	1.4%	-0.5%	101.2	2013.10월	103.2	3.2%	0.1%	102.6
2015.02월	101.4	1.4%	1.2%	101.1	2013.09월	103.1	3.1%	0.8%	102.5
2015.01월	100.8	0.8%	0.3%	100.8	2013.08월	102.6	2.6%	0.5%	102.5
2014.12월	101.5	1.5%	0.3%	102.0	2013.07월	102.7	2.7%	0.1%	102.4
2014.11월	101.4	1.4%	-0.2%	102.0	2013.06월	102.7	2.7%	0.0%	102.4
2014.10월	101.6	1.6%	0.0%	102.1	2013.05월	102.1	2.1%	-0.6%	102.4
2014.09월	101.6	1.6%	0.5%	102.1	2013.04월	102.4	2.4%	0.2%	102.4
2014.08월	102.0	2.0%	0.2%	102.2	2013.03월	102.1	2.1%	-0.9%	102.4
2014.07월	102.3	2.3%	0.1%	102.3	2013.02월	103.2	3.2%	1.1%	102.6
2014.06월	102.3	2.3%	-0.1%	102.3	2013.01월	102.0	2.0%	1.0%	102.0

*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 2015년 10월 전국 주민 소비자 가격 수준은 동기대비 1.3% 상승, 이 중에서 도시 소비자 가격지수는 1.3% 상승, 농촌 1.2% 상승하였으며, 식품 가격 1.9%상승, 비식품 가격 0.9% 상승. 일반소비품 가격 상승은 1%, 서비스 가격 상승이 1.9%, 1~10월 평균적으로 전국 주민 소비자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1.4% 상승
- 10월 전국 주민 소비자 가격수준은 전 분기 대비 0.3% 하락, 그 중에서 도시는 0.3% 하락, 농촌은 0.3% 하락. 식품 가격 하락이 1%, 비식품 가격 하락이 0.1%. 소비품 가격 하락이 0.4%, 서비스 가격 하락 0.1% 임

다. 통화

〈2013~2015년 중국 공급통화량 통계분석〉

월분	통화 및 준통화 (M2)			통화 (M1)		
	수량(억위안)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수량(억위안)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2015년 10월	1361020.70	13.50%	0.09%	375806.45	14.00%	3.13%
2015년 09월	1359824.06	13.10%	0.21%	364416.90	11.40%	0.45%
2015년 08월	1356907.98	13.30%	0.27%	362793.73	9.30%	2.74%
2015년 07월	1353210.92	13.30%	1.49%	353122.19	6.60%	-0.83%
2015년 06월	1333375.36	11.80%	1.99%	356082.86	4.30%	3.79%
2015년 05월	1307357.63	10.80%	2.08%	343085.86	4.70%	1.99%
2015년 04월	1280779.14	10.10%	0.43%	336388.24	3.70%	-0.24%
2015년 03월	1275332.78	11.60%	1.43%	337210.52	2.90%	0.83%
2015년 02월	1257380.48	12.50%	1.18%	334439.22	5.60%	-3.93%
2015년 01월	1242710.22	10.80%	1.17%	348109.50	10.60%	0.02%
2014년 12월	1228374.81	12.20%	1.64%	348056.41	3.20%	3.86%
2014년 11월	1208605.95	12.30%	0.78%	335114.13	3.20%	1.67%
2014년 10월	1199236.31	12.60%	-0.23%	329617.73	3.20%	0.73%
2014년 09월	1202051.41	12.90%	0.38%	327220.21	4.80%	-1.45%
2014년 08월	1197499.08	12.80%	0.27%	332023.23	5.70%	0.20%
2014년 07월	1194249.24	13.50%	-1.27%	331347.32	6.70%	-2.97%
2014년 06월	1209587.20	14.70%	2.31%	341487.45	8.90%	4.16%
2014년 05월	1182293.96	13.40%	1.15%	327839.56	5.70%	1.03%
2014년 04월	1168812.67	13.20%	0.70%	324482.52	5.50%	-0.98%
2014년 03월	1160687.38	12.10%	2.56%	327683.74	5.40%	3.49%
2014년 02월	1131760.83	13.30%	0.73%	316625.11	6.90%	0.55%
2014년 01월	1123521.21	13.20%	1.54%	314900.55	1.20%	-6.64%
2013년 12월	1106524.98	13.60%	2.53%	337291.05	9.30%	3.84%
2013년 11월	1079257.06	14.20%	0.84%	324821.92	9.40%	1.66%
2013년 10월	1070242.17	14.30%	-0.66%	319509.38	8.90%	2.30%
2013년 09월	1077379.16	14.20%	1.52%	312330.34	8.90%	-0.56%
2013년 08월	1061256.43	14.70%	0.86%	314085.91	9.90%	1.12%
2013년 07월	1052212.34	14.50%	-0.21%	310596.46	9.70%	-0.93%
2013년 06월	1054403.69	14.00%	1.17%	313499.82	9.10%	1.06%
2013년 05월	1042169.16	15.80%	0.93%	310204.48	11.30%	0.83%
2013년 04월	1032551.90	16.10%	-0.32%	307648.42	11.90%	-1.05%
2013년 03월	1035858.37	15.70%	3.73%	310898.29	11.90%	5.00%
2013년 02월	998600.83	15.20%	0.65%	296103.24	9.50%	-4.86%
2013년 01월	992129.25	15.90%	1.85%	311228.55	15.30%	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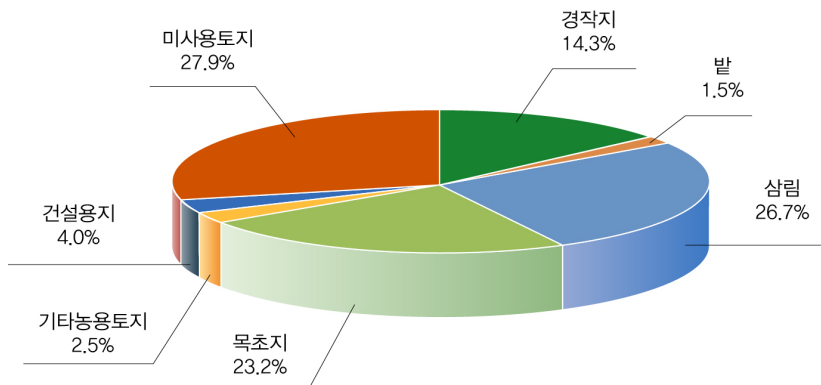
* 출처: 중국 인민은행

라. 부동산

◦ 토지 사용

- 2013년 말까지 중국에 농업용지 면적이 64,616.84만ha이고, 이중에서 경지면적이 13,516.34만ha, 임업용지 25,325.39만ha, 목축업용지 21,951.39만ha. 건설용지 3,745.64만ha, 이 중에서 도시&농촌 및 광업용지 3,060.73만ha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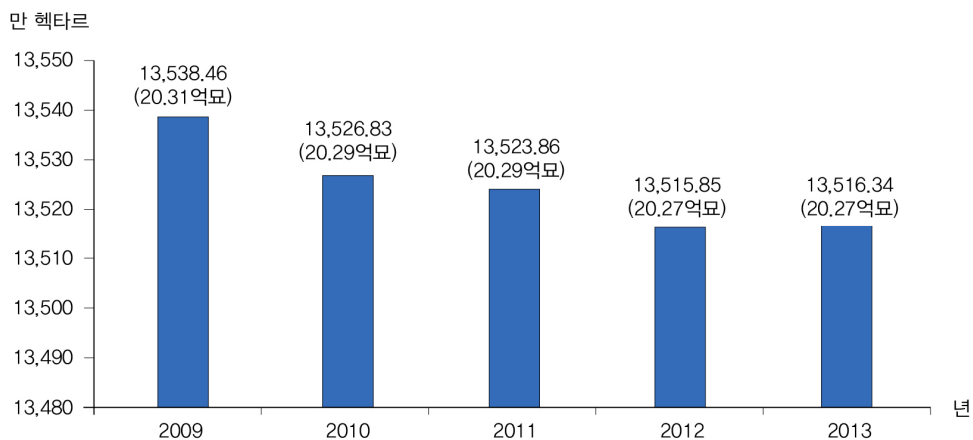
[2013년 전국 토지사용 현황]



* 출처: 국토 자원부, 2014년 중국 국토자원 공보

- 2013년 중국에서 건설점용, 재해, 농업구조조정 등으로 경지면적이 35.47만 헥타르가 감소되었고 토지 회복, 농업구조조정으로 증가한 토지면적이 35.96만 헥타르, 연내에 증가된 경지면적이 0.49만 헥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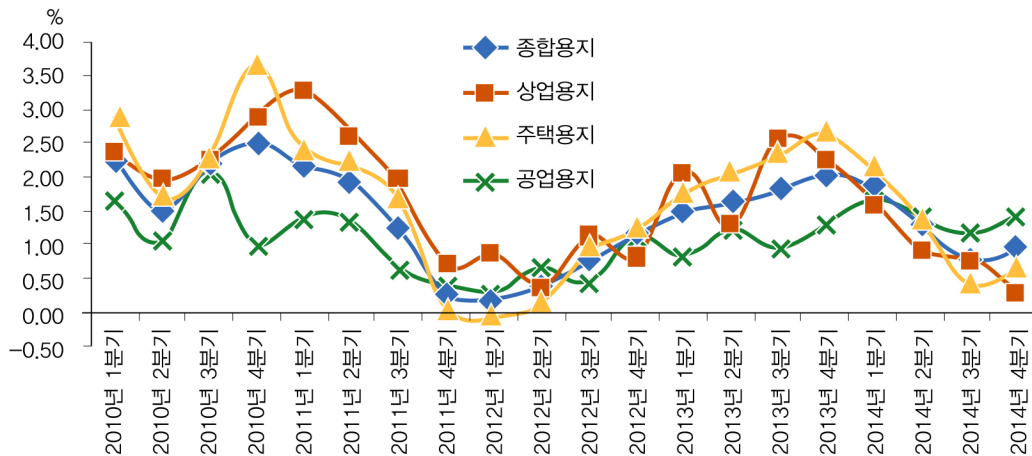
[2009~2013년 전국 경지면적 변화]



◦ 주요도시 토지가격(땅값)

- 2014년 4분기말 중국 105개 주요 도시의 종합 토지가격, 상업&서비스업 토지가격, 주택 토지가격, 공업토지가격이 각각 3,533위안/㎡, 6,552위안/㎡, 5,277위안/㎡, 742위안/㎡, 동기대비 각각 5.2%, 3.9%, 4.8%, 6% 증가, 전분기 대비 각각 0.9%, 0.4%, 0.7%, 1.4% 증가

[2010~2014년 전국 주요도시 지가 분기별 상승률 변화]



* 출처: 국토 자원부, 2014년 중국 국토자원 공보

◦ 분양주택 가격

- 2014년 70개 대중형 도시 신축 분양주택의 판매가격이 상반기에는 월 동기 대비 상승한 도시가 69개, 하락한 도시가 1개 였던 반면, 하반기에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에 상승한 도시가 2개, 하락한 도시가 68개로 증가

〈2014년 신축 분양주택 판매가격 동기대비 분석〉



* 출처: 국가통계국

- 2014년 부동산 개발투자액이 95,036억 위안, 전년 대비 10.5% 상승. 이 중에서 주택투자가 64,352억 위안, 9.2% 증가. 사무실 빌딩 투자, 5641억 위안, 21.3% 증가. 상업 영업용 건물 투자 14,346 억 위안, 20.1% 증가
- 2014년 전국 도시 주택보장 프로젝트에서 주택 완공된 수량이 511만 채, 새로 공사 시작한 수량이 740만 채

마. 정부 예산

〈2009~2015년 중국 재정수입 통계〉

(단위: 억 위안)

월분	재정수입		세금수입	
	금액	동기대비	금액	동기대비
2015년 3분기	114,412.5	7.6%	94,631.5	4.3%
2014년	140,350.0	8.6%	119,158.0	7.8%
2013년	129,143.0	10.1%	110,497.0	9.8%
2012년	117,210.0	12.8%	100,600.9	12.1%
2011년	103,740.0	24.8%	89,720.3	22.6%
2010년	83,080.0	21.3%	73,202.0	23.0%
2009년	68,477.0	11.7%	59,521.6	9.8%

* 출처: 국가통계국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공공재정수입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2014년 연간 공공재정 수입은 14조 350억 위안이며, 전년보다 2조 3,140억 위안이 증가하여 8.6% 증가
- 2014년에 정부 전체 재정수입 중 세금수입은 11조 9,158억 위안으로 전체 수입의 84.9%를 차지

바. 환율동향 및 정책

〈1971~2015년 9월 중국국내 달러 대 위안화 환율 변동표〉

연도	환율	연도	환율	연도	환율	연도	환율
1971	2.462	1983	1.976	1995	8.351	2007	7.5215
1972	2.245	1984	2.320	1996	8.314	2008	6.9385
1973	1.989	1985	2.937	1997	8.290	2009	6.8311
1974	1.961	1986	3.453	1998	8.279	2010	6.6150
1975	1.859	1987	3.722	1999	8.278	2011	6.3851
1976	1.941	1988	3.722	2000	8.279	2012	6.2980
1977	1.858	1989	3.765	2001	8.277	2013	6.1930
1978	1.684	1990	4.783	2002	8.277	2014	6.1704
1979	1.555	1991	5.323	2003	8.277	2015 3분기	6.2509
1980	1.498	1992	5.516	2004	8.0922		
1981	1.705	1993	5.762	2005	8.1917		
1982	1.893	1994	8.619	2006	7.9735		

* 출처: 중국인민은행

- 중국 환율제도의 변천
 - 개혁개방 이전 : 정부에서 외환수지를 통제하고 외환을 배분하는 ‘계획환율제도’ 시행
 - 1981~1993년 :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하는 공식환율인 공정환율과 외환조절센터에서 실제 외환거래 시 적용되는 시장환율이 병존하는 ‘이중환율제도’ 시행
 - 1994~2005.7월 : 시장수급이 반영되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환율을 관리(1997년 이후 달러당 8.28위안에 고정된 사실상 고정환율제도 운영)

- 2005.7월~현재 : 복수통화 바스켓을 참조하여 조정하는 관리변동환율제 실시(복수통화바스켓 관리변동 환율제도)
- 2005.7~2008.6월 : 통화 바스켓제도 도입
- 2007.5월 : 환율 일일변동 폭 확대($\pm 0.3 \rightarrow \pm 0.5\%$)
- 2008.7월~2010.6월 : 사실상 6.82~6.83위안에 고정
- 2010.6월~ : 통화 바스켓제도 복귀 이후 2012년 4월 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pm 0.5 \rightarrow \pm 1.0\%$)
- 2014.3.17~ : 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pm 1.0 \rightarrow \pm 2.0\%$)
- 2015.8.11, 8.12 : 연 이틀 각각 1.86%, 1.63% 중국위안화 평가절하 전격 단행

2. 2016년 경제전망 (중국인민은행)

- 경제성장률이 금년 중 6.9%, 2016년에는 6.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과잉설비, 제조업 이익 하락, 부실대출 비율 상승 등이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부동산시장 회복, 다양한 거시 및 구조개혁 정책, 대외수요 호전 등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긍정적 요인으로는 ① 세계경제성장률 상승 ② 부동산투자의 완만한 회복 ③ SOC 투자 확대 ④ 거시정책 효과 ⑤ 행정간소화, 창업·혁신 촉진 등 공급측 정책에 따른 성장잠재력 제고 등을 제시
 - 부동산투자의 경우 최근 상업용 주택판매 증가세 지속,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매각수입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점차 회복되겠으나 재고부담으로 과거 부동산시장 회복기에 비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소비구조 업그레이드 추진과 더불어 공급측 개혁을 통해 유효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
 - 최근 국무원은 서비스·정보·친환경·패션·농촌·품질업그레이드 소비 등 6개 소비업그레이드 중점 분야와 가사서비스, 건강양로서비스, 산업디자인, 전자상거래, 물류 등 수십 개 분야의 공급측 개혁조치를 발표
 - 하방압력과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제조업투자 부진 ② 은행 부실대출비율 상승 ③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언급

-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① 부동산투자의 회복 여부 ② 세계경제 회복속도 ③ 미국 금리인상 과정에서의 신흥국 자본유출 및 평가절하 규모 ④국제 지역분쟁에 따른 리스크 등을 제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1.5%, 내년 1.7%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1.5%, 내년 1.7%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영향 등으로 금년보다 0.2%p 상승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5.2%, 내년 -1.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흑자규모(GDP대비)는 금년 3.0%, 내년 2.8% 수준을 보일 전망

- 무역수지 흑자규모(GDP대비)는 금년 5.5%, 내년 5.3% 수준을 보일 전망

3. 국민경제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 개 요

- 중국 공산당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15.10.26~29)에서 <중공 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에 관한 건의>가 통과되었으며, 13.5 기간(2016~20년)의 정책 목표와 5대 발전 이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 등이 제시됨
- 13.5 기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0년)까지 '샤오강(小康)사회'* 건설,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따통(大同)사회' 건설목표 중 첫 목표인 전면적 '샤오강 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 시기를 강조하고, <13.5 계획>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
- 한편 13.5 기간 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혁신(創新), 균형(協調), 녹색, 개방, 공동향유(共享) 등 5대 발전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

* 샤오강(小康)사회는 의식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함. 장쩌민 국가주석이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강 사회를 달성하겠다"고 말한 이후 중국발전의 상징어로 자리잡음. 현 중국 정부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大同사회(완벽한 평등, 안락, 평화가 있는 사회)'의 전 단계임

□ 주요 내용

- 〈13.5 계획〉의 분야별 핵심 사항
 - 13.5 기간에는 중고속 성장 유지, 신성장산업, 지역 균형발전, 지속적 개혁과 개방, 빈곤퇴치 등 민생 향상에 역점
- [성장률] 목표 성장률 발표 없이 중고속 성장 유지 방침 발표(시진핑 주석은 13.5 기간 6.5% 이상의 성장률 유지 필요성 언급)
- [산업전략] 인터넷 강국 건설(인터넷+행동계획), 제조 강국 건설(중국 제조 2025,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저탄소 산업 및 서비스업 발전,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 추구
- [지역발전전략] ‘4+3’의 지역발전전략(동부 선도·중부굴기·서부대개발·동북진흥+일대일로·장강경제벨트), 신형도시화(도시군 발전과 사람이 핵심인 신형 도시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
- [경제개혁]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 재정 및 세제 개혁, 금융개혁(금리 및 환율 시장화), 도시화 및 농촌 개혁(호구·부동산·토지제도 개혁), 전면적인 두 자녀정책 시행 등을 제시
- [대외개방전략]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진입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외환관리 완화 및 자본항목 자유태환 추진, 일대일로 건설,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높은 수준의 FTA 추진(RCEP, FTAAP),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발언권 확대 등 추구

□ 평가 및 시사점

-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한·중 간 경쟁구도 변화, 일대일로 중심의 중국 지역협력 구도변화,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에 대응한 새로운 대중국 협력전략 모색 필요
- 아울러 한·중 FTA의 투자·서비스 분야 추가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도모, RCEP과 FTAAP를 통한 아태지역 경제통합 드라이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등도 필요

Ⅲ

농업동향 및 주요정책

1. 중국 농업의 현재 상황

가. 중국 국내 농업환경

- 기회요인
 - 첫째, 중앙정부는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을 중시하며 이를 신속히 경제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여기고 있음
 - 둘째, 중국은 공업발전을 이뤄내 농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셋째, 중국은 “제12차 5개년” 기간에 도시화율이 50%를 초과하였고, 도시화의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에 대한 견인역할은 더욱 뚜렷해졌으며, 경제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도시민 소비구조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어 농업 및 농촌 경제발전에 집중 할 수 있는 여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 농업의 현 문제점
 -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70%로 낮아졌으며 30%는 국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의 공업화 도시화 발전은 빠르나 도시의 신속한 발전으로 인해 농촌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농촌의 인구감소, 토지 황폐, 기초시설 부족, 환경오염, 농업 화학비료로 인한 토지 오염 및 농작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농산물의 외부 의존도가 높음

나.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내용 중 농업 및 농촌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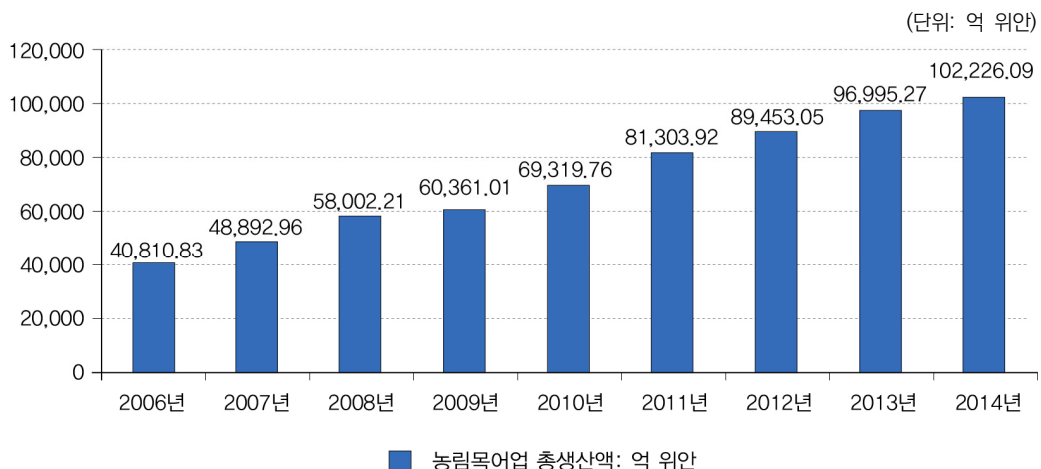
- 혁신발전 - 농업현대화의 전력 추진
 - 농업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고효율·상품안전·자원절약·친환경 농업현대화
 - 농촌토지제도 개혁, 농촌금융 개혁, 가장 엄격한 농지보호
 - 농업보조금 완비, 농산품 가격형성 메커니즘 개혁
 - 신형 직업농민 육성

◦ 균형발전 - 도시농촌 균형발전

- 특색 있는 현(縣)경제 발전, 중소도시와 특색 있는 농촌도시(小城鎮) 육성
- 농산물 심화가공 및 농촌서비스업 발전 촉진, 농민소득 증대원 개척, 농민소득 증대지지 정책 완비, 농촌의 내생적 발전동력 증강
- 사람이 핵심인 신형 도시화 추진, 도시 계획·건설·관리 수준 제고
- [호구제도 개혁 심화] 도시지역 농업이전 인구의 안정적 취업과 생활 추진, 도시민과의 동등한 권리·의무 시행
- 재정이전지불 제도와 농업이전 인구 시민화 연계 메커니즘 건립, 도시 건설 용지 증가 규모와 농업이전 인구 이전 수량 연계 메커니즘 건립
- [거주증제도 시행] 상주인구에 대한 기본 공공서비스 완전 복개 실현 노력
- 도시이전 농민의 토지청부권·택지사용권·집체수익 분배권 보호 및 유상양도 지지
- 부동산제도 개혁 심화
- 도시 판자촌과 농촌 위험주택 개조역량 강화
- 도시와 농촌의 공공자원 균형 배치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수준 제고, 농촌 주민의 환경정화 행동 전개, 농촌 주민의 역사 및 문화 유적 보호력 강화, 아름답고 편안한 농촌 건설

다. 주요 농업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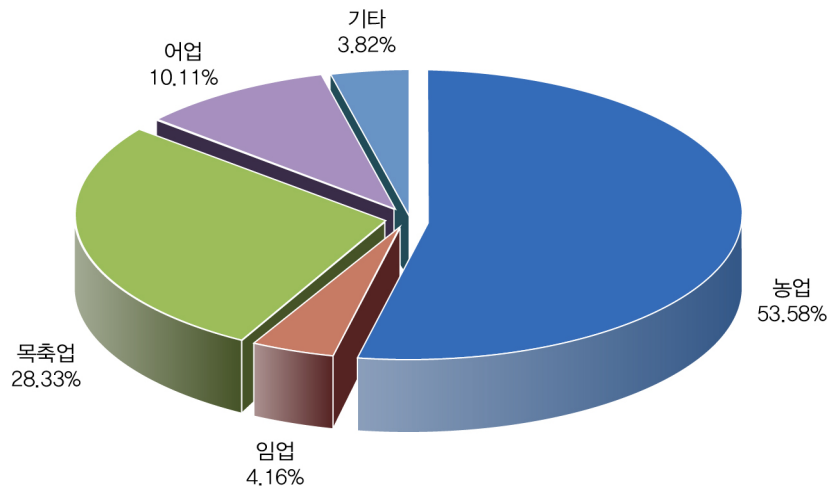
〈2006~2014년 중국 농/임/목축/어업 총생산액 추이〉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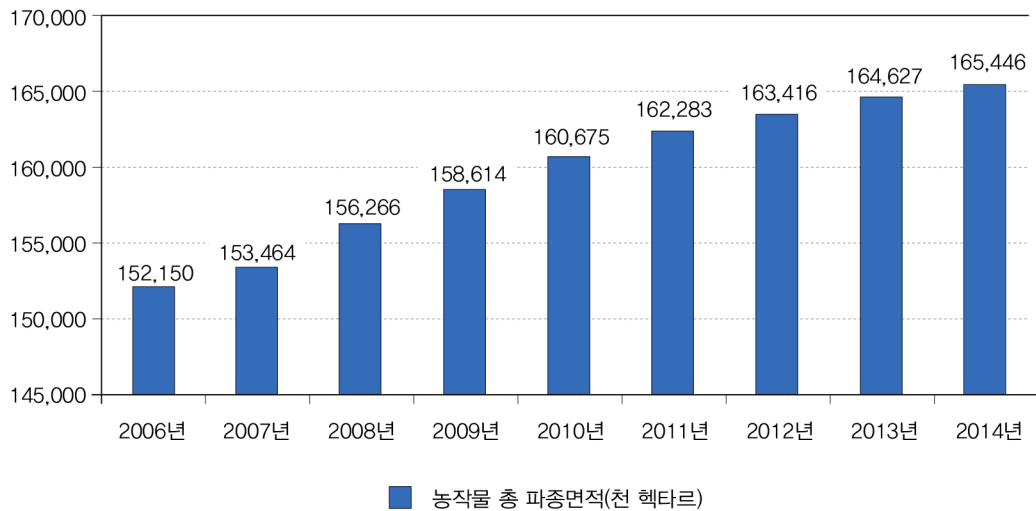
구 분	합 계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기타
2006	40,810.8	21,522.3	1,610.8	12,083.9	3,970.5	1,623.3
2007	48,893.0	24,658.2	1,861.6	16,124.9	4,457.5	1,790.8
2008	58,002.2	28,044.2	2,152.9	20,583.6	5,203.4	2,018.1
2009	60,361.0	30,777.5	2,193.0	19,468.4	5,626.4	2,295.7
2010	69,319.8	36,941.1	2,595.5	20,825.7	6,422.4	2,535.1
2011	81,303.9	41,988.6	3,120.7	25,770.7	7,567.9	2,856.0
2012	89,453.1	46,940.5	3,447.1	27,189.4	8,706.0	3,170.1
2013	96,995.3	51,497.4	3,902.4	28,435.5	9,634.6	3,525.4
2014	102,226.1	54,771.6	4,256.0	28,956.3	10,334.3	3,907.9

[2014년 전국 농/임/목축/어업 생산액 비중]



〈2006~2014년 중국 농작물 재배면적 추이〉

(단위: 천 ha)



(단위: 천 ha)

구 분	합 계	곡류	유지작물	목화	당원료	기타
2006	152,150	104,958	11,738	5,816	1,567	28,071
2007	153,464	105,638	11,316	5,926	1,802	28,782
2008	156,266	106,793	12,825	5,754	1,990	28,904
2009	158,614	108,986	13,654	4,949	1,884	29,141
2010	160,675	109,876	13,890	4,849	1,905	30,155
2011	162,283	110,573	13,855	5,038	1,948	30,869
2012	163,416	111,205	13,930	4,688	2,030	31,563
2013	164,627	111,956	14,023	4,346	1,998	32,304
2014	165,446	112,723	14,043	4,222	1,910	32,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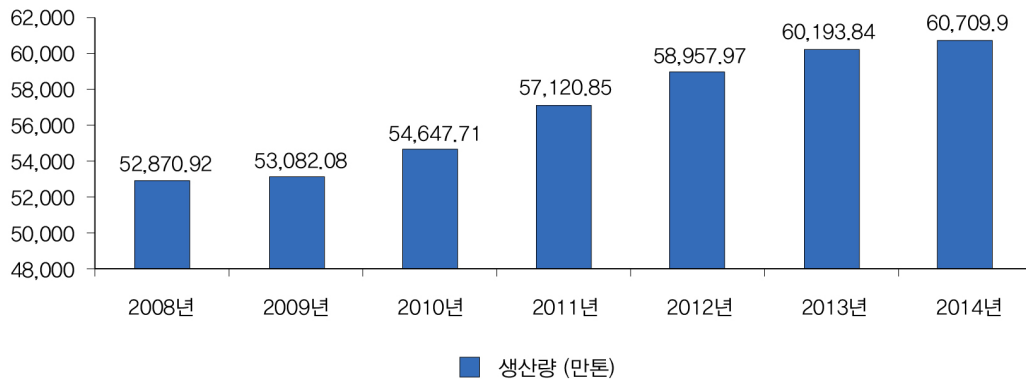
〈2005~2014년 중국 가축 사육 수량 추이〉

(단위: 만 마리)

구분	소	말	당나귀	노새	낙타	산양	면양
2005년	10,990.8	739.9	777.2	360.4	26.6	14,659.0	15,133.7
2006년	10,465.1	719.5	730.6	345.4	26.9	13,768.0	14,601.8
2007년	10,594.8	702.8	689.1	298.5	24.2	14,336.5	14,228.2
2008년	10,576.0	682.1	673.1	295.5	24.0	15,229.2	12,855.7
2009년	10,726.5	678.5	648.4	279.3	24.8	15,050.1	13,402.1
2010년	10,626.4	677.1	639.7	269.7	25.6	14,203.9	13,884.0
2011년	10,360.5	670.9	647.8	259.8	27.3	14,274.2	13,961.6
2012년	10,343.4	633.5	636.5	249.2	29.5	14,136.2	14,368.0
2013년	10,385.1	602.7	603.4	230.4	31.6	14,034.5	15,001.7
2014년	10,578.0	604.3	582.6	224.6	33.4	14,465.9	15,849.0

〈2008~2014년 중국 식량작물 생산량 추이〉

(단위: 만 톤)



〈2009~2014년 중국 식량작물 생산량 추이〉

(단위: 만 톤)

구분	합계	대두	서류	벼	곡류	옥수수	밀
2009년	53,082.1	1,930.3	2,995.5	19,510.3	48,156.3	16,397.4	11,511.5
2010년	54,647.7	1,896.5	3,114.1	19,576.1	49,637.1	17,724.5	11,518.1
2011년	57,120.9	1,908.4	3,273.1	20,100.1	51,939.4	19,278.1	11,740.1
2012년	58,958.0	1,730.5	3,292.8	20,423.6	53,934.7	20,561.4	12,102.3
2013년	60,193.8	1,595.3	3,329.4	20,361.2	55,269.2	21,848.9	12,192.6
2014년	60,709.9	1,625.7	3,357.3	20,642.7	55,726.9	21,567.3	12,617.1

2. 주요 농업정책

가. 농업분야 보조금(4종)

□ 식량 재배 보조금

- 2000~2003년 중국 식량 총생산량이 계속 떨어져 2003년의 생산량이 199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준
- 정부에서 농민들의 식량재배 열성을 불러일으키고 2004년 식량 주요재배 지역에서 식량재배 보조금 정책을 수립
- 2004년부터 식량재배 보조금 제도가 실시되고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보조 범위는 주요 식량작물을 기본적으로 포함
- 보조금액이 2003년의 103억 위안에서 2006년의 142억 위안으로 증가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1억 위안 수준 유지
- 식량재배보조 제도는 식량 생산량 증가에 대한 일정한 도움을 주어 식량생산량은 2004년부터 연마다 증가하고 2014년 6.07억 톤에 달해 이는 역사상 최고 기록

□ 우량종 보조

- 주로 농작물과 목축업 우량종 보조 2개이며, 농민에게 우량종을 재배하여 작물 품질 향상시키려는 목적
- 2002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일부 식량작물, 식용지방종자, 경제작물에 대한 보조를 시작
- 시행방식은 현금보조와 판매가격 할인보조 2가지로 보조금액이 2002년의 1억 위안에서 2014년의 221억 위안으로 빠르게 증가

□ 농자재 종합 보조

- 식량재배 비용 중에 대부분이 생산 투입품 비용이고, 화학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가격 변동이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2006년부터 중국에서 농자재 종합보조를 시작하여 농민들의 농업생산비를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농자재 종합보조는 직접적으로 1회에 농민들에게 지불하고 보조금액이 2006년의 120억 위안에서 2014년의 1222억 위안까지 상승

□ 농업기계 구매 보조

- 농민들이 개량된 농업기계를 사용하고 농업 대규모화를 추진하는데 목적
- 중국의 토지 조건, 기후, 온도, 환경 등 조건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에서 지정된 보조 품목 이외에 30개 품목이내의 기타 농업기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농업기계의 보조금액이 2004년의 0.7억 위안에서 2014년의 236억 위안까지 상승

나. 시장가격 지원

- 현재 중국에서 주요 가격지원정책은 최저 매수가격, 임시 매입&저장과 목표가격 정책이 있음

□ 식량의 최저 매수가격

- 농민 식량 생산의 기본적 이익을 보장하고 국내의 주요 식량공급과 안전문제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
- 2004년 곡류 최저매수가격 정책이 실시되었고 2005년에 정식으로 실시된다. 2006년 소매최저매수가격이 실시
- 최저매수가격은 식량 파종전에 공개되고 농민들의 식량 재배를 인도하는데 목적

□ 임시 수매비축

- 2008년부터 중국정부에서 일부 농산물에 대한 임시 수매비축정책을 실시
- 적용 제품은 시장공급에 영향이 많은 옥수수 등 사료 식량이나 수입에 예민한 콩이나 목화 등 국내시장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보장하는 데 목적
- 현재 옥수수, 유채씨, 설탕 등은 일시저장 품목에 속하고 콩, 목화는 취소됨

□ 목표가격

- 정부에서 시장 수급과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을 설정 후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때 이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2014년 목화(신장 지역)과 콩(동북 3성과 내몽골)의 목표가격 개혁 시범이 시작하고 원래의 임시 수매비축 정책이 취소

다. 기타 주요 농업 정책

□ 변식 가능한 돼지 사육 보조

- 중국은 돼지고기의 생산대국이면서 소비대국으로, 암돼지의 생산력과 시장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암돼지에 대한 사육보조 제도 실시
- 사육 수량을 근거로 2007~2008년 한 마리에 50위안을 보조하고 2011년 한 마리에 100위안을 보조

□ 농업보험 정책

- 2007년에 농업보험제도를 설립하고 농업 리스크를 막기 위해 농업보험정책이 실시
- 적용 종목은 식량작물, 경제작물, 식용지방종자 등

□ 운송비 보조

- 중국 동북3성(흑룡강, 길림, 요녕성)은 쌀의 주요 생산지역이고, 신장은 목화의 주요생산 지역으로 주요 판매시장과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농민들의 식량재배 열성과 시장가격 안정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동북의 쌀을 내륙시장에 운송 관련 보조제도가 실시
- 신장으로부터 목화를 운송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보조하기 시작하고 보조기준은 목적지, 운송 거리에 따라 정함

□ 환경 정책

- 장기적인 환경보호의식 부족으로 중국의 사막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중국 농업의 지소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됨에 따라, 1999년 ‘경작지 삼림환원’ 정책이 실시되고 2003년 ‘목축지 삼림환원’이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 목축지 산림환원지역에서 초원생태보호 보조 제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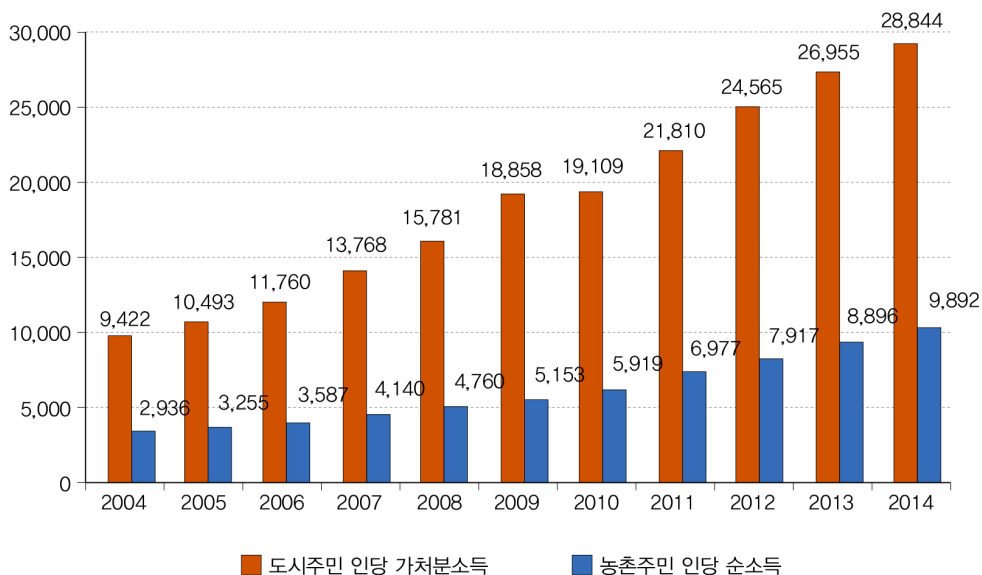
□ 거시적인 국내 정책 조절

- 2014년 중앙 농촌 공작 회의에서 농업의 현대화 추진, 국가 식량 안정보장을 중점으로 강조함
- 첫째는 농업현대화의 추진, 둘째는 각종 형식의 규모 경영, 셋째는 자원절약과 친환경형 농업 건설, 넷째는 농업정책 및 자금투입 강화, 다섯째는 국내시장 및 국제시장의 활용
- 경제의 새로운 상태 하에 농촌의 농업현대화를 심화시키고 국제시장 진출하여야 하며 중국 식량사료문제에 대한 국제시장의 우려 제거, 효율적이고 친환경형의 농업발전 방식을 추진, 적당한 식량 수입 등 내용도 포함

3. 농민 수입의 변화

- 중국 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주민 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도 빠른 성장하고 있음
- 2004년 도시주민 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이 9,422위안에서 2014년에 28,844위안으로 올라왔고, 2004년 농촌주민 가구 1인당 순수입이 2,936위안에서 2014년에는 9,892위안으로 증가

[2004~2014년 도시 및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및 증가 추이]



*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4. 중국 농식품 무역동향

가. 농식품 수출입동향

- 농식품 무역규모의 빠른 증가 및 무역적자 확대 추세
 - WTO 가입 이후 중국 농식품 무역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2년에 304억 달러에서 2014년에 1,928억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함
 - 농식품 수출입은 모두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수입 증가속도는 수출을 크게 앞질러 2003년에 약 24억 불의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 2013년 이후 500억불 이상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음
 -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일본, 홍콩, 미국, 한국 순으로 한국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미국, 브라질, 호주 등으로부터 대두, 면화, 설탕 등을 주로 많이 수입하고 한국은 전체 수입국 중 21위로 수입액이 매우 낮은 수준임

〈중국 농식품 무역통계〉

연도	총 수출액(A)	총 수입액(B)	합계(A+B)	차액(A-B)
2010	488.8	719.0	1,207.8	-230.2
2011	601.1	939.0	1,540.1	-337.9
2012	625.0	1,114.4	1,739.4	-489.4
2013	671.0	1,179.1	1,850.1	-508.1
2014	713.4	1,214.8	1,928.2	-501.4
2015.06월	327.2	567.1	894.3	-239.9

* 출처: 중국 상무부

〈주요 국가별 농식품 수출통계〉

(단위: 억불)

2013년			2014년			2015.06월까지		
순위	국가별	수입액	순위	국가별	수입액	순위	국가별	수입액
1	일본	112.3	1	일본	111.2	1	일본	50.4
2	홍콩	76.7	2	홍콩	86.3	2	미국	34.7
3	미국	72.8	3	미국	74.2	3	한국	20.5
4	한국	43.8	4	한국	48.6	4	태국	14.2

2013년			2014년			2015.06월까지		
순위	국가별	수입액	순위	국가별	수입액	순위	국가별	수입액
5	말레이시아	26.4	5	태국	28.4	5	베트남	14.0
6	태국	25.7	6	말레이시아	27.8	6	말레이시아	13.9
7	러시아	20.9	7	대만	23.2	7	대만	10.3
8	독일	19.4	8	러시아	23.0	8	독일	9.9
9	필리핀	14.3	9	독일	20.5	9	인도네시아	9.5
10	네덜란드	12.5	10	인도네시아	19.6	10	러시아	8.4
수출 총합계		671.0	수출 총합계		713.0	수출 총합계		327.2

* 출처: 중국 상무부

〈주요 국가별 농식품 수입통계〉

(단위: 억불)

2013년			2014년			2015.06월까지		
순위	국가별	수입액	순위	국가별	수입액	순위	국가별	수입액
1	미국	265.7	1	미국	286.7	1	미국	141.1
2	브라질	225.0	2	브라질	215.5	2	브라질	80.1
3	호주	85.9	3	호주	815.1	3	호주	40.2
4	캐나다	57.5	4	뉴질랜드	679.5	4	태국	27.4
5	뉴질랜드	56.0	5	캐나다	557.1	5	캐나다	25.4
6	아르헨티나	49.9	6	태국	501.4	6	뉴질랜드	25.2
7	태국	42.9	7	아르헨티나	452.1	7	인도네시아	17.5
8	말레이시아	38.3	8	인도네시아	390.1	8	프랑스	16.9
9	인도네시아	34.4	9	말레이시아	334.7	9	베트남	14.3
10	인도	32.9	10	프랑스	308.0	10	말레이시아	12.9
20	한국	7.2	20	한국	7.6	21	한국	4.0
수입 총합계		1179.1	수입 총합계		1214.8	수입 총합계		567.1

* 출처: 중국 상무부

〈주요 부류별 농식품 수출입통계〉

종 류	수출액(만불)			수입액(만불)		
	2013년	2014년	증감(%)	2013년	2014년	증감(%)
1 살아있는 동물	58,062.5	58,554.8	0.8	43,247.1	83,525.5	93.1
2 축산물	47,318.3	60,503.6	27.9	492,232.5	496,345.0	0.8
3 가금류	51,534.2	57,696.6	12.0	100,398.3	87,789.3	-12.6
4 수산 및 해산물	1,252,562.6	1,407,632.8	12.4	599,326.4	658,647.5	9.9
5 유제품, 달걀, 벌꿀 등	62,389.0	68,097.2	9.1	723,880.3	859,921.9	18.8
6 기타 동물 제품	220,071.0	229,288.2	4.2	49,784.9	47,888.0	-3.8
7 식물 및 화훼	27,636.8	40,993.5	48.3	17,380.5	18,922.9	8.9
8 식용채소	787,138.5	822,894.9	4.5	254,935.0	257,982.4	1.2
9 과일 및 견과	417,226.2	431,787.5	3.5	409,953.1	514,004.4	25.4
10 커피, 차, 향신료	224,587.6	245,114.9	9.1	25,617.5	34,240.8	33.7
11 곡물	51,396.2	44,542.1	-13.3	500,029.0	610,420.5	22.1
12 제분제품	61,049.7	61,229.5	0.3	80,209.5	96,385.2	20.2
13 채유종실, 약용식물 등	292,481.0	311,602.0	6.5	4,258,610.9	4,589,603.2	7.8
14 식물성 액즙, 엑스	115,115.2	130,590.4	13.4	22,387.6	23,435.6	4.7
15 기타 식물성 생산품	8,926.0	10,361.5	16.1	18,513.8	19,929.2	7.6
16 동물/식물성유지 등	60,653.3	64,455.4	6.3	1,082,610.8	911,821.7	-15.8
17 육류 조제품	205,489.8	206,941.2	0.7	786.8	482.5	-38.7
18 수산 조제품	692,707.9	681,279.8	-1.6	18,931.7	24,423.7	29.0
19 당류 및 설탕 과자	145,188.7	154,028.2	6.1	236,013.0	178,227.8	-24.5
20 코코아 및 관련 제품	38,625.3	47,579.8	23.2	71,438.8	87,086.6	21.9
21 곡물, 전분, 베이커리	145,273.0	147,862.0	1.8	58,998.5	70,461.8	19.4
22 채소, 과일, 견과 조제품	785,430.0	763,558.6	-2.8	67,007.8	78,260.1	16.8
23 각종 조제 식료품	246,387.5	270,981.7	10.0	119,702.5	138,926.1	16.1
24 음료수, 알콜, 식초	134,123.1	165,133.2	23.1	305,897.0	315,441.0	3.1
25 식품공업의 잔유물 등	273,450.7	325,924.4	19.2	365,354.4	398,138.0	9.0
26 담배 및 관련 제품	132,102.5	128,380.6	-2.8	145,965.9	209,256.3	43.4
27 기타 농산물	172,682.7	197,136.9	14.2	1,721,656.9	1,336,192.9	-22.4
28 가금류 제품	307,041.0	307,983.0	0.3	121,347.9	105,999.9	-12.6
29 가축류 제품	310,384.5	337,722.4	8.8	1,928,073.5	2,057,010.0	6.7

* 출처: 중국 상무부

가. 한중간 농식품 수출입동향

〈한중간 농식품 무역통계〉

(단위: 억 달러)

연도	중국 대한국 수출(A)	중국 대한국 수입(B)	합계(A+B)	차액(A-B)
2010	35.2	4.2	39.4	31.0
2011	41.7	6.3	48.0	35.4
2012	41.5	6.1	47.6	35.4
2013	43.8	7.2	51.0	36.6
2014	48.6	7.6	56.2	41.0
2015.06월	20.5	4.0	24.5	16.5

* 출처: 중국 상무부

- 한중간 농식품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 수준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대중 주요 수입 농식품〉

(단위: 톤/천불)

순위	품목	2013년		2014년		2015.11.30 현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화강암제품	2,050,565	540,773	2,096,363	579,554	2,076,386	558,554
2	합판	397,362	288,446	346,613	264,178	316,704	231,750
3	문어	37,933	170,023	45,772	246,182	38,967	199,220
4	혼합조제식료품	85,542	182,642	95,370	192,872	97,328	194,069
5	쌀	329,041	284,387	204,277	187,165	183,365	158,633
6	기타 가구	49,750	113,343	56,357	134,116	56,527	130,706
7	전분박	862,214	223,982	569,504	150,867	572,356	116,627
8	고추	164,334	111,850	156,206	113,665	172,206	106,187
9	기타채소	115,501	90,991	106,459	98,002	111,098	106,088
10	조기	24,798	104,818	25,411	117,183	22,043	105,626
11	김치	220,218	117,431	212,938	104,395	202,473	103,651
12	기타 양모, 섬수모 등	1,371	74,886	1,586	87,213	1,622	87,980
13	침대	28,660	70,006	32,225	81,040	31,898	84,609
14	당면	58,160	68,931	60,678	69,493	55,270	62,944

순위	품목	2013년		2014년		2015.11.30 현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5	기타어류	35,538	69,464	42,127	73,770	31,429	60,812
16	아귀	20,333	44,963	23,474	50,324	25,996	59,998
17	기타과실	64,063	62,303	60,553	60,914	55,158	56,434
18	기타소오스제품	46,017	55,965	47,102	59,760	46,042	55,742
19	한약재 기타	19,489	63,813	20,589	65,351	16,759	55,546
20	침엽수재목	31,292	45,980	37,448	57,973	33,886	51,131
21	참깨	37,459	90,712	24,945	72,362	18,195	47,526
22	계	11,626	30,719	13,509	33,648	16,699	46,400
23	표고버섯	14,255	38,575	17,506	51,372	15,338	43,188
24	땅콩	26,875	51,745	28,692	47,602	22,651	42,919
25	목탄	31,422	44,085	32,239	45,734	26,675	42,594
26	당근	107,685	59,962	94,485	45,689	83,140	42,394
27	마늘	44,496	36,199	43,383	30,296	42,832	41,950
28	바지락	38,325	40,112	45,571	47,345	37,568	41,283
29	기타석제품	158,756	48,426	149,218	57,375	100,592	40,750
30	대두박	217,767	131,685	395,049	220,295	88,681	40,105

* 출처: kati

〈대중 주요 수출 농식품 50대 품목〉

(단위: 톤/천불)

순위	품목	2013년		2014년		2015.11.30 현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조제분유	4,929	56,379	6,091	75,405	7,080	85,464
2	설탕	217,892	128,732	186,699	104,797	161,958	79,682
3	혼합조제식료품	7,752	45,720	21,105	70,426	23,822	73,478
4	김	1,286	33,006	1,744	45,309	2,226	59,019
5	편지	292,596	44,544	352,768	48,113	422,759	57,174
6	기타베이커리제품	3,235	44,356	3,901	50,184	5,784	48,046
7	비스킷	4,285	37,823	6,638	48,544	7,914	47,162
8	커피조제품	5,086	52,088	6,778	54,131	5,979	39,036
9	오징어	44,278	71,267	31,582	39,073	35,724	35,405
10	라면	4,842	37,792	5,493	34,563	7,473	34,610

순위	품목	2013년		2014년		2015.11.30 현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1	기타음료	15,305	31,975	15,532	29,409	20,097	31,444
12	단일과실조제품	19,910	19,686	23,281	23,457	27,729	29,748
13	기타 양모, 섬유모 등	921	21,013	727	22,137	741	23,055
14	어류제품	2,008	10,456	3,131	17,426	3,836	22,797
15	홍삼	94	29,071	94	26,762	69	21,433
16	가족	700	33,907	714	24,001	543	21,163
17	삼치	7,213	28,118	4,203	13,539	6,970	20,563
18	유자차	7,636	22,078	8,438	23,427	7,456	19,654
19	대구	8,942	24,817	7,774	22,293	6,151	19,248
20	맥주	13,653	8,482	20,112	14,121	23,590	17,793
21	참치	3,358	19,750	6,909	16,938	6,997	17,686
22	생우유	4,826	9,123	7,682	15,573	8,235	15,912
23	쇠고기	958	3,828	1,022	11,029	1,868	13,960
24	어란	3,635	34,299	3,015	24,430	2,177	13,783
25	식용어류분	922	8,039	863	8,311	1,675	13,303
26	기타소스제품	1,674	10,373	3,736	15,141	3,930	13,097
27	넙치	7,043	28,399	3,297	18,128	1,961	12,600
28	채소종자	104	8,055	99	9,050	112	11,987
29	과실혼합물	154	1,497	756	5,003	1,219	11,983
30	기타당	1,239	5,607	2,387	8,066	3,580	11,910
31	기타과실	1,724	6,585	1,833	6,878	1,947	11,798
32	기타설탕과자	772	4,891	765	6,120	1,442	10,529
33	밤	10,452	22,220	8,405	14,512	6,467	9,877
34	캔디	890	6,356	1,163	9,268	1,356	9,626
35	아이스크림	1,595	5,760	2,210	7,127	2,798	9,410
36	물	3,140	3,045	5,643	6,076	8,023	9,333
37	컬런	696	17,802	566	8,986	562	9,007
38	초코렛	1,022	9,124	732	9,280	848	8,412
39	소주	6,462	8,397	6,995	9,534	5,641	7,272
40	기타임산물	1,254	36,675	486	22,871	539	7,212
41	곡류조제품	665	3,339	1,243	5,948	1,610	6,871

순위	품목	2013년		2014년		2015.11.30 현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42	소원피	15,645	7,281	14,253	11,489	9,568	6,842
43	전갱이	2,151	1,998	3,936	3,779	7,190	6,792
44	명태	20,611	25,900	16,570	23,942	4,847	6,750
45	기타식물성액즙	206	2,807	233	2,911	441	6,725
46	기타식물성점질물	459	7,495	328	7,764	272	6,255
47	기타어류	4,453	6,991	2,568	5,365	3,742	5,784
48	기타 가구	753	3,404	1,175	5,151	967	5,215
49	인스탄트면	614	3,597	810	5,124	872	4,548
50	소시지	483	2,665	501	3,507	761	4,412

* 출처: kati

IV

관세 및 검역제도

1. 관세현황

- WTO 가입 이후 농산품에 대한 관세는 점차 하락하여 2001년 23.2%에서 2011년 15.2%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2001~2011년 중국관세 변화〉

연도	관세 총수준(%)	공업용 평균(%)	농산품 평균(%)
2001년	15.3	14.8	23.2
2002년	12.0	11.4	18.1
2003년	11.0	10.3	16.8
2004년	10.4	9.5	15.6
2005년	9.9	9.0	15.3
2006년	9.9	9.0	15.2
2007년	9.8	8.95	15.2
2008년	9.8	8.9	15.2
2009년	9.8	8.9	15.2
2010년	9.8	8.9	15.2
2011년	9.8	8.9	15.2

* 출처: 상무부 〈신농촌 상보〉

가. 중국 관세 현황

- 중국의 관세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대외 개방정책을 관철하고 수출증대, 불필요한 제품의 수입억제와 필수품 수입을 권장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 보호하고 국가의 관세 수입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
-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국내외적 상황, 상품의 용도, 국내의 유관정책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관세율의 조정이 비교적 자주 이루어짐
- 중국은 현재 복합관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외 개방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관세상의 특혜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나. 중국의 WTO가입 배경

- 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통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세계무역협정인 GATT에 복귀를 신청('82.3월) 하였고 이후 15년간 WTO 가입을 지속 추진
-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중단되었던 협상은 1992년 이후 중국이 개도국 수준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급진전되어 재검토 시작
- 1999년 4월 미국과의 WTO가입 협상 제안서를 제시
- 2001년 9월 WTO가입의 정식 작업을 완결
- 2001년 11월 11일 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 승인
- 2001년 12월 11일 WTO에 제143번째 정식 회원국이 됨

다. 관세율제도

- WTO가입 이전에 중국 수출입 세칙은 우대세율과 보통세율 두 가지 뿐이었으나, WTO가입 이후에는 7가지로 설정
 - 최혜국세율 : 중국이 공동 실시한 최혜국대우 조항의 WTO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와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
 - 협정세율 : 중국과 특정국가, 국제기구와의 조약 또는 행정협정을 맺은 경우 적용
 - 특혜세율 : 중국과 특혜관세를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
 - 보통세율 : 상기 우대세율과 협정을 맺지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하는 높은 세율
 - 잠정세율 : 최혜국 세율과 잠정세율이 겹칠 경우 잠정세율을 적용
 - 할당관세세율 : 정부가 지정한 수입물품만 할당관세 세율 적용
 - 보복관세율 : 타국 및 지역이 중국과의 협정 또는 조약을 위반한 경우나 중국의 수출품에 금지, 제한, 할증관세 및 기타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적용

2. 동식물 검역 제도

가. 동식물 검역심사 제도의 목적

- 동물 전염병, 식물 유해 생물 등의 유입, 확산 등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동식물 검역 심사 제도의 근거

□ 출입국 동식물 검역 관련 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1992년 시행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시행 조례》 1997년 시행

□ 동식물 검역 관련 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등이 포함

다. 검역사항

□ 검역 통칙

- 검역 범위 : 출입국하는 모든 동식물, 동식물 제품, 기타 검역물, 관련 운송 도구, 차량, 등이 포함
- 동물, 동물제품, 식물종자 등 번식 재료를 수입할 경우, 사전에 신청을 하고 검역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함
- 병충해 검역

□ 검역 기준

- 중국 검역 규정에 맞는지
- 거래계약서에 규정된 검역 조항에 맞는지
- 중국이 체결한 양국 검역 협정, 검역 협력 비망록, 위생조항 검역규정에 맞는지

□ 수입이 금지된 동식물 및 관련 제품

- 유해 생물체
- 전염병 유행되는 국가/지역의 관련 동식물 및 기타 검역물
- 동물 시체
- 토양

□ 수출이 금지된 동식물 및 관련 제품

-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 사무실의 승인받지 않은 야생 동식물
- 국가 의약품관리국의 승인 없는 2등 약재
- 중국과학원 국가과학위원회 및 수권기구의 동의없는 동식물 표본
- 중앙 주관부서의 동의없는 희귀동식물

□ 검역처리

- 살균, 가공, 용도 변경 등 조치를 취해서 합격되는 경우 수입/수출이 가능함
- 상기 조치가 무효인 경우 반납, 소각 등 방식으로 처리함
- 만약 단기간 검역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격리조치를 취함

라. 동물 및 식물의 검역 및 심사

□ 동물의 검역 및 심사

- 수출입 동물의 범위
 - 동물 : 가축, 가금, 야생동물, 꿀벌 등
 - 동물제품 : 동물 모피, 고기류, 내장, 피, 달걀 등
 - 동식물(제품)의 운송도구, 포장재료, 차량 등
- 수출입 동물의 심사
 - 검역대상과 병충으로 구분됨
 - 검역대상 : 입국이 금지된 병충. 검역 대상 목록은 중국 농/목축/어업부에서 공포
 - 병충 : 대외적으로 체결된 협정 및 협의서에 기재 또는 수출기관에서 신청한 병충

□ 식물의 검역 및 심사

- 수출입 식물의 범위
 - 식물 : 재배 식물, 야생식물, 종자, 묘목 등
 - 식물 제품 : 식량, 목화, 연초, 야채, 약재 등
 - 수출입 식물의 심사
- 수입 식물 및 식물 제품에 검역대상이나 병충이 발견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검역처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검역신고인이 소독, 훈증 등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검사 실시

마. 주요 검역제도의 내용

□ 수입 검역

- 동물 및 동물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총소에 검역심사 절차를 밟고 계약협정의 등 계약서에 중국 또는 양국의 검역조항을 기재해야 함
- 야생동물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임업부 산림보호사의 동의서류를 증빙으로 검역총소에 검역심사를 신청함
- 종자, 묘목 등 번식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검역심사를 한 다음 농임목축어업 식물검역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심사함

□ 검역 프로세스

- 현장검역은 수입항구의 공항, 부두, 기차역에서 탑승 후 실시함. 필요시 하치장이나 창고에 가서 실시함
- 동물현장 검역은 전염병 등 사항을 체크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검역이 끝난 다음에 소독 조치를 취함
- 식물 및 식물제품의 검역은 병충해, 기타 유해 생물체 등 사항을 체크
- 식물검역 대상이나 병충해를 가질 수 있는 동물제품에 대해 식물검역을 실시하며, 동물검역 대상이나 병충해를 가질 수 있는 식물제품에 대해 동물검역을 실시
- 수입 동식물의 격리검역 관리 준칙은 검역총소에서 따로 규정함

□ 검역결과에의 평가 및 처리

- 수입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이 검역 합격될 경우 <검역 방출 통지서>나 운송장의 방출도장을 증빙으로 방출을 신청함
- 수입 동식물에 검역대상이나 전염병이 발견될 경우 전체 반납, 시체 소각,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수입 동물제품에 검역대상이나 전염병이 발견될 경우 <검역처리 통지서>를 발급하여 구체적인 처리 원칙에 따라서 처리함

□ 수입의 금지

-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생활충해”는 동식물이나 동식물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병충이고 “동식물 병원 미생물”은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을 말하며 “기타 유해 생물”은 상기 이외의 기타 유행 생물체 등을 말함
- 과학연구 또는 교육원인으로 금지된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검역청소에 신청을 하고 구체적인 수량, 명칭, 용도 등을 설명후, 특히 수입증을 발급받음

□ 수출 검역

- 검역이 필요로 한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기관/회사는 <조례>제16항 규정에 의해 검역신고 절차를 하고 관련 계약서 및 신용장 사본을 검역청국이나 대상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에 보내야 함
- 중국과 동식물 검역 관련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에서 기재되는 항목대로 검역 조치 실시; 계약서, 신용장, 주문서류에 검역 요구가 기재되는 경우 관련 내용대로 실시함

농 동 <<<

2015 주재국 농업전망

- I. 국가개황
- II. 경제동향
- III. 농업동향 및 주요정책
- IV. 관세 및 검역제도



I

국가개황

1. 일반사항

국명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영문명: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문명: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政府
위치	중국, 광둥성 동남해안, 주강 입구 동쪽
면적	1,104 km ² (서울 1.8배) 홍콩섬, 구룡반도, 란타우섬으로 구분
기후	아열대 몬순형 기후
수도	홍콩은 도시국가로 특정 수도가 없음
인구	726만 명('14년)
민족	한족(95% 이상)
언어	광둥어 88.7%, 영어 3.1%
종교	도교, 불교(35.5%), 기독교(6.8%), 천주교(5%), 이슬람교(3.1%), 힌두교(0.5%), 소수 종교(1%), 무교(48%)
건국일	홍콩특별행정구 출범 : 1997.7.1. ※ 영·중 공동선언('84.12월)에 의거 홍콩 주권 중국으로 이양

* 자료: 홍콩정부웹사이트, 홍콩무역발전국

2. 경제현황

GDP	US\$2,879억 (2014년)
경제성장률	2.3% (2014년)
GDP 1인당	US\$39,800 (2014년)
실업률	3.3% (2014년말)
교역액	수출US\$ 4,709억, 수입 US\$5,409억 (2014년)
화폐단위	Hong Kong Dollar (HK\$)
환율	US\$1= HK\$7.75(2014년 12월)
외환보유액	US\$ 3,285억 (2014년 12월)

* 자료: 홍콩금융관리국, 홍콩무역발전국

3. 정치현황

정부형태	행정수반 책임제(중국과는 1국 2체제의 자치정부)
국가원수	행정장관 : 령춘잉(Leung Chun Ying) 2012.7.1~2017.6.30
정치현황	○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하 고도자치 향유 - 행정·입법 및 사법권(외교·국방 제외) ○ 행정부(The Executive Authority) - 행정수반(Chief Executive) : 홍콩 최고책임자, 임기 5년, 1차연임 가능 - 現 행정수반: Leung Chun-ying(梁振英) '12.7.1 제4대 행정수반으로 취임 ○ 입법부(Legislative Council) - 의원 수 70명, 임기 4년('12.10.1~'16.9.30) - 입법회 의장 : Jasper Tsang(曾鈺成) ○ 사법부(The Judiciary) - 지방법원·고등법원·중심법원의 3심제

4. 한국과의 관계

일반사항	○ 총영사관 연혁 - '49. 5월 영사관 개설 - '49.11월 총영사관 개설 ※ 북한은 2000.2월 총영사관 개설 ○ 對홍콩 수출 및 수입('14년) - 수출 : 273억 미불, 수입 : 17억 미불 ※ 한국의 제4위 수출시장, 제2위 무역 흑자지역 ○ 對홍콩투자('14년말 잠정) : 160억 미불 ○ 홍콩의 對韓투자('14년 누계) : 84억 미불 ○ 인적교류 현황('14년) - 홍콩방문 한국인: 125만 명 - 한국방문 홍콩인: 55.8만 명 ○ 재외동포 현황('14년) : 12,767명 - 영주권자(7년이상) : 5,027명 - 일반거주자(6개월이상 거주) : 6,848명 - 일시체류자(학생) : 892명
체결협정	항공협정('96), 투자보호협정가서명('96), 주홍콩특별행정구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지협정각서교환('97), 투자보장협정('97), 형사사법공조협정서명('98), 형사사법공조협정('00), 문화협력양해각서('04), 범죄인 인도협정('07), 조세조약 제정협상('13)
對홍 교역규모	2011년 무역실적 ○ 수출: 309억 달러 (전년 대비 22.4% 증가) ○ 수입: 23억 달러 (전년 대비: 19.0% 증가) ○ 무역수지: 약 286억 달러 2012년 무역실적

	○ 수출: 326억 달러 ○ 수입: 21억 달러 ○ 무역수지: 약 305억 달러 2013년 무역실적 ○ 수출: 277억 달러 (전년 대비 14.9% 증가) ○ 수입: 19억 달러 (전년 대비 6.3% 감소) ○ 무역수지: 약 258억 달러 2014년 무역실적 ○ 수출: 272억 달러 (전년 대비 1.7% 감소) ○ 수입: 17억 달러 (전년 대비 9.3% 감소) ○ 무역수지: 약 255억 달러
對홍 주요 교역품	○ 수출: 반도체, 석유, 통신장비, 사무용기기 등
	○ 수입: 반도체, 통신장비, 여행용품, 전자회로용 전자기기, 사무기기, 컴퓨터 등
투자교류 (신고기준)	○ 대 홍콩 투자 - 2011년: 287건 US\$ 15억 4188만 - 2012년: 356건, US\$ 14억 7657만 - 2013년 323건, US\$ 8억4,334만 - 2014년 271건, US\$ 4억 211만
	○ 홍콩의 대 한국 투자 - 2011년: 112건,US\$ 5억 7240만 - 2012년: 97건, US\$ 16억 6980만 - 2013년: 112건,US\$ 9억 7648만 - 2014년: 202건,US\$ 10억 6104만
교민	총 교민 수 약 12,000명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II

경제동향

1.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3	2014
인구(백만)	7.07	7.15	7.21	7.23
GDP(십억US\$)	242.8	261.8	272.1	287.9
1인당 GDP(US\$)	35,100	36,600	37,900	39,800
실질 GDP성장률(%)	4.9	1.5	2.9	2.3
물가상승률(% CPI)	5.3	4.1	4.3	4.4
실업률(%)	3.4	3.3	3.3	3.3
수출(십억 US\$)	427.9	440.3	456.4	470.9
수입(십억 US\$)	482.6	501.6	520.6	540.9
소매시장 성장률(%)	24.9	9.8	11.0	-0.2
관광객 증가율(%)	16.4	16.0	11.7	12.0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홍콩 통계청, trading economics(2014년 12월 기준)

□ 경제성장률

- 2012년 홍콩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 1.5%로 하락하였으며, 2013년 성장률은 2.9%로 큰 폭 성장하였으나 2014년 경제성장률은 2.3%를 기록하였음

□ 실업률

- 2010년 2분기(4.4%) 다소 상승했던 실업률은 꾸준한 경기회복과 함께 완화된 2011년에는 3.4%, 2012년에는 0.1% 줄어든 3.3%로 개선되었음. 2013년엔 3.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도 3.3%를 유지함

□ 물가

- 2012년, 2013년, 2014년 각각 4.1%, 4.3%, 4.4%를 기록하였음
2015년 1월 1일부터 전기료와 주차료, 테마파크 입장료 등이 모두 동반 상승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2015년 물가인상률이 전년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환율 (미 달러와의 페그제)

- 홍콩달러는 미화 1달러 대비 7.75~7.85홍콩달러 수준(Convertible Zone)으로 고정되어 있음. 최근 미달러 약화와 함께 홍콩달러가 동시에 약화된다는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2005년 7월 중국인민은행이 미달러와의 페그(peg)를 폐지한 후 수년간 20% 이상 평가 절상되었고, 싱가포르달러는 30% 가량 절상된 반면 홍콩달러는 고정환율로 인해 결과적으로 2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중국 침체로 위안화 추가 평가 절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홍콩입장에서는 중국제품 수입에 있어 달러이익의 폭이 작아졌음.

2015년 2월 미화 1달러 대비 홍콩달러 환율은 7.7535임

□ 무역동향

- 2011년 수출, 수입액은 각각 전년 대비 10.1%, 11.9%의 증가율을 보인 후(총 무역액 11.0%). 2012년 에는 전년 대비 수출 +2.9%, 수입 +3.9%, 총 무역액 +3.4%의 소폭 성장을 보임. 2013년에도 전년 대비 수출 +3.6%, 수입+3.8%, 총 무역액 +3.7%의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함. 2014년 홍콩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2014년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2%, 3.9% 소폭 증가에 그침. 수출은 4,709억 미달러, 수입은 5,409억 미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700억 미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관광

- 홍콩정부는 주요 산업 4대 축인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홍콩방문객과 홍콩의 관광수입은 2000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연간 홍콩 방문객은 2011년에는 4,000만 명을 돌파,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총 관광수입 역시 1, 2011년에는 2,600억HK\$에 이르렀음. 특히 중국 관광객의 소비는 홍콩 소매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2012년 전체 중국관광객 수는 약 3,491만 명으로 이들의 소비액은 1,786억 HK\$(전년대비 17.6%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엔 11.7% 증가한 5,429만 명을 기록하였음. 2014년 홍콩 방문 관광객 수가 6,080만 명으로 전년대비 12%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중국 본토 방문객이 전

년대비 16% 증가한 약 4,720만 명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홍콩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주장 삼각주 경제협력

- 중국대륙-홍콩 간 긴밀한 경제 협력을 위한 경제협약인 CEPA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점차 서비스영역(법률, 건설, IT, 전시, 시청각기구, 관광, 항공운수, 육로운수, 개인상점 등)으로 혜택을 확장하여 중-홍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2. 경제 정책

- 홍콩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조건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홍콩정부의 노력으로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에서 2015년까지 21년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음. 또한 홍콩은 세계 1위의 자유 경제권(미국 CATO연구소),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World Economic Forum,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 EIU)으로도 선정되었으며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4)’에서 2위를 차지하였음
- 홍콩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무차별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별한 조세 및 부지 제공 인센티브가 없는 대신 모든 제도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함.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2월 법인세를 17.5%에서 16.5%로 인하하였으며, 개인 소득세도 1% 인하하여 15%로 책정하였음. 이어 와인세를 철폐하고 30도 이하의 알코올 관세율 0% 법규를 제정하였음. 홍콩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환경 업그레이드로 전세계 기업들에게 필수 투자 진출 지역으로서 인식되고 있음
- 아울러 홍콩-중국 간 경제협력협약(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과 중국 남부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묶는 단일 경제권을 이용하여 중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다국적 기업, 혹은 해외로 나가려는 중국 기

업을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도 견지해 나갈 것임. 2008년 1월 중국-홍콩간 이 중과세 방지협정(DTA) 2차 수정안에 합의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CEPA 10차 보충안을 체결하여 양국 간 서비스업 교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였음

- 홍콩-마카오-광둥성을 특별협력구로 연결한 초대형 통합경제구역의 조성 계획은 구체화되고 있으며, 2015년 홍콩-마카오-주하이 대교 건설 완공을 목표로 2010년 착공하였음. 광둥성의 '하드웨어(값싼 노동력과 제조업, 풍부한 개발지)'와 홍콩의 '소프트웨어(선진 노하우, 풍부한 자금, 고급 전문인력)'가 조화를 이루어 홍콩을 통한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

3. 주요 산업동향

가. 산업별 GDP 구성-서비스업에 집중

- 홍콩의 최초 기반산업은 제조업이었으며, 중개무역항을 배경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음. 초기 홍콩의 주요 산업을 이루던 선박, 방직 제조업 등은 현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업이 대부분임

〈경제활동별 GDP 연증감률〉

(단위: %)

경제활동	2011	2012	2013	2014	
				1분기	2분기
농어업, 광산, 채석	0.8	-3.2	1.3	-5.8	-5.8
제조	0.7	-0.8	0.1	2.1	2.2
전기, 가스, 수도	0.6	1.4	-0.7	1.9	2.7
건설	18.1	8.3	1.1	12.8	3.1
서비스	5.2	1.8	2.9	2.2	2.0
도소매, 무역	9.1	1.9	3.6	0.3	0.5
식당, 숙박	8.3	1.8	2.9	2.2	2.0
운송, 창고, 교통	7.2	0.9	2.5	7.0	6.9
정보, 통신	2.8	2.8	4.2	2.9	5.4

경제활동	2011	2012	2013	2014	
				1분기	2분기
금융, 보험	6.9	0.8	5.6	3.3	0.9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2.6	3.1	0.1	1.8	3.4
사회, 개인 서비스	1.5	2.1	2.6	2.7	2.3
토지소유	0.7	1.1	0.4	1.0	1.1

* 자료: 홍콩통계청(2014.12월 기준)

나. 가공무역 약화

- 홍콩은 제조업 시설의 90% 이상을 중국(특히 주강 삼각주지역)에 두고 가공무역을 진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홍콩기업들은 중국 가공무역 금지 조치, 신노동법 시행 등과 같은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해당지역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현재 홍콩 기업들은 내수 시장 공략, 중국본토에서의 부품 및 원자재 조달, 현재 가공기업을 외상투자 기업으로 전환, 녹색친환경생산에의 투자증대 등을 대응 조치로 추진하고 있음

- PMI 역시 2011년 11월 이후 지속 하락세를 보였음. PMI는 HSBC가 매월 업체 내 400개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구매관리지수로 보통 '제조업 경기동향 지표'로 많이 사용되며, 50을 기준으로 경기 활성화와 경기 위축을 나타냄. HSBC가 집계하는 중국의 2013년 12월 비제조업(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11년 8월 이후 최저치인 50.9%를 기록해 11월 수치(52.5)보다 낮음

또한 중국의 국가통계국과 물류구매연합이 발표한 2013년 12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도 하락하여 2013년 12월 비제조업 PMI가 54.6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하였음. HSBC 취홍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연말 수치는 다소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제조업 부문이 확장되면서 서비스 분야도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음

다. 유통업, 대형 체인중심으로 발달

- 홍콩의 유통업에는 통상 도소매업, 무역업, 요식업, 주점, 호텔업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킴. 유통분야(도소매업, 무역업, 요식업, 주점, 호텔업 총괄)에 종사하는 인구는 100만 명 정도로 전체 취업인구의 30%를 차지할 만큼 홍콩에서는 유통분야의 비중이 높음
- 홍콩 유통시장은 최근 20년 간 큰 변화가 있었음. 1970년대 후반기 대, 소형 슈퍼마켓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전통적인 영세상점이 사양세를 걸었고 잡화점은 거의 슈퍼마켓 형식으로 전환되었음. 슈퍼마켓은 대체로 대형체인, 소형체인, 편의점의 3종류로 나뉨
- 2013년 기준 홍콩지역에 280개 체인점을 가진 Wellcome Mart, 260 개 체인점의 Park n Shop과 고급식품 위주의 Jusco(체인 9개), Market Place(체인 26개), City Super(체인 8개) 등은 대형 슈퍼마켓이며 그 외에 소규모 체인점들이 있음. 편의점으로는 1981년에 설립되어 약 500개의 매장을 보유한 7-Eleven 과 약 170개의 Circle K 편의점이 있음. 그 외 미국의 드럭스토어 개념의 종합편의점으로 Watsons, Manning 등이 홍콩 전역에 100여 개의 체인망을 두고 영업 중임. 홍콩 외곽 지역이 거주지로 점점 발달해감에 따라 슈퍼마켓 체인 역시 외곽지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라. 의류산업, OEM에서 ODM/OBM으로 이동

- 홍콩은 중국의 의류직물 무역에 있어 수십 년간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 홍콩의 의류회사는 전통적으로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이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의 수출입을 하고 있음. 대부분 홍콩의류회사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중국 광둥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실제적인 마케팅 및 제품개발만 홍콩에서 하는 철저한 비용우위를 통한 원가절감의 분업구조를 고수해 왔음

- 특히 비교적 규모가 있는 홍콩의류회사의 경우, 자체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브랜드 홍보 부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판매유통망은 자체 소매상을 가지고 있거나 일부 중국 등지에서는 에이전트회사와의 JV형태로 제품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홍콩은 이미 홍콩 내의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해진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내 제조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노동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 부분이 의류산업분야이며 홍콩 국내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마. 전자산업, CEPA로 점점 활발

- 홍콩의 전자산업 규모는 홍콩 수출의 50%를 차지하며, 홍콩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수출국 비중으로 보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쪽 수출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최근 홍콩의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빠른 주기로 출시되고 있는 디지털제품과 무선인터넷 관련 제품이 소비를 주도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소비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세계적인 전자제품 업체들은 홍콩에 아시아 소싱 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는 홍콩 배후의 광둥성 공장에서 OEM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대금결제, 물류를 홍콩에서 담당하기 위함인데, 중국 내 업체들의 성장으로 홍콩에서의 관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홍콩 기업들은 ODM 방식의 비즈니스 형태도 개발하고 있음. CEPA로 인해 홍콩-중국간의 교역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

바. 라이선싱 산업, 대중 시장 유력

- 홍콩 라이선싱 시장은 1990년대 초에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시장으로 발전하였음. 홍콩에서 라이선스화된 주요상품은 음식, 음료, 완구, 도서, 선물용품, 문구류, 컴퓨터 관련 제품, 그리고 판촉물 등을 들 수 있음

- 홍콩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싱, 그리고 에이전트와 제조업자들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홍콩의 모든 사업 계약은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아시아에서는 가장 지식재산권 보호가 철저한 국가임
국제적인 도시로 가장 빠르게 최신의 마켓 트렌드가 도입되는 곳인 홍콩은 최신의 라이선스 제품 습득에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라이선싱 산업에 필요한 마케팅, 제조, 디자인, 법률 서비스, 라이선싱 에이전시 분야의 폭넓은 전문가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중국과 접하고 있어 중국 진출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장점임
- 대표적인 예로 일본 산리오社は 최근(2012년 1월) 홍콩 거대 무역회사 리애평(Li&Fung)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마케팅을 본격적화 하였음. 산리오 상하이 법인과 리애평의 회원사인 KT 라이선스의 상하이 및 홍콩 법인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KT라이선싱은 헬로키티를 비롯한 200여종의 캐릭터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중국 내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 할 수 있으며 다른 중국 회사에 라이선스를 주는 권한도 가짐. 이처럼 산리오 측에서 전격적인 권리를 주는 것은 저작권 관리, 대금 수수 등 중국 내 비즈니스 관리에 어려움 때문인데 5년의 계약기간 중 산리오社에는 라이선싱 비로 8,500만 달러가 보장됨

4. 수출입 동향

가. 수출입 현황

- 주요 교역국은 중국,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이며 중국과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절반가량을 차지함

〈홍콩의 주요 교역국〉

(단위: US\$백만, %)

국가	2012	2013	2014	2015년 1~5월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전체	941,860	976,975	1,011,769	389,286	-0.1
중국	474,182	498,895	508,459	194,805	0.8
미국	69,611	70,639	71,930	28,288	5.4
일본	58,407	54,048	53,897	19,895	-7.4
대만	41,760	43,494	48,663	17,482	-7.7
싱가포르	38,756	39,105	41,109	16,655	-0.6
한국	27,228	28,569	30,503	12,305	1.9
인도	20,386	21,875	24,399	9,442	-0.6
태국	14,696	15,495	17,599	7,052	4.5
말레이시아	14,413	14,654	16,933	6,386	-5.8
베트남	11,188	12,542	14,011	6,373	23.3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홍콩 상품 교역규모〉

(단위: US\$십억, %)

구분	2013		2014		2015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출	456.3	+3.6	470.9	+3.2	182.0	+0.8
자체수출	6.9	-7.6	7.1	+1.7	2.5	-13.0
재수출	449.4	+3.8	463.7	+3.2	179.5	+1.0
수입	520.6	+3.8	540.9	+3.9	207.3	-0.8
총무역액	976.9	+3.8	1011.7	+3.6	389.3	-0.1
무역수지	-64.2	N/A	-70.0	N/A	-25.3	N/A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서비스 교역규모〉

(단위: US\$십억, %)

구분	2013		2014		2015(1~3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35.7	+5.5	138.0	+1.8	34.0	-0.1
수입	59.9	+2.6	61.7	+3.0	14.9	+1.3
총교역액	195.6	+4.6	199.7	+2.1	48.9	+0.2
무역수지	75.8	N/A	76.3	N/A	19.1	N/A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나. 주요 수출품목

- 홍콩의 주요 수출품은 전자제품, 사무기기, 진주/귀금속, 플라스틱, 시계, 의류, 완구/게임 제품임

〈홍콩 주요 수출품〉

(단위: US\$ 백만, %)

품목	2012	2013	2014	2015 (1~5월)	
				금액	증감률
전체	440,301	456,370	470,866	182,014	0.8
전기기기·TV·VTR	204,674	223,113	238,425	94,946	5.5
보일러·기계류	68,886	67,438	68,636	26,264	-0.2
진주/귀금속	27,273	28,492	32,144	11,903	-7.1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16,486	16,666	15,922	5,938	-6.3
플라스틱	14,563	14,687	13,749	5,012	-9.6
시계	9,532	9,879	10,298	3,804	-4.7
의류(편물제이외)	9,913	9,610	8,843	3,202	-8.2
의류(편물제)	11,249	10,990	10,409	2,975	-10.9
완구/운동용구	11,489	9,656	8,028	2,690	-2.3
가족제품	6,812	6,347	5,912	2,146	-5.6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HS 2코드 기준)

〈홍콩 주요 수출국〉

(단위: US\$)

국가	2012	2013	2014	2015(1~5월)	
				금액	증감률*
전체	440,301	456,370	470,866	182,014	0.8
중국	238,174	249,903	253,720	97,521	-0.5
미국	43,398	42,475	43,776	17,026	6
일본	18,458	17,337	16,860	6,352	-7.3
인도	9,895	10,680	12,080	4,960	6.9
베트남	6,500	7,510	8,565	3,893	20.1
독일	9,976	9,465	9,306	3,428	-4.8
대만	10,364	9,918	10,166	3,397	-16.1
싱가폴	7,173	7,510	7,673	3,135	3.4
한국	7,545	8,222	7,998	3,023	-6.6
태국	5,353	5,554	6,300	2,693	16.4

*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수치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다. 주요 수입품

- 홍콩의 주요 수입품은 전자제품, 보일러/기계류, 진주/귀금속/보석, 정밀기기, 에너지, 플라스틱, 시계, 식용설육, 의류 등임

〈홍콩 주요 수입품〉

(단위: US\$ 백만, %)

품목	2012	2013	2014	2015 (1~5월)	
				금액	증감률
전체	501,559	520,605	540,903	207,272	-0.8
전기기기·TV·VTR	218,598	235,106	259,725	102,790	5.1
보일러·기계류	69,815	68,826	66,612	24,377	-6.3
진주/귀금속	36,216	38,277	42,634	15,076	-10.2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16,952	17,880	16,027	5,919	-6.2
광물성연료, 에너지	18,227	17,627	15,673	5,633	-19.2

품목	2012	2013	2014	2015 (1~5월)	
				금액	증감률
플라스틱	13,941	13,836	13,423	4,963	-8.4
시계	10,434	10,368	10,826	3,814	-11.4
육과 식용설육	4,410	5,454	6,793	2,572	-0.1
의류(편물제이외)	7,049	7,132	6,977	2,503	-7.6
의류(편물제)	8,073	8,115	7,999	2,425	-8.9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홍콩 주요 수입국〉

(단위: US\$ 백만, %)

국가	2012	2013	2014	2015(1~5월)	
				금액	증감률
전체	501,559	520,605	540,903	207,272	-0.8
중국	236,008	248,991	254,739	97,285	2.2
대만	31,396	33,576	38,497	14,085	-5.4
일본	39,949	36,711	37,037	13,543	-7.4
싱가폴	31,583	31,595	33,436	13,519	-1.5
미국	26,213	28,164	28,154	11,263	4.3
대한민국	19,683	20,347	22,505	9,282	5
말레이시아	10,724	11,231	13,101	4,778	-11.3
인도	10,491	11,195	12,319	4,481	-7.8
태국	9,343	9,941	11,299	4,359	-1.8
스위스	10,070	9,897	10,165	3,477	-16.8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5. 對 한국 교역동향

가. 對 한국 교역현황

- 홍콩무역발전국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홍콩과 한국의 연간 무역 총액은 305억 달러 (2014년)에 달하며 한국은 홍콩의 제 6위의 교역국임

- 홍콩과 한국의 무역 총액 증가율은 2011년 12.7%이었으나,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음. 2015년 1~5월 사이 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하였음

〈홍콩의 對 한국 무역〉

(단위: US\$ 백만, %)

구분	금액			
	2012	2013	2014	2015(1~5월)
수출	7,545	8,222	7,998	3,023
자체수출	164	136	184	64
재수출	7,382	8,086	7,814	2,959
수입	19,683	20,347	22,505	9,282
수입 중 재수출분	16,129	17,938	20,139	8,447
총 무역액	27,228	28,569	30,503	12,305
무역수지	-12,138	-12,126	-14,507	-6,258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 홍콩의 대 한국 주요수출품은 반도체, 통신장비, 여행용품 및 전자회로용 기기, 사무기기/컴퓨터 등이며 2014년 홍콩의 대 한국수출은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음

〈홍콩의 對 한국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구분	2012		2013		2014			2015(1~5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증감률
전 체	7,545	100	8,222	100	7,998	100	3,023	100	-6.6
반도체, 전자밸브	1,721	22.8	2,195	26.7	2,471	30.9	969	32	2.3
통신기기	1,405	18.6	1,680	20.4	1,426	17.8	467	15.5	-23.2
전기회로용 전자기기	427	5.7	411	5	413	5.2	152	5	-14.7
컴퓨터	246	3.3	218	2.7	289	3.6	147	4.9	40.5
여행용품	626	8.3	415	5.1	281	3.5	103	3.4	-11.8
사무기기/컴퓨터부분품	305	4	312	3.8	291	3.6	94	3.1	-38.3
전자기기 및 부품	222	2.9	235	2.9	188	2.4	93	3.1	11.1

구분	2012		2013		2014		2015(1~5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증감률
시계	145	1.9	151	1.8	169	2.1	61	2	-9.5
사무실 기기	168	2.2	148	1.8	134	1.7	60	2	29.8
전력기기 및 부분품	128	1.7	153	1.9	146	1.8	51	1.7	-19.7
신발	181	2.4	124	1.5	88	1.1	44	1.5	27.7
장난감 및 운동기구	129	1.7	113	1.4	104	1.3	44	1.5	5.4

◦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된 품목은 반도체, 석유, 통신장비 등임

〈홍콩의 對 한국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구분	2012		2013		2014		2015(1~5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증감률
전 체	19,683	100	20,347	100	22,505	100	9,282	100	5
반도체	7,044	35.8	8,082	39.7	10,101	44.9	4,711	50.8	26.8
석유	3,062	15.6	1,803	8.9	1,909	8.5	772	8.3	5.4
통신장비	2,154	10.9	2,197	10.8	2,440	10.8	743	8	-26.9
향수,화장품	170	0.9	242	1.2	337	1.5	217	2.3	85.8
전자기기	458	2.3	520	2.6	470	2.1	187	2	-6
사무기기/컴퓨터부분품	660	3.4	830	4.1	603	2.7	186	2	-24.4
기타 플라스틱	301	1.5	262	1.3	282	1.3	181	1.9	79
플라스틱 판, 시트	288	1.5	501	2.5	353	1.6	181	1.9	22.1
스티렌 고분자	515	2.6	505	2.5	470	2.1	170	1.8	-13.6
전기회로용 전자기기	470	2.4	503	2.5	417	1.9	138	1.5	-23.4
기타 기기 부분품	138	0.7	190	0.9	288	1.3	100	1.1	-6.9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나. 한·홍 교역 관계

- 홍콩은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무역 중간 창고 역할 및 중국진출사업의 본부 역할을 하여 중국 대륙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80%가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무역, 회계, 재무 등의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약 1500개사이며, 주로 제 3국, 특히 중국 관련 중개무역을 하는 물품 교역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융업(은행, 증권, 회계)과 물류업에도 다수 종사하고 있음. 홍콩한인상공회에 등록된 한국 기업은 약 200개사임(자료: 홍콩통계청, KOTIS, 한국수출입은행, 홍콩총영사관)
-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홍콩시장은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 상대국이 되었음. 2013년 홍콩과 한국간 교역액은 4.9% 증가하여 2012년에 이어 한국은 홍콩의 제6위 교역국이었으며 2014년 한국은 대 홍콩 무역에서 1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2014년 홍콩과 한국의 무역 총액은 305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여 주요 교역국의 입지를 지켰음

III

농업동향

1. 홍콩 농업현황

- 홍콩 농가수는 '15년 기준 2,400개소(등기)이며, 농업종사자는 약 4,300명임
 - 주 생산작물은 관상용 화훼류(글라디올러스, 백합, 국화)이며, 식용작물로는 엽채류, 국화과 작물, 수상작물이 있으나 소규모임
 - 경지이용은 '14년 기준 채소류 및 화훼류 421ha, 논작물 127ha, 과수류 290ha로 경지면적이 매우 협소함
 - '14년 농업 총 생산량은 8억 3천만불. 그 중 신선농산물은 2억 7천 900만불
 - 축산물 2억 4천 800만불, 가금류 생산은 3억 3백만불임
 - 매일 평균 생산량 채소 42톤, 닭 11,000마리, 돼지 240마리임
 - 체 농산물 소비에서 자국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신선농산물 1.9%, 가금육 79.6%, 돈육 6.1% 등임
 - 축산업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반면 신선농산물은 증가 하고 있는 추세, 최근 돈육업이 홍콩 내 시장 점유율이 높음
 - 가금육의 경우 주 닭고기 위주로 생산

2. 홍콩 농업정책

- 홍콩의 농업정책은 정부 참여 최소화로 자유시장을 겨냥한 완전 개방정책을 펴고 있음
 -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수입 의존도가 95% 이상임
 - ※ 담배, 주류(30도 이상), 메틸알코올, 카본오일 4가지 품목 외 모두 무관세임

3. 농식품 무역동향

가. 농식품 수출입동향

- '14년 홍콩 연간 농식품 수입액은 약 USD 239억불로 자체 생산량이 거의 없어 식품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14년은 전년대비 10% 증가

(단위: US천불,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입액	증감률
농식품 수입액	19,326,090	21,762,584	23,935,344	10.0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 홍콩 농식품 주요 수입국은 중국(20.4%/48.9억불), 미국(16.9%/40.4억불), 브라질(10.6%/25.4억불), 태국(4.2%/9.9억불) 등임
 - 세부내역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육류, 내장, 가공식품, 신선농산물 등이 수입되며, 미국은 과일, 견과류, 육류, 수산물, 브라질은 가금류, 육류, 과실류, 일본은 수산물, 신선류, 한국은 가공식품 위주임

나. '14년 대홍콩 한국 농식품 수출동향

- 대 홍콩 한국 농식품 수출액은 406백만불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여 '13년 28.9%의 큰 성장에 힘입어 상승세가 더 가파른 핵심시장
 - 수출액 : ('12) 297.3백만불 → ('13)383.0(28.9%↑) → ('14)406.2(6.1%↑)
- '14년 홍콩내 한국식품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채소, 김치, 인삼류를 포함한 신선류가 크게 성장하였음
 - 증가 : 인삼류(46.6백만불/6.3%↑), 과실류(23.1/79.8%↑), 김치(4.7/31.5%↑), 채소류(14.7/13.5%↑), 돼지고기(3.6/250.0%↑) 등
 - 감소 : 자당(52.6백만불/8.9%↓), 굴(8.4/33.6%↓)

- 채소류 : 전년대비 13.5% 증가한 14.7백만불
 - 채소류 주력품목인 딸기는 11.6백만불 수출되어 '13년 36.6% 증가에 이어, '14년 3.5%가 증가하였으며 연속 2년간 1천만불대를 넘어섰음
 - * 딸기 : ('12) 860톤, 8,220천불 → ('13) 1,097, 11,227(36.6%↑) → ('14) 1,122, 11,624(3.5%↑)
- 김치 : '13년도에 이어 '14년 31.5%가 추가 증가한 4.7백만불
 - 김치는 매년 증가세이며, 홍콩시장에서는 대부분 한국산이 유통되고 있으나 김치의 이러한 인기몰이로 인해 인근지역(중국광둥성 등)의 김치가 시장에 유입될 정도로 김치의 추가 상승여력 다분
 - * 김치 : ('12) 3,286천불 → ('13) 3,567(8.5%↑) → ('14) 4,691(31.5%↑)
- 인삼류 : 전년대비 6.3% 증가한 46,596백만불
 - '14년 한국 원삼의 가격상승 및 경쟁국가(중국 등)의 수출공세로 상반기 주춤했던 수출실적이 홍콩 등 주요 브랜드기업(정관장, 일화, 한인홍, 천경삼 등)의 적극 마케팅을 기반으로 선전하여 수출규모 확대하였으며 물량기준 67.2% 상승하여 수출액 추가상승여력 확보
 - * 인삼 : ('13) 197, 43,878 → ('14) 330, 43,878 (6.3%↑)
- 과실류 : 전년대비 79.8% 증가한 23.0백만불
 - 과실류는 유자차(5.8백만불/5.3%↑), 사과(1.3/37.3%↑), 배(1.3/106.5%↑) 및 기타과실(3.1/26%↑) 등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
- 버섯류 : 전년대비 16.4% 감소한 1.9백만불
 - 버섯류는 일정한 수요를 보이고 있으나 '13년에 이어 저가의 중국산에 밀려 전년대비 16.4% 감소하였음
 - * 버섯류 : ('13) 1,123톤, 2,294천불 → ('14) 899, 1,917 (△16.4%)
- 가금육류 : 전년대비 86% 감소한 1.2백만불
 - 닭고기는 주로 냉동 부분육으로 수입되어 중국 남부지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으나 연초 AI발생 등으로 인한 수출불가로 지난해 대비 수출액이 크게 감소되었음

* 닭고기 : ('13) 5,244톤, 7,955천불 → ('14) 369, 1,241(△84.4%)

◦ 가공식품 : 전년대비 5.7% 증가한 271.6백만불

- 면류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3.0백만불 수출. 최근 기존 인기제품인 신라면, 진라면, 치즈라면 외에 불닭볶음면 등 다양한 라면류의 구색확보로 홍콩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대형매장 및 저가유통매장(759 등)의 직수입이 증가하면서 단가인하로 인해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였음

* 면류 : ('13) 9,520톤, 20,374천불 → ('14) 10,341, 22,994 (12.9%↑)

- 주류는 전년 대비 1.3% 증가로 34.6백만불에 그쳤지만, 기존 홍콩내 프리미엄 1위 브랜드(Blue Girl)에 의존하였던 한국맥주의 위상이 하이트, OB, 막걸리 등 주류의 현지 런칭확대로 시장확대 잠재성 다분

* 주류 : ('13) 57,677톤, 34,217천불 → ('14) 56,853, 34,647 (1.3%↑)

- 과자류는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기존 고품질, 합리적 가격으로 꾸준한 인기를 보이는 품목이며, 현지의 스낵류 대형수입상인 EDO 브랜드와 한국수출입채간 적극적 마케팅으로 시장확대 중

* 과자류 : ('13) 5,401톤, 21,004천불 → ('14) 5,820, 22,579 (7.5%↑)

- 반면 유제품은 전년 대비 59.2% 감소, '13년도 이후 한국산 바나나 우유의 열풍 및 일본산 방사능 문제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한국산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타국의 유사제품 출시 및 서울우유의 수출패키지 변경 등으로 수출 부진

* 유제품 : ('13) 1,037톤, 4,332천불 → ('14) 869, 1,766 (△59.2%)

- 전통적으로 큰 수입규모의 연초류는 홍콩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물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음

* 연초류 : ('13) 3,111톤, 37,694천불(216.1%↑) → ('14) 3,267, 40,129 (6.5%↑)

◦ 수산식품 : 전년대비 1.2% 증가한 37.4백만불

- 고급 식재료인 한국산 수산식품은 지속적인 현지 수입상의 사업 확장 및 일본산 안전성 문제 등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일본산 굴의 저가공세가 큰 굴류에 있어서는 크게 감소하였음

- 전통적으로 인기품목인 김류는 최근 한국방문 홍콩관광객 및 TV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접한 홍콩인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음

* 굴 : ('13) 868톤, 12,650천불 → ('14) 551, 8,404 (△33.6%)

* 김 : ('13) 273톤, 7,102천불 → ('14) 340, 8,743 (23.1%↑)

〈'14년 對 홍콩 수출실적〉

(단위: 톤, 천불, %)

구 분	2013년(A)		2014년(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217,986	382,933	216,851	406,232	-0.5	6.1
[신선]	19,433	89,153	13,938	97,280	-28.3	9.1
- 채소류	1,808	12,978	2,581	14,724	42.7	13.5
- 김치	937	3,567	1,229	4,691	31.1	31.5
- 인삼	197	43,848	330	46,596	67.2	6.3
- 화훼류			4	14	0.0	0.0
- 과실류	4,977	12,830	7,468	23,071	50.1	79.8
- 버섯류	1,123	2,294	899	1,917	-20.0	-16.4
- 돼지고기	199	1,037	622	3,631	213.2	250.1
- 가금육류	10,035	10,677	678	1,495	-93.3	-86.0
- 산림부산물	156	1,921	129	1,142	-17.4	-40.6
[가공]	196,149	256,842	200,943	271,557	2.4	5.7
* 면류	9,520	20,374	10,341	22,994	8.6	12.9
* 소스류	710	2,136	1,044	3,639	47.1	70.3
* 주류	57,677	34,217	56,853	34,647	-1.4	1.3
* 과자류	5,401	21,004	5,820	22,579	7.8	7.5
* 연초류	3,111	37,694	3,267	40,157	5.0	6.5
* 유제품	1,037	4,332	869	1,766	-16.2	-59.2
- 목재류	433	1,581	319	1,416	-26.4	-10.4
[수산]	2,404	36,938	1,969	37,395	-18.1	1.2
- 어류	280	3,103	543	6,568	93.7	111.7
- 연체동물	1,031	15,500	683	9,812	-33.7	-36.7
- 해조류	314	7,644	387	9,297	23.4	21.6
- 갑각류	43	899	161	5,249	275.6	483.7
- 기타	736	9,792	195	6,468	-73.6	-33.9

*자료: 수출동향(aT내부)

IV

관세 및 검역제도

1. 관세현황

가. 수입 규제 제도

1) 자유로운 수출입 정책

- 홍콩은 전략물자, 의약품, 독극물 등 소수의 제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 교역이 자유로우며 담배, 주류(알코올 30도 이상),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수입관세 보다는 등록세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됨. 육류, 채소류 등 식품 수입 시 비교적 간단한 검역 절차가 필요하나 홍콩 수입업자가 홍콩 위생국으로부터 검역을 받기 때문에 외국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아님. 또한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써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수입 쿼터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2) 유동적인 수출입 규제

- 홍콩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지만 중국산 제품 수입에 매우 민감함. 때때로 중국산 유사품, 위조품, 유해식품 등이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임. 주로 식품 및 약품에서 발생하며 대표적인 예로 계란과 우유를 들 수 있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지역 상품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또한 홍콩은 가금류 소비가 많아 조류 독감에 특히 민감하여 발생 지역에 따라 닭고기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함. 실제로 홍콩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5개의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미야기, 토치기, 오야카까) 식품(유제품, 채소, 고기류)에 대해 2011년 3월 23일부터 수입금지령을 내렸음. 또한 2014년 한국 내 AI발생으로 인해 홍콩 내 한국산 생닭과 계란 등 가금류 수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치가 풀리기 전까지는 대 홍콩 계란 및 가금류의 수출 등은 불가능함

나. 수출입 관련 법령

1) 수입 허가증 제도

- 홍콩은 일반 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자유 방임적 정책을 펴고 있어 일반 수출입 화물이나 환적 화물의 세관 절차는 없음. 그러나 소수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홍콩에서는 화학 약품 및 인삼 등의 한약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및 도소매 자격증이 있는 사업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홍콩 세관에 의하면 홍콩 수입 허가증 발급 대상 품목은 마약류, 의약품, 동물, 살충제, 폭발물, 쌀, 냉동육, 오존 파괴 물질, 좌측 운전용 차량, 엔진(111.9kw초과), 광학 디스크 기기, 복사기, 화학 약품, 멸종 위기 동식물, 무기, 섬유, 가금류, 라디오 운송 장비, 방사성 물질 및 기기(X-ray 장치 등), 전락물자(메모리칩, 광섬 유, 핵무기 관련 물질 등) 등임

2) 관련 법령

관련법령으로 수출입 조례, 수출입 재고품 조례, 오존층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수입 및 수출 조례(Import and export ordinance)

- 수출입 조례는 홍콩에서의 수입품 및 수출품에 대한 규제, 홍콩으로 이미 수입된 물품들에 대한 취급 및 운송, 해외로 수출된 품목의 처리에 대한 조례임. 조례 세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음

(http://www.legislation.gov.hk/blis_ind.nsf/CurAllChinDoc?OpenView&Start=60&Count=30&Expand=60.1#60.1)

□ 수출입 재고품 조례(Reserved commodities regulation)

- 수출입 재고품 조례는 수출 및 수입 시 발생한 재고 물품에 관한 조례임. 조례 세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바람

(http://www.legislation.gov.hk/blis_ind.nsf/CurAllChinDoc?OpenView&Start=296&Count=30&Expand=296.2#296.2)

□ 오존층 보호에 관한 조례(Ozone layer protection ordinance)

- 오존층 보호에 관한 조례는 1985년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1987년의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하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함유 품목의 제조 금지,

수출입 통제에 관한 조례임. 조례 세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바람

(http://www.legislation.gov.hk/blis_ind.nsf/CurAllChinDoc?OpenView&Start=400&Count=30&Expand=403.1#403.1)

- 수출입 물품 신고가 필요 없는 품목은 환적 화물(일부 품목 필요), 자동차를 제외한 개인휴대품, 4,000 홍콩 달러 미만의 우편물, 견본품, 광고 목적의 1,000 홍콩 달러 미만의 수입품, 전시품, 스포츠 경기 참가용품, 증정품, 중고 빈컨테이너, 인가된 배에 의한 포획어류 등임

다. 수입 규제 담당기관

- 기관명 :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전화 : 852) 2815 7711
- E-메일 : customsenquiry@customs.gov.hk
- 홈페이지 : www.customs.gov.hk
- 주요업무
 - 수출입 통관, 소비자 보호, 관세부와 물품 확인, 라이선스와 허가신청, 수출 입신고, 지식재산권 보호, 마약류 검사

라. 수출입 관련 라이선스 비용

- 라이선스는 1년 단위로 발급되며 라이선스 비용이 청구됨. 라이선스 종류와 각각의 규정된 비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내역	비용
제조자 라이선스	○ 탄화수소 오일 제조 라이선스	24,650HKD
	○ 담배제조 라이선스	22,700HKD
	○ 주류제조 라이선스	22,700HKD
	○ 증류소 라이선스	22,700HKD
	○ 증류기(재정국이 승인한 교육, 과학, 자선단체 목적)	무료
창고 라이선스	○ 일반 보세 창고 라이선스	24,350HKD
	○ 공공 보세 창고 라이선스	24,350HKD
	○ 허가 받은 창고 라이선스	24,1350HKD
수출입 라이선스	○ 수출입 라이선스	1200HKD
	○ 특별수입 라이선스	1200HKD
기타 비용	○ 매회 라이선스 개정 특별사항	515HKD
	○ 라이선스의 대체	200HKD

* 자료: 홍콩세관

2. 관세제도

가. 일반 관세

-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가 없음. 다만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의 관세보다는 등록세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
- 홍콩의 통관 및 검역관련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수출입 일반 : Import and Export(Registration) Regulations(Chapter 60)
 - 관세 일반 :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Cap. 109)
 - 식품검역 일반 :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Cap.132)

〈주요 과세대상 품목별 세율〉

1. 탄화수소	관세율
항공기연료(Aircraft spirit)	HK\$ 6.51/litre
디젤연료(Light diesel oil)	HK\$ 2.89/litre
유황디젤(Ultra Low Sulphur diesel)	HK\$ 2.89/litre
가연가솔린(Motor spirit(leaded petrol))	HK\$ 6.82/litre
유로 V 디젤(Euro V diesel)	HK\$ 0/litre
무연가솔린(Motor spirit(unleaded petrol))	HK\$ 6.06/litre
2. 담배	관세율
중국 제조(Chinese prepared tobacco)	HK\$ 468/kg
수입 시가	HK\$ 2,455/kg
수입 담배	HK\$ 1,906/1000개비
일반담배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조된 그 외 모든 담배(manufactured tobacco except tobacco intended for the manufacture of cigarettes)	HK\$2,309/kg
3. 주세	관세율
와인	0%
알코올 30%미만 주류 (맥주 등)	0%
알코올 30%이상 주류 (위스키 등)	100%
4. 메틸알코올	\$840/hectoliter

* 자료: 홍콩 세관

〈자동차 등록세율〉

구분	세율
승용차	
HK\$150,000 이하	자동차 판매가격*40%
HK\$150,000 초과 HK\$300,000 이하	HK\$150,000*40%+HK\$150,000초과 금액*75%
HK\$300,000 초과 HK\$500,000이하	HK\$150,000*40% + HK\$150,000*75%+ K\$300,000초과 금액*100%
HK\$500,000 초과	HK\$150,000*40% + HK\$150,000*75%+ HK\$200,000*100%+ K\$500,000을 초과 금액*115%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자동차 판매가격 *35%
경승합차(LGV)외의 화물차량	자동차 판매가격 *15%
1.9톤 초과하지 않는 승합차(LGV)	
HK\$150,000 이하	자동차 판매가격 *35%
HK\$150,000 이하 초과 HK\$300,000 이하	HK\$150,000*35%+HK\$150,000 제외한 잔액*65%
HK\$300,000 초과	HK\$150,000*35%+HK\$150,000 *65%+HK\$300,000초과 금액 *85%
1.9톤 초과하는 승합차(LGV)	자동차 판매가격 *17%
택시, 버스, 특수목적 운송수단	자동차 판매가격 *3.7%

* 주: 등록세= 차종별 과세가격X등록세율
자료: 교통부

나. 와인 관세 폐지

- 홍콩정부는 2007년 80%에서 40%로 반감한 와인세율을 2008년에는 0%로 조정하였음. 이로써 홍콩은 세계에서 부가가치세와 와인세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음. 와인세 감면으로 인해 홍콩은 2012년까지 10억 홍콩달러, 2017년까지 30억 홍콩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아울러 수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홍콩 재정부 장관(John Tsang Chun -wah, 曾俊華)은 주류세 인하가 요식업뿐만 아니라, 여행업, 브랜드 판매에도 기여할 것이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 2011년 담배세, 자동차 등록세 인상

- 자유무역 국가인 홍콩은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가 없으나 일부품목(담배, 30도 이상 주류,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2009년도 50% 인상에 이어, 2011년에는 41.5% 더 올려, 현재는 담배 한 갑에 50홍콩달러가 되었으며 담배 1갑당 세금은 홍콩달러 24불에서 34불로 증가하였음. 홍콩 세관에 따르면 2010년 한해 71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담배세가 38억 달러로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였음
- 2011년 자가용 신규 등록세는 15% 인상되었음. 즉 30만 홍콩달러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했을 때 낸 종전의 15만달러보다 22,500달러 오른 17만 2,500달러를 자가용 신규 등록세로 지불해야 하며, 자동차 가격이 50만 홍콩달러일 경우에는 이전 세금에 추가적으로 5만 홍콩달러를 더 지불해야 함

※ 관련사항 문의처

- 담당부서 :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HK Customs and Excise)의 세관 관리부
(Dutiable Commodities Administration)
- 주소 : 7/F, Harbour Building, 38 Pier Road, Central, Hong Kong
- 연락처 및 팩스 : (852) 2852 3275 / (852) 2581 0218

3. 검역제도

가. 검역제도 일반

- 식품관련 수입시에는 공공건강을 이유로 별도의 요구사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우유(milk), 유제품(milk products), 냉동 과자류(frozen confection), 엽수류, 육류 및 가금류(game, meat and poultry)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 특히 엽수류(사냥한 짐승·새 등의 고기류)는 식품환경위생국에 의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육류 및 가금류도 해당 부서에 의해서 원산지 등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

- 저산성 식품에 대한 무균처리 과정과 포장에 관한 위생 처리 규정
 - 아래 상세 내용 첨부
- 동물성 식품에 대한 보건 인증서 신청 안내
 - 아래 상세 내용 첨부
- 식품의 살충제 잔류 모니터링
 - 아래 상세 내용 첨부

나. 품목별 검역제도

□ 저산성식품에 대한 무균처리 과정과 포장에 관한 위생 처리 규정

- 저산성식품의 무균처리나 포장은 복잡한 식품 제조 공정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의 측면에서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주의 깊게 통제되어야 하며 이것은 내부적으로 연관된 많은 처리 단계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위생 작업은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의 식품 안전청이 정한 것으로 여러 관련 기관과 조정하여 정하였으며 이것은 무균처리 되거나 포장된 저산성식품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수적인 안전성이나 건전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조언을 하기 위해 제공됨
- 이 규정과 관련해서 건의 사항이 있는 식품업자는 식품환경 위생청 공보자료부로 연락 : 연락 전화번호 - 852) 2381 6096
- 상업적으로 살균된 식품들을 공공건강을 중대하게 저해할 수 있는 미생물로부터 보호하고, 상온에서 저장되고 유통되는 상태에서 미생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가공됨. 이것은 살균 처리와 포장을 통해 얻을 수 있음
- 살균처리와 포장은 식품이 상업적으로 살균, 냉각 그리고 기존에 살균된 포장 재질에 살균되어 채워지고, 진공 밀봉되는 기술을 참조하여 최종 제품은 살균된 식품을 밀균 포장, 즉 일반 환경에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저장될 수 있도록 형태임
- 산성화를 기준으로, 식품은 저산성식품과 산성식품으로 나누어 짐
- 저산성식품은 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 즉 열처리 과정이후 산성농도가 4.6 이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뜻하며 이러한 식품들은 산성농도 4.6이

- 상의 환경에서 변질되기 쉽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같은 독성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식품으로 간주
- 좋은 제조공정은 이러한 식품들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함
 - 저산성식품의 살균처리나 포장은 복잡한 식품 제조 과정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의 측면에서 식품가공, 충전 그리고 포장 시스템까지 주의 깊게 통제되어야 함
 - 그리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연관된 많은 처리 단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 규정의 목적은 무균처리 되거나 포장된 저산성식품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수적인 안전성이나 건전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조언을 하기 위해 제공됨
 - 범위
 - 이 위생처리 규정은 밀봉된 용기에 살균된 저산성 식품을 포장하는 과정과, 저장 처리과정에 대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위생 과정이며 이것은 전통적인 통조림 제조 공정이나 냉동 보관이 필요한 저산성식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현재 매우 다양한 상품들과 포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특정 상품의 가공 처리 과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식품 가공업자의 책임임
 - 시설 : 설계와 설비
 - 살균 포장된 저산성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와 설비는 식품 환경 위생청이 제시한 조건들과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과 병행해야 함
 - 시설간의 모든 냉장 공간은 온도 측정 시설과 기록 설비가 완비되어야 함
 - 위생 가공 요건들 - 원자재 요건
 - 가공업자는 사용되는 원재료와 그 성분들을, 공급업자나 가공업자가 특정 요건들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시설을 만들어야 함
 - 가공업자는 원재료와 성분들이 확인되고 검증되었다는 자료들을 만들고 그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원재료와 주성분들은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염이나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보관, 유지 그리고 다루어 져야하며 원재료와 주성분은 적절히 순환되도록 해야 함
- 위생 가공 요건들 - 재료의 포장과 제품 용기
 - 저산성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 재료들은 오염이나 손상을 최소화 시키는 위생적이고 깨끗한 방법으로 보관되고 처리해야 하며 제품 용기의 소재는 상품이 적절하게 포장되고 처리과정과 지속적인 후처리 과정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함
 - 선택된 밀봉 재료는 식품뿐 아니라 용기나 밀봉 시스템에도 적절한 것이어야 함
 - 용기생산자와 식품 가공업자 양측은 용기와 내용물이 합의된 세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장할 수 있는 검사방법과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만들어 수행해야 함
- 위생 가공 요건들 - 상품 멸균
 - 멸균 포장된 저산성 음식을 가공하기 위한 예약 과정들은 책임자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정해야 하며, 생산 구성요소나 생산 공식에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적절한 과정을 통해 평가해야 함
 - 예정된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경우, 열처리 과정은 반드시 다시 설정해야 함
 - 예약 처리과정에서 명시된 모든 중요한 요소에 대해, 처리과정내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주, 일정한 기간으로 측정, 통제하고 기록해야 함
 - 각 제품 살균기는 온도 측정기구가 충분한 개수로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함
 - 온도 측정 기구의 정확성을 위해, 설치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어 정확성을 검사하고 조정해야 하고, 적어도 매년 확인해야 함
 - 날짜, 사용된 기준, 방법의 정확한 기록을 확인하고, 담당자의 수행도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 각 제품 살균기는 충분한 수량으로 정확하고, 이미 보정을 거친, 신뢰할 만한 온도/시간 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0.5℃ 이내 간격으로 기록해야 하고,

- 위생 가공 요건들 - 멸균 포장

- 용기에 충전되는 내용물은 예약 공정에서 명시된 공간 부문과 충전 내용물의 기준치를 확보하고 이를 제어해야 함
-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신뢰할 만하고 지속적인 밀봉을 위해서 관할 직원은 충분히 자주 일정간격을 두고, 적절한 시각적 검사와 용기의 봉합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만약 밀봉의 완전성에 관한 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마지막으로 확인한 단계와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에 생산된 모든 상품은 찾아내서 다시 검사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과 동시에 취한 모든 조치들은 반드시 기록해야 함
- 각 용기는 고유한 숫자 코드와 주요한 생산 자료, 즉 생산지, 날짜, 시간, 기계번호 등과 같은 자료들을 기록해야 한다. 이 코드는 미래에 리콜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완제품은 제품의 질적 저하나 용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미생물의 번식을 막을 수 있는 조건하에서 처리, 저장되고 운송되어야 한다.



◦ 위생 관리

- 식품을 취급하는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식품의 위생 취급과 개인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지침과 필요한 주의사항을 이해하도록 해야 함
- 설비와 화학 업체의 권고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절차는 모든 장비와 관련 구역을 철저하고도 적절하게 청소하도록 해야 하며, 그 절차는 어떻게 청소가 되어야 하는지(수동 또는/그리고 CIP), 어떤 타입, 농도, 접촉 시간, 온도, 압력, 배송방법과 각 설비 부품에 대한 청소 화학물의 중요 요소 등을 기술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청소와 소독 절차는 문서로 기록해야 함

◦ 품질 보증

- 생산, 저장 그리고 운송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HACCP 시스템)은 예약 과정을 준수하여 상품이 완성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보존 검사(예를 들어 $35^{\circ}\text{C} \pm 3.0^{\circ}\text{C}$ 에서 10일)는 각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상품을 샘플로 수행해야 하며, 기타 시간/온도의 조합은 제조업자가 선택할 수 있음
- 보존된 용기의 가스 발생 및 상품 외관 변형(예를 들어, 냄새, 산성도, 점도 등)을 관찰해야 함
- 상업적인 멸균율을 확인하기 위한 미생물 분석은 보존에 따른 별도의 비멸균 표시가 없는 것과 상관없이 각 생산 라인에서 일정 개수의 용기를 선별 시행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보관해야 함
- 영구적이고, 판독 가능한 그리고 날짜가 적힌 기록들은 보관되어야 함
 - 유지 보수 기록, 원료 품질 기록, 사전 처리 절차 기록, 설비 운전자 그리고/또는 방비 살균, UHT 처리, 멸균 포장 등의 자동 기록, 등
 - 처리 편차 기록, 완제품 검사 기록, 저장 기록(저장 폐기, 저장 관리), 청소 및 소독 기록 등
 - 기록의 각 항목들은 처리 시스템 운전자나 지정된 작업자가 특정 처리 시스템 상태나, 작업이 발생하였을 때 기록해야함
 - 모든 기록들은 지정된 작업자가,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확인해야 하며 어떠한 정해진 사항 이외의 관찰된 내용이나 결과들은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고, 그러한 조치들은 기록해야 함
 - 모든 기록들은 참조가 가능한 형태로 기록 되어 있어야 함
 - 상품이 배송되기 이전에, 공장 경영층의 관찰 대표자가 모든 상품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생산되었다는 모든 공정 기록을 검토해야 하며 어떠한 비정상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
 - 가공업자는 유통 업자에게 상품의 저장, 취급 그리고 운송에 관한 서면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취급자에게 상품을 부적절히 취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함
 - 제조업자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나, 손상 또는 잠재적인 건강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처리 편차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식품 환경 위생청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제품의 리콜(긴급) 계획은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양의 완제품도 시장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
- 리콜 계획은 그것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 운영을 해 봐야 하며 식품 환경 위생국은 식품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들에게 식품 리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품 리콜 지침”을 제공함

□ 무균처리 및 포장에 대한 적합성 체크리스트

- 저산성 식품 - 설치
 - 설계와 시설은 식품환경 위생청에서 제시한 라이선스 요구 사항과 조건들을 준수해야 함
 - 표시 장치는 모든 냉장 구역에 설치되어야 함
- 저산성 식품 - 원재료
 - 원재료는 규정을 준수함
 - 원재료는 교차 오염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저장되고 유지되어야 함
- 포장 재료 및 제품 용기
 - 포장 재료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저장되고 처리해야 함
 - 제품 밀봉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제품 살균
 - 예측된 처리 과정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함
 - 모든 중요 요소들에 관해서 충분히 자주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 관찰 그리고 기록해야 함
 - 온도 측정 장치는 살균소독기에 적절히 설치해야 하고, 멸균 공정 동안에 그 과정에서 적정 살균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생산자 소독기는 살균 온도를 기록하는 온도 기록 장치가 구비되어야 함
 - 만약 상품 대 상품 생성기의 살균제품의 압력이 있다면, 그것은 비살균 제품의 압력보다 큼
 - 소독기에 유지튜브가 있다면, 그것은 제품에 예정된 절차에서 지정된 충분한 유지시간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모든 제품 소독기와 상품 접촉면들에 대한 살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해야 함
- 살균 포장
 - 살균 프로그램은 멸균구역을 구축하고 구현되어야 함
 - 살균 프로그램은 포장재질에 대해 준비되고 구현되어야 함
 - 검사 프로그램은 포장 재질과 멸균 구역의 멸균율을 모니터하기 위해 구축하고 구현되어야 함
 - 상품 충전은 사양을 따라야 함
 - 검사 프로그램은 용기의 밀봉상태를 모니터 하도록 설계되고 구현되어야 함
 - 용기는 식별 코드를 표기해야 함
 - 완성된 제품은 오염 및 손상을 막도록 주의 깊게 처리 저장 및 운송되어야 함
- 위생 관리
 - 장비는 공급업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유지되어야 함
 - 모든 일반 위생 관행은 공공건강과 지방자체 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법규를 지켜야 하고, 식품 환경 위생청에서 명시한 라이선스 요구사항과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함
 -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세우고, 구현해야 하며 그 절차는 구체적인 청소 방법 (예를 들어, 수동으로 그리고/또는 CIP)뿐만 아니라 청소 화합물의 모든 주요한 요소들(예를 들어, 유형, 농도, 접촉 시간, 온도 등)을 나타내고 있어야 함
 - 모든 포장 재질과 식품 준비에 사용되는 장비는 생산 전과 후 깨끗이 살균되어야 함
 - 교육 프로그램은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기술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만들어 져야 함
- 품질보장
 - 품질보장 프로그램 구축되어야 함
 - 각 영역에서 추출된 상품 샘플은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해야 함 (예를 들어 미리 정해진 시간/온도의 조합으로 보존)
 - 예정된 절차에 대한 영구 기록들은(준비, 가공, 포장, 보관, 유통, 운송, 교육, 유지 보수 등을 포함) 유지해야 함

- 리콜 계획은 미리 세워야 함
- 리콜을 제안하고 협력하는 인원은 미리 정해 두어야 함
- 리콜 계획은 미리 테스트를 거쳐야 함
- 가공업자는 식품을 취급하는데 있어(준비, 가공, 포장, 저장, 운송 및 유통 포함) 모든 기본적인 위생 활동을 공공건강과 지방자체 조례 법령과 식품 환경 위생청에서 명시한 라이선스 요구사항 및 조건들에 따르도록 해야 함

□ 동물성 식품에 대한 건강 증명서 신청 안내

- 유럽 연합(EU)회원국에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홍콩 수출업자에게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임
- 인증기관 -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식품 및 환경 위생청(FEHD)은 동물, 가금류 또는 어류 성분을 포함한 식품에 대한 보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받았음
 - EU 회원국 수입을 위해 제안된, 다양한 보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지역 수출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식품 및 환경 위생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임
 - “동물성 식품에 대한 보건 증명서”에 대한 신청서를 보내는 것으로 그 증명서가 반드시 발급되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은 보건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EU 위원회의 관련 지침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식품 설비와 생산과정을 확인해야 함
 - 인증 조건 : 해당 사항 없음(수입국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련 조례 : 해당 사항 없음
 - EU 위원회 관련 지침: 어류 제품- 지침 91/493/EEC
육류 제품 - 지침 7/99/EEC 와 92/118/EEC
 - 인증서 효력: 지정 되지 않음(수입 회원국에 따름)
 - 인증서 신청절차
 - a) 보건 증명서 신청서는 아래 주소의 식품및 환경 위생청의 동물보건부문에서 무료로 제공됨
 - * 주소 : 43rd Floor,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b) 신청자 또는 그 대리자는 수의 보건 부문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정의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함 (각 증명서당 HK\$7,165)

c) 신청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함

- (1) 상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 가금류 또는 어류 재료의 정확한 설명
- (2) 포장 및 중량의 상세 설명
- (3) 식별 표시(들)
- (4) 최종 국가
- (5)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 가금류 또는 어류 재료의 원산지
- (6) 수탁자 및 위탁자의 이름과 주소
- (7) 홍콩내의 식품 설비의 이름과 주소
- (8) 출발 예상 날짜, 화물 선박이나 화물의 항공편 번호(해당되는 경우)의 이름 등의 정보

-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윤리에 비추어 보건 인증서에 포함된 신청서 내용을 작성해야 함
- 식품 및 환경 위생국에서 점검 할 때 모든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이고, 신청시 신청서 내에 또는 첨부로 제출해야 함
- 식품의 설비나 제조 공정에 관한 점검은 신청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점검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식품 및 환경 위생국에 제출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인증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음
- 신청자가 식품 및 환경 위생국이 점검한 후 30일 이내, 요구하는 모든 세부 자료와 문서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보건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식품 및 환경위생국이 지정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보건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인증서 비용은 돌려 받을 수 없음
- 만약 점검 후, 식품 및 환경 위생국이 지정한 요구사항이 충족된 경우, 신청자가 모든 문서를 제출하고, 2일 이내에 보건 인증서가 발급됨
- 식품 및 환경 위생국은 이미 최종 국가에 배송되었거나 배송을 위해 이미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만약 보건 인증서에 어떤 세부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제품의 검사 신청을 해서, 식품 및 환경 위생국에서 새로운 사항을 점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청자는 어떤 상품을 수출하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가 바르게 보건 인증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식품 및 환경 위생국은 어떠한 이유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무역이나 협의와 관련된 보건 인증서는 발행하지 않음
- 일의 처리 시간 이외에, 상품의 현장 점검을 준비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신청자는 미리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것이 좋음
- 자세한 문의 : 홍콩 식품 및 환경 위생국 수의 보건과
전화 : 2867 5428 / 팩스 : 2521 8067 / 이메일 : vphadmin@fehd.gov.hk

□ 식품의 잔류 농약 모니터링

- 살충제는 원하지 않는 곤충, 식물, 곰팡이, 설치류 또는 기타 해충을 죽이거나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물질로 살충제, 제초제, 살서제 그리고 곰팡이 방지제 등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농약임
- 살충제 사용은 사람들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식품의 생산과 품질은 농약의 사용을 통해 개선되고 있음
- 질병을 옮기는 해충을 관리하는 것은 사람들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살충제의 사용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어떤 살충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영구적으로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어 플랑크톤이나 벌레, 새, 물고기, 동물 그리고 결국엔 사람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어떤 살충제는 상당한 양을 섭취한 경우에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함
- 살충제의 남용은 식중독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며, 가끔씩 발생하는 농약에 오염된 야채를 섭취해서 생긴 식중독이 가장 전형적인 예임
- 농수산 보존국은 살충제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살충제 조례 Cap. 133를 제정하여, 조례에 따라 홍콩에서 사용이 허가된 등록된 살충제 목록을 매년 공보에 게시함, 이 목록은 농수산 보존국을 통해 참조할 수 있음

□ 식품 내 잔류 농약 허용기준 내용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CFS)에서는 홍콩의 식품 잔류 농약 “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Cap. 132CM) 관련 지난 2012년 6월에 초안을 마련하여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
- '11년 CODEX에서 권장하는 표준을 주요 기반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 수출하는 기타주요 국가의 기준을 추가 보충하여 총 584개 농식품 중 360종류의

농약에 대해 7,083개 항목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78개의 제외대상농약류 별도 규정)

- 관련 법규의 경우 적용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외대상 및 허용기준의 경우 점차적인 조정 및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시 최고 레벨 5의 벌금(5만 홍콩달러) 및 6개월의 구금형 부과

□ 미등록 농약 검출 시 제재 여부 및 처리 방안

- 미등록 농약 검출 시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이 인체에 위험하지 않거나 유해하지 않을 경우 수입 혹은 판매 가능하며 위험 및 유해성 여부는 식품환경위생부의 위해성 평가로 결정함
 - * 현지 식품섭취 양상 및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치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며 위해성 평가의 경우 소요시간은 각 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짐
- 미등록 농약 검출 이후 추가 진행된 위해성 평가를 통해 그 위해성이 판단된 식품의 경우 판매 불가하며 전량 리콜조치 실시 및 관련 수입상에 잔류농약허용 기준 초과와 동일한기준의 벌금형 및 구금형 부과 가능(벌금 5만 홍콩달러 및 6개월의 구금형)

※ 자세한 내용 문의

- 홍콩 식품 안전센터 - "Communication Resource Unit"으로 연락
- 전화 : 852) 2381 6096

※ 식품 잔류농약 허용기준 가이드라인

http://www.cfs.gov.hk/english/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21_Pestici-de.html

※ 홍콩 관보 홈페이지 - 잔류농약 규제법규

<http://www.gld.gov.hk/egazette/english/gazette/disclaimer.php>

※ 살충제 관련 법령 : Chapter 133

http://www.legislation.gov.hk/blis_ind.nsf/WebView?OpenAgent&vwpg=CurAllEngDoc*1

□ 식품 미생물 가이드라인 개정안

- 홍콩식품안전센터(CFS) 2014년 8월 14일부로 식품미생물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효. 금번 개정안은 '07년 발표된 즉석식품에 대한 미생물가이드라인 및 추가정보를 대체하는 것으로 가장 최근의 가이드라인과 영국 보건보호대행사에

서 발표한 “시장 진열 즉석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평가 가이드라인 (UK HPA 가이드라인)” 및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식품 미생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완료됨

- 주요 수정내용
 - 일반 즉석식품 관련 미생물 함량 기준(호기성 균락 산출, 위생표시기 유기체, 특정식품매개 병원균)
 - 유아, 어린이 및 의학적 목적을 위한 가루제품과 즉석 향신료 가루제품 및 직접 섭취하는 날 것의 쌍각류 조개 관련 미생물 함량 기준;
 - 천연 자연광천수 관련 미생물 함량 기준
- 미생물 함량 수준에 관한 명명법과 분류가 개정되었으며, 즉석식품의 경우에는 미생물 함량 수준에 따라 안전, 우려, 위험으로 분류되고 우려와 위험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예정

□ 식품 검역관련 주요 내용

- 식품관련 수입시에는 공공건강을 이유로 별도의 요구사항을 두고 있음. 특히 우유(milk), 유제품(milk products), 냉동 과자류(frozen confection), 엽수류, 육류 및 가금류(game, meat and poultry)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 특히 엽수류(사냥한 짐승새 등의 고기류)는 식품환경위생국에 의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육류 및 가금류도 해당 부서에 의해서 원산지 등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
- 식품관련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건강관련 당국에 의해 발급된 위생검역 관련 증서를 제공해야 함
- 과일 및 채소의 샘플은 살충제 잔여 테스트를 위해서 홍콩의 “Man Kam To Food Control Office”에 의해 검역되며, 가축의 수입시에는 동일한 “Man Kam To”, 도매시장 및 도살장에서 검역되고 있음
- 특히 수입된 엽수류, 육류, 가금류와 관련해서는 원산지와 관련한 식품 당국(food authority)에 의해 발급된 공식 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또는 식품환경위생국(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에 의해 수여된 사전 서면 허가증(prior written permission)이 있어야 수입 가능

다. 자료 출처

- 홍콩 관세청 : http://www.customs.gov.hk/eng/major_declaration_e.html
 - 수출입 통관, 라이선스 발급 안내 등
- 홍콩 식품안전청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fc.html
 - 수입식품 검역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등
- 주요 품목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 냉동 과자류(the frozen confections)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3.html
 - 육류 등(game, meat, poultry)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
 - 유제품 등(milk, milk beverage)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5.html
- 관련사항 문의처
 - 담당부서 : 위생 검역관 수출입 등록부
 (Health Inspector Import/Export Registration)
 - 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연락처 및 팩스 : (852) 2156 3041 / (852) 2521 4784
 - 담당자 이메일 : (852) 2156 3041 / (852) 2521 4784
-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강화 (Trade Description Ordinance)
 - 홍콩 관세청은 자국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광고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품설명 관련 법안(Trade Description Ordinance)을 개정
 - 법무부 통과: 2012년 7월 17일, 발효: 2013년 7월 19일
 - 본 법안의 위법사항은 크게 5가지임
 - 허위설명 기재, 혼동을 주는 생략, 강압적인 판매 행위, 허위 광고 및 예기치 않은 변경, 부당하게 이윤을 챙기는 행위
 - 최근 홍콩 시장에 한국 식품이나 화장품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본 법령 개정에 대응하지 못해 리콜조치나 과징금을 무는 사례가 발생

- 홍콩 정부가 광고 게재 시 단속하기보다는 광고 배포 이후에 무작위로 뽑아 단속하기 때문에 허위/과장으로 판명되는 광고를 할 경우 광고 비용 손해를 볼 수 있음 (광고 회수, 벌금 조치 등)

* (예) 10년 연속 한국 판매 1위라고 광고하였으나 적절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위법으로 단속 당함

□ 브롬화식물성기름(BVO)포함 식품, 홍콩 내 판매 불가

- 홍콩식품안전센터에서는 브롬화식물성기름(BVO)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실험결과에 따라 BVO가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함을 발표
- 식품첨가물전문가 위원회(JEFCA)에서는 수크로오스 아세트산염 아이소부티레이트(INS번호 “444”)와 우드로진의 글리세롤 에스테르(INS번호 “445(iii)”)와 같은 성분을 안전성이 확인된 BVO의 대체재로 평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JEFCA의 연구 결과에 따라 BVO 첨가 식품 판매금지를 2005년에 발표, 식품안전수출위원회에서도 2014년 6월 초 회의에서 이에 동의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14년 5월과 6월 북아메리카로부터 수입된 25개의 음료 샘플을 수집하여 실험한 결과, 1개 제품이 0.9ppm수준의 BVO를 함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제품 판매 금지 조치 취하였음

□ 참고 사이트 안내

홍콩 식품안전청	http://www.cfs.gov.hk
홍콩 식품환경위생국	http://www.fehd.gov.hk
홍콩 무역 산업국	http://www.tid.gov.hk
홍콩 무역협회	http://bso.hktdc.com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	http://www.customs.gov.hk/
홍콩 정부 물류통관	https://www.rocars.gov.hk
홍콩 농수산 협회	http://www.afcd.gov.hk
UN 식량 농업기구(FAO)	http://www.fao.org/
미국 농업부(USDA)웹사이트	http://www.ars.usda.gov
홍콩식품안전청 - 냉동과자류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3.html
홍콩식품안전청 - 육류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
홍콩식품안전청 - 유제품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5.html
위생검역관 수출입 등록부	Health Inspector Import/ExportRegistration

일 본 <<<

2015 주재국 농업전망

- I. 국가개황
- II. 경제동향
- III.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 IV. 관세 및 검역제도



I

국가개황

1. 일반사항

- 공식국명 : 日本(J A P A N), 수도 : 도쿄 (東京, T O K Y O)
- 면 적 : 377,829km²(한반도 면적의 1.7배)
- 위 치 : 북위 45° 33' 에서 20° 25' 사이에 위치(4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
- 기 후 : 4계절 뚜렷, 해양성 온대기후(남-북3,300km, 지역별 기후 차이 심함)
- 인 구 : 1억 2689만 명 (2015년 8월 총무성 통계국 기준)
- 주요도시 : 도쿄(902만 명), 요코하마(371), 오사카(267), 나고야(225), 삿포로(193), 교토(142), 후쿠오카(147), 히로시마(119)
- 인 종 : 몽고족(아마토족) 99%이상, 기타 재일교포 및 아이누족 등 1% 미만
- 종 교 : 신도 49.4%, 불교 44.7%, 기독교 0.8%

2. 경제 지표

- GDP : 529.9조 엔('14)
- 1인당 GDP : 3796천 엔('13) (2.0%)
- 실질GDP성장률 : △0.9%
- 무역규모 :
 - 수 출 입 : ('13)1조 6066억 불 → ('14) 1조5437
 - 수 출 : ('13)7420억 불 → ('14) 7076(△4.4%)
 - 수 입 : ('13)8646억 불 → ('14)8341 (△3.5%)
 - 무역수지 : ('13) △1226억 불 → ('14) △1245
 - * '14년 금액은 연평균환율로 환산(103엔/\$)
- 농수산물 :
 - 수 출 : ('13)5856백만 불 → ('14)5939 (1.4%)
 - 수 입 : ('13) 95246백만 불 → ('14)89717 (△5.80%)
 - 환산환율 : ('13) ¥94/\$ → ('14) 103 (9.6%%엔저)
- 외환보유액 : 1조 2605억 달러('14.12)

II

경제동향

1. 환율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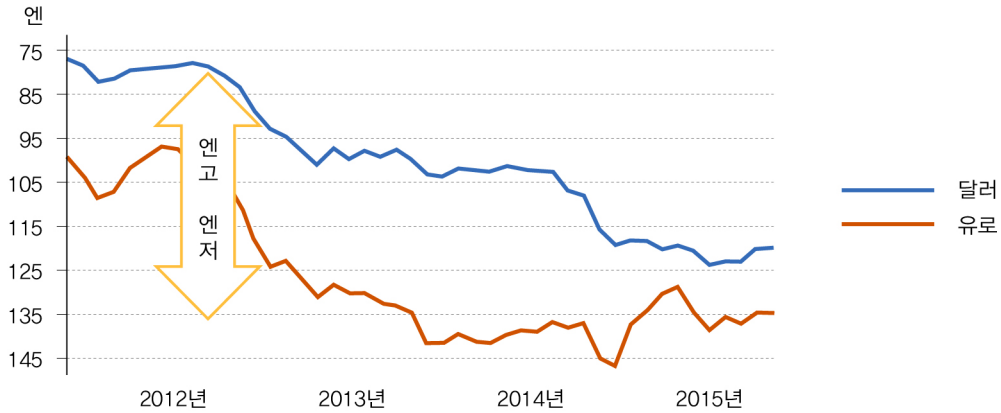
□ 엔화 환율 현황과 일본 정부의 대응방향

- 2008년 8월 미국발 리만브라더스 사태 영향으로 인한 환율 급상승 이후, 2011년 3월 동북대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엔화자금 확보를 예상한 투기자본의 엔화매입으로 재차 환율 급상승
 -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된 일본엔화로 의 자본이 이동함에 따라 유로화 대비 엔화 환율까지 급상승
-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 기금 증액, 중장기 물가안정 목표 도입 등의 조치 이후 83.96엔(3.21)까지 상승하였다가 유럽 재정문제 등이 다시 부각되어 5월 이후 70엔대 후반으로 하락
- 실질 실효환율은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괴리 폭 확대
 - 2013년 8월 이후로는 80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과거 최고치(95년 4월 149.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1.46 수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내각부는 <월례경제보고 등에 관한 각료회의자료(2015년 10월 14일)>에서 다음과 같이 현황분석¹⁾
 - 현재 경기는 조금 좋지 않으나 서서히 회복추세, 소비자물가도 상승
 - 고용·소득 환경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각종 정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함. 다만, 미국의 금융정책이 정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본의 경기가 하락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금융 자본시장의 변동이 장기화 될 경우의 영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기본입장) 정부는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복구를 서둘러 추진함과 동시에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확실히 탈피하고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실현하여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 「『일본재흥전략』 개

1) 내각부 홈페이지 www5.cao.go.jp/keizai3/getsusurei/2015/10kaigi.pdf

정2015」, 「규제개혁실시계획」 및 「거리·사람·사업창조기본방침 2015」를 착실하게 실행

[그림 1] 엔/달러 및 엔/유로 환율 추이



* 자료 : Principal Global Indicators(2015.10)

[그림 2] 실질 실효환율 지수 추이



* 자료: 일본은행(2015.10)

- 정부는 기업수익, 좋은 노사관계 등을 통해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임대료 상승·고용환경의 개선, 지역의 중소·소규모사업자를 포함한 좋은 경제 환경 확산을 실현. 그리고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과제에 한해서는 그 누구라도 활약할 수 있는 「1억 총활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긴급하게 실행해야 할 대책을 수립. 더구나 TPP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경제재생 및 지역부흥과 직결되기 때문에 「TPP 종합대책본부」에서 「종합적인 TPP관련 정책(가칭)」을 마련
- 정부는 일본은행에서 경제·물가상황을 고려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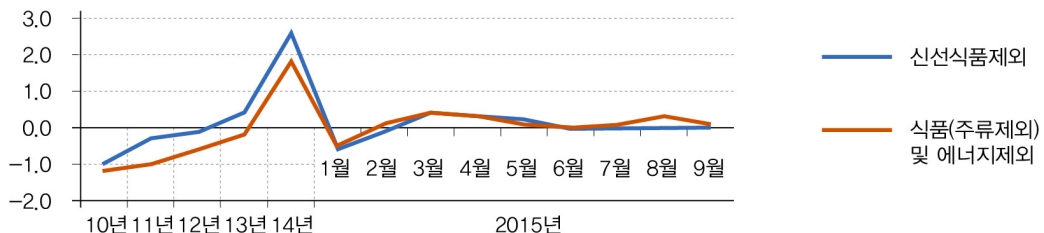
□ 일본은행 전망²⁾

- 시장금융에서 중국을 시작으로 신흥국의 감속이며 미국의 이자 인상 시기 등을 보면 조금 상하 변동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2015년 10월부터의 미국의 고용통계를 보면 예상 보다 실적이 떨어지면서 FRB(미국 중앙은행 상응한 Federal Reserve Board)의 조기 이자 인상관측이 조금 지연된 영향도 있어 그나마 리스크를 다소 회피
- 일본은행에서는 향후 금융환경의 완화를 통하여 민간수요를 폭넓게 촉진하고 경기회복에 힘쓸 것을 약속했으나 금융제도의 완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의문을 갖는 전문가가 다수 존재³⁾
 - 대표적으로, 일본종합연구소는 2015년 11월 17일자 경제·정책리포트에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재정재건이 필요하지 금융완화로는 한계가 있다”고 함
- 일본은행에서 「양적·질적 금융완화(QQE)」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일본은 재정위기,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국민이나 기업에 커다란 부담을 강요하는 「비 연속적 채무조율」 국면에 조금씩 빠져 들어갈 우려가 있음

□ 소비자 물가에 대한 환율상승의 영향

- 2014년 4월부터 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급증
- 엔고현상으로 심화하던 하락추세는 회복 중
- 식품(주류 제외)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는 다소 상승, 신선식품 제외는 기본 안정
- 물가전망 : 소비세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제외한 물가는 1~2% 정도 상승⁴⁾

[그림 3] 소비자물가 증감률(전년동기비) 추이



* 자료: 총무성 통계국(2015.9)

2) 내각부 홈페이지 www5.cao.go.jp/keizai3/getsusurei/2015/10gijiyoshi.pdf

3) 일본종합연구소 홈페이지 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other/pdf/8525.pdf

4) 일본은행 www.boj.or.jp/mopo/outlook/gor1510b.pdf

□ 무역에 대한 엔화환율 상승의 영향

-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엔화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은 확대될 전망
 - 가격 면에서 엔화환율 상승은 특히 기계산업 분야의 환차손 확대
 - 원재료 수입비율이 높은 소재산업 분야 등 비 제조업분야의 환차익 확대
 - 국제시장의 인플레이션은 향후 일본경제에서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임

〈표 1〉 엔화가치 상승이 기업수익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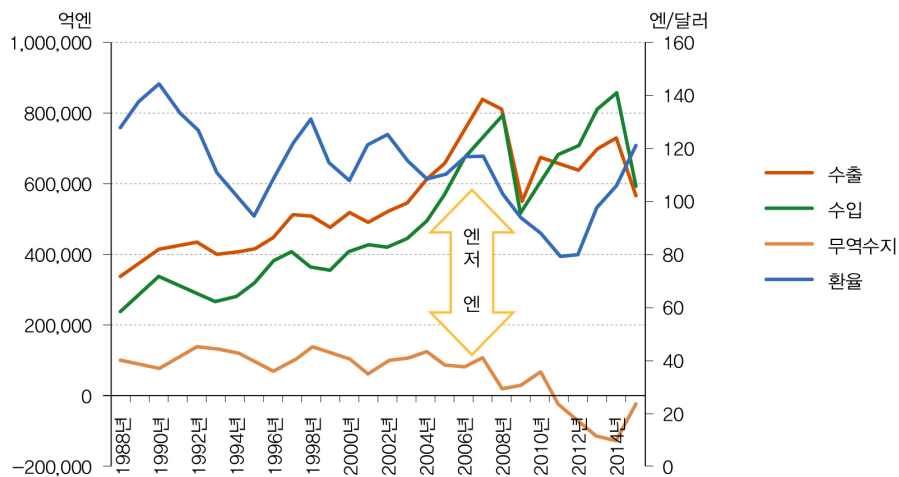
(단위: 천억 엔)

엔화기준	제조업			
		가공업종		소재업종
		기계	기계이외	
80엔/달러	0.1	-0.5	0.2	0.7
75엔/달러	0.3	-3.7	1.1	3.2
70엔/달러	0.6	-6.8	1.9	5.8
65엔/달러	0.9	-9.9	2.7	8.3
60엔/달러	1.1	-13.0	3.5	10.9

* 자료: 재무성, 일본은행, 총무성 등을 바탕으로 일본종합연구소 작성

- 엔화환율 상승은 수출 감소·수입증가로 이어져 무역수지 악화
 - 엔고로 일본의 무역수지는 2011년부터 연속적으로 적자 추세이며, 2014년에는 최근 30년동안 최대 적자인 약 13조 엔 기록했으며 2015년 9월 누계 기준으로 약 3조 엔 적자

[그림 4] 무역수지 환율 등



* 자료 : 일본재무성무역통계, 일본은행을 참조로 작성

- 2008년 리만사태 이후 환율상승으로 실질 무역수지가 악화
- 유럽 금융위기와 지진피해 등으로 무역수지 악화상태 지속
 - 동북지역, 태국지역홍수 등의 영향으로 부품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도 한 요인임

2. 경기 동향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및 전망⁵⁾

- 해외경기 감속, 재고조율 등이 부담인 한편, 자율 확대메커니즘은 유지
 - 당분간은
 - 1) 재고조율과 더불어 생산억제
 - 2) 중국의 경기침체로 재수출이 하락
 - 3) 주가하락으로 인한 마인드 악화로 소비, 설비투자 억제가 부담
 - 4) 가) 양호한 투자환경을 유지 나) 건전한 기업수익과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소득고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등 경기의 자율확대에 큰 변화 없음

〈표 2〉 일본경제, 물가전망(1)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1-3	4-6	7-9	10-12	1-3	4-6	7-9	10-12	1-3
	실측		예측						
실질GDP	4.5	-1.2	0.6	0.5	1.5	0.2	1.3	1.3	2.5
개인소비	1.5	-3	1.5	0.8	2.1	-0.3	0.8	1.4	5.9
주택투자	7.0	8.0	3.0	3.0	3.0	2.8	2.8	4.2	5.5
설비투자	11.0	-4	0.0	1.4	1.9	2.8	3.3	3.5	3.9
재고투자 (기여도)	(2.2)	(1.1)	(-1.0)	(-0.4)	(0.0)	(0.0)	(0.5)	(0.2)	(-0.8)
정부소비	1.1	2.0	0.2	0.4	0.4	0.5	0.6	0.6	0.6
공공투자	-5.3	8.9	-4.6	-0.9	-0.4	0.0	-1.0	-1.2	-1.5
순수출 (기여도)	(-0.3)	-1.1	(0.4)	(-0.2)	(-0.4)	(-0.3)	(-0.7)	(-0.7)	(-1.3)
수출	6.7	-16.6	7.8	2.5	2.5	3.0	3.0	3.1	3.1
수입	7.3	-10	7.0	3.6	4.5	4.8	5.8	5.9	8.7

* 자료: 일본종합연구소 〈일본경제전망(2015.11)〉

5) 일본종합연구소 일본경제전망 2015년 11월

- 그래서 2016년 이후는 재고조율이 한 차례 순환됨에 따라 경기는 건전하게 회복될 것
- 또한, 2016년 말기에는 2017년 4월의 소비세 증세 전에 소비하려는 수요가 있어 경기회복을 떠받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을 포함한 해외경제 침체에 따라 수출 기대치가 낮고, 물가의 재상승으로 실질소득도 늘지 않는 한편, 경제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공공투자로 전체적인 경기회복은 완만하게 성장할 전망
- 물가는 내수의 회복이나 엔저에 따라 차츰 상승
 - 소비자물가는 현재 원유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변동되는 만큼 크게 오를 경향은 아님
 - 저가원유의 영향으로 내수가 회복됨에 따라 물가는 한층 더 상승할 것

〈표 3〉 일본경제, 물가전망(2)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1-3	4-6	7-9	10-12	1-3	4-6	7-9	10-12	1-3
	실측		예측						
명목GDP	2.6	2.3	3.2	2.5	0.8	1.0	1.3	1.5	2.2
GDP디플레이트	3.5	1.5	1.9	1.6	0.3	0.2	0.4	0.4	0.8
소비자물가 (신선제외)	2.1	0.1	-0.1	0.2	0.7	1.0	1.2	1.3	1.4
완전실업률	3.5	3.3	3.4	3.3	3.3	3.3	3.3	3.2	3.2
엔/달러 환율	119	121	122	121	122	122	122	122	122
원유수입가격 (달러/배럴)	56	60	58	52	62	64	66	68	70

* 자료: 일본종합연구소 〈일본경제전망(2015.11)〉

□ 수출 경쟁력 검증⁶⁾

- 수출 수량변동의 요인 분석
 - 2012년 말부터 엔저로 인해 2014년 전반까지는 수출수량이 늘지 않음
 - 그 원인으로는 아래와 같음

6) 자료: 「2015년 통상백서」 (2015년 7월)

- 1) 신흥국의 수요가 늘지 않음
- 2) 환율동향에 따라 기업이 수출가격을 인하하지 않음
- 3) 해외 생산 확대

◦ 수출품목 분석

- 세계 수요증가분에 대한 상위국을 살펴보면, 중국, 미국에 이어 수출비중이 일본보다 낮은 영국이 오히려 높음
- 대 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과 독일을 비교하면, 독일은 주요 분야 전체에서 양을 늘림과 동시에 단가도 높이는 품목의 비중이 큼
-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수요에 대응하는 품목도 있으나, 타국에 비해 수요를 획득하는 비율이 작음. 고부가가치화와 수량증가를 동시에 전개하지 못함

〈표 4〉 대중국수출동향(수량, 단가) 비교(2014년)

(단위: %)

대중국수출 (주요8업종)	수량 증가 품목 세어	일본					독일					
		내역(수량증가)				단가 상승 품목 세어	수량 증가 품목 세어	내역(수량증가)				단가 상승 품목 세어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단가 ++	단가 +	단가 ±	단가 ▲			단가 ++	단가 +	단가 ±	단가 ▲	
화학 · 플라스틱	58.9	3.7	37.3	13.7	4.2	72.3	81.4	17.8	29.8	18.3	15.5	60.2
섬유 · 의류	36.3	3.2	12.2	12.1	8.8	47.8	76.5	7.8	30.3	13.4	25.0	55.7
강철 · 강철제품	60.1	0.6	15.2	29.9	14.5	34.7	78.8	1.8	27.4	14.0	35.6	36.4
비철금속	23.6	0.0	3.0	10.7	9.8	31.3	44.7	2.1	28.1	6.6	8.0	75.9
일반기계	48.3	2.1	12.4	8.0	25.8	49.5	70.5	2.4	24.3	7.7	36.0	40.6
전기기계	50.3	4.3	6.3	14.0	25.6	33.1	77.9	4.3	28.0	11.2	34.5	43.1
정밀기계	41.9	8.4	8.4	4.2	20.8	35.1	84.4	3.5	22.5	16.3	42.1	37.8
운송용기계	56.2	1.1	48.5	0.8	5.8	83.8	79.8	0.7	52.2	14.1	12.8	69.0

* 비교1 : 일본단가상승품목의 비중의 하한선은 독일보다 수치가 큼

비교2 : 강철·강철제품, 비철금속은 쓰레기를 포함하지 않음. 운송용주요부품은 운송용기기에 포함 일반기계에 포함하지 않음

* 자료 : 〈2015년통상백서〉2015.7

□ 외국인 일본 방문 확대 검증

- 2014년 방일외국인은 역대최고기록 약 1,340만 명임

- 2014년 방일외국인의 소비금액도 역대최고. 지역별 소비금액도 모든 지역에서 플러스

〈표 5〉 지역별외국인여행객의 지출금액추정치(억 엔)

년	전국										
	계	홋카이도	도우호쿠	간토	후쿠리쿠	중부	긴키	츄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
2011	5,782	384	63	2,899	214	377	1,189	106	26	397	127
2012	7,693	408	76	3,730	212	478	2,067	160	41	361	160
2013	9,827	556	99	4,734	349	645	2,556	168	52	420	248
2014	13,903	796	133	7,336	366	833	3,023	210	67	716	424

* 자료: 「2015년 통상백서」(2015년 7월)

□ 해외 기업 유치 검증

- WEF(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일본의 국제경쟁력순위는 반전하여 상승. 한층 더 사업환경정비가 필요
- 기술 집중, 인재, 구매력 높은 소비자 층 등은 높게 평가되지만, 적극성이나 언어(영어) 등에 문제가 있음

□ 해외로부터의 돈을 버는 힘 검증

- 통계개별표분석
 - 일본 해외현지법인의 일본으로의 지불액(배당, 로열티)이 증가
 - 일본 해외현지법인의 일본으로의 지불하는 배당금액은 중국이 미국에 필적하는 수준
 - 이익률(전체기업의 합계금액기준)은 대체로 신흥국이 높음
 - 중국에 있는 일본기업의 배당(흑자기업만 수집한 순이익에 차지하는 배당비율)은 미국을 넘는 수준. 다만 인건비상승이나 과잉설비문제 등으로 중국 비즈니스는 주의 필요
- 글로벌 기업의 돈 버는 방법을 외국과 비교
 - 2006년부터 2013년 추이를 보면 일본계 글로벌 기업은 매출성장률, 영업 이익성장률, 매출영업이익률 등에서 다른 나라 글로벌 기업보다 열등함
 - 일본기업의 홈 시장인 아시아-대양주지역시장의 매출 성장이 다른 나라보다

낮고, 남북미,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 등 시장에서 해외 글로벌 기업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음

- 다국적 기업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의 다각화기업은 총체적으로 성장성, 수익성이 낮음

그리고 저 수익 부문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임

3. 무역정책

□ 일본 통상정책

◦ 기본인식

- 중장기적으로 일본지위가 하락하고 아시아가 성장
- 아시아 국가 중간계층은 향후 10년간 10억인 증가 예상. 2020년에는 아시아 개인소비 규모는 일본의 4.5배로 유럽을 초과하여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 예상
- 수출 중 APEC(아시아태평양협력체) 참가국·지역에 약 76%(TPP협상참가국은 27%)
- 해외직접투자잔고(약 75조엔)의 60%는 APEC(아시아태평양협력) 참가국·지역에(TPP협상참가국은 40%)⁷⁾

◦ 경제연대협정(EPA)

- 2015년 6월 현재 13개국 1지역과 EPA발효
- 일본의 EPA 체결 비율은 22.6%(한국 39.9%, 중국 28.5% 미국 39.8%, EU 29.3%) 협상 중까지 포함하면 84.4%(중국 53.0%, 한국 82.9%)
- TPP, 일본EU EPA, RCEP(동아세아지역 포괄적 경제연대) 협정, 한중일 FTA 등 협상 중
- 정부는 2018년까지 EPA 체결 비율을 70%(2012년 18.9%, 2015년 호주와의 EPA포함 22.6%)를 목표로⁸⁾ 잡고 있음

◦ 국제전략

- 2020년까지 외국기업 대 일본직접투자잔고 35조 엔으로 배증(2012년 17.8조엔) 국가전략을 구체화하고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설립⁹⁾

7) 경제산업성 <TPP협정협상에 한하여>(2013년 6월)

8) 경제산업성 <일본과 호주EPA개요>(2014년 12월)

〈표 6〉 광역FTA구상이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위치(2009년~)

(단위: %)

구분		ASEAN+3	ASEAN+6	APEC (FTAAP)	TPP (P9)
세계 인구 대비 구성비	67.3억 명	31.2	49.2	40.4	7.4
세계 경제 대비 구성비	57.8조 달러	21.4	25.6	55.1	27.7
일본과의 무역액(수출입)	1조1,323억 달러	38.9	45.9	70.8	25.2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 잔액	7,404억 달러	19.4	25.3	59.8	40.6

* 주1 : ASEAN+3 : ASEAN, 일본, 중국, 한국

ASEAN+6 : ASEAN,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APEC(FTAAP)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환태평양전략경제연계협정(TPP) :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뉴질랜드,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주2 : 세계경제는 세계의 명목GDP(시장환율환산 달러기준)

주3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잔고 중 TPP는 통계제약을 이유로 미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6개국 합계이며, APEC는 브루나이, 칠레, 파푸아뉴기니아, 페루 제외

주4 : 세계인구는 180개국 합계

* 자료 : 내각부, 농림수산성

□ 일본정부의 금융정책 기본방향

- 일본은행은 2013년 4월에 소비자물가의 전년비 상승률 2%(물가안정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한「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도입

「양적·질적 금융완화」는 중앙은행에서 창구를 통하여 시중에 공급하는 현금인본원통화(Monetary Base) 및 장기국채·ETF(상장투자신탁)의 보유액을 2년간 2배로 확대하고 장기국채매입의 평균잔존기간을 2배 이상 연장하는 등 양·질적 차원에서 다른 금융 완화를 실시

- 「양적·질적 금융완화」 내용¹⁰⁾

1. 본원통화컨트론키의 채용

량적 금융완화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금융시장조절의 목표를 무담보 콜금리(call rate)로부터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금융시장조절방침은 「본원통화가 연간 약 60조~70조 엔에 상당하는 기준으로 증가하도록 금융시장조절을 시행한다.」임

9) 수상관저 홈페이지, 「일본재생전략」 개정, 2014

10) 일본은행 홈페이지 www.boj.or.jp/mopo/outline/qqe.htm

2. 장기국채매입확대와 기한의 장기화

수익률 곡선(yield curve) 전체의 금리저하를 촉진하기 위한 관점에서 장기 국채의 보유잔고가 연간 약 50조 엔에 상당하는 기준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매입한다. 또한 장기국채의 매입대상을 40년 국채를 포함한 전 국채로 하고 매입평균잔존기간을 3년으로부터 국채 발행잔고의 평균수준의 7년 정도로 연장

3. ETF, J-REIT의 매입 확대

자산가치를 높이는 관점에서 ETF 및 J-REIT(투자신탁의 일종, 여러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오피스빌딩이나 상업시설, 맨션 등 복수의 부동산등을 구입하여 그 임대수입이나 매매수입분배하는 상품)의 보유 잔고가 각각 연간 약 1조 엔 과 약 300억 엔의 수준까지 증가하도록 매입

4. 「양적·질적 금융완화」의 지속

일본은행은 2% 「물가안정목표」의 실현을 위해, 또한 이것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시점에서 「양적·질적금융완화」를 지속한다. 그때 경제·물가상황에 한하여 상하 쌍방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율을 시행

◦ 물가안정목표로부터 두 가지 큰 축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금융정책운영방법을 정리

- 제 1의 축 : 일본경제는 2016년 후반에 2%정도의 물가상승률을 실현하고 이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경로에 이행할 가능성이 높음
- 제 2의 축 :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관점에서, 금융정책운영의 중요시 해야 할 리스크를 점검

4. 일본 경제정책의 기본시점과 방향

가. 「일본재생전략」(약칭-전략) 개정 2014(2014.6.24. 각의결정)¹¹⁾

□ <(전략의) 최대 포인트는 기업경영자며 국민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를 믿으며, 적극적으로 도전하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시행하는데 있다.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

11) 수상관저 홈페이지 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honbun2JP.pdf

이나 개인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구비하여도, 경영자가 돈 버는 힘을 키우고 대담하게 사업 재편이나 신규 사업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일본경제의 진정한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없다.>

<경영자를 시작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활력 있는 일본의 부활에 위해 도전적인 마음가짐을 회복하고 나라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비지너스 환경을 정비한다. 이것이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한 경제의 선순환을 확대시켜 「재생의 10년」(2013~ 2022년도)의 GDP평균으로 명목 3%, 실질 2% 정도로 성장시키는 것이 첫 걸음이다.>

□ 전략은 3가지 계획으로 구성

① 일본산업 재생계획

- 긴급구조개혁 프로그램
 - 3년간 리만브라더스 쇼크 전의 설비투자수준(70조엔/년)회복(2012년도 66.9조엔)
 - 개업률이 폐업률을 넘는 상태로
- 고용제도 개혁·인재력 강화
 -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은
향후 5년간 20% 삭감(2012년 151만인, 2013년 142만 명)
 - 전직입직률(* 파트타이머 제외)
향후 5년간에 9%(2011년 7.4%, 2012년 7.7%)
 - 여성활약 추진
2020년에 여성 취업률(25~44세)을 73%로(2013년도 69.5%)
2020년 여성 관리직 비율 30%로(2013년 7.5%)
 - 젊은이 어른이 등 활약추진
2020년 젊은이(20~34) 취업률 78%(2013년 75%)
2020년 어른(60~64) 취업률 65%(2013년 59%)
2020년 장애인 실 고용률 2.0%(2013년 1.76%)
 - 대학개혁/글로벌화 등에 대응하는 인재력 강화
-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 추진/세계최고의 지식재산권으로 입국
 - 기술력 세계 순위를 5년 이내에 세계1위로(2012~2013년 제5위)
 - 특허의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2015년 도중에 36개월 이내로(2013년 92.4%)

- 세계최고수준의 IT사회를 실현
 - 2015년도 중 공공데이터공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실현
- 입지경쟁력을 한층 강화
 - 2020년까지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순위를 선진국 3위 이내(2013년 15위)
 - 2020년까지 세계도시 종합순위를 동경이 3위 이내에(2012년 4위)
 - 향후 10년간(13~22년)에 PPP/PFI사업 규모를 12조 엔으로 확대(2012년 까지 4.1조)
 - 2020년까지 외국기업의 대내 직접투자 잔고 35조 엔으로 배증(2013년 18.0조)
- 금융·자본시장의 활성화, 공적·준공적자금의 운용 등
 - 위(입지경쟁력을 한층 강화)목표와 같음
- 환경·에너지제약의 극복
 - 2020년을 목표로 전력시스템개혁을 완료
 - 1500도급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2020년대 실용화를 목표로
(지역활성화·지역구조개혁의 실현/중견기업·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혁신)
 - 2020년까지 흑자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를 70만 사에서 140만 사로 확대

② 전략시장창조계획

-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림
 - 2020년까지 국민건강수명을 1세 이상 늘림(2010년 남 70.42세, 여 73.62세)
 - 2020년까지 메타볼릭(대사증후군) 인구를 2008년도 대비 25% 삭감(2008년도 1,400만 명)
 - 2020년까지 건강검진률(40~74세)을 80%로(2010년 67.7%)
- 그린·경제적인 에너지 수급 실현
 - (부체식양상풍차,浮體式洋上風車) 2018년까지 처음으로 상업화
 - (축전기) 2020년에 세계시장의 50% 획득(2013년 약 10% 추정)
 - (스마트미터) 2020년 대조기에 일반가정을 포함 스마트미터화
 - (차세대자동차)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율 50~70% 목표(12년 21.2%)
- 안전·편리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인프라 구축
 - 2030년에는 일본 내 중요한 인프라 및 노후화 인프라는 모두 센서, 로봇 등을 활용한 고도의 효율적 점검·수리를 실행

- 2030년에는 안전운전 지원 장치·시스템이 일본 내 판매차 전체를 정비, 재고 기준으로 거의 전차에 보급
- 세계를 매혹하는 고품질 농식품을 생산하는 지역 농어촌 사회
 - 2020년까지 전 농지면적의 80%를 지역 담당자가 이용(2010년 49%)
 - 2020년까지 산업계의 노력도 반영하여 담당자의 쌀 생산 비용을 현재 전국평균의 40%로 삭감(2012년 전국평균 쌀 생산 코스트는 15,957엔/60kg)
 - 2020년까지 법인 경영체수를 2010년에 비해 약 4배인 5만 법인으로(2013년 1만4,600법인)
 - 6차산업화 시장 규모를 현재의 1조 엔에서 2020년의 10조 엔으로
 - 2020년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 1조 엔 목표(2013년 5,505억 엔)
 - 2030년에는 방일관광객 3,000만 명 목표(2013년 1,036만 명)

③ 국제 전략

- 2018년까지 FTA비율 70% 목표(2012년 18.9%)
- 2020년까지 외국기업 대내 직접투자잔고를 35조 엔으로
- 2020년까지 중견·중소기업 등의 수출액을 2010년의 두 배로
- 2020년에 30조엔의 인프라 시스템 주문을 실현(2013년 9.3조 엔)
- 2018년도까지 방송콘텐츠 관련 해외시장 매출을 2010년도 대비 약 3배로(2010년도 62.5억 엔)

나. 「일억총활약」 사회

□ 신아베노믹스

아베신조총리는(2015.10.7) 제3차 아베내각이 조각 새로운 3가지 내용을 담은(新·三本矢)목표를 발표

- 목표 2020년까지 GDP 600조 엔, 희망출생율 1.8명, 고령가족 등 간호로 인한 이직 제로
- 내각조각에는 「일억총활약」 대신(장관)을 신설
- 15.10.15 일억총활약추진실 신설
- 15.10.19 제 1회 「일억총활약사회」 만들기에 관한 관계부처회의 개최

◦ 15.11.12 제 2회까지 개최된 상황

□ 「일억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한 긴급 제언-자유민주당¹²⁾

자민당은 집권 3년 가까이 하면서 어베노믹스의 「3개 화살」이라는 정책을 실시. 아베정권 제3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신 3개 화살」을 제창. 목표로는 「일억총활약 사회」를 만드는 것임. 즉 50년 후에도 1억인을 유지하고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 지역에서 삶이 가치를 갖고 충실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함. 자민당은 2015년 10월 7일 아베정권 제 3기 내각이 구성되면서 처음으로 일억총활약 장관을 임명하고, 10월 23일 당내에 일억총활약 추진본부 설치하여 정부에 긴급히 실시해야할 대책을 제언

◦ 「신3개화살」 주요내용 :

- 1) 명목 GDP 600조 엔을 실현(현재 500조엔 정도)
중국경제의 감소 등 세계경제의 앞날에 부투명한 부분이 있는 가운데 국내수요를 주도로 하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속화하여 실질GDP 성장율 2%, 명목 GDP 성장율 3% 넘는 경제성장을 목표
- 2) 출생율 1.8인(현재 1.4)을 실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비정규직의 정규화, 육아 지원, 교육부담 경감 등
- 3) 고령 가족 등 간호를 이유로 사직하는 비율 제로
인구감소, 고령화로 간호와 사업 양립이 바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사직하거나 전직하는 상황이 잇달아 하여 간호와 사업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12) 자민당 홈페이지 http://jimin.ncss.nifty.com/pdf/news/policy/130923_1.pdf

Ⅲ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1. 농업현황

가. 농업분야의 환경변화

1) 농업 내·외부 환경변화

- 농업·식량 관련 산업의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 48조 1,499억 엔에서 2012년 42조 7,715억 엔으로 11% 감소, 국내 전체 경제활동에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12년의 9.0%로 하락
 - 그중 농업은 1990년 7조 9,377억 엔에서 2012년 4조 3,579억 엔으로 45% 감소. 국내 전체경제활동에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8%에서 2012년 0.9%로 하락¹³⁾
- 농림업 경영체 : 2005년 208만 5천에서 2015년 140만 2천으로 10년 사이 33% 감소¹⁴⁾
 - 그중 농업경영체는 2005년 200만 9천에서 2015년 137만 5천으로 10년 사이 32%감소
농업경영체 중 가족경영체는 2015년의 134만 2천으로 10년 사이에 32% 감소하였으나, 조직경영체는 2015년의 3만3천으로 18% 늘어남
 - 경영농지면적 : 1ha 미만은 2015년 전체의 11.9%로 10년 사이에 5.5%p 하락 5ha 이상은 57.8%로 동 14.5%p 증가
- 농가 수 : 2015년 215만 3천호, 2005년 비해 24.4% 감소
 - 그중 판매 농가 수는 132만 7천호(총 농가대비 61.65%)로 2005년에 비해 32.4%(전체 농가대비 68.9%) 감소 경향
 - 판매 농가인구는 2015년 209만인으로, 2005년 대비 37.7% 급감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 비율이 2015년 63.5%로 2005년 대비 5.3포인트 증가

13) 정부통계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32266> '농업·식량관련산업의 국내총생산')

14) 2015농업센서스 www.maff.go.jp/j/press/tokei/census/pdf/151127-01.pdf

- 경지면적 602.8만ha(논 310.만천ha)에서 2010년 459.3만ha(논 249.6만ha), 2014년 451.8만ha(논 246만ha)로 감소
 - 경작포기면적 : 2010년 39만6천으로 2000년에 비해 15.5% 증가¹⁵⁾
 농지감소요인 경작포기와 비농업용도로 전용하는 면적이 늘기 때문
 경작포기는 2015년 1만3천5백으로 2005년 대비 21.6% 증가
 경작포기원인 : 고령화와 노동력부족, 농산물가격 하락과 수익성 감소 등 농업 경영조건악화에도 기인
-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이 명시되면서 급속히 법인화가 진행(2014년 법인경영체 29,185개), 특히 회사법인(주식, 유한)과 농사조합법인(집락영농) 큰 폭으로 증가함¹⁶⁾
- FTA 등 포괄적 경제연대 추진, TPP기본합의
 - 농림수산성은 TPP참여시 자급률(40%→14%) 하락과 농업생산 감소(농업 산출액 기준 연간 4.1조엔)를 주장

2)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농업피해 복구현황¹⁷⁾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최고높이 9.3m 쓰나미 발생으로 농림수산피해액은 약 2조 4천억 엔
- 쓰나미 피해 농지면적은 2만 1480ha며 2014년 12월말까지 그 중 70%(1만 5,060ha)가 영농재개 가능
-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지역은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치바현, 도치기현, 군마현 등
 - 동북지역산지대부분이 소비자 방사능공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 도쿄전력에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총 5조 2,884억 엔을 배상, 그 중 개인 2조 3,628억 엔(청구 80만건 배상 71.8만건), 법인 및 개인사업자 2조 4,190억 엔(청구 36.6만 건 배상 30.8만건)¹⁸⁾

15) 황폐한농지현황에 한하여 http://www.maff.go.jp/j/nousin/tikei/houkiti/pdf/2711_genjo.pdf

16)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tokei/sihyo/index.html>에서 집락영농법인(14852개)과 농업생산법인(14333개)의 합계

17)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j/wpaper/w_maff/h26/pdf/z_1_4_1.pdf (2015.8현재)

18) 도쿄전력 홈페이지 http://www.tepco.co.jp/fukushima_hq/compensation/results/index-j.html

- JA그룹의 청구액(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은 5,116억 엔 지불액은 4,801억 엔 지불율은 95%¹⁹⁾
- 농축산물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 실시, 쌀은 수확 전후 2단계 검사, 기준치를 초과로 출하제한 요청 등의 조치가 내려진 지역과 품목 공개
- 주요 수출대상국가의 수입규제조치 강화로 인하여, 일부 식품의 수입정지,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및 산지증명서 요구로 수출에 타격

〈표 7〉 동지진이후 농지·농업용시설등 복구상황

농지 농업용시설등 복구상황 (2014년 12월 현재)

항목	피해상황	진척상황	%	비고
농지	8현(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 미야자키현, 치바현)의 쓰나미피해농지 →2만1430ha	70% ?????:1? 5060ha		쓰나미피해농지는, 농업·농촌의 복원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피해농지의 영농재개를 위하여 농지복구와 재업을 실행중
농업경영체	8현(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 미야자키현, 치바현)의 쓰나미피해 농업경영체 →1만100경영체	55% (?????:5610??)		경영을 재개한 약6810경영체는, 농업생산과정의 대상작업목은그공비를 일부라도 재개한 경영체를 포함 2014년2월1일현재)
농지의 외국제거	외국이 들어있던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뢰난지시지 구역(제외)의 농지 →1만7500ha	98% (?????:1? 7200ha)		
주요한 배수기장	복구가 필요한 주요한배수기장 →48곳	92% (?????:90?)		2014년12월까지87곳에서본격 복구를 완료
농지해안	복구가 필요한 농지해안 →127지구	79% (?????:100?)		○ 농지해안은 대체로 6년에 복구하는 것이 목표 ○ 대평양을 떠난 재해지역구간약 67km 중, 8할의 재해지역구는 완료 ○ 동경전후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 인한 뢰난지시구역이나 쓰나미피해지구 등을 제외하고 2014년12월까지 37개지구에서 복구가 완료
농업집락 배수시설	피해입은 아오모리현에서부터 나가노현까지의 11현피해 지구수→401 지구	96% (?????:386?)		

자료 2014년 <농업백서> p191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기본타결

TPP는 일본국내농업계의 반대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2개 나라가 협정을 타결. 참가한 나라들로는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임. 5년 이상의 협상을 거쳐 합의됨

19) JA 전중 2015년 8월 25일 <http://www.aec.go.jp/jicst/NC/senmon/songai/siry03/siry03-2.pdf>

〈표 8〉 주요품목에 관한 TPP와 한미FTA 협상결과 비교

품목	TPP	한미FTA
쌀	• 특별수입쿼터(SBS방식) 신설 • 미국 7만 톤, 호주 8400톤	• 제 외
쇠고기	• 관세 38.5% → 발효 16년차에 9%까지 삭감 • 16년차 SG 기준 73.8만 톤 • 16년차 이후 4년간 발동 없으면 SG폐지	• 신선냉장 : 냉동 (40%)16년차 철폐 • 15년차 SG기준35만 4,000톤, 24%관세적용
돼지고기	• 저 가격대 종량세(1kg 482엔) ⇒ 10년차에 50엔 • 고 가격대 종가세 4.3% ⇒ 10년차에 철폐 • * 차액관세제도와 분기점가격(1kg 524엔)은 유지 • SG는 12년차에 폐지	• 삼겹살 : 냉동(25%), 2014년1월1일 철폐 • 냉장, 냉장외(22.5%), 10년 걸쳐 철폐 10년차 SG기준 1만3938톤, 적용관세 11.3%
유제품	• 탈지분유 · 버터 저관세 수입 쿼터신설	• 전지분유, 탈지분유 (176%) — 현행유지, 저관세 수입쿼터 • TRQ, 5년차에 5628톤, 6년차부터 매년 3% 증가
사과	• 사과 : 17%를 10년 걸쳐 철폐 • 과일즙 : 「19.1%」 ~ 「34% 혹은 1kg 23엔 중 높은 쪽」을 8~11년차에 철폐	• 사과 : 후지(45%) 20년 걸쳐 철폐, SG • 후지이외 10년 걸쳐 철폐, SG

* 출처: 일본농림수산성 www.maff.go.jp/j/kanbo/tpp/pef/2-1_tpp_goui.pdf

한국 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kor/05-02MarketAcces_KORnotes.pdf

나. 일본농업정책의 변화

1)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15.3.31 내각회의결정)

농촌의 고령화와 마을의 인구 감소 등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공동 활동을 통한 지역자원의 유지관리 등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 외 고령화나 인구감소로 국내시장의 축소, 후계자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화 될 우려가 있음

한편 세계적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식량 등의 공급이 우려되는 등 일본에 대한 식량공급에 관한 환경도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를 재설정함. 2010년에 제정한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에는 칼로리 기준으로 50%, 생산액기준으로 70%를 설정하였으나, 새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에는 칼로리 기준으로 45%, 생산액기준으로 73%로 재설정함. 이유로는 실제 자급률이 2010~2013년까지 4년 연속 39%였기 때문

식료자급률의 목표는 기본계획에 실리기 시작한 것은 2000년. 5년마다 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설정. 과거 자민당정권에서는 2회를 걸쳐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모두 45% 수준. 2009년 민주당정권이 탄생하면서 2010년 50%로 끌어올림

〈표 9〉 새로운 식량 농업 농촌 식량자급률 목표(%)

구분	현황(2013년도)	2025년도
칼로리 기준 종합 식량자급률	39	45
생산액 기준 종합 식량자급률	65	73
사료 자급률	26	40

* 자료: 2014년도〈농업백서〉

2) 농림수산분야의 TPP대책 (안)²⁰⁾

농림수산성 TPP 대책본부는 2015년 11월 25일, TPP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관련대책(안)을 발표. 중요품목을 중심으로, 의욕 있는 농림어업자를 안심시키고 안정한 경영, 안정한 공급에 대처하기 위해서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세적인 농림수산업으로 전환(체질강화 대책)

관세 삭감에 의한 장기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농림어업자의 장래 불안을 불식하고, 경영마인드를 갖고 경영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후원대책을 집중강화 (목표) 2020년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 1조 엔 목표를 앞당겨 실현

○ 차세대를 짊어지는 경영 감각이 뛰어난 후계자 육성

농업인의 감소·고령화로 앞으로 농업계를 견인할 수 있는 훌륭한 경영 감각을 갖춘 후계자를 육성·지원함으로써 인재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실현

- 농업인의 경영발전을 촉진하는 기계·시설도입, 무이자화 등의 금융지원 조치를 충실
- 농지중간관리사업의 중점 실시구역 등에 있어 농지의 대 구획화·범용화를 시행하여 중산간 지역 등의 후계자의 수익 향상

20)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www.maff.go.jp/j/kanbo/tpp/pdf/siryou.pdf

-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지 이노베이션 촉진

논·밭농사·야채·과수산지·담당자의 창의적인 연구를 살려서 지역의 강점을 발휘하는 이노베이션을 지원함에 따라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 산지 파워업 사업의 창설로 농업인 등이 고성능 기계·시설을 도입하거나 농산물을 다시 심거나 하여 고수익작물·재배체계로 전환
 - 논을 밭으로, 밭이나 과원을 고 기능화
 - 새로운 국산 브랜드 품종이나 생산성 향상 등 전략적인 혁신적 기술개발
 -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를 가 일층 활용
 - 제분공장·제당 공장 등의 재편 정비
- 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종합 프로젝트의 추진

절력화 기계의 정비 등에 의한 생산 코스트 삭감이나 품질 향상 등 수익성·생산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축산·낙농의 국제 경쟁력 강화. 축산 클러스터 사업의 확충하고, 이것을 후원하는

 - 풀밭의 대구획화
 - 일본품종의 소 생산 확대
 - 생유 공급력 향상
 - 돼지의 생산능력향상
 - 축산물의 브랜드화 등 고부가가치화
 - 자급 사료의 한층 생산 확대
 - 축산농가의 과거 부채의 경감대책
 - 가축방역 체제의 강화
 - 식육처리 시설·유업공장의 재편 정비
- 고품질농림수산물수출 등 수요 프런티어의 개척

쌀·쇠고기·청과물·차·임산물·수산물 등 민간품목 모두의 관세가 수출국에서 철폐됨. 하여 고품질농림수산물의 한층 수출확대, 수출저해요인의 해소, 6차 산업화·지산지소에 의한 지역수익성 강화 등에 의한 공세적인 농림수산업추진

 - 쌀·쇠고기·청과물·차·임산물·수산물 등의 중점 품목별 수출촉진대책
 - 전략적인 동식물검역 협의
 - 일본발 식품안전관리규격 등의 책정
 - 산지와 외식·중식 등을 연계한 신상품 개발

- 방일 외국인 여행자 대상 지역농림수산물의 판매촉진
- 합판·제재의 국제경쟁력 강화
원목공급의 저 비용화를 포함한 합판·제재의 생산 비용을 낮춤으로, 합판·제재의 국산 점유율을 확대
- 지속가능한 수익성 높은 조업체제로 전환
해변가의 광역적인 기능재편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익성이 높은 조업체제로 전환시켜 수산업체질강화
- 소비자와의 제휴 강화
국산농림수산물·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한층 높여 안전하고 안심한 국산농림수산물·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도움
 - 대규모 고객유치시설에서의 판촉활동
 - 상공회의소·상공회 등과 연계한 신 상품개발
 - 외국과의 지리적 표시의 상호인증을 추진
 - 병해충 등의 침입 방지 등 동식물검역 체제강화
- 규제개혁·세제 개정
공세적인 농림수산업전환을 촉진하는 규제나 세제를 검증하고, 실행

□ 경영안정·안정공급을 위한 구조 (중요 5품목 관련)

관세삭감 등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을 불식하고, TPP 발효 후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생산 비용 삭감과 수익성 향상에 의욕을 갖도록 하면서, 협정 발효에 맞춰서 경영안정 대책에 충실하는 등 조치를 강구

- 쌀
나라별 쿼터수입량의 증가가 국산 주식용 쌀 수급 및 가격에 주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선도가 높은 비축미를 공급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매년의 정부비축미의 운영을 재검토(원칙 5년 보관 기간을 3년 정도에 단축), 나라별 쿼터 수입량에 상당하는 국산쌀을 정부가 비축미로서 매입
- 보리
마크업(정부에서 수입한 보리 원가에 붙이는 이윤)을 낮추면 국산보리가격이

하락하는 우려가 있음. 하여 국산보리의 안정공급을 피하기 위하여 경영소득 안정 대책을 계속하여 착실히 실시

◦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국산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의 안정 공급을 피하기 위해, 축산·낙농 경영안정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

- 육용소의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및 양돈경영안정 대책사업을 법제화
- 소와 돼지의 특별대책사업의 보전율을 끌어 올림과 동시에(8할 → 9할), 양돈경영안정 대책사업의 국고부담 수준을 끌어 올린다(국가 1 : 생산자1 → 국가 3 : 생산자1)
- 육용송아지보증 기준가격을 현재의 경영실정을 감안하여 재검토
- 생크림 등의 액상유제품을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조금제도의 대상으로 추가 및 보조금 단가를 단일화(※)하고, 그 위에 해당단가를 장래적인 경제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재검토

※ 준비가 되는대로, 협정발효에 앞서 실시

◦ 감미자원작물

국산감미자원작물의 안정공급을 피하기 위하여 가당(加糖)조제품에 한해 당값 조정법에 근거하여 새롭게 보조금 대상으로 조정

□ 대책의 진행방법

대책재원은 TPP협정이 발효되어 보리의 마크업이나 쇠고기의 관세가 감소하는 것에도 비추어 기존의 농림수산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전체가 책임지고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보함

또한 기동적·효율적인 대책을 실시하여 생산현장에서 안심하고 영농할수 있도록, 기금 등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

□ 대책의 효과검증·검토의 계속

- ①의 대책에 대하여 정책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정량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진척관리를 하는 동시에, 기존정책을 포함하여 끊임없이 점검·재검토를 함

- 검토 계속항목
 - 농정신시대에 필요한 인재력 강화 시스템정비
 - 생산자소득향상에 연결되는 생산자재(사료, 기계, 비료 등) 가격형성구조의 재검토
 - 생산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 거래할 수 있는 유통·가공업계구조의 확립
 - 참으로 필요한 기반정비의 원활을 위한 토지개량 제도의 재검토
 - 전략적 수출 체제의 정비
 - 원료원산지표시
 - 체크오프 제도의 도입
 - 종전부터 시행한 수입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검토의 계속
 - 농가가 안심하고 사료용 쌀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명기된 생산노력목표가 확실하게 달성을 향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사료용 쌀을 추진하는 대처방책
 -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안정운영정책
 - 육용소·낙농의 생산기반강화책을 가일층 검토
 - 농촌지역의 농업인의 취업구조개선의 구조
- 또한, 농림수산업성장산업화를 일층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는, 2016년 가을을 목표로 정책의 구체내용을 분명히 함

다. 농협개혁

□ 내각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개혁위)의 농업협동조합개혁안²¹⁾

- 주요내용 :
 1. 중앙회(전국농협중앙회-전중·도도부현농협중앙회-현중)
 - (1) 농협자아개혁안에 의하면, 중앙회의 경영상담·감사기능, 대표기능 및 종합조정 기능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협법상조치가 필요하다고 함. 하지만(개혁위로서는) 전중, 현중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음
 - (2) 전중감사는 진정한 외부감사로 볼 수 없고 전중감사의 폐지가 필요

21) 내각부 제47회규제개혁회의 자료로부터 작성

(3) 5년간 (2019년 6월까지)에 걸쳐 농협개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중앙회의 일반사단법인 이행을 빨리 하는 것이 필요, 이행기간을 극력 짧게 해야 함

2. 준조합원

준조합원의 농협이용규제는 수치기준을 명확히하고 극력 빨리 도입

3.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경제연합회)

규제개혁실시계획에 있어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가 없어지는데 따른 문제의 유무 등을 정밀히 조사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전농·경제연합회를 주식회사화로 하도록 적극적 검토

□ 농협법개정은 2015년8월28일 성립

◦ 주요내용 :

- JA사업목적으로 「농업소득의 증대」명기, JA이사의 과반수를 원칙적으로 인정농업인이나 판매·경영의 프로로 한다. 농협법상의 중앙회제도는 폐지하고, JA전국농협중앙회는 일반사단법인으로 이행한다. 개정한 농협법은 2016년 4월1일부터 실행함
 - 개정한 농협법은, JA 비영리규정을 삭제하고, 「농업소득증대에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새롭게 규정
 - 저금량 200억 엔 이상의 신용사업을 하는 JA는 시행부터 3년 6개월 후인 2019년 10월 이후, 현행의 JA전중검사가 아니라 외부공인회계사 감사를 의무화함
 - 중앙회의 규정은 농협법상에서 전면삭제. 1954년에 중앙회 제도가 발족한 이래, 「60년만의 개혁단행」(아베신조수상)이 된 셈이다. 따라서 전중은 2019년 9월말까지 일반사단법인으로 현중은 농협법상의 「연합회」로 이행. 「중앙회」의 명칭사용은 인정함
- 준조합원의 이용규제에 한하여서는 법 시행으로부터 5년간 실태조사하고 재검토. 농협법개정은 사실상 증의원에 심의들어가기는 2015년 5월14일. 하지만 야당의 반발 등이 있어 성립까지 3개월반 걸렸음

라. 농림수산물 수출촉진정책—2016년도 예산개산요구²²⁾

1) 수출확대 등 글로벌〈먹거리시장〉 획득(소푸드사업관계)-54억9200만 엔(전년 39억 6400만 엔)

□ 대책중점 :

〈나라별, 품목별수출전략〉의 실질적 실행을 위하여 수출전략실행위원회와 를 사령탑으로 품목별수출단체,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통하여 을자판으로서의 수출촉진체제하에 일본산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을 촉진

□ 정책목표 : 수출액 2014년 6,117억 엔 2020년 1조 엔

□ 구체내용

- 수출전략실행사업(1억 5,200만 엔 전년 1억 5,200만 엔)
품목별수출확대방침을 작성하고 실효성 있는 산지 사이의 조율이나 마케팅전략을 추진
- 수출전략의 실행을 위한 수출촉진체제를 강화(12억 4,500만 엔 전년 9억 800만 엔)
주요품목 수출확대방침에 따라 품목별 수출단체가 중심이 되어 실행하는 일본 브랜드를 내건 수출촉진사례, 산지사이의 제휴촉진, 수출환경정비와 맞물린 지역사업 등을 지원
- 수출종합 서포트 프로젝트(15억 7,300만 엔 전년 13억 8,100만 엔)
사업자 발굴부터 상담 지원까지, 해외 전시회의 전시지원, 품목별수출단체의 활동지원, 마케팅거점 설치지원, 할랄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한 세미나 개최 등 JETRO를 통한 수출업체 대상 지속적인 비즈니스 지원 체제를 강화
- 글로벌 푸드 벨류체인 전략추진(2억 엔, 전년 1억 5000만 엔)
먹거리산업의 해외 전개를 위하여 관민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선진국을 포함한 유망한 나라나 지역에서의 푸드 벨류체인 구축을 위한 조사 사업을 지원
식품산업의 글로벌 전개를 위한 인프라 정비사업(1억 400만 엔, 전년 1억 200만 엔)
식품산업의 해외전개를 위한 사업이나 현지에서의 다양한 과제해결을 위한 관

22)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 www.maff.go.jp/j/shoukusan/export/pdf/tosyo_gaisan_youkyuu_28.pdf

계자의 사업을 지원. 또한 해외 식품 비즈니스에 정통한 인재의 확보, 활용 등을 지원

- 국제농산물 등 시장구상 촉진사업(2억 엔, 전년 6,200만 엔)
국제공항부근의 도매시장의 수출거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과물 화회 등의 품질을 보전하고 빠르게 수출할 수 있는 수법 등을 조사하고 거점화구상을 책정하는 것을 지원
- 수출촉진을 위한 동식물방역체제를 정비(5억 5,300만 엔, 전년 4억 1,800만 엔)
수출촉진에 필요한 가축질병에 관한 대책실시 및 국내 병충해의 정보수집이나 새로운 검역조치를 확립하는 것을 지원. 또한 수출검역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국산농축산물의 수출이나 해외관광인 선물로 매입하는 것을 촉진
- 일본발식품안전관리규격·인증스킴 등 추진(신규 1억5700만 엔)
 - 일본발식품안전관리규격책정 추진사업(9000만 엔)
일본발식품안전관리규격·인증스킴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회 개최나 조사, 보급설명회·연수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규격·인증스킴 등을 국제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국제기관이나 타국과의 연계·조율, 해외로의 정보발신 등 지원
 - 생산시스템혁신추진사업(6,700만엔)
GAP체제강화·공급확대사업, 일본농가가 사업하기 쉬운 일본발수출용GAP 책정을 위한 검토회 개최나 국내외실태조사및국제규격화에 관한 관계자와의 조율 등을 지원
- 먹거리문화의 발신에 따른 해외수요프런티어개척 가속화사업(신규 12억900만)
일본의 먹거리·식문화의 매력발신에 따른 해외먹거리시장 개척을 가속화하기 위한 먹거리이벤트개최, 해외에서 일본먹거리를 넓히는 인재육성, 해외 매체에 서의 식문화발신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일본산 식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해외레스토랑과의 제휴나 네트워크화를 지원

2) 수출관련예산(수출 대응형 시설정비)

- 수산물 시설정비지원(174억 700만엔, 전년 117억 5,900만엔)
 - 수산물수출증대 환경정비대책사업(17억 6,700만엔, 전년 3억 1,600만엔)
 - 수출전략어항의 고도위생관리대책의 추진(156억 4,000만엔, 전년 114억 4,300만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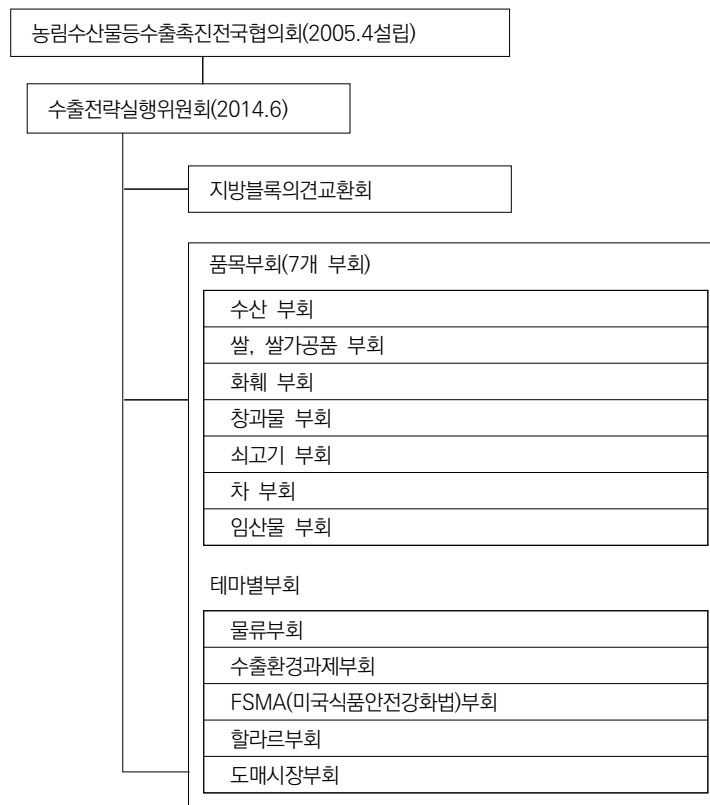
□ 청과물·식육 관련 설비 정비지원

-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실시(30억 엔, 전년 20억 엔)
- 수출 청과물의 장기보존이 가능한 저온냉장시설이나 미국, EU등의 쇠고기수출에 대응한 식육처리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

□ 수출확대품목별방침²³⁾

수출전략실행위원회의 의논사항은 개별기업의 활동이나 판매 전략에 관계 되는바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이나 위원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도 있음. 실행위원회의 실행서무는 농수성식량산업국수출그룹에서 담당. 수출전략실행위원회 산하에 7개의 품목별 수출단체인 부회를 설립(표 10 참조)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작성하고 부회마다 수출확대에 필요한 위탁조사 등을 시행하고 보고서를 공표

〈표 10〉 수출전략실행위원회조직도



23)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www.maff.go.jp/j/shokusan/export/e_kikaku/26_hinmo.html

3. 일본의 농산물 무역동향

가.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1) 농림수산물 무역동향 숫자

- 2014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6117억 엔으로 전년(5505) 대비 11.1%증가, 수입액은 9조 2408억 엔으로 전년(8조9531) 대비 3.2% 증가²⁴⁾
 - 농림수산물 무역수지는 8조6291억 엔으로 전년(8조4026억 엔) 수입초과 전년비 2.7% 증가
- 농림수산물 수입과 수출 국가·지역의 편중
 - 수입 상위 5개국이 전체의 51.4%, 수출 상위 5개국이 전체의 68% 차지

2)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 농림수산물수출액을 2020년 1조 엔까지 확대한다는 공격적 정책²⁵⁾
 - 「일본재생전략」(개정 2014년 6월 24일 각의결정)에서 목표재확인

〈표 11〉 농림수산물 주요 무역국가지역별 실적(2014)

순위	수입국·지역	구성비(%)	수출국·지역	구성비(%)
1위	미국	20.0	홍콩	22.0
2위	중국	13.9	미국	15.2
3위	캐나다	6.3	타이완	13.7
4위	태국	5.8	중국	10.2
5위	호주	5.4	한국	6.7

* 자료: 농림수산물 수출입개황 2014년 확정치
www.maff.go.jp/j/tokei/kouhyou/kokusai/pef/yusyutu_gaikyo_14.pdf

- 품목별로는 농산물에서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식품의 비중 증가세
 - 2014년 수출액 중 가공식품은 1763억 엔으로 전체의 28.8% 차지

24) 農林水産物輸出入概況2014年確定値
www.maff.go.jp/j/tokei/kouhyou/kokusai/pef/yusyutu_gaikyo_14.pdf
 25)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 www.maff.go.jp/j/kanbo/saisei/honbu/(자료4)

3) 일본의 농산물 수입동향²⁶⁾

- 농산물 수입금액으로 보면 농림수산물, 농산물에서는 미국이 1위이고 임산물 수산물에서는 중국이 1위임
- 2014년 수입동향을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목재칩 등은 전년에 비해 증가, 천연고무, 제재·가공재 등은 감소

〈표 12〉 농림수산물의 주요한 수입국·지역(2014년, 억 엔)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농림수산물	미국 18505(20)	중국 12828(14)	캐나다 5777(6.3)	태국 5370(5.8)	호주 5021(5.4)
농산물	미국 16123(25.5)	중국 7916(12.5)	호주 4174(6.6)	캐나다 4007(6.3)	태국 3998(6.3)
임산물	중국 2016(16.0)	말레이시아 1299(10.3)	캐나다 1294(10.3)	인도네시아 1136(9.0)	미국 1017(8.1)
수산물	중국 2896(17.5)	칠레 1479(8.9)	미국 1365(8.2)	러시아 1190(7.2)	태국 1171(7.1)

* ()안은, 금액기준의 구성비(%)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수출입개황

〈표 13〉 주요농림산물 수입수량과 금액(2014년)

품목	수량		금액	
	천톤(천리트)	전년비%	백만엔	전년비%
농산물			6,322,350	3.0
돼지고기	829	12.3	456,366	17.1
옥수수	15,035	4.4	408,496	-11.9
담배	136	-5.9	399,142	-9.4
쇠고기	520	-2.9	306,512	14.9
생선·건조과일	1,678	-6.1	286,074	8.7
알콜음료	726	0.0	276,462	10.1
소맥	5,759	-7.1	208,494	-6.2
닭고기조제품	413	-6.2	205,606	-1.1
콩	2,828	2.4	193,865	5.5
냉동채소	898	-2.9	167,101	6.1

26) www.maff.go.jp/j/tokei/kouhyou/kokusai/pdf/yusyutu_gaikyo_14.pdf

품목	수량		금액	
	천톤(천리트)	전년비%	백만엔	전년비%
천연고무	697	-4.4	150,896	-23.4
커피콩	409	-10.4	142,016	-1.9
임산물			1,261,528	2.0
제재 · 가공재	6478천립방미터	-16.3	301,375	-9.9
목재칩	11,656	5.8	239,642	9.9

*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수출입개황

□ 채소수입동향²⁷⁾

2014년의 채소수입량은 266만 9658톤으로 전년에 비해 1% 감소. 상반기에는 일본국산채소의 가격상승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지만 하반기에는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감소

형태별로 보면 신선채소는 전년비 4% 증가한 88만 4,752톤이며 냉동채소는 2% 감소한 91만6,579톤, 염장채소는 7% 감소한 9만 2,483톤, 건조채소는 2% 증가한 4만2871톤. 전체적으로 보면 신선채소와 건조채소는 전년보다 증가하고 다른 형태는 모두 감소

4) 국가별 채소수입동향²⁸⁾

- 단일품목으로 채소를 수입을 보면(2015년 9월 현재)
 - 중국산 신선 1위 양파, 2위 당근 및 무청, 3위 대파, 냉동은 1위 부추, 2위 토란, 3위 브로콜리
 - 미국산 신선 1위 감자, 2위 브로콜리, 3위 양파, 냉동은 1위 스위트콘, 2위 감자, 3위 혼합채소
 - 한국산 신선 1위 파프리카, 2위 토마토, 3위 호박, 냉동은 1위 딸기

27) 농림축산업진흥기구 홈페이지 vegetable.alic.go.jp/yasaijoho/jyukyu/1503/jyukyu2.html

28) 농림축산업진흥기구 홈페이지 vegetable.alic.go.jp/boueki_toukei.html

〈표 14〉 주요국가별, 형태별 채소수입동향(2014년 톤)

형태별	중국	미국	한국
신선	537,914	102,934	39,198
냉동	407,594	301,676	197
염장	74,893	15	0
건조	36,487	4,448	12

* 자료: 농림축산업진흥기구홈페이지 vegetable.alic.go.jp/boueki_toukei.html

□ 채소 수입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요 대책

- 외식용·가공용 채소의 특성 규명과 생산 장려
 - 계약채소 공급안정제도와 산지육성사업
 - 계약수량 확보가 곤란할 때 대체상품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
 - 시장가격에 연동한 계약가격이 보증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가격보전
 - 계약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지원
 - 가공·외식용 채소수요 대응 산지육성사업
 - 채소의 합리적인 생산·유통체계구축과 계약거래 코디네이터 육성
 - 계약거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출하단체는 실수요자의 당해 산지에
 - 대한 의존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음
 - 일본정부는 계약거래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거래도입에 따른 산지의 전략수립, 제품개발, 판매촉진 등에 대해 지도기관 등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관련 전문가를 육성
- *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실수요자의 니즈와 생산을 결합시키기 위한 정보제공, 제품개발에 관련된 교섭 등 중계자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출하단체의 능력에 따라서는 제품개발상의 고객화방법의 제안이나 판매촉진기획 등 적극적인 관여도 필요

IV

관세 및 검역제도

1. 관세현황

1) 개요

- 일본의 관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며, 각종 세칙 사항은 3개의 법률(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
-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국정세율과 조약에 근거한 세율로 분류됨

〈표 15〉 일본의 관세종류

세율종류	내용
기본세율	사정변경이 없는한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율, 「관세정률법」으로 규정 * 2013년 현재 7254세율설정 2014년 3월 31일 법개정후 불명
잠정세율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에 따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기본세율에 대신하여 적용되는 잠정적 세율로 「관세잠정조치법」으로 규정.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 2014년10월 현재 433 세율이 설정되어 있음
특혜세율	개발도상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로 「관세잠정 조치법」으로 규정 · 특혜세율은 경제가 개발 도상이 있어, 특혜관세의 제공을 희망하고, 일본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한 나라·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로, 최혜국대우의 예외로서, 실행세율(국정세율(특혜세율 제외)과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보다도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원산지 등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
협정세율	WTO 협정 상, WTO 가맹국·지역에 대한 일정을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약속(양허)하고 있는 세율(WTO양허세율) · 당해 세율이 국정세율 보다 낮을 경우, WTO 전 가맹국·지역 산품에 대하여 일정하게 적용 · 협정세율은 WTO 전 가맹국·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세율이나, WTO 비가맹국이라도, 통상항해조약 등의 2국가간 조약(자유무역협정 제외)으로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WTO 가맹국·지역과 동일하게 협정세율이 적용
특정 특혜세율	최혜국대우의 예외로서, EPA(경제연대협정)를 체결한 상대국 산품만을 대상으로 한 세율 · EPA에서는, 최혜국대우에 의한 실행관세 보다 낮은 세율이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국정세율 및 협정세율에 우선해서 당해 세율이 적용됨 * 일본의 EPA 체결 상대국 :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자료: 일본관세협회

2) 주요 관세

□ 일본의 관세율에 관해서는, 「관세정률법」 등의 별표에 정해져 있음

- 주요농산물의 무역가중평균세율(World Tariff Profikes2014*)은 12.1%로, 미국(4.1%), 호주(2.6%)보다는 높은 편이나, EU(8.4%), 한국(91.8%), 브라질(51.6%), 인도(12.5%), 중국(19.7%)등에 비해 낮은 편임²⁹⁾
단순평균관세율(2013년도)은 일본19.0% 미국(5.3%), EU(13.2%), 호주(1.2%), 중국(15.6%), 인도(10.2%)보다 높고 브라질(33.5%),한국(52.7%)보다 낮음
- 특히, 콩, 옥수수 등의 관세율은 0%이며, 채소의 관세율도 낮은 편임(3~9%)
- 일부 고관세 품목이 남아있어, 곤약(1700%), 쌀(778%), 사탕(328%), 버터(360%), 소맥(252%) 등이 높은 편이며, 소고기(38.5%), 오렌지(40%, 계절 20%), 가공용 토마토(20%) 등의 관세율도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실행 관세율표 참조 (<http://www.customs.go.jp/tariff/index.htm>)
 - 일본의 실행 관세율표는 일본 관세협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각종 관세율과 통계치는 HS 조약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있음. 부(部, 21개), 류(類), 항(項, 4자리수), 호(號, 6자리수)로 구성되어 있음

2. 동식물 검역제도

가. 동물 검역제도

-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에서는 검역 조치를 강화함
 - 공항·항만에서의 모든 입국자에 대한 신발 소독 및 차량 소독
 - 검역탐지견을 활용한 수하물 검사 강화
 - 2005년 12월부터 나리타공항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현재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공항, 후쿠오카공항 중부국제공항, 신치도세공항 나하공항, 가와사키동우편국 등에 20두의 검역탐지견이 활약 중³⁰⁾

29) 「我が国の農林水産物関税制度について」(2015년 8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www.maff.go.jp/j/kokusai/boueki/triff/pdf/kanzei_seido.pdf

30) 동물검역소 홈페이지 www.maff.go.jp/aqs/job/detectordog.html

- 구제역 등의 발생국·지역의 모든 직항편 대상 안내 방송 및 일부 항공편 대상 질문표 배포 등
- 동물 및 축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공항·항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곡물의 짚 및 사료용 건초, 가축 감염증의 병원체도 검역의 대상임

□ 축산물의 경우 일부 품목 수입 금지 및 수입 금지품 이외의 경우에도 검사증명서가 필요함

- 육류, 햄, 소시지 등 중에서 법률에 의하여 일부 지역 품목의 일본내 반입 금지를 규정

〈표 16〉 일본의 동물검역 관련 법률

관련법률	대상감염증	동물	축산물
가축전염병 예방법	구제역, 우역, 전달성해면상뇌증, 돼지콜레라 등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우제류동물	육류, 내장, 뼈, 볼, 껍질, 털, 알, 생유, 분 등 햄, 소시지, 베이컨 이상을 포함한 가공품
	조류인플루엔자	닭, 메추라기, 꿩, 타조, 호로새, 칠면조, 오리과의 조류(오리 거위) 등의 가금류	
	야토병등	토끼	
	부저병등	꿀벌	
	렙토스피라	개	
광견병예방법	광견병	개, 고양이, 미국너구리, 여우, 스컹크	
감염증법*	에보라출혈열, 마르부르크병	원숭이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 관한 법률

* 자료 : 일본 농림수산업성 동물검역소

나. 식물 검역제도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수입 식물에 대한 검역 실시

- 수입식물의 종류, 수출국의 증가와 국제유통의 신속화 등에 따라 일본 내 새로운 병해충 침입의 위험성이 증대한 것으로 파악
- 농림업에 새로운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병해충에 대하여 수입시 식물검역

- 대상으로 명시(리스크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병해충에 대하여는 잠정적인 검역 대상으로 분류)
- 수입식물검역 대상 : 모종, 수목, 구근, 종자 등의 재배용 식물 및 야채, 과일, 절화, 목재, 곡물, 콩 등의 소비용 식물, 그 외 식물에 유해한 살아있는 곤충·미생물 등
- 수입검사 결과, 수입금지품에 해당하지 않고, 식물검역 대상 병해충이 없을 경우 수입 가능하며, 수입검역 대상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불합격이 되어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
 - 소독 조치가 명해진 경우 소독 조치 후 수입 가능
 - 검역유해동식물 판정을 위해 격리재배 검사 실시

부록: 수출지원사례³¹⁾

□ 일본우정(郵政) 그룹

일본우편은 2014년 2월 5일, 냉장온도로 신선한 식품재료를 해외에 보내는 「쿨 EMS(국제스피드우편)」의 배달장소를 현재의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 동년 4월에는 말레이시아와 마카오로 대상을 확대 한다고 발표. 이후, 중국이나 한국, 태국의 배달도 검토 중

또한 냉장뿐 아니라 냉동식품재료의 배송도 검토 중

□ 요양식 수출검토

농림수산성은 2015년 1월부터, 일본 요양식의 수출가능성을 검토. 첫 시작은 미국. 조사는 1월 11~13일 제조업체와 함께 진행. 미국에서의 간호식품은 씹지 않고 영양을 채취하는 「농후유동식」으로서 농도가 높은 액상으로 병에 들어 있고 약국 등 소매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실 확인. 미국에 없는 레토르트(retort) 요양식의 수출 가능성과 더불어 수출에 대응해야 할 과제도 파악

□ 일본판 「외국무역장벽보고서」인 「농림수산물식품수출환경과제리포트」 최초 발표

- 농수산성은 2015년 4월 24일, 농림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향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표. 미국의 「외국무역장벽보고서」에 해당하는 일본판. 수출상대국의 규제나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 과제 해결과 동시에 수출 상대국의 과잉한 규제나 기준 등을 없애도록 재촉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음. 매년 발표
- 「농림수산물·식품수출환경과제리포트」(www.maff.go.jp/j/press/shokusan/kaigai/pef/150424-02.pdf)는 방사성물질이나 동식물검역등 품목횡단적과제와 가공식품이나 쌀 등 주요 8품목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

□ 일본형 GAP 책정

- 농림수산성은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에서 통용되는 일본형 농업생산공정관리(GAP) 제정에 착수. 기존의 도도부현(都道府縣)이나 JA, 민간기

31) 일본농업신문기사로부터 선출

관의 GAP은 모두 국내를 대상하였으며 해외에 통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본의 법제도나 재배체계를 근거로 국제기준과 일치하는 GAP를 만든다. 2016년도부터 운용하고 2017년도 말까지 국제적인 식품안전추진조직으로부터 GAP 승인받을 방침

- 농림수산성은 2015년 3월 생산자 단체, 유통업자, 생활협동조합 관계자들로 GAP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2010년에 책정한 GAP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구체적인 작업을 시행

□ 일본정책금융공고

-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용자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수출지원사업의 이용자가 늘고 있다. 생산자는 국내유통과 같이 국내창고에 짐을 가져오고 제휴한 무역상사가 수출수속이나 판매를 지원하는 구조. 지원 사업은 3년째를 맞으며 본격적인 수출사례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음
- 공고는 「트라이얼수출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 시작. 생산자는 수출의욕이 있으나 수출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나 북미 등에 판로를 갖고 있는 상사 15사와 생산자를 매칭하여 상사를 통한 수출을 후원
- 상사는 ① 라벨표시 작성지도 등 사전준비 ② 검역이나 세관수속 ③ 판매처와의 가격교섭 ④ 판매상황보고 등을 지원함
- 생산자는 산지에 비교적 가까운 상사를 이용하고 지정한 국내창고에 출하하고, 실비부담만 하면 됨
- 2년째인 2014년도의 이용건수는 45건(초년도 14건). 서일본 생산자·식품기업의 이용이 많고, 수출은 중국 등 7개국·지역이며 싱가포르수출이 가장 많음
- 품목으로서는 쌀, 포도, 배, 귤 등 과실, 채소, 주스나 드레싱 등의 가공품도 포함

□ 「식(食)과 농(農)의 경승지(가칭)」 지식인 회의

- 농림수산성은 방일외국인관광객의 농촌방문을 늘리고자 2015년 9월 9일 「식과 농의 경승지(가칭)」의 지식인회의 첫모임을 주최. 방일외국인관광객에 의한 먹거리 관련 소비액은 현재 연간 6000억 엔 정도로 추정됨. 올해 내 「경승지」의 구조전반이나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정리할 방침

- 「경승지」는 먹거리나 식문화를 중심으로, 그것들과 관계 깊은 경관이나 역사 등을 관광자원과 결부시켜 외국인관광객에게 지역의 매력을 어필하는 구조
- 지식인회의는 먹거리, 관광, 홍보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경승지」 브랜드의 전체 수준 및 정보발신, 지리적 범위 등 개별 인정요건 등을 정리

인도네시아 <<<

2015 주재국 농업전망

- I. 국가개황
- II. 경제동향
- III.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 IV. 관세 및 검역제도



I

국가개황

1. 일반사항

- 국가명칭 :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 수도 : 자카르타 (2015년 기준-인구 약 9,988,495명, 면적 664.01km²)
- 면적 : 190만 km² (한반도의 약 9배)
 - 도서 수 : 17,508개, 세계 최대 도서국
 - 주요 도서 : 자바,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 파푸아
- 인구 : 2억 5,500만 명 (세계 4위, 인구증가율 1.22%)
 - 자바 1억 4,500만 명, 수마트라 5,500만 명, 술라웨시 1,870만 명, 칼리만탄 1,500만 명, 이리안자야 400만 명, 기타 1,730만 명
- 기후 :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다습
 - 연평균기온 : 25~28℃ (자카르타 : 32~33℃), 습도 : 73~87%
 - 우기 (11~2월), 건기 (3~10월)
 - ※ 2010년 들어 엘니뇨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가뭄이 초래되었으며,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언어 :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 자바어, 순다어 등 지방어 및 지방방언 포함 모두 600여 종
- 종교 : 이슬람교 (87%), 개신교 (6%), 가톨릭 (3%), 힌두교 (2%), 불교 (1%), 기타
- 종족 : 자바족 (45%), 순다족 (13.6%), 아체족, 마두라족, 바탐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이 거주
- 문맹율 : 9%
- 표준시 : 총 3개 시차가 존재함
 - 서부(자카르타) : GMT + 7 (한국과 시차 : -2시간)
 - 중부(발리) : GMT + 8 (한국과 시차 : -1시간)
 - 동부(파푸아) : GMT + 9 (한국과 시차 : 없음)

2. 경제상황

- 국민총생산 : 8,957억 불 (2014년, IMF)
- 1인당 GDP : 3,511불 (2014년, IMF)
- 화폐단위 : 루피아 Rupiah(2015년 11월 6일 기준, 환율 USD 1 = IDR 13,550)
- 수출 : 1,763억 불(2014년 기준)
- 수입 : 1,781억 불(2014년 기준)
- 주요 자원 : 석유, 천연가스, 목재, 주석, 석탄, 보크사이트, 망간, 동, 니켈, 금, 은, 고무 등

3. 정치상황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현 대통령 : Joko Widodo (조코 위도도)
 - 제7대 대통령
 - 2014년 10월 20일 취임
- 입법부
 - 통상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560명)와 지역대표협의회(132명)의 이원적 조직(양원제와 유사)
 - 국회와 지역대표협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협의회(692명)가 총괄 기구로 기능
- 주요정당 : 투쟁민주당(PDI-P), 골카르당(Golkar), 그린드라당(Gerindra), 민주당(PD) 등

4. 한국과의 관계

- 교역
 -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10년 200억불 돌파에 이어,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4.8% 감소한 236억불 기록함. (우리나라가 9억불 적자)

-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7위 교역 파트너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2위 교역 파트너
- 2014년 양국 간 교역량 감소는 석유·석탄·가스의 교역량 급감이 주요 원인(이들 품목 제외 시 전년 대비 0.66% 감소)
- 2015년 상반기의 경우, 1~5월 대인니 수출은 66억불(9.5% 감소), 수입은 64억불(13.2% 감소)로, 무역수지는 2%로 개선됨
- 수출은 경유, 휘발유, 편직물, 열연/냉연강판, 합성고무 등 5대 품목이 대인니 수출의 46.4% 차지
- 수입은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중유, 천연고무 5대 품목이 65.6% 차지

□ 투자

- 인도네시아는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8위 투자대상국(수출입은행, 13년 누계 신고 기준)이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4위 투자대상국(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13년 투자기준)
- 대인니 외국 투자 현황(인니 투자조정청(BKPM) 집계 투자실현액 기준): 일본(47.1억불), 싱가포르(46.7억불), 미국(24.4억불), 한국(22.1억불)
- 2014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총 1,054건으로 약 11억불에 달함

II

경제동향

1. 경제 특징

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강점

- 인구 세계 4위의 거대 소비시장, GDP 세계 16위의 경제대국
- 석유 매장량 세계 27위, 가스 매장량 세계 11위, 석탄 수출량 1위, 주석 수출량 1위, 니켈 수출량 3위 등 자원 풍부
- 인도네시아는 최근 10년간 국제 원자재 붐에 힘입은 자원 수출과 중산층 증가를 통한 내수 확대, 활발한 해외투자 유입을 기반으로 평균 5.8%의 고성장을 지속
- 특히,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불황속에서도 G-20국가 중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

나. 인도네시아 경제의 약점

- 도로·항만·철도 등 인프라 부족
- 극심한 빈부격차
- 2010년도 국제경쟁력 보고서에서 전반적 인프라 경쟁력 조사대상 133개 국가 중 96위를 차지
- 부정부패

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기회 요인

- 조코위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 및 개혁

라. 인도네시아 경제의 위협 요인

- 보조금 석유 가격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시장은 8%대 전망)
- 국제 자원가격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

- 해외투자 유입 증가세 둔화
- 경상수지 적자 방어를 위한 수입 억제 및 금융 긴축정책

2. 경제지표 및 정책

가. 경제성장률

- 인니 경제는 인구에 기반한 거대 내수시장, 자원 개발 활성화, 외국인 투자의 지속유입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달성함
- GDP성장률 추이 : (11년) 6.1% → (12년) 6.2% → (13년) 5.78% → (14년) 5.0%
- 2013년 5.78% → 2014.1/4분기 5.21% → 2/4분기 5.12% → 3/4분기 5.01%로 성장속도 둔화, 중앙은행은 금년도 5.1%~5.5% 성장 전망
- 최근 실물경기는 중국의 성장 둔화, 국제 자원가격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 해외투자 유입 증가세 둔화, 경상수지 적자 방어를 위한 수입 억제 및 금융 긴축정책 등으로 성장속도가 둔화됨

나.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는 2011년 이래 3~4%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13년 7.2%, '14년 8.3%로 가파르게 상승함
- 보조금 석유류 가격 인상(휘발유 리터당 6,500 → 7,400 루피아), 전기료 인상(15%), 최저임금 상승(전국 평균 43%)과 계절적 요인에 따른 식품류 가격 상승이 중첩된 결과
-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13년 11월 7.5%로 인상 후, 2015년 11월 현재까지 7.5%로 유지하고 있음

다. 경상수지

- 2014년에는 5월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2/4분기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 (GDP의 4.5% 수준)로 주식시장과 루피아화 가치 급락, 외환보유고 급감 등을 겪으며 심각한 조정국면에 직면함
- 2015년 금융시장은 경제지표 개선과 '조코위 효과'로 강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인상 가능성 대두,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2/4분기 GDP의 4.3% 수준)로 2014년 충격의 재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조코위 효과는 시장친화적으로 평가되는 조코위 자카르타 주지사의 대통령 선거 출마 및 승리를 통해 인니의 정치·경제 개혁 기대감으로 주식과 루피아 통화 강세를 보이는 것을 칭함

라. 환율동향

- 2014년 루피아는 달러대비 연초 9,630에서 연말 12,160까지 26% 급등(아시아 통화 중 가장 큰 폭 상승), 모건스탠리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신흥국 통화 "Fragile 5" 중 하나로 루피아화를 선정

마. 외국인투자

- 2015년 3분기 인도네시아 총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40.3조 루피아, 이중 외국인투자는 18.1% 증가한 92.5조 루피아, 국내 투자액은 14.9% 증가한 47.8조 루피아였음
- 그러나 달러기준 FDI는 2015년 3분기 7.4억불로 지난해 7.4억불과 동일한 수준으로 2013년 이후 FDI 유입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분야별 FDI는 전기, 가스, 수도가 11억불로 최고치를 기록, 광업(9억불), 부동산(8억불), 기초금속, 기계, 전기(7억불), 화학, 석유화학(6억불) 순임
- 지역별 FDI는 서부 자바가 15억불(전체 20.3%), 동부 자바 8억불, 자카르타 7억불, 반톤 6억불, 동부 깔리만탄 6억불 순임
- 국가별 FDI는 싱가포르가 12.5억불로 1위, 일본 9.2억불, 네덜란드 4.9억불, 말레이시아 3.2억불, 중국 2.5억불 순이며, 한국은 2.1억불로 9위를 기록함
- 2015년 1월~9월까지 총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400조 루피아

수준으로, 2015년 목표인 519.5조 루피아의 7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통상 3,4분기에 투자가 몰리는 경향을 고려 시 2015년 목표 달성은 낙관적이라 예상되나, 달러기반 FDI는 전년 동기 217억불과 비교하여 2015년에 214억불로 소폭 감소하였음

- 2015년 9월까지 국가별로는 1위 싱가포르(35억불), 2위 말레이시아(29억불), 3위 일본(25억불), 4위 한국(10억불), 5위 네덜란드(9억불) 순임
- 인니의 경제성장 잠재력 및 인니 정부의 FDI 유치 정책 등 감안 시, 대인니 외국인 투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투자유입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임

3. 경제정책

□ 현 조코위 정부

- 인적자원 개발 : 현행 9년의 의무교육을 12년으로 확대
- 식량 안보 : 관개수로 개선, 신품종 및 비료 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와 신규농지(1백만 헥타) 개발로 쌀 등 식량의 자급자족 확보
- 에너지 안보 : 석유 증산, 대중교통을 포함한 석유연료의 가스 전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수입수요 증가에 대비
- 연료보조금 축소 : 년 300억불 규모(정부재정의 17.6%)의 연료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남은 재원을 인프라, 교육, 보건 등 분야에 사용
- 농촌개발 : 마을당 14억 루피아 규모의 발전기금을 지급하여 경쟁력 강화
- 인프라 확충 : 도로(2,000km)·공업지역(10개)과 항구·공항(10개) 건설, 해상 도로 및 철도 중심의 육상 수송정책, 지방서민 주택·아파트 건설
- 전자정부 구축 : 정부예산, 세무, 감사 등 행정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
- 복지 증진 : 주민 보건카드제도(현재 자카르타만 시행) 도입 등을 통한 전 국민 사회보장제도 추진
- 천연자원관리 강화 : 기 계약은 존중하되 만료 시 국익 관점에서 재협상
- 국내산업 보호 : 국가이익에 부합하도록 기존 FTA 재평가, 국가산업표준제도(SNI) 지속추진, 국산제품 및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적극 활용

Ⅲ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1. 농업 현황

가. 인도네시아 농업환경

□ 농업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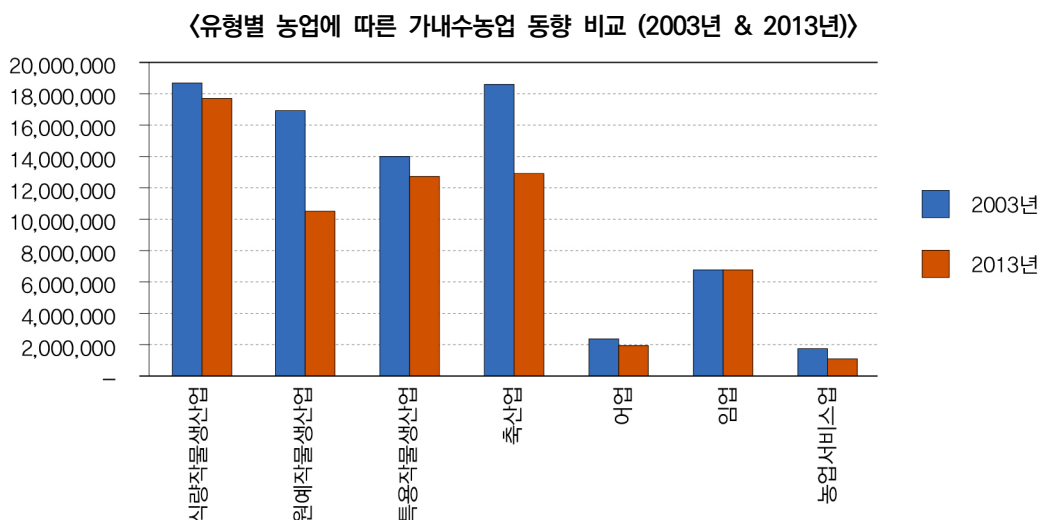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는 열대기후에 속하여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동식물의 다양한 유전 자원을 갖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경제에서 농업은 GDP 성장, 농산물 수출확대, 식품제공, 산업의 원료공급,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소득 증대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13~15%로 최근에 약간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농가호수는 전체가구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임
- 농업생산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
-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좋은 기후와 넓은 농지면적으로 인해 농업의 발전 전망이 밝은 편이며, 우리나라의 농가공 산업진출 시 넓은 농지와 값싼 노동력으로 이웃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기후 및 토양

- 인도네시아는 지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는 지역 중 하나로, 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양 대륙 연장부에 해당되는 얇은 순다대륙붕과 사홀대륙붕 사이에 위치함
- 인도네시아의 기후는 적도 바로 밑의 열대우림기후와 그 남북의 열대계절풍기후로 크게 나누어지며, 기온은 전역이 항상 고온으로 연평균 25~27℃이며 연교차도 매우 적음
- 적도 바로 아래 지역에서는 항상 비가 내려 연평균 강수량이 4000mm이지만, 계절풍지역에서는 우기와 건기의 차이가 뚜렷하여 이 두 계절은 각기 4월·11월을 교대기로 함

-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을 정면으로 받는 수마트라 섬 남서안과 자바 섬 서부는 우기에 강수량이 많고 저지에서는 자주 범람하지만, 동부의 소(小)순다 열도로 갈수록 차츰 강수량이 줄어듦
- 소순다열도 방면은 건기에 남동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건조도가 높으며, 섬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아대륙의 열대지역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견뎌내기 쉬운 기후라는 특색이 있음
- 비가 많은 지대이므로 토양은 라테라이트 토양이나, 산지에서 범람한 물질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이 경우 화산암질 토양은 수성암(水成岩) 토양에 비하여 비옥도가 높아 농사에 유리함
- 화산암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보르네오 섬 대부분과 셀레베스 섬 중부에 인구가 희박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화산암질 토양의 분포는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에 인구가 밀집하는 현상의 자연적 원인이 되어, 인도네시아의 농업이 거름을 거의 주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임
- 인도네시아의 토양특성은 10개 토양 목(Soil order)으로 크게 분류되며, 모암은 화강편마암, 화강암, 석회암, 화산 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토양이 분포되어 있으며 인구는 많고 농경지는 적기 때문에 경사(30~60%)가 높은 지역에도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특징임

□ 유형별 농업에 따른 가내수농업 동향 비교(2003년 &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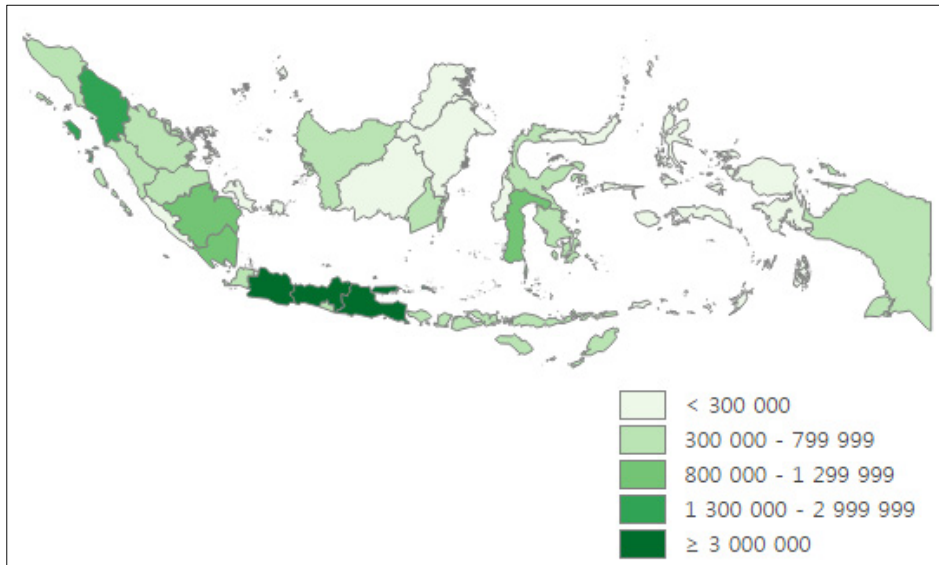
(단위: 호)

농업 분류	2003년	2013년
식량작물생산업	18,708,052	17,728,185
원예작물생산업	16,937,617	10,602,147
특용작물생산업	14,128,539	12,770,090
축산업	18,595,824	12,969,210
어업	2,489,681	1,975,233
임업	6,827,937	6,782,885
농업 서비스업	1,846,140	1,075,935
총 합계	79,533,790	63,903,685

* 자료: 2013년 인도네시아 통계청 농업 총 조사

- 인도네시아 농업 총 조사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에 의해 1963년부터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10년마다 조사하는 국가적인 조사 사업임
- 2013년 인도네시아 통계청 농업 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농업은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특용작물생산업, 축산업, 어업, 임업, 농업 서비스업으로 총 7개 종류로 나뉨
- 2013년 가내수농업 총 합계는 63,903,685호로 2003년 79,533,790호에 비해 약 20%가 감소됨
- 특히, 유형별 농업 중 가장 많은 가내수농업의 감소량은 원예작물생산업에 있어 2003년 16,937,617호에 비해 2013년은 10,602,147호로 약 40% 가량 감소됨
- 가내수농업의 감소 요인으로 농민 수입의 부족에 따른 가내수농업 중단 및 취업을 위한 대도시이주현상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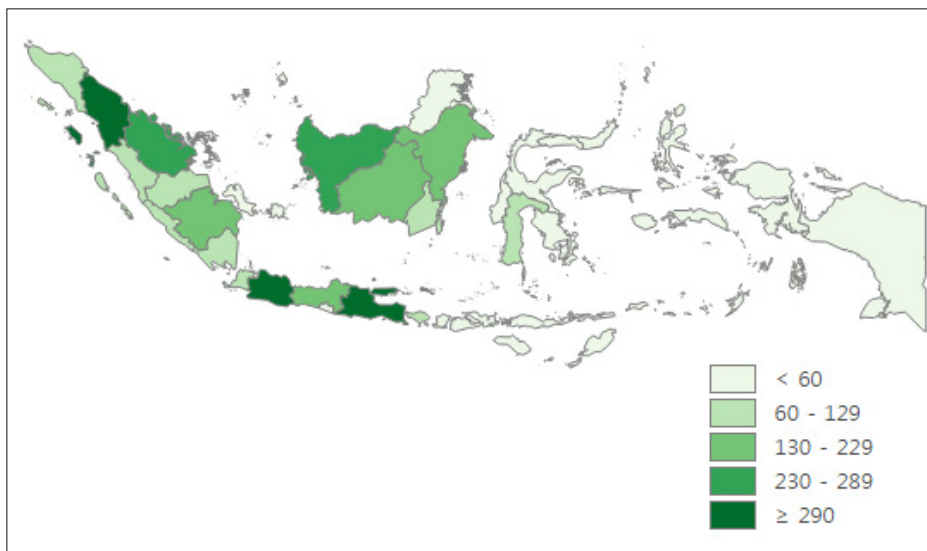
□ 지역별 인도네시아 가내수농업 분포도



* 자료: 2013년 인도네시아 통계청 농업총조사

- 인도네시아 가내수농업은 주로 자바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마트라섬, 술라웨시섬 등이 그 뒤를 이음

□ 지역별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 농업 분포도



* 자료: 2013년 인도네시아 통계청 농업 총 조사

- 가내수농업 분포도와 비슷하게 플랜테이션 농업 분포도도 역시 자바섬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마트라섬, 칼리만탄섬이 그 뒤를 이음

□ 인도네시아 농업발전의 저해요인

- 생산성과 생산의 질
 - 모든 농산품의 생산성은 대체적으로 낮으며, 특정 농산품의 생산성 같은 경우는 생산성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실제 생산성은 해당 기관 조사결과에 비해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함
 - 열성품종의 종자 사용, 비료 공급 부족, 관개시설 미비, 토지개간 관리 열약으로 인해 생산성과 생산의 질이 떨어짐
- 농업기술 부족
- 농업관련 정부조직의 비활성화
- 자본조달과 투자의 어려움
- 농작물의 가공능력 부족
- 홍보 및 마케팅 부재
- 인적자원 관리 부족
- 인프라시설 미비
- 정보관리 부족
- 인허가 처리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농부의 토지소유규모 및 토지 사용률이 현저히 낮음
- 용수 조달의 어려움 및 가뭄 대비책이 없음

□ 농업발전 전략

- 장기 발전계획에 있어 국가 발전 선도 산업으로 농업의 활성화
- 농업의 통합화, 조직화, 재구성 및 재조직화
- 데이터베이스 및 국가자원가능성 강화
- 인력양성과 인적자원 관리 향상
- 토지의 분배 및 소유의 통합
- 기술발전의 지방 분산화
- 전략적인 농산품 개발

- 농업협회 및 조직 체계화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 농업기반 산업 발전
- WTO 조직 내 인도네시아 역할 강화
- 인도네시아 농업정치 강화

□ 농업발전 프로그램

- 생산 증가 프로그램
- 인적관리 향상 프로그램
- 기반시설 발전 프로그램
- 사업발전 프로그램
- 기술발전 및 농업 응용 발전 프로그램
- 자산관리 및 농업 조직 프로그램
- 부가가치, 경쟁력, 유통구조, 마케팅 향상 프로그램
- 시골농가 발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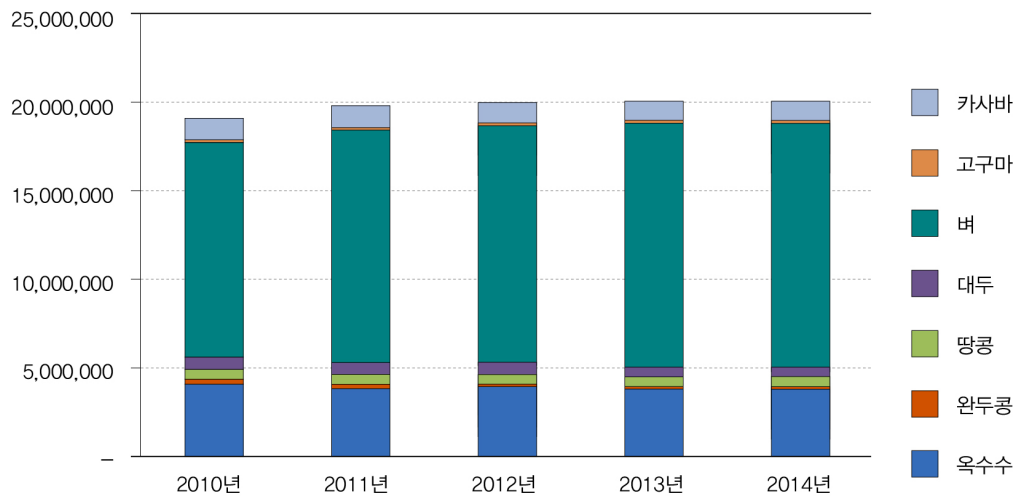
□ 최근 이슈

- 쌀 생산량 및 수급량 문제 해결
- 생산량과 생산성 향상
- 정부 조직 개편
- 수입제한 정책
- 시골 농업의 산업화
- 시장 네트워크 형성
- 농업 정보 관리
- 내수시장 강화
- 농업조직제도 강화
- 선진국 농업 벤치마킹

나. 주요 농업 지표

□ 주요 농업 지표로는 주요 농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성 수치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주요 농작물은 옥수수, 완두콩, 땅콩, 대두, 벼, 고구마, 카사바가 있음

□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



〈최근 5년간 주요 농작물 재배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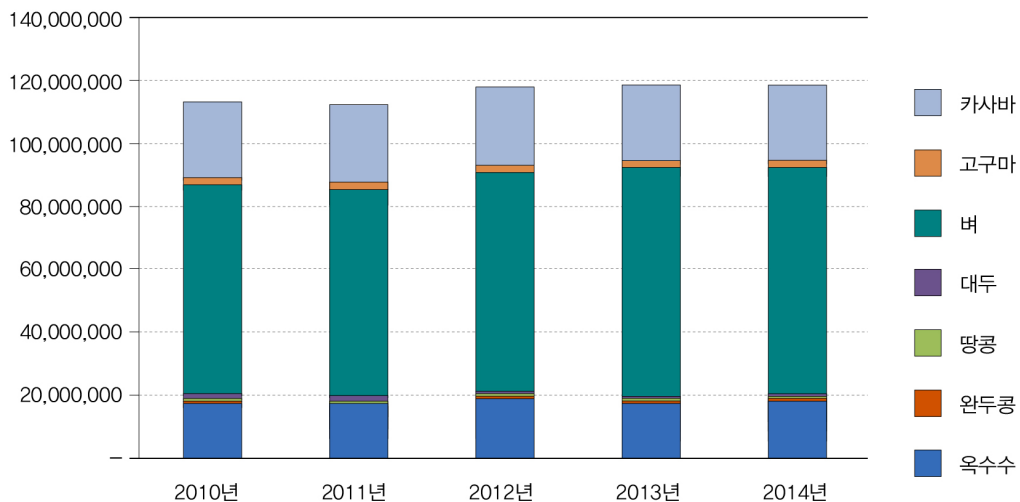
(단위: 헥타르)

농작물 종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옥수수	4,131,676	3,864,692	3,957,595	3,821,504	3,838,015
완두콩	258,157	297,314	245,006	182,075	207,802
땅콩	620,563	539,459	559,538	519,056	499,079
대두	660,823	622,254	567,624	550,793	615,019
벼	12,147,637	13,203,643	13,445,524	13,835,252	13,793,640
고구마	181,073	178,121	178,295	161,850	156,677
카사바	1,183,047	1,184,696	1,129,688	1,065,752	1,003,292
총합계	9,182,976	19,890,179	20,083,270	20,136,282	20,113,524

* 자료: 인도네시아 농업부

-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농작물 총 재배면적은 연간 증가율은 높지 않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총 재배면적은 20,113,524 헥타르로, 2010년 19,182,976 헥타르에 비해 5% 증가함
- 매년 재배면적이 높은 주요 농작물은 벼, 옥수수, 카사바, 대두, 땅콩, 완두콩, 고구마 순으로, 최근 5년 동안 순위는 동일함
- 재배면적이 가장 높은 벼 경우는, 2014년 기준 13,793,640 헥타르로 동년 대비 한국 벼 재배면적은 815,506 헥타르에 비해 약 1.7배에 해당하는 규모임

□ 주요 농작물 생산량



〈최근 5년간 주요 농작물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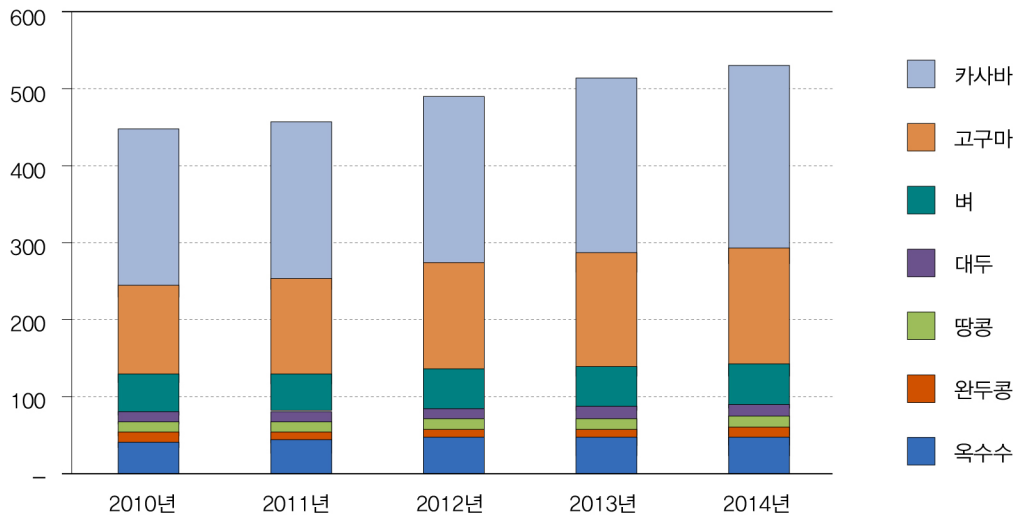
(단위: 톤)

농작물 종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옥수수	18,327,636	17,643,250	19,387,022	18,511,853	19,032,677
완두콩	291,705	341,342	284,257	204,670	244,516
땅콩	779,228	691,289	712,857	701,680	638,258
대두	907,031	851,286	843,153	779,992	953,956
벼	66,469,394	65,756,904	69,056,126	71,279,709	70,831,753
고구마	2,051,046	2,196,033	2,483,460	2,386,729	2,382,025
카사바	23,918,118	24,044,025	24,177,372	23,936,921	23,458,128
총합계	112,744,158	111,524,129	116,944,247	117,801,554	117,541,313

* 자료: 인도네시아 농업부

- 최근 5년간 주요 농작물 총 생산량은 2010-2011년 사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주요 농작물 총 생산량은 117,541천 톤으로 2010년 112,744천 톤에 비해 약 4.5%가 증가함
- 매년 주요 농작물 중 생산량은 벼, 카사바, 옥수수, 고구마, 대두, 땅콩, 완두콩 순으로, 최근 5년 동안 순위는 동일함
-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 순과 비교 시,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생산량이 반드시 많은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농작물 생산성



〈최근 5년간 주요 농작물 생산성〉

(단위: 생산량/면적)

농작물 종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옥수수	44	45	48	48	50
완두콩	11	11	11	11	12
땅콩	12	12	12	14	13
대두	14	13	14	14	16
벼	50	49	51	52	51
고구마	113	123	139	147	152
카사바	202	202	214	225	234

* 자료: 인도네시아 농업부

- 주요 농작물 중 카사바가 생산성이 가장 높으며, 고구마, 벼, 옥수수, 대두, 땅콩, 완두콩 순으로 생산성이 낮아지며, 최근 5년 동안 순위는 동일함
- 최근 5년간 생산성 변동이 가장 큰 작물은 고구마로 2014년 생산성은 152로 2010년 113에 비해 34.5%가 증가함
- 이에 반면, 완두콩과 땅콩은 최근 5년간 생산성 변동이 거의 없음

3. 주요 농업 정책

□ 이전 국가개발계획과 농업부 전략계획

- 국가 중기개발 계획 2010~2014에서 농업 분야의 주요 과제는 식량 및 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이었음. 이러한 과제를 설정한 배경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해 빈곤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이 곤란해져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없는 등 국민 후생이 악화된 점이 있음
- 농산물 자급 달성을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음. 특히 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중요시되어 농가와 상인의 상거래에서 농가의 지위 향상이 정책 목표로 세워짐
- 농업부 전략계획 2010~2014의 주요 정책으로는 토지 개혁, 재배종 혁신, 인프라 정비 혁신, 인적 자본 혁신, 농가 생산 비용 혁신, 농가 제도 혁신, 농가 생산 기술과 농촌 생산의 혁신

□ 현 조코위 정부의 농업 정책

- 조코위 정부는 식량 자급자족을 목표로 농수산물 수입 규제, 농민 빈곤 극복 및 농민 세대교체, 농업 개혁 실현, 상생협력의 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농수산물 수입 규제 정책은 국내 농산물 생산성 증대, 수입 마피아 척결, 식량 작물 가공품 수출 향상을 위한 것임
- 농민 빈곤 극복 정책은 농업 부문에 독, 도로 등 인프라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며, 농민 세대교체 정책은 현재 대부분의 농민이 45세 이상에 따라 젊은 세대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참고로 2014년 기준, 전체 농민 중 45세 이상은 61.8%로 압도적인 수치이며, 35~44세 이하는 26%, 35세 이하는 단 12%에 불과함

- 농업 개혁 실현 정책은 소유구조, 지배구조, 토지사용제도 등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농민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소유하고 빈농/소농 수가 감소하도록 하는 데 있음
- 상생협력 정책은 농업은행,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민들이 좀 더 쉽게 농사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하여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임

4. 농산물 무역동향

가. 농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주요 식량작물 수출입 동향

식량작물		수출입량 (톤)			수출입액 (천불)		
		수출(A)	수입(B)	수지(A-B)	수출(A)	수입(B)	수지(A-B)
벼	생	516	844,163	-843,647	759,928	388,189	-387,429
	가공	2,509	26	2,483	503,982	89	414
옥수수	생	37,589	3,253,619	-3,216,030	13,264,014	810,417	-797,153
	가공	6,953	120,883	-113,929	27,801,255	66,679	-38,878
땅콩	생	2,519	253,679	-251,160	4,351,328	284,615	-280,263
	가공	3,781	1,095	2,685	11,175,785	3,471	7,704
대두	생	41,303	1,965,811	-1,924,507	24,411,890	1,176,922	-1,152,511
	가공	9,880	3,879,603	-3,869,722	14,456,458	2,248,861	-2,234,404
카사바	생	9,589	22	9,566	8,371,094	40	8,330
	가공	113,418	365,084	-251,666	34,834,576	160,491	-125,656
기타	생	38,094	7,556,459	-7,518,364	38,454,617	2,500,012	-2,461,557
	가공	98,504	285,178	-186,673	27,115,669	172,193	-145,078
총합	생	129,612	13,873,755	-13,744,143	89,612,871	5,160,197	-5,070,584
	가공	235,049	4,651,872	-4,416,823	115,887,725	2,651,786	-2,535,898

* 자료: 인도네시아 농업부

- 2014년 인도네시아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생 식량작물 중 생 대두가 가장 많은 수출량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생 옥수수, 생 카사바, 생 땅콩, 생 벼 순임

- 반면, 가공 식량작물 중 가공 카사바가 가장 많은 수출량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가공 대두, 가공 옥수수, 가공 팥콩, 가공 벼 순임
- 또한, 가장 많은 수출액을 올린 가공 식량작물은 가공 카사바로, 가공 옥수수, 가공 대두, 가공 팥콩, 가공 벼 순임
- 수입량은 생옥수수, 생대두, 생벼, 생팥콩, 생카사바 순이며, 수입액은 생대두, 생옥수수, 생벼, 생팥콩, 생카사바 순임
- 가공 식량작물의 수입량은 가공 대두가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가공 카사바, 가공 옥수수, 가공 팥콩, 가공 벼 순임
- 가공 식량작물의 수입액 역시 가공 대두가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가공 카사바, 가공 팥콩, 가공 옥수수, 가공 벼 순임
- 가공 팥콩, 가공 벼를 제외한 나머지 식량작물은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더 많아, 이에 따라 수입액도 수출액보다 더 높은 상황임

5. 농업 투자진출 유망 분야 및 유의점

가. 농업 투자진출 유망 분야

□ 작물생산 농장개발 및 농산가공 분야

- 해외 식량기지 확보 차원에서 벼, 대두, 옥수수, 사료작물 등 식량안보에 긴요한 농산물을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대규모 농장을 조성 또는 임차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위탁경영이 가능할 것임
- 작물생산 농장개발 및 농산가공 분야의 선정은 현지의 농작물 수출입 수지와 환경을 감안하여 선정해야 함
- 2007년 식량작물 수출입 수지현황

식량작물		수출입량 (톤)			수출입액 (천불)		
		수출(A)	수입(B)	수지(A-B)	수출(A)	수입(B)	수지(A-B)
벼	생	1,266	481,892	-480, 626	258	157,612	-157,354
	가공	2,974	212	2,762	648	111	537
옥수수	생	6,169	342,268	-336,099	943	69,733	-68,790
	가공	1,021	72,056	-71,035	175	23,801	-23,626

식량작물		수출입량 (톤)			수출입액 (천불)		
		수출(A)	수입(B)	수지(A-B)	수출(A)	수입(B)	수지(A-B)
땅콩	생	3,834	11,985	-113,151	2,943	44,790	-41,847
	가공	1,722	4,244	-2,522	2,773	3,483	-710
대두	생	345	1,411,589	-1,411,244	361	479,428	-479,067
	가공	21,382	2,349,504	-2,328,122	31,688	721,522	-689,834
카사바	생	208,722	45	208,677	31,146	50	31,096
	가공	31,196	306,343	-270,147	12,280	77,773	-65,493
기타		680,622	4,811,288	-4,130,666	231,089	1,400,090	-1,169,009
총 합계		964,253	9,896,426	-8,923,173	303,252	2,938,090	-2,634,838

* 자료: 인도네시아 농업부

- 2007년 식량작물의 수출입 수지현황을 보면, 가공 벼와 생 카사바를 제외하면 생 대두, 생 벼, 생 옥수수, 가공 카사바, 생 땅콩 순으로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훨씬 많음
- 식량작물의 수입량을 보면 생 대두는 1,411천 톤, 가공 대두는 2,349천 톤으로 가장 많음
- 식량작물의 수입액을 보면 생 대두는 479,428천 달러, 가공 대두는 721,552천 달러로 전체 식량작물 금액 2,938,090천 달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 만약 대두를 안정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정립한다면 그 기대효과는 매우 클 것임
- 대두의 품종, 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 기술 등을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면서 토양비옥도를 유지한다면, 대두의 생산 및 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벼는 정조(正租)의 형태로 약 480천 톤 정도 수입이 많으나, 가공 벼는 약 2천 톤 정도 수출이 많음
- 인도네시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목은 벼이나, 비료와 농약의 부족으로, 생산성이 낮은 편임
- 2008년과 2009년에는 정부의 쌀 생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농민의 참여로 생산성이 높아졌으나, 수확 후 관리과정의 설비가 미흡한 편임
- 이에 따라 벼 수확 후 관리 면에서 우리의 건조, 저장, 도정 기술이 진출한다면, 쌀의 품질을 높이면서 수확 후 손실량의 상당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생(fresh) 옥수수는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336천 톤 많으며, 가공 옥수수 역시 71천 톤이 많음. 인도네시아의 기후와 토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옥수수 등 사료작물 생산을 통해 국내 사료자원으로서 활용 및 인근국가에 수출을 고려하여 진출을 모색해 볼만함
- 다만, 단기적 접근이 아닌 5~10년 후를 바라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모색한다면, 옥수수 등 사료작물의 품질향상 및 국내 공급원 확보차원에서 유망할 것으로 예상함
- 대두, 벼, 옥수수의 식량작물의 생산성은 종자와 재배기술의 관리여하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지므로, 이들 작물의 종자를 개량하여 종자공급 사업을 실시해도 수익성은 클 것으로 예상함
-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농식품 산업은 면류산업으로, 즉석면은 도시민 뿐 만아니라 시골사람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음
- 면류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3백만 톤 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어 면류산업 분야도 숙고해볼만 함

□ 농기계 및 농자재 분야

- 인도네시아의 농업에 소요되는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외국 의존도가 높은 편임
- 특히, 인도네시아의 토양과 기상을 감안하고, 현지 농가의 수요특성을 고려하여, 습지의 특성에 맞춘 농기계, 비료 및 농약 개발을 위해 현지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출한다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현지 농가의 반응을 보면 급격하게 노력이 절감되는 농기계의 도입은 대부분 농민들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실정도 감안해야 할 것임
- 농기계의 수출입 현황은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6~10배 많은 상황으로 트랙터가 2006년 기준 약 5,000대로 2001년 이후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콤팩트(농작물을 베는 일과 탈곡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농업기계) 및 탈곡기도 매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농작업이 인력에서 기계화로 옮겨가는 시기이므로 농기계산업화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농기계산업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만함
- 농자재의 비료 중에 인산비료는 매년 약 74~193천여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칼리비료는 311~835천여 톤을 수입하고 있어 외국에 의존하고 있음

- 그리고 2003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농약의 전체적인 수입물량은 수출물량보다 늘어나는 추세임
- 농자재에 대한 수요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관개시설과 수자원 절약기술 분야

- 인도네시아는 연간 강우량은 많은 편이나 관개수로 및 댐건설 등이 열악한 실정이며, 전체 농지 중 관개수리 면적은 16% 정도로 농업기반 시설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 국가 차원에서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개시설과 수자원 개발을 검토해 볼만하며, 또한 생산기술 분야에서는 물 절약형 작물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생산성 향상 및 주변 농가에도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는 기회가 될 것임

□ 농업과학기술 및 인력개발 분야

- 인도네시아는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농업기술을 우선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 및 기술보급체계를 인도네시아에 전파한다면, 인도네시아의 농업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농업소득이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임. 또한 품종개발, 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 유통판매 전략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농사를 짓도록 변화를 유도해야 함
-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기술교육체계를 전달하고, 양국 간의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도 모색해 볼만함

나. 농장 개발 시 유의점

- 인도네시아는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 인구 2억이 넘는 잠재적인 시장임. 또한 농산물 등이 다양성과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투자진출의 우위성이 있어 국가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만함.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고 다양한 입체적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 토지이용 인허가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접근해야 함
- 투자목적에 맞는 토양특성, 작물종류, 생산량, 농산물 저장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지역을 선정하도록 함
- 인력관리 면에서 종교(이슬람), 풍습, 사고방식, 근로의욕, 노동관행, 상(商)관습 등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인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농업분야 투자 시 실패 요인

- 인허가 제도가 복잡하고,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지방 분권화에 따른 인허가 기관의 권력 남용으로 이중 계약 피해자 발생하고 있음
- 경작지 인허가는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소유는 외국인은 불가능하고, 법인만이 가능함
- 또한, 노동자 인권이 강화되어 인력관리 어려움이 있으며, 생산 환경 및 수확물 처리 인프라 구축 취약한 점도 대책을 세워야 함
- 특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보면 190개 국가 중 싱가포르 1위, 한국 20위, 인도네시아 122위인 점도 주의해야 함

IV

관세 및 검역제도

1. 관세 현황

- 2015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으며, 식료품을 중심으로 미용제품, 옷, 가방, 냉장고,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등 국내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주요 제품의 수입관세가 인상됨
- 인도네시아의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4.7%로 최근 6년 동안 가장 낮은 기록으로, 정부는 이 같은 저조한 경제성장률의 원인을 가계소비 위축 때문으로 판단하였음. 따라서 수입품 관세를 인상해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
-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커피의 수입관세는 기존 5%에서 20%로 15% 증가함. 가공육은 5%에서 30%로, 의류와 장신구는 10%에서 12.5%~15%로 인상됨. 자동차 역시 기존 10%와 40%에서 20%와 50%로 각각 10%씩 증가함
- 가장 큰 변화는 수입주류 제품군으로,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는 기존(30%)의 5배인 150%로 인상됨. 즉, 알코올도수 80% 미만의 수입주류는 모두 150%를 적용함
- 수입관세 인상정책은 ‘수입품에 관한 세금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1년 제11호’의 개정령인 ‘2015년 제10호’에 근거함
- 다음은 ‘수입품에 관한 세금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5년 제10호’의 식품관련 일부사항임

HS CODE	국문	원문(인도네시아어)	영문	관세
	제품설명	URAIAN BARANG	DESCRIPTION OF GOODS	
0901	로스팅이 된 것 또는 카페인 이 제거된 것 또는 제거되지 않은 커피; 커피껍질; 커피를 함유하고 있는 커피대용품	Kopi, digongseng atau dihilangkan kafeinnya maupun tidak; sekam dan kulit kopi; pengganti kopi mengandung kopi dengan perbandingan berapapun	Coffee, whether or not roasted or decaffeinated; coffee husks and skins; coffee substitutes containing coffee in any proportion	20%
0902	향이 있는 또는 없는 차	Teh, diberi rasa maupun tidak	Tea, whether or not flavoured	20%
1601	육류, 육류폐물 또는 피로 만든 것으로 소세지 및 이와 비슷한 식품; 이 제품으로 만든 가공식품	Sosis dan produk semacamnya, dari daging, sisa daging atau darah; olahan makanan berasal dari produk ini	Sausages and similar products, of meat, meat offal or blood; food preparations based on these products	30%
1602	가공 또는 보존처리 된 육류, 육류폐물 및 피	Daging, sisa daging atau daerah lainnya yang diolah atau diawetkan	Other prepared or preserved meat, meat offal or blood	30%
1604	가공 또는 보존처리된 생선; 캐비어 및 어란으로 가공된 캐비어 대용품	Ikan diolah atau diawetkan;kaviar dan pengganti kaviar dan pengganti kaviar yang diolah dari telur ikan	Prepared or preserved fish;caviar and caviar substitutes prepared from fish eggs	15%
1605	가공 또는 보존처리된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 무척추 동물	Krustasea, moluska dan invertebrata air lainnya, diolah atau diawetkan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prepared or preserved	15%
1704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사탕류(화이트초코릿 포함)	Kembang gula(termasuk coklat putih), tidak mengandung kakao	Sugar confectionery (including white chocolate), not containing cocoa	20%(일부 15%)
1806	초코릿 및 코코아를 함유하는 가공식품	Cokolat dan olahan makanan lainnya mengandung kakao	Chocolate and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15%(일부 10% 또는 20%)
1902	조리된 것 또는 육류나 타재료를 함유/비함유된 파스타 또는 스파게티, 마카로니, 면, 라자냐, 뇨끼, 라비올리, 카넬로니, 쿠스쿠스와 같은 가공식품 또는 비가공식품	Pasta,dimasak atau diisi maupun tidak (dengan daging atau bahan lainnya) atau diolah secara lain,seperti spaghetti, makaroni, mie,lasagna,gnocchi, ravioli,cannelloni; couscous, diolah maupun tidak	Pasta, whether or not cooked or stuffed (with meat or other substances) or otherwise prepared, such as Spaghetti, macaroni, noodles, lasagne, gnocchi, ravioli, cannielloni; couscous, whether or not prepared	20%

HS CODE	국문	원문(인도네시아어)	영문	관세
	제품설명	URAIAN BARANG	DESCRIPTION OF GOODS	
1904	시리얼을 팽창시키거나 로스팅방법으로 얻은 가공식품 (예, 콘플레이크); 플레이크 또는 다른방식으로 가공된 곡물 형태의 시리얼(옥수수 외), 조리되지 않거나 가공되지 않은 시리얼, 명시되지 않거나 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	Makanan olahan diperoleh dengan cara menggembungkan atau menggongseng serealia atau produk serealia (misalnya, keripik jagung); serealia(selain jagung), dalam bentuk butir atau serpih atau butir yang dikerjakan secara lain(kecuali tepung, menir dan tepung kasar), belum dimasak atau diolah secara lain, tidak dirinci atau termasuk pos lainnya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for example, corn flakes); cereals(other than maize(corn)), in grain form or in the form of flakes or other worked grains(except flour, groats and meal), pre-cooked or otherwise prepared,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0%
1905	코코아를 함유 또는 함유하지 않은 빵, 패스츄리, 케이크, 비스킷 및 타 제과류; 성체용 빵, 의약품 사용에 적절한 빈 캔슬, 실링웨이퍼, 라이스페이퍼 및 이와 비슷한 제품	Roti, kue kering, kue, biskuit dan produk roti lainnya, mengandung kakao maupun tidak;wafer komuni, selongsong kosong dari jenis yang cocok untuk keperluan farmasi, sealing wafers, rice paper dan produk yang semacam itu	Bread, pastry, cakes, biscuits and other bakers' wares, whether or not containing cocoa; communion wafers, empty cachets of a kind suitable for pharmaceutical use, sealing wafers, rice paper and similar products	20%
2006.0 0.00.00	야채, 과일, 땅콩, 과일껍질, 식물 다른 부분을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것	Sayuran, buah, kacang, kulit buah dan bagian lain dari tanaman, diawetkan dengan gula(kering, berkilau atau Kristal)	Vegetables, fruit, nuts, fruit-peel and other parts of plants, preserved by sugar(draind, glace or crystallised)	20%
2101	커피, 차, 마테차의 추출물, 진액 및 농축액과 이 제품을 바탕으로 한 가공식품 또는 커피, 차, 마테차, 로스팅한 치커리와 로스팅한 커피대용품, 그리고 이의 추출물, 진액 및 농축액	Ekstrak, esens dan konsentrat, dari kopi, teh atau mate dan olahan dengan dasar produk ini atau dengan dasar kopi, teh atau mate, chicory digongseng dan pengganti kopi yang digongseng lainnya, dan ekstrak esens dan konsentratnya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d, of coffee, tea or mate,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products or with a basis of coffee, tea or mate, roasted chicory and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and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thereof	20%

HS CODE	국문	원문(인도네시아어)	영문	관세
	제품설명	URAIAN BARANG	DESCRIPTION OF GOODS	
2103	소스류, 혼합소스류, 양념류, 겨자가루, 겨자, 겨자가공식품	Saus dan olahannya;campuran bumbu dan campuran bahan penyedap;tepung mustard dan tepung kasar mustar serta mustar olahan	Sauces and preparations therefor;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s;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15%
2105.0 0.00.00	아이스크림 및 코코아를 함유 또는 함유하지 않은 빙과식품	Es krim dan es lainnya yang dapat dimakan, mengandung kakao maupun tidak	Ice cream and other edible ice, whether or not containing cocoa	15%
2106	이 표에 명기되지 않은 가공 식품	Olahan makanan yang tidak dirinci atau termasuk dalam pos lainnya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5%
2202	생수, 설탕 또는 당류 또는 식용색소가 포함된 탄산음료,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 표제 20.09의 과일주스 또는 야채주스를 포함하지 않는 것	Air, termasuk air mineral dan air soda, mengandung tambahan gula atau bahan pemanis lainnya atau pemberi rasa, dan minuman yang tidak mengandung alcohol lainnya, tidak termasuk jus buah atau sayuran dari pos 20.09	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not including fruit or vegetable juice of heading 20.09	10% (일부 20%)
2204	발효음료, 표제 20.09의 포도과즙을 포함한 발효된 포도 와인	Minuman fermentasi dari buah anggur segar, termasuk minuman fermentasi yang diperkuat,grape must sealing dari pos 20.09	Wine of fresh grapes, including fortified wines, grape must other than that of heading 20.09	90%
2205	베르무트 및 포도 외에 향이 첨가된 발효과일음료	Vermouth dan minuman fermentasi lainnya dari buah anggur segar yang diberi rasa dengan zat nabati atau zat beraroma	Vermouth and other wine of fresh grapes flavoured with plants or aromatic substances	90%
2206	발효음료(예, 사과즙, 배즙, 벌꿀술), 혼합발효음료,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혼합발효음료, 이 표에 명기되지 않은 것 또는 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	Minuman fermentasi lainnya(misalnya, fermentasi sari buah apel, sari buah pir, larutan madu dalam air); campuran minuman fermentasi dan campuran minuman fermentasi dengan minuman yang tidak mengandung alkol, tidak dirinci atau termasuk dalam pos lainnya	Other fermented beverage(for example, cider, perry, mead);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mixture of fermented beverages and non-alcoholic beverag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90%

HS CODE	국문	원문(인도네시아어)	영문	관세
	제품설명	URAIAN BARANG	DESCRIPTION OF GOODS	
2208	알코올도수가 80% 미만의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 알코 올, 리큐어, 알코올음료	Etil alcohol yang tidak didenaturasi dengan kadar alcohol kurang dari 80% menurut volumenya:alcohol, sopi manis dan minuman beralkohol lainnya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150%

2. 검역 제도

□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관련 인도네시아 법률 1992년 제16호는 수생종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의 수입, 수출 및 이전과 관련된 검역 요구조건을 정의함. 이 법안은 인도네시아 검역부문의 최상위 법안으로 이 법안의 시행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검역제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장관규정 및 결의, 소관부서 결정사항 등을 발표함

□ 농림부 산하 인도네시아 농림검역청(IAAQ)은 검역제도의 중심 집행기구로, 해양수산부는 산하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해 수산제품을 규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에서 알 수 있듯이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검역절차

1	검사	인가된 기관에서 요구서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역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
2	격리	장기간, 특수시설, 제어된 환경조건 등을 요구하는 검역대상 제품은 격리 가능성이 높음
3	관찰	격리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 관찰이 진행
4	처리	-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오염/감염 또는 오염/감염되었다고 의심이 갈 경우 -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이 갈 경우

5	역류	인도네시아에의 수입 요구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대상 제품은 역류가 되며,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규정충족을 위해 허용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함
6	거부	- 검사결과, 검역대상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혹은 질병에 오염 또는 감염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어 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 요구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 역류 조치 이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운송수단 내에서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7	폐기	-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이 되고, 후속적인 검사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감염이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 입국 거부 이후에, 지정된 기간 이내에 소유주가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 영외 또는 목적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을 경우 - 격리 후 관찰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의 오염/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 - 운송수단에서 하역후 추가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8	인도	제품이 오염 또는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제품은 인도가 되며, 수입업자가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인도증명서가 발급됨

□ 검역절차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요구되는 서류는 수입되는 제품의 유형에 따름. 일부 서류양식 및 요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함

- 운송수단/목재포장재/PSAT 확인서
- 식물검역시행절차/안전감독/PSAT 승인서
- 화물하역 승인서
- 훈증 증명서
- 소독 증명서
- 식물 검역 증명서
- 운송수단 도착 보고서
- 원산지 및 경유지 국가의 건강 증명서

□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등록

- 인니「수입 신선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15.2.17)」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검사 실험실 등록 추진
- 1년의 유예기간 후 '16.2.17일부터 시행 예정
-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과 「식품안전 실험실 등록」 동시 추진

-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 승인 대상 : 국가에서 시행중인 GAP·GHP(우수위생관리기준, Good Handling Practices), GMP(우수제조관리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
 - 등록 대상 : 농약과 중금속·미생물 검사 가능한 실험실로 국가 또는 세계적 인 공신력 있는 기관(ISO/IEC 17025:2005)
 -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제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 인정기구”(ILAC)가 국가(71개국 86개 인정기구) 간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을 위해 개별 인정기구를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며, 우리나라의 인정기구는 KOLAS(국내 농축산물 18, 미생물 44 실험실 등록)임
 - 추진경과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니 농업부 검역청 식물안전검역국에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과 「식품안전 실험실 등록」 신청 (‘15.9.16)

I 참고

□ 對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불)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8,897	13,564	13,955	11,568	11,361
수 입	13,986	17,216	15,676	13,190	12,266
무역수지	△5,089	△3,652	△1,721	△1,622	△905
총교역액	22,883	30,780	29,631	24,758	23,627

* 주요 수출 품목: 경질석유 및 조제품, 기타기기·부분품, 프로필렌공중합체

* 주요 수입 품목: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석유, 활엽수류, 천연고무, 동광·정광

* 자료 : KITA(무역협회)

□ 對 인도네시아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톤, 천불, %)

구 분		2013		201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 출(A)	농산물	81,028	115,201	111,278	136,821	37.3	18.8
	축산물	2,178	7,952	2,391	11,330	9.7	42.5
	임산물	19,973	30,944	23,276	31,484	16.5	1.7
	수산물	10,833	13,263	10,673	13,433	-1.4	1.2
	합 계	114,012	167,360	147,618	193,069	29.4	15.4
수 입(B)	농산물	1,196,913	423,836	1,523,249	577,469	27.3	36.3
	축산물	2,461	10,400	8,716	11,485	254.2	10.4
	임산물	804,461	580,995	810,922	579,141	0.8	△0.3
	수산물	20,565	61,335	23,087	72,055	12.3	17.5
	합 계	2,024,400	1,076,565	2,365,973	1,240,150	16.9	15.2
무역수지(A-B)		-	△909,205	-	△1,047,081	-	-

* 자료 : KATI(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對 인도네시아 농림축수산물 수입 상위 20개 품목

(단위: 천불)

순위	수 입		순위	수 입	
1	펄프	294,277	11	목탄	31,915
2	합판	119,020	12	기타 가구	31,484
3	팜유	118,526	13	건축용목제품	15,522
4	당밀	77,348	14	기타어류	15,255
5	파암넛유박	72,731	15	문어	11,382
6	야자유	68,335	16	코토니	9,247
7	혼합조제식료품	57,297	17	빵	8,572
8	성형목재	53,146	18	커피	8,359
9	야자, 코프라박	42,824	19	캐비아	7,342
10	밀기울	39,873	20	타피오카	6,830

* 자료 : KATI(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참고문헌

- Iskandar Andi Nuhung, *Strategi Dan Kebijakan Pertanian Dalam Perspektif Daya Saing*, Rineka Cipta, Jakarta, 2014
- Triwibowo Yuwono, *Pengantar Ilmu Pertanian*, Gadjah Mada University Press, Yogyakarta, 2014
- Sukino, S.PKP.MM., *Membangun Pertanian Dengan Pemberdayaan Masyarakat Tani*, Pustaka Baru Press, Yogyakarta, 2014
- Bambang Hendro Sunarminto, *Pertanian Terpadu Untuk Mendukung Kedaulatan Pangan Nasional*, Gadjah Mada University Press, Yogyakarta, 2014
- Siti Rohaeni, *Pembangunan Pertanian Indonesia*, Graha Ilmu, Tangerang, 2014
- Djagal Wiseso Marseno, *Pengantar Ilmu Pertanian (Agraris, Agrobisnis, Agroindustri, dan Agroteknologi)*, Global Pustaka Utama, Yogyakarta, 2014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ank Indonesia) 공식홈페이지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BKPM) 공식홈페이지
- 인도네시아 농업부 (Kementerian Pertanian) 공식홈페이지
- 인도네시아 통계청 (BPS) 공식홈페이지
- 현지 언론사 KOMPAS 공식홈페이지
-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공식홈페이지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식홈페이지
- 한국 무역협회 공식홈페이지

베트남 <<<

2015 주재국 농업전망

- I. 국가개황
- II. 경제동향
- III.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 IV. 관세 및 검역제도



I

국가현황

1. 일반현황

-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수도 : Hanoi (인구 : 710만 명)
- 면적 : 330,966 km² (약 3천3백만 헥타 /한반도의 약 1.5배, 남한의 3.3배)
 - 해안선 길이 3,444 km, 남북 길이 1,650km, 동서 길이 48~600km
- 주요도시 : 호치민 (798 만 명), 하노이 (710), 하이퐁(194), 다낭 (100), 동나이 (283) 등
- 인구(2014 기준) : 약 907만 명 (세계 14위, 약 67%가 농촌거주)
 - 인구 증가율 : 1.08%
 - 인구분포('14 추정) : 0~14세(22%), 15~60세(59.2%), 60세 이상(18.5%)
- 기후 : 북부지역 아열대성기후, 남부지역 열대몬순
 - 연평균기온 : 24.2℃ (북부 24.4℃, 중부 25.1℃, 남부 27.2℃)

2. 정치 및 일반

- 정부형태 : 사회주의공화제 (공산당 유일정당)
- 의회 : 임기 5년 단원제 (500명)
- 독립일 : 1945. 9. 2
- 언어 : 베트남어(공용어)
- 종교 : 무교 (81%), 불교(7.9%), 카톨릭(6.6%), Hoa Hao(1.67%)
- 민족 : 베트남족 (85.7%), 53개 산악소수민족, 화교(약 100만 명) 등

3. 경제지표

- GDP : 3,937.8조 동('14)
- 1인당 GDP : 2,052 불('14) (△7.6%)
- 실질GDP성장률 : △5.9%
- 무역규모
 - 수 출 입 : ('13)2,642억 불 → ('14)2,982억 불(12.9%)
 - 수출 : ('13) 1,321억 불 → ('14)1,502억 불(13.7%)
 - 수입 : ('13) 1,321억 불 → ('14)1,480억 불(12.1%)
 - 무역수지 : ('13) 0.1억 불 → ('14)21.3억 불
 - * '14년 금액은 연평균환율로 환산(VND21,890/\$)
- 농수산물
 - 수출 : ('13) 277억 불 → ('14) 308(11.2%)
 - 수입 : ('13) 189억 불 → ('14) 218억 불(15.3%)
- 외환보유액 : 380억 불('15.7)3

〈베트남 지도〉



〈베트남 국기〉



II

경제동향

1. 경제 특징

□ 거시 경제 안정화 및 점진적인 경제성장 기조 지속

- GDP : 2014년 베트남 GDP 성장률은 5.98%로 2012년 5.03%, 2013년 5.42%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의 성장을 기록
- 2015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6.03% 기록
 - 2014년 1/4분기 성장률 4.96% 보다 1.07P 상승
 - 제조·건설 부문 성장률은 8.35%로 베트남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서비스는 5.82%, 농림수산업은 2.14% 성장하여, 제조·건설 부문이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발전(11.90%), 제조업(9.51%), 정보통신(8.10%)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특히 2013년 1/4분기 4.95% 성장에 그쳤던 제조업은 '14년과 '15년 같은 기간 각각 7.3%, 9.51%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농업(1.54%), 수산업(3.38%) 등 1차 산업은 저성장 지속

〈최근 베트남의 GDP 성장률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년
							1/4분기
GDP성장률	5.32	6.78	5.89	5.03	5.42	5.98	6.03

*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 소비자물가 : 2014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4.09%로 2013년 6% 보다 더욱 낮아진 안정 기조 유지
 - 2015년의 1/4분기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0.74% 상승 기록
 - 소비자물가가 '12년 9.21%, '13년 6.6%, '14년 4.09%를 기록하여,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교육(8.38%) 부문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편이며, 곡물(0.4%), 식품(2.86%), 외식(2.31%), 음료 및 담배(2.52%)의 뚜렷한 안정세 시현
- 특히, 유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교통(13.52%), 주택 및 건설자재(3.56%) 등 크게 하락하여, 소비자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

〈최근 베트남의 CPI 증가율 (% , 전년동기대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년			
						1월	2월	3월	1/4분기
CPI	9.19	18.58	9.21	6.60	4.09	0.94	0.34	0.93	0.74

*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 2015년 3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0.15% 증가에 그침
- 월간 CPI 증가율은 2013년 6월 이래 상승세를 유지하다 2014년 11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

〈최근 베트남의 전월대비 CPI 증가율 (%)〉

	2014년												201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CPI	0.69	0.55	0.44	0.08	0.20	0.30	0.23	0.22	0.40	0.11	-0.27	-0.24	-0.2	-0.05	0.15

*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 생산자물가(PPI)
 - 농림수산 PPI는 전년동기 대비 2.30%, 산업생산 PPI는 9.10% 증가
 - 농산물 전년동기 대비 1.80%, 임산물 전년동기 대비 6.30%, 수산물 전년동기 대비 3.60% 기록
 - 광산물 전년동기 대비 6.70%, 공산품 전년동기 대비 9.60%, 전력 전년동기 대비 12.1%, 상하수도 전년동기 대비 7.80% 기록

〈최근 베트남의 PPI 증가율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년
					1/4분기
농림수산	31.80	3.91	0.57	3.90	2.30
산업생산	18.43	9.32	5.25	5.20	9.10

*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 교역 : 2014년 사상 최대인 21억4000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수출 1501억 9,000만 달러, 수입 1480억5000만 달러) 기록, 이로 인해 대미국 달러와의 환율안정화에 기여
- 무역수지: 2011년(△98억 달러) → 2012년(8억 달러) → 2013년(1,000만 달러) → 2014년(21억4000만 달러)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년 5월
수출	1,145.7	1,321.3	1,501.9	634.5
수입	1,137.9	1,321.2	1,480.6	665.0
무역수지	7.8	0.1	21.3	29.5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번	국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1	미국	19,668	23,869	28,656	12,777
2	중국	13,060	13,651	14,906	6,230
3	일본	12,388	13,259	14,704	5,559
4	한국	5,580	6,631	7,144	3,061
5	홍콩	3,706	4,107	5,203	2,594
6	독일	4,095	4,730	5,185	2,335
7	UAE	2,078	4,139	4,628	2,255
8	네덜란드	2,476	2,937	3,769	1,742
9	말레이시아	4,496	4,926	3,931	1,420

순번	국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10	호주	3,241	3,514	3,990	1.292
11	기타	43,785	50,372	58,070	24,180
	합계	114,573	132,135	150,186	63,445

※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

- 외국인투자 :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202억4000만 달러(신규 156억 5000만 달러, 증액 45억9000만 달러)를 유치해 전년대비 6.5% 감소했으나, 안정적 투자 유치 기조 유지. 실행금액은 124억 달러로 전년대비 7.4% 성장
 - FDI 추이: 2010년 172억 달러 → 2011년 147억 달러 → 2012년 130억 달러 → 2013년 216억 달러 → 2014년 202억 달러 → 2015년 6월 55억 달러
- 환율 및 외환보유고
 - 2015년 1/분기 중앙은행 고시환율은 1USD=21,458 VND 기록. 하지만 최근 달러대비 베트남 동 환율 상승세 지속 전망
 - 외환 보유고는 380억 달러로 추정
 - 베트남이 협상중인 TPP 타결 등 기대감으로 최근 외국인투자(FDI) 증가 등에 따른 외환보유고 확대

〈환율 및 외환보유고 (VND, 억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년 1/4분기
환율(1US\$당)	18,932	20,828	20,828	21,036	21,246	21,458
외환보유고	124	138	254	320	350	380

* 자료: 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

- 고용
 - 2015년 1/4분기 실업률은 2.22%를 기록
 - 도시지역 실업률은 3.17% 기록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53.6백만 명으로 전년 동기비 8천8백명 증가
 - 노동 인구의 산업별 구성비는 1차 산업 종사자 40.7%, 2차 산업 25.5%, 3차 산업 33.8% 차지

〈연도별 실업률(%)〉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1/4분기
실업률	4.3	4.7	6.5	2.9	2.3	1.99	2.2	2.08	2.22

* 자료: 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노력 가속화

- 2014년 말 한-베 FTA, 베-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FTA 협상 타결에 이어, 2015년 연내 베-EU FTA, TPP 협상 타결 추진 등 주요 교역상 대국과의 교역 확대 노력 강화
-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대응한 내부 정비 등 글로벌 경제 체제로의 통합 노력 가속화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10개국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로 2013년 말 총 GDP 24조 달러의 세계 7대 경제규모

□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 및 정비

- 2014년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 예정
- (투자법) 기존 투자법보다 13개 조항이 감소된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
 - 투자등록증명서(IRC)제도를 신규 도입, 외국인 지분율 51% 이상 기업은 투자허가(IRC)와 법인설립허가(ERC)를 모두 받아야 하며, 51% 미만 기업은 법인설립 허가만 요구
 - 여러 개의 법률에 혼재돼 있던 금지 또는 조건부 허용 사업을 새로 정리했으며, 총 6개 사업 금지, 267개 사업 조건부 허용
- (기업법) 기존 기업법보다 31개 조항이 늘어난 총 213개 조항으로 구성
 - 법인설립을 위해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ERC를 신청, 법인설립인증서 발급 시일을 3일 단축, 법인 이사회 의사결정 정족수 기준 일부 완화
- (주택법)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취득 요건 완화
 - 비자 승인을 받은 모든 외국인들은 상업 주택 단지로 지정된 모든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음

- 외국인들이 한 빌딩에서 소유 가능한 수량은 전체 주택 수량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 특정 행정 구역에서 250채 이상의 주택 소유는 불가
- 외국인의 경우 50년 동안 소유할 수 있으며 갱신 가능하며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 개인은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됨

2. 한국-베트남 경제 동향

- 베트남의 인구 수는 91백만 명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며, 거듭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확대와 한류로 인한 우리 제품 선호도 증가 등 요인으로 인해 최근 다양한 한국 소비재 제품들이 베트남 내수시장에 진출 하고 있음
- 삼성, LG 전자를 필두로 한 한국산 전자제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식품류 등이 베트남 내 각광을 받고 있음
- 특히, 베트남 내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한국산 트럭 등 건설 중장비 및 부품 등의 베트남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수출액(증감률)	13,551(44.9)	15,946(18.4)	21,088(32.2)	22,333(5.9)	11,280
수입액(증감률)	5,084(52.7)	5,718(12.5)	7,175(25.4)	7,989(11.3)	3,380
교역액(증감률)	18,635(46.9)	21,664(16.3)	28,263(30.5)	30,322(7.3)	14,660
무역수지(증감률)	8,467(40.6)	10,236(20.9)	13,913(35.9)	14,344(3.1)	7,900

※ 자료원: KOTRA, 한국무역협회(KOTIS)

- 2014년 한국은 베트남으로 수출 223억3000만 달러, 수입 79억9000만 달러로 총 교역액 303억2000만 달러, 무역수지 143억4000만 달러 흑자기록
- 베트남은 한국의 6위 수출대상국, 15위 수입대상국(8위 교역대상국)
 - 베트남의 입장에서 단일국가 기준, 한국은 3위의 교역대상국(수출 4위, 수입 2위)

〈베트남이 차지하는 한국 교역 내 위상 변화〉

	'05	'07	'10	'12	'13	'14
수출	18위	13위	9위	6위	6위	6위
수입	35위	32위	28위	20위	16위	15위
교역	25위	25위	15위	14위	9위	8위

※ 자료원: KOTRA

- 2014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약 7.29% 증가한 303억 달러를 기록, 무역흑자는 143억 달러로 베트남은 한국의 4번째 무역흑자국
 - 1위 흑자국은 중국(553억 달러), 2위는 홍콩(255억 달러), 3위는 미국(251억 달러)
- 수출은 전년 대비 약 5.9% 증가한 223억3000만 달러, 수입은 11.3% 증가한 79억9000만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흑자는 약 3.1% 증가해 143억4000만 달러 달성
 - 대베트남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원부자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반도체	2,147(212.9)	2,901(35.1)	2,789(-3.9)	911(-32.5)
무선통신기기	856(-37.0)	1,566(83.1)	2,271(45.0)	1,808(119.2)
합성수지	882(8.5)	1,136(28.7)	1,188(4.6)	469(1.4)
편직물	818(3.6)	942(15.1)	978(3.9)	398(1.7)
기구부품	545(152.5)	927(70.3)	938(1.2)	470(36.0)
철강판	1,106(-18.4)	963(-13.0)	917(-4.7)	382(27.1)
자동차	402(-40.4)	437(8.7)	713(63.2)	457(91.2)
석유제품	1,169(7.4)	787(-32.7)	600(-23.7)	78(-80.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698(112.3)	1,121(60.6)	597(-46.7)	129(-65.1)
플라스틱 제품	290(46.2)	402(38.6)	508(26.5)	289(53.3)
기타	7,043	9,906	10,855	5,889
합계	15,946(18.4)	21,088(32.2)	22,352(6.0)	11,280(24.3)

* 주: 2014년 순위 기준

자료원: KOTRA, KOTIS(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의류	1,084(32.4)	1,683(55.2)	2,160(28.4)	701(8.2)
신발	303(23.6)	377(24.4)	506(34.2)	229(10.8)
목재류	175(17.8)	232(32.4)	350(51.2)	138(8.9)
무선통신기기	97(40.4)	188(92.8)	292(55.6)	298(153.9)
기타 섬유제품	171(8.0)	217(27.3)	252(15.9)	105(7.9)
갑각류	115(-0.6)	126(9.4)	206(64.3)	64(-14.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2(168.3)	211(157.9)	193(-8.5)	75(-12.1)
원유	830(-9.8)	943(13.7)	192(-79.6)	56(0.0)
컴퓨터	61(55.0)	72(18.5)	174(141.8)	154(176.1)
연체동물	145(-14.1)	132(-9.0)	168(26.9)	63(0.8)
기타	2,656	2,994	3,496	1,497
합계	5,719(12.5)	7,175(25.5)	7,990(11.4)	3,380(18.7)

* 주: 2014년 순위 기준

자료원: KOTRA, KOTIS(MTI 3단위 기준)

- 대베트남 수출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의 상위 품목은 한국 진출기업의 생산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소재들로, 이는 베트남 내 소재, 부품 산업의 취약으로 인한 현지 수급이 어려운 점에 기인하고 있음
- 생산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베트남 내 외국 제조기업들의 원·부자재 현지 수급률은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Ⅲ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1. 농업현황

가. 농업인구

- 2014년말 기준 베트남 총인구는 90,728천명이며, 이 중 60,693천명(66.9%) 농촌 지역에 거주
- 농촌 노동인구는 2014년 37,222천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69.3%를 차지
 - 중·북부의 농업은 협소한 토지에서 소작농과 영세농이 주류를 이룬 반면,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곡창 지대인 남부는 독립농 위주

구분	2000년	2006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인 구(천명)	77,630	83,311	86,947	87,860	88,890	89,759	90,728
농촌인구(천명)	58,905	60,265	60,431	60,141	60,540	60,884	60,693
점유비(%)	75.9	72.3	69.5	68.4	68.2	67.8	66.9
농촌 노동인구(천명)	29,635	33,972	36,286	36,146	36,462	37,203	37,222
점유비(%)	76.9	73.5	72	70.3	69.7	69.9	69.3
농업취업인구(천명)	-	32,548	35,517	35,619	36,010	36,699	36,735
점유비(%)	-	54.4	58.8	59.4	59.5	60.3	60.5

※ 자료: 통계총국 ('14 기준)

나. 농업생산

- 2014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전체의 18%를 차지하는 등 농업이 여전히 중요한 산업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GDP성장률은 전체 5.9%, 농업 3.5%, 건설 및 제조업 7.1%, 서비스업 5.9%로 농업분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냄

(단위: 10억VND)

구분	2000년	2006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441,646	973,790	1,980,914	2,536,631	2,950,684	3,584,262	3,937,856
농업	108,356	198,266	407,647	60,120	638,773	658,779	713,381
점유비(%)	24.5	20.3	20.9	558284	21.6	18.3	18.1
건설 및 제조업	162,220	404,753	814,065	1,020,408	1,199,359	1,373,000	1,516,182
점유비(%)	36.7	41.5	40.2	40.23	40.6	38.3	38.5
서비스업	171,070	370,771	759,202	957,939	1,112,552	1,552,483	1,708,293
점유비(%)	38.7	38.8	38.8	37.7	37.7	43.3	43.4

* 자료: 통계총국 ('14 기준)

다. 주요작물 및 과수, 경제성 작물 생산현황

□ 메콩 델타를 중심으로 평지가 많고 비옥하여 농업(주로 쌀)이 발달하고 긴 해안선을 따라 수산업도 발달함

구분		2000년	2006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쌀	면적(천ha)	7,666.30	7,324.80	7,489.40	7,761.20	7,902.50	7,813.80
	수확량(t/ha)	4.24	4.89	5.34	5.64	5.57	5.76
	생산량(천톤)	32,529.50	35,849.50	40,005.60	43,737.80	44,039.10	44,975.00
옥수수	면적(천ha)	730.2	1,033.10	1,125.70	1,156.60	1,170.40	1,177.50
	수확량(t/ha)	2.75	3.73	4.11	4.3	4.44	4.41
	생산량(천톤)	2,005.90	3,854.60	4,625.70	4,973.60	5,191.20	5,191.70
사탕수수	면적(천ha)	302.3	288.1	269.1	301.9	310.4	305
	수확량(t/ha)	49.77	58.03	60.06	62.99	64.8	65.3
	생산량(천톤)	15,044.30	16,719.50	16,161.70	19,015.40	20,128.50	19,927.50
땅콩	면적(천ha)	244.9	246.7	231.4	219.2	216.4	209
	수확량(t/ha)	1.45	1.87	2.11	2.1	2.3	2.17
	생산량(천톤)	355.3	462.5	487.2	468.5	491.9	454.5
콩	면적(천ha)	124.1	185.6	197.8	119.6	117.2	110.2
	수확량(t/ha)	1.2	1.39	1.51	1.45	1.44	1.43
	생산량(천톤)	149.3	258.1	298.6	173.5	168.2	157.9

* 자료: 통계총국 ('14 기준)

□ 경제성작물 생산현황

- 캐슈넛 세계1위, 커피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2위, 후추 세계1위
- 망고, 오렌지, 커피 등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매년 증가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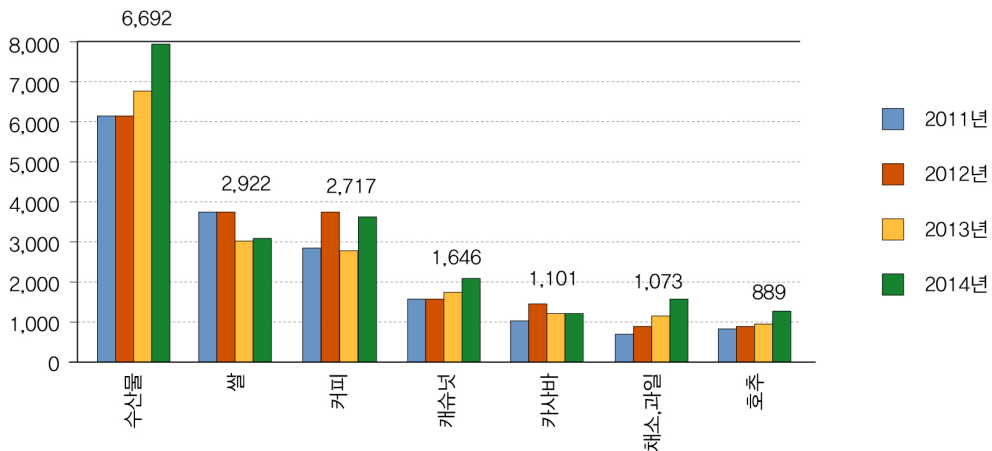
구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포도	28.6	26.3	24	16.7	14.7	16.3	19.2	20.7
망고	367.8	541.6	554	580.3	687	665	680.9	688.9
오렌지, 만다린	601.3	678.6	693.5	728.6	702.7	704.1	706	736.1
롱안	612.1	642.5	606.4	573.7	595.7	542.5	544.1	515.1
리찌, 람부탄	398.8	686	557.4	522.3	725.4	648.5	629.2	697.1
캐슈넛	240.2	308.5	291.9	310.5	309.1	312.5	275.5	344.9
고무	481.6	660	711.3	751.7	789.3	877.1	946.9	953.7
커피(씨)	752.1	1,055.8	1,057.5	1,100.50	1,276.60	1,260.40	1,326.60	1,395.60
차(신선)	570	746.2	771	834.6	878.9	909.8	936.3	962.5
호추	80.3	98.3	108	105.4	112	116	125	147.4

* 자료: 통계총국 ('14 기준)

2. 농식품 수출입 및 유통 현황

□ 농식품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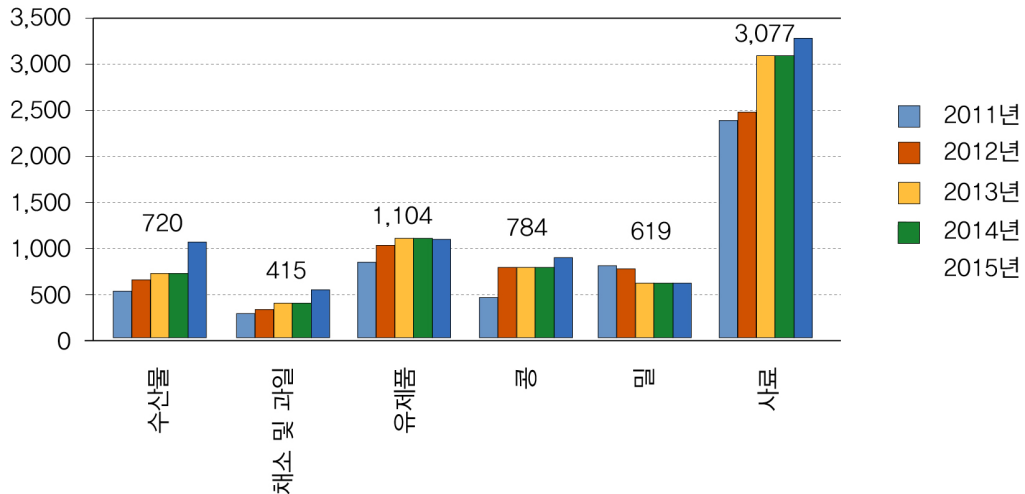
- 2014년 농산물 수출액은 178억불, 수산물 79억불 규모로 농수산물이 전체 수출의 11.9%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



※ 자료: 통계총국 ('14 기준)

□ 농식품 수입 현황

- 베트남은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 국가이나 자국 생산이 어려운 식물성유지 재료, 유제품, 밀 등은 주로 수입에 의존



※ 자료: 통계총국 ('14 기준)

- 과실류 중에서는 베트남 내 생산이 안되는 사과, 포도 수입량이 많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세임

〈베트남 과실류 수입 상위 품목('14)〉

(단위: 천불, %)

HS코드	품 목	'12	'13	'14	증감률	주 수입국
080131	캐슈넛 (건조 및 신선)	321,547	589,723	627,454	△6.4	코트디부아르, Ghana, 감보디아 등
080810	사과(신선)	23,633	24,515	24,473	-0.17	뉴질랜드, 중국, 미국 등
080520	감귤	20,930	13,414	11,651	-13.14	중국, 호주 등
080610	포도(신선)	30,470	39,144	41,356	△5.65	미국, 중국, 호주
081090	기타과실류(신선 및 건조)	13,055	9,785	8,112	-17.11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080450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신선 및 건조)	30,575	74,182	124,588	△67.9	태국, 중국, 라오스

* 자료: Global Trade Atlas (베트남은 '14실적이 가장 최근 실적임)

〈베트남 농식품 수입 상위품목 실적〉

(단 위: 백만불)

구분	품목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률
1	수산물	654	720	1,063	147.6
2	유제품	1,015	1,104	1,098	99.4
3	과실류,채소	345	415	520	125.3
4	캐슈넛	334	601	601,449	180.0
5	밀가루	769,897	619,470	619,470	80.5
6	옥수수	500,654	692,197	692,197	138.3
7	콩	780,165	784,187	784,187	100.5
8	식물,동물기름	747,656	692,197	692,197	92.6
9	제과류및케이크	309,771	202,097	202,097	65.2
10	기타식품제품	291,553	441,379	441,379	151.4

* 자료: 통계총국 ('14 기준)

3. 주요 농업정책

가. 국내외 동향

□ 국제 현황

- 세계은행(World Bank)의 예상에 따라 2016년 전세계 경제는 2.6%를 성장
 - 유럽지역(Eurozone)은 1.5%를 성장하고 태평양 동아시아지역은 6.7%를 성장함. 미국경제는 2.8%를 성장할 예보임
- 개발도상국가 경제는 평균 4.4%를 성장하고 중국 경제성장은 7.1% 예상
 - 중국의 성장감소는 지역에 남은 개발도상국가의 회복으로 보충
- 국제경제에 많은 리스크를 잠재하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 정치위기, 주권분쟁 부터 영향을 받겠지만 전망이 상당히 밝고 세계 경제 성장은 회복하고 있음
 - 2016년예의 아시아지역과 무역거래 시장은 높은 성장을 달할 예보이며, 적극적인 요소는 베트남 경제에게 영향을 주고 특히 농림수산물식품 무역임

□ 국내 현황

- 베트남 정부, 국회는 농업농촌분야에게 관심가지고 지도하고 있음

- 생산, 시장개발 등에게 지원정책의 해법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정부 총리의 2013년 6월 10일, 번호 899/QD-TTg 결정서에 따라 농업 부문 재구축 제안서와 새농촌 프로그램은 다음 년에 농업부문의 성장을 위해 강력하게 전개
- 2016년은 '16~'20년 단계적 5년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는 첫 해이며 2016년의 국내경제가 총체적인 재구축과 성장모형 개선 방향으로 지속적 성장 예상
- 세계은행(World Bank)의 예상에 따라 2015년의 베트남 성장은 6%를 달하고 해외 투자, 수출 유리한 조건에서 2016, 2017년에 6.5%로 증가할 예보임
- 아세아, 자유무역 베-유럽, 베-한, 베-아시아 유럽관세연맹, TPP 등 국제적인 조직 가입은 베트남 농업상품이 넓은 시장에 접근하는 기회를 만들어 경쟁력 높은 품목의 수출 성장할 기회

□ 장애요인

- 2015년 12월에 완료될 아세안 연합 및 TPP 등 자유무역협상 가입은 수출에 유리하지만 베트남 농업분문에 적합하고 즉각적인 지원정책이 없으면 부정적인 영향 예상
- 이들 장애요인은 복합적인 영향이 있고 베트남 수출입 무역과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임업 생산물 역병 영향에 즉각적, 장기적 대책필요

나. 2016년 농업농촌 개발 계획

1) 총괄 목표

□ 2016~2020년 단계적 농업농촌부문의 총괄목표

- 현대적, 지속적, 전면적 선진 농업 구축
- 대규모 상품 생산체계 구축
- 생산량, 품질 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적인 기술적용 강화
- 중장기적으로 국가식량 안전성 유지
- 농촌 생활수준 및 소득 제고
- 천연자원 관리능력 제고, 천연자원 효율적 사용력 강화, 환경보호 강화

- 2016년은 '16~'20년 단계적 5년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는 첫 해
- 농업부문은 새농촌 구축프로그램 실시로 부가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발전가능
토록 농업 재구축 철저하게 실시

2) 실시 계획

-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현대적인 방향으로 농업부문 구축
- 재배업 발전 방향
 - 대규모 생산방향으로 재배업 재구축을 집중 실시하며, 기지사슬에 따른 조
제, 보관, 유통단계 등을 연결함
 - 우수 종자 연구·시험을 강화
 - 생산능력, 품질 등을 제고하여 감모량 감소 위해 조제, 보관 시설을 개선

〈2016 농업부문 주요 목표〉

번호	평가치수	단위	'16 ~ '20 목표	2015 실시예상	2016 계획목표
1	농림수산업 GDP 성장속도	%	3.5~4.0	2.9 ~3.1	3.0~3.5
2	농림수산업 생산가치 성장속도	%	4.0~4.5	3.5	3.5~4.0
3	농림수산업 생산가치 중에 농림수산업 성장비중	%	70	68	68
4	농림수산업 평균 노동능률	VND백만	40	30	32
5	수출 금액	USD 10억	39~40	30.0	31
	-농산물		21~22	14.5	15.5
	-수산물		10	7.5	8
	-임산물 및 목재		8	7	7
6	산림보급 비율	%	43~44	40,73	41
7	연평균 빈곤농호 감소 비율	%	2%	10.5	8.6
8	새농촌 19기준달성 "면"급 비율	%	50	20	25

※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2016 재배업 발전계획 목표〉

번호	평가치수	단위	'16~'20 목표	'15 실시예상	'16 계획	'15 대비 '16 계획
1	재배업 생산가치 성장속도	%	2.5~3.0	2.2	2.5~3	0.3~0.8% 증가
2	생산총가치 중 재배업 생산가치 비중	%		54.6	54.2	0.2% 감소
3	재배면적 1ha당 수확가치	VND 백만	120	82.00	85.00	104%
4	씨가 있는 식량 생산량	천톤	51.5	50.100	50.100	100%

※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 식량생산 계획

- 식량안보를 유지, 농업토지사용 효율성 향상, 농업인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벼 재배지 사용을 활성화
- 시장성 있는 고소득 나물재배로 저효과 벼 재배지를 변환
- 2016년에는 옥수수, 농축사료 원료, 기타나무 등을 재배하기 위해 벼재배 면적 100천ha를 감축할 예정으로 2016년의 벼재배 면적은 7.6~7.7백만ha로 하여 평균 생산량은 ha당 5.8톤으로 총생산량은 44.5백만톤을 달성할 예정임
- 경쟁력, 생산효과, 벼 생산소득 등을 제고하고자 위해 벼 재배업 재구조화 제안서와 정부총리가 결재한 쌀상호 구축제안서를 집중적으로 실시함
- 메콩강 지역에 재배되는 벼종자를 갱신하고 인증된 고품질종자 재배면적 확보
- 1.22백만ha의 옥수수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15년 대배 20천ha를 증가 시도 고생산성 유전자변환 옥수수 종자 사용으로 ha당 4.5톤을 달성
- 옥수수 총생산량은 5.5백만톤을 달성하는 목표
 - 옥수수 국내수요가 지속 증가에 따라 각 지방은 실질적 소비필요량에 맞추어 사료용 옥수수재배로 벼재배면적 일부 변경을 지도할 수 있음
- 560천ha 규모로 카사바재배면적을 유지, 토지노화를 줄여서 ha당 19톤을 달성하고 2016년에 10.6백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규정에 따른 심경법 적용 선전·안내를 강화함

□ 공업용 나무생산 계획

- 커피나무
 - 기존 재배면적 심경을 강화하고 11.5천ha 재심경을 지속

- 저능률 노화된 4천ha 커피면적을 접목·개조
- 1.37백만톤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2015~2020년 단계적 커피종자 개발 프로그램 실시
- UTZ, 4C, VietGap, GlobalGap 등 인증서에 따른 커피생산 프로그램 확장
- 고무나무
 - 기존 면적을 유지하고 접합 고무수액 개발과 관리기술대책을 세우기 위해 시장변동을 수시로 연구
 - 2016년 고무생산량은 1백톤을 달할 계획
 - 2016년 고무신규재배를 실시하지 않고 지속적 발전하기 위해 각 지방은 선진기술 안내, 재기획 등을 강화
- 녹차
 - 130천ha를 유지하고 신선녹차잎 생산량은 1백만톤 목표
 - 고생산성, 고품질이 있는 신규종자로 노화된 차나무 교환 재배를 실시
 -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녹차나무에 농약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VietGap규정에 따른 생산 유도
- 캐슈넛
 - 10천ha를 유지하고 ha당 1.3톤을 달성하여 2016년에 총캐슈넛 생산량은 383천 톤 목표
 - 생산량,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심경법을 실시하고 재배자 소득 제고하도록 기타 재배나무와 캐슈넛을 혼합 재배하는 모형을 확대함
 - 2016년에는 6.7천ha 재배를 실시하고 노화된 2.1천ha 캐슈넛면적을 접목·개조함
- 매년 수확 가능한 공업식물
 - 300천ha 사탕수수 재배 면적을 유지하고 사탕수수 생산량 20톤을 달성
 - 225천ha 이상 땅콩 재배 면적을 확보하고 생산량은 518천 톤을 달
 - 120천ha(10천 헥타르 증가) 이상 콩 재배 면적을 확보하고 생산량은 180천 톤을 생산하여 식용수요와 사료용 수요에 부응
- 채소, 화훼, 과일
 - 1.08백만ha 이상 채소류, 채두류 재배 면적을 확보하여 채소류 생산량은 15.8백만 톤을 달성하고 채두류 생산량은 194천 톤을 달성하여 2015년 대비 5천 톤 증산 목표

- 840천 헥타르 과실나무 재배 면적을 목표로 하여 기존 소비시장이 있는 종류의 과실 심경을 강화하여 생산량과 품질을 지속 제고
- 2020년까지 고기술 적용 농업지역에 대한 정부총리의 2015년 5월 4일에 번호575 결정서에 따른 Lam Dong, Lao Cai, HCM, Ha Noi, Son La 등 유리한 지방에서 고기술 및 대규모의 채소, 화훼, 과실 개발을 강화함

〈실행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

- 2014년 5월 13일. 번호 1016/QĐ-BNN-CB 결정서 재배업 재구축 제안서
- 벼재배면적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정부의 2015년 4월 13일. 번호
- 인정된 종자이용비율. 재배나무 생산량 품질을 증가하기 위해 정부총리의 2009년 12월 25일. 번호 1016/QĐ-TTg 결정서에 따라 농업종자 개발제안서
- 정부총리의 2012년 1월 9일. 번호 01/2012/QĐ-TTg 결정서에 따라 우수 농업생산 실행응용 프로그램
- 정부총리의 2012년 4월 16일. 번호 439/QĐ-TTg 결정서에 따라 국가상품 발전 프로그램
- 협력개발. 생산과 소비연결. 대발형성 등 프로그램 격려 대책에 대한 정부총리의 2013년 10월 25일. 번호 62/2013/QĐ-TTg 결정서
- 중점적 제안서 실시 : 쌀재배업 재구축 제안서. 캐슈넛 발전 제안서. 지속적 커피나무재배업(특히 VnSat프로젝트) 및 2020년까지 옥수수. 채소. 화훼. 사탕수수. 녹차. 호추등 주요 상품의 능률제고 심경 프로그램
- 재배나무의 역병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 재배종자와 비료 등 농업자재 관리대책 공유를 실시함

□ 목축업 개발

- 지역마다 주력 동물마다 우세 개발 기초로 목축업 재구축을 강화하고 고기, 달걀, 우유 등 사회의 필수 기본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효과를 제고하고 지속적 개발함. 해외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고 잠재력 상품을 수출할 계획 도모

〈목축업 개발 계획 목표〉

번호	평가치수	단위	16년~20년 목표	15년 예상	16년 계획	15년대비 16년계획
1	생산가치 성장속도	%	4-5	5.0	5.5	0.5% 증가
2	총생산가치 중 목축업 생산가치 비중	%		18.58	19	0.2% 증가
3	육류생산량	천 톤	6.400	4.782	5.009	104.7

※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실행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

- 목축업의 재구축 해법. 임무, 방향 등의 전개를 강화함. 목장, 농장 규모로 분열된 목축 모형으로 전환하며, 고기술로 공업적인 농가 목축을 유지함
- 폐쇄형 생산을 장려하고 비용 절감, 효과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치사슬의 각 단계 연결을 실현함. 산란오리, 닭깃털 등 가금 비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축 구조를 변환함. 돼지 및 대 가축을 지속 발전시킴
- 정부총리의 2009.12.25.일. 번호 2194/QĐ-TTg결정서에 따른 고품질 가축종자 개발을 지속하고 우수한 종자 수입을 우선하고 생태지역에 따라 적합한 종자를 개발함. 소무계 제고 개조 프로그램을 실시함 등
- 목축업 사용사료 생산량 확보 : 16.7백만톤을 달할 목표이며 관리업무 제고를 강화하고 사료사용 효과를 제고함.(중심은 사료생산에 사용하는 주요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관리함)
-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보호 및 식품안전을 강화함. 사양농호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료사용 안내를 강화함
- 사료원료로 공급하는 나무재배 토지를 기획하고 저효과 벼재배토지를 사료원료 공급 재배나무토지로 환전함
- 수의업: 보건부의 2015년 2월 2일. 번호 438/QĐ-BNN-TY 결정서에 따른 2014~2018년 단계 가금조류독감 예방에 대한 국가적인 계획을 지속 전개함
- 2016~2020년까지 단계 구제역 통제와 광견병 폐쇄에 대한 국가적인 계획을 제출·결재 및 전개를 실시함. 수의 검역 활동을 강화하고 경계지역에 가축가금, 식품, 식품 첨가제 등 불법 수입 행위 통제를 강화함. 목축농장, 도축장, 육류저제장 등에 수의위생과 육류, 달걀, 우유, 꿀 등 화학물질 잔여,

미생물 오염 점검을 철저히 실시함. 역병안전 기준을 달한 목축농장 모형을 확장함

- 2015~2020년까지 단계 농호의 목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총리의 2014년 1월 9일. 번호50/2014/QĐ-TTg결정서를 집중 전개하고 실시 안내 통지서를 발행하도록 재정부와 결합함

□ 수산업 발전

- 지속적인 수산업을 발전위해 대규모, 고품질, 고능률, 경쟁력 등이 있는 생산업은 됨으로 목표함. 국제경제와 지속적 통합하고 어민의 소득을 제고

〈목축업 개발 계획 목표〉

번호	평가지수	단위	16년~20년 목표	15년 실시예상	16년 계획	15년대비 16년계획
1	생산가치 성장속도	%	5.5-6	5.5	6.0	
2	농림수산업 총생산 중 수산업 생산가치 비중	%	25	22.5	23	0.5% 증가
3	수산업 총생산 중 수산양식 생산가치 비중	%	70	64	65	1% 증가
4	ha당 수산물양식 생산가치	백만		175	185	106%
5	수산물 생산량	천 톤	7,000	6,210	6,400	103%

※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 발전 방향

- 수산원 보호 및 개발 : 인근어업 수산물 개발을 감소하고 심해어업을 확보함. 지역에 따라 주력 상품을 집중 개발하고 선박에서 보관, 조제 설비 투자를 증강함. 개발 효과를 제고하고 개발 후 손실을 감소함. 수산물을 개발하고 수산원 발전과 호보를 병행함. 수산물을 개발하고 해양에 국방안전, 국가 주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병행함
- 수산물 양식업 : 지방마다 상황에 따른 적합 생산량, 면적을 구축하는 것으로 양식대상, 양식방식을 다양화함
- 우수 수산물양식 실행활용을 강화하고 세우, 메기, 연체동물 등 주력상품의 인증서가 가지는 수산물 양식을 확보함
- 고기술을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수산물양식 지역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벼재배와 결합하는 수산물 양식 모형 확보를 지원함

- 해초류 등 해양예의 상품양식을 확보함. 5.100헥타르 메기양식 면적을 유지하고 사료가격을 안정 시키고 사료 생산자 및 양식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도록 2014년 4월 29일. 번호 36/2014/ND-CP 의정서를 철저히 실현함
- 600천 헥타르 홍다리 얼룩새우 양식면적을 안정시키고 생산량은 280천 톤을 달성할 계획이며. 흰 다리새우 양식을 발전시키고 생산량과 수출금액을 제고함. 100천 헥타르 흰 다리새우 양식면적을 안정시키고 생산량은 370천 톤을 달성할 계획임. 북부지역에서 호수. 남부지방의 강에 틸라피아 양식을 강화함. 지방마다 환경 따라 연체동물 양식을 개발함
- 수산물 가공 및 소비 : 저제상품을 감소하고 부가가치 상품 비중을 증가함. 소비시장별 소비문화와 기호 등 적합한 가공 수산물 품목을 다양화함. 양식 생산, 개발·가공, 유통 등 연결사슬로 가공과 소비를 발전시킴
- 기존 수산식품 수출시장을 지키고 신규 잠재력 시장을 지속 개발함
- 조선, 선박수리, 어구제조, 기계시설 등 분야를 회복시키고 개발함. 항구, 도매시장, 태풍을 피하는 항구 등 수산업 서비스 인프라 시스템을 형성함. 수산상품항구와 정박장 구간 동일을 우선함
- 우수한 IT 기술. 수확 후 현대적 보관기술 활용을 강화하고 수산업을 현대화함

〈실행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

- 정부·총리는 결재한 분야의 정책. 프로그램. 전략 등을 효과적 실시함
- 정부총리의 2010년 9월 16일. 번호1690/QĐ-TTg 결정서에 따른 2020년까지 베트남 수산업 개발 전략서
- 농업농촌 개발부의 2013년 11월 22일. 번호2760/QĐ -BNN-TCTS 결정서에 따른 수산업 재구조화 제안서
- 정부총리의 2013년 8월 16일. 번호1445/QĐ-TTg 결정서에 따른 2030년 비전 2020년까지 수산업 개발 총체적 기획
- 수산물 양식. 수산물종사. 수산원 호보 등 개발 프로젝트를 종합하는 기초에 의거하는 2016년~ 2020년까지 수산업 지속적 발전 프로그램
- 메기양식·가공 및 수출 정책에 대한 정부의 2014년 4월 29일. 번호 36/2014/ND-CP 의정서
- 수산업 발전 정책일부에 대한 정부의 2014년 7월 7일. 67/2014/ND-CP 의정서

- 수확 후 손실감소 위한 시설구입시 대출이자 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총리의 2013년 11월 14일. 번호68/2013/QĐ-TTg 결정서
- 수산업분야의 우수농업생산실행규정 활용에 대한 정부총리의 2012년 1월 9일. 번호01/2012/QĐ-TTg 결정서

□ 산림업 발전

- 목표 및 방향 : 현재 산림면적과 기획된 토지기금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발전시킴
- 환경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천연재해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 41%까지 지피 식생도를 유지함
- 산림마다 가치를 개발하고 국내소비수요와 수출을 공급하는 목재가공, 종이생산 등에 부응하기 위해 능률과 품질을 제고함

〈산림업 발전 목표〉

번호	평가치수	단위	16년~20년 목표	15년 예상	16년 계획	15년대비 16년계획
1	산림업 생산가치 성장속도	%	6 ~ 6.5	7 ~ 8	7 ~ 8	2% 감소
2	지피식생비율	%	43~ 44	40.7	41	0.3% 증가
3	재배산림 목재 개발 생산량	천 m ³		18,000	18,000	100

※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 산림 보호 임무
 - 기존 산림면적100%를 보호하고 지속 개발함 산림면적 2.4백만헥타르 보호 도급에게 국가예산을 지원함
 - 산림보호, 산불예방 등을 강화하고 산림보호 및 산림개발에 대한 법률위법 행위를 즉시 방해하며 2015년 대비 피해된 산림면적과 위법사건 20%를 감소할 목표임
- 산림 발전 임무 :
 - 210천 헥타르 산림면적을 재배하며, 특용산림, 방호산림면적은 15천 헥타르임. 생산개발용 산림면적 180천 헥타르를 신규 재배하고 개발 후 산림 95헥타르를 재재배함
 - 교체산림 15천 헥타르를 재배함

- 노화된 자연산림 5천헥트르를 개조하고 50백개 산란나무를 재배함

〈실행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

- 정부총리의 2012년 1월 9일. 번호57/2012/QĐ-TTg 결정서에 따른 산림 보호 및 개발 계획을 지속 실시하고 제시한 산림보호 및 개발 목표를 달하기 위해 각 임무 실시를 엄격함
- 2016~2020년 단계적 지속 산림업 발전 목표 프로그램과 농업농촌개발부장관은 결재한 산림업분문 재구축제안서를 실시함
- 산림업 재구축 위한 행동 4개계획 실시는 중심적임
 - 1) 2014~2020년 단계 생산재배 산림의 능률. 품질. 가치를 제고함
 - 2) 2014~2020년 단계 가공목재 상품의 부가가치 제고
 - 3) 2014~2020년 단계 산림물 가치사슬 협력경제 확보
 - 4) 2014~2020년 단계 목재제품 소비시장 개발
- 기타목적으로 변경한 대체산림면적 재배 실시 지시에 대한 정부총리의 2014년 1월 24일. 번호02/CT -TTg 지시서 실시를 엄수함
- 기타목적으로 변경한 대체산림면적 재배 제안서 결재에 대한 농업농촌개발부의 2014년 4월 23일. 번호829/QĐ-BNN-TCLN 결정서에 따른 임무 및 목표 실시를 엄수함
- 방호산림 관리 규정에 대한 정부총리의 2015년 6월 09일, 번호17/2015/QĐ-TTg의결서 실시를 전개함
- 정부의 2010년 9월 24일, 번호199/2010/NĐ-CP의결서에 따른 산림환경 서비스 비용 징수 정책을 지속 실시하고 2016년 산림환경서비스 지용징수액은 12,000억동을 달할 목표임
- 산림호보 업무 강화 정책을 실시하고 산림보호 업무에게 산림관리 인력 능력을 증강함
- 산불예방을 강화하고 산림도급, 산림재배 장려, 산림통계 등을 실시함
2011~2020년까지 단계 특용산림 발전 투자 정책에 대한 정부총리 번호24 결정서에 따른 특용산림 발전 정책을 실시함
- 2013~2016년까지 단계 산림조사 및 통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2016년 내에 조사 통계 자료를 공개함

- 산림 보호 또는 관리 위해 가정호와 조직에게 산림도급을 지속 전개하고 가정호와 각 조직은 생산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효과적인 산림재배를 투자장려

□ 농림수산물 가공 산업. 천일염업. 농촌직업

- 제도가공. 보관. 수확 후 손실 절감 등을 통해 농림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2020년까지 농림수산물 부가가치가 현재 대비 20%를 증가하며 수확 후 절감비율은 50%를 감소할 목표임

〈2016년에 실시해야 할 주요 임무〉

- 제가공업 재구축. 보관기술 제고. 수확 후 손실 절감을 통해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제안서 전개를 증강함
- 사장수요와 적합한 상품 제조 장려 정책을 보충하고 농업폐품을 활용하며 고부가가치 상품을 제조함
-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지원산업을 개발하고 생산능력을 제고함
- 15천 헥타르 면적을 유지하고 2016년에 천일염 생산량은 1.3백만톤을 달성하고 2015년 대비 8.3%를 증가할 목표이며 공업용 천일염은 500천 톤을 달하고 20%를 증감함. 품질과 가격을 제고하기 위해 대책을 집중 실시하고 Quan The 공업용 천일염 생산 프로젝트 투자 진도를 증강하며 국내 공업용 천일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 활동
- 안전 천일염 생산 모형을 확보하고 능률을 제고하고 날씨의 영향 손실을 감소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기술을 적용함
- 각 지방에게 “농촌직업 발전 기획”과 “일 마을 일 상품” 방침으로 “전통직업 마을 개발 및 보존 프로젝트” 실시를 안내하고 2030년까지 비전 2020년까지 직업마을 환경보호 제안서 전개를 강화함
- 농촌직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번호66 의정서 개정을 제출하고 대나무 수공업 발전 장려 정책 실시를 안내함
- 농업의 손실 감소 지원 정책을 철저히 실시하고 북부지역의 기계화 모형을 형성하기 위해 기술지원 활동과 2014년 노동위생안전 국가적 프로그램을 철저히 실시함

□ 농촌인구의 생활기준, 소득 제고 및 농촌개발 계획

- 국가 환경프로그램, 새농촌 구축프로그램 실시를 지속 강화하고 2016년 새농촌 기준에 도달한 시읍면율은 25%(2015년 배해 5% 증가) 증가 목표
- 위생 기준에 도달한 생활수를 이용하는 농업 인구율은 88%를 달성하고 2015년 대비 2%를 증가함
- 위생기준을 도달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농촌 인구율은 67%를 달성함
- 아래와 같이 중심적 사항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함

〈새농촌 구축 국가적 환경 프로그램〉

- 2016~2020년 단계 새농촌 구축 국가적 환경 프로그 계획을 지속 전개하며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정책제체 보완을 지속하고 농업 농촌에 대한 번호7 중앙의 의결서 전개 계획을 발행함
- 새농촌 프로그램 실시를 지속 운동하고 선전하고 소비시장과 연결하는 생산 방식에 따른 생산 구축 변화 전개를 안내함
- 프로젝트 인력 유도를 증강하고 면, 촌의 필수 인프라 개발을 우선하고 농업부문 재구축 제안서에 따른 생산발전 지도를 강화함. 농촌환경 개선과 보호 등을 강화함
- 수리공사 기준, 생활수 기준, 생산 형식, 농촌환경 기준 등 새농촌 수준 실시를 안내하고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품질을 제고함

〈빈곤 감소 프로그램〉

- 번호 135 프로그램, 번호 30a 프로그램에 따른 농업생산 정책 실시 모형을 구축하고 전국의 빈곤 가정호에게 생산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전개하며 현재 빈곤 감소 지원 정책을 교체함. 2016년 농촌 지역 빈곤 가정호비율은 8.6%를 목표
- 2016~2020년 단계 빈곤 감소 국가적 환경 프로그램에 따른 빈곤 감소 위한 생산 개발 모형을 지속 구축하고 확보함
- 지속적인 빈곤감소, 생산 개발 10개 모형을 구축하고 시험함
- 2014~2020년 단계별 소수민족, 특별 빈곤층 지원에 대한 2013년 4월 4일 번호 551/QĐ-TTg 결정서 실시를 강화함

- 각 지방은 소수민족 빈곤 가정과 특수 빈곤 가정에게 생활수. 거주지. 생산 토지 등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정부 총리의 755/QĐ-TTg 결정서와 2013~2015년 단계 메콩강 지역에 소수민족 가정에 직업과 거주지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29/2013/QĐ-TTg 결정서를 실시함
- “빈곤감소. 빈곤재발 방지”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생산 발전 지원 프로젝트 수립을 안내하고 실현함
- 특별 빈곤 2.333면에게 생산발전 지원 프로젝트 실시를 강화하고 2016년에 성마다 빈곤감소 5~10모형을 전개해야 하고 생산 부가가치 속도가 10~15%를 증가함
- 각 지방과 같이 협력하여 “마을마다 한 직업. 한 나무. 한 동물” 모형을 확보함
- 빈곤가정호가 더욱 효과적인 생산 방식. 우수기술 등을 접근할 수 있도록 권농활동과 권농제체를 발전시킴

〈거주민 배치 프로그램〉

- 정부총리의 번호1776/QĐ-TTg. 번호1178/QĐ-TTg. 번호1179/QĐ-TTg. 번호 570/QĐ-TTg 결정서에 따른 거주민 배치 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하고 번호 1776/QĐ-TTg 결정서에 따른 21천 거주민 가정호를 안정적 배채함. (천연재해지역 13천호. 특별빈곤 지역 2천호. 경계해도지역 3천호. 방호 특용 산림지역 500호. 자유이주 2.500호. 베트남 중국 경계지역 4천호)
- 2014년 11월 8일 번호 64/2014/QĐ-TTg 결정서에 따라 수리공사 프로젝트.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특수한 정책·해법을 전개함
- Son La성 수력발전 프로젝트 재거주지 지역의 경제 발전 및 거주민 안정 제안서를 구축하여 총리 제출함
- 자유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호 39 지시서의 각 해법을 철저히 실시함

□ 인프라 발전. 자연재해 방지 능력제고. 지속적, 효과적 천연자원 사용

〈주요 목표〉

번호	평가치수	단위	16년~20년 목표	15년 예상	16년 계획	15년대비 16년계획
1	산림 지피식물	%	43 ~ 44	40.73	41	0.3% 증가
2	위생기준 생활수 이용 농촌인구 비율	%	95	86	88	2% 증가
3	환경기준 도달"면"급 비율	%	70	30	36	6% 증가

※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 수자원 개발

- 2014년 4월 21일 번호 794/QD-BNN-TCTL 결정서에 따라 수자원 재구축 제안서와 수자원 개발 공사 및 관리의 효과 제고 제안서를 집중 전개함
- 농업 재구축에 부응. 식물재배. 수산물양식. 천일염 작업에게 물 공급 수요, 산업 개발, 시민 생활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수자원 개발 공사 관리 및 개발의 효과를 개선하고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함

〈2016년 주요 임무〉

- 농업 재구축에 부응하는 수자원 개발 공사 기획서. 수산업 부응 수자원 개발 공사 기획서. 고원지 지역 수자원 개발 공사 기획서 등을 결재 제출하고 결재를 완료함
- 공사중 수력공사의 예산 배치를 우선하고 국가예산. ODA자본금으로 투자하는 공사 시공 진도를 급속함
- 저수호수 안전을 담보하고 강·바다 제방 시스템. 수산물 양식 부응 수력공사 등 보강하기 위해 신규 투자함
- 농업수력 관리에 선진 기술 활용 모형을 구축하고 선진적 물을 주는 설비 개발을 강화함
- 수력공사 개발·관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 연구

〈2016 수자원 개발 공사 발전 목표〉

번호	평가치수	단위	16년~20년 목표	15년 예상	16년 계획	15년대비 16년계획
1	매년 증가 물을 주는 능력	천ha	39	35	34	97
2	매년 증가 배수 능력	천ha	13	15	14.3	95
3	매년 증가 염수 정제 능력	천ha	20	20	20	100

※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 제방보강, 홍수 방지, 자연재해 감소
 - 방지 능력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를 감소하고 기후변화와 적응함. 모든 상황에 적시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강함
 - 2016년에는 기후변화와 적응하기 위해 제방을 지속 보강하고 강, 바다 제방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모든 인력을 조달함
 - 번호58/2006/QĐ-TTg결정서에 따른 Quang Ninh성부터 Quang Nam성까지 해변 제방을 지속 보강하고 번호2068/QĐ-TTg 결정서에 따른 제방시스템을 보강
 - 국회는 2013년 6월 19일에 통과한 자연 재해 방지법 시행안내에 대한 문서 제체를 지속 완료하고 2016년 10월에 제시할 예정인 수리법을 지속 구축함
- 수산업 인프라 개발
 - 2016년에는 태풍 피해 항구 투자, 수산물종자 개발 인프라, 수산물 양식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 목표 프로그램을 통해 수산업 인프라 보강 또는 신축공사 등에 지속 투자함
 - 태풍 피해 항구 20개를 집중 투자
 - 수산물 양식 인프라 투자를 지속 실시하고 수산물 종자 생산 인프라를 지속 투자함
 - 기획을 전개하여 대규모 “생선직업센터” 5개를 투자하고 2016~2017년까지 Khanh Hoa, Kien Giang성 등에서 생선 집하 항구 건설을 전개할 계획

〈수산업 인프라 개발 목표〉

번호	평가치수	단위	16년~20년 목표	15년 예상	16년 계획	15년대비 16년계획
1	증가 생산 집하 항구 능력	천개 선박	1536(5년)	204	300	147
2	증가 태풍피해 항구 능력	천개 선박	297(5년)	67.5	67.5	100

※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 농림업 생산수요 부응 인프라 발전
 - 2016년에는 농림업 생산 발전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속 투자
 - 재배업, 농축업, 산림업 재구축에 부응하는 공사를 우선
 - 농림업 종자 생산·연구 부응 인프라를 지속 투자
 - 자연재해 감소 방지 및 재구축 지원을 목표하는 프로그램을 전개
 - 권농, 수의, 농약 등 공공서비스 제공 센터, 실험실, 품질측량 센터 등을 공사 투자본금을 집중하며, 완공진도를 앞당김
 - 산림순찰 인력의 능력을 제고함
- 자원 보호 관리 및 효과적 사용 계획
 - 2016년에는 2020년까지 “국가적 환경보호 전략”의 임무를 지속 전개하고 환경보호 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번호35/NQ-CP의결서를 실시함

〈산림 자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및 보호 계획〉

- 주요임무는 현재 산림면적 보호 강화 정책을 실시하고 특용산림, 방호산림 등을 특별 유의함
- 지속적인 원칙에 따라 생산용 산림, 자연산림을 개발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개발의 이익을 사용함. 산림 개발 불법행위 방해를 강화하며 산불을 예방함
- 결재된 제안서에 따른 방호산림, 특용산림 재배를 지속 강화하고 방호산림, 특용산림 시스템을 형성하며 전국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계를 확정함
- 사막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행동 프로그램, 산림 지속적 관리 제안서, 지속적 산림관리 방안 안내에 대한 농촌개발부의 번호 38/2014/TT-BNNPTNT 통지서 등을 실시함

〈토지자원 수자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및 보호 계획〉

- 벼재배 토지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정부의 번호 35/2015/NĐ-CP 의정서와 비료 관리에 대한 번호 202/2013/NĐ-CP 의정서의 각 규정 실시를 엄수함
- 강유역 수자원. 수리공사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고 아껴서 합리적으로 사용함
- 전국 수리공사 기획을 점검하여 조정과 보완을 지속 실시함. 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 기획. 농업용 수리시설 기획 등을 재 실시함
- 연변 날씨, 수원 등을 정밀하게 살펴보며 재배나무 계절을 즉시 조정하고 절약한 수원을 사용하기 위해 수리시설을 운영함
- 수력발전용 저수장을 합리적 운영하도록 산업무업부와 철저히 협력함
- 수원품질과 메콩강 및 홍강지역의 염수진입을 탐정하고 생산부응 담수를 유지하도록 염수와 밀물의 경계를 구분시킴
- 수원자원 관리 보호 개발 이용 연국가 수원자원에 대한 국제협력을 참가함

〈해양자원 지속적 사용 및 보호 계획〉

- 농업농촌업의 환경 경보 활동안내에 대한 농촌개발부의 번호 32/2014/TT-BNNPTNT 통지서를 철저히 실시하고 수산물 양식업의 역병방지 및 생산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경고 시스템을 효과적 개발하고 운영함
-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된 양식기준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을 철저히 안내함
- 수산물 개발 어장 예보 및 수산자원 조사임무 제안서를 지속 전개함
- 수산자원 생식 기금 구축 시험 제안서를 전개함
- 어장조사. 수산자원 조사 및 수산자원 테이타구축. 해양 본존지역 구축
- 국가수준 국내 수산물 보존지역 기획 등 프로젝트를 지속 전개함
- 베트남과 인근국가 수산물 개발을 규정한 범류 선전을 지속 실시하고 수산업법률. 수산 자원 보호 규정 선전에 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전개함
- 수산물 개발에 유해물질. 폭발 등 사용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처리를 엄수함

〈농촌 환경 보호 실시계획〉

- 새농촌 구축 목표 프로그램 등 농촌지역 국가적 목표 프로젝트를 지속 효과

적 전개하고 2010~2020년까지 새농촌 구축 국가적 환경 프로그램의 농촌 환경 보호 활동 일부 전개를 안내함

- “2020년 비전 2010년 국가 환경 보호 전략의 환경 보호 활동”. “기후변화 적응 국가적 전략”. “생물 다양화 국가적 전략” 등을 전개함
- 2014~2020년 단계 농촌지역 환경보호 총체적 제안서 완료를 급속하여 정부총리의 결재를 제시함
- 농촌지역의 폐물관리, 공동묘지 관리, 폐수수거 등 관리 법적 규정을 구축하고 가공제조장, 직업마을 등에 환경 점검을 강화하며 처리함
- 농업농촌 환경보호에 대한 기준을 구축하고 농촌 환경에 대한 연구 구축
- 농촌 오염 피해 위한 공동적 처리하기 위해 폐물 수거 안내를 지속 지도함
- 가축양식장, 농장에게 폐물 처리를 포함하는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엄수하게 실시하는 것을 안내함

다. 계획 실시 위한 주요 대책

□ 농업부문 개발 기획

- 2016년에는 재구축 위한 농업부문, 주요상품 기획을 재점검하여 조정하고 전개 중인 기획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투자를 집중 실시함
- 2030년 비전 2020년까지 전국 농업생산 개발 총체적 기획을 재점검함
- 농업부문 재구축 위한 수리시설 기획을 재점검함
- 고무생산기획, 옥수수생산기획, 용과 나무재배지역 기획, 안전채소 생산지역, 바닷가재 발전 기획 등 결재를 완료시킴
- 기획 수립 방법 및 내용개선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투자효과 및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경제와 부합하도록 농업부문 기획을 세워야 함
- 기획 수립, 심사, 승인가 실시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획품질을 제고하고 기획실시를 통일시킴

□ 농산물 소비시장 개발

- 2016년에는 많은 FTA협정서가 효력이 발생하며 ASEAN 공동은 공용시장으로 되어 화물은 관세0%로 자유 유통됨. 이는 베트남 농업부문의 기획이 되기

도 하고 베트남 농림수산물 생산 소비의 도전이 되기도 함. 2016년에 무역촉진 활동을 격렬히 지도하기가 필요하고 품질, 베트남 농산물 신료를 제고하는 목표로 소비시장을 확보함

- 국내시장 : 국내 무역촉진 활동을 증강하고 국산 상품 소비를 장려함. “베트남인은 베트남산 상품 소비 우선”운동을 철저히 실시함. 베트남 농업상품 경쟁력을 증강하기 위해 쌀, 새우, 커피 등 지리적 표시와 같이 주력 상품 상호를 구축함
- 국외 시장 : 자유무역협정서를 적극적으로 회담하고 신규시장 개발 활동을 증가함.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타국가의 무역정책을 수시로 파악하고 시장변동을 파악하여 지속적 시장을 개발하고 상황별 즉시 대책을 세움
- 무역촉진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전통적 시장의 장애를 해결함. 한국, 러시아, 동유럽 등 잠재력 시장에 농림수산물 수출장애를 해결하는 무역촉진 활동을 전개함
- 시장 확대하고 수출을 제고하기 위한 수입국가의 기술기준, 수출장벽 등을 즉시 발견하여 해결함
- 미국, 유럽, 일본 등 시장에 신뢰성이 가지는 큰 상호를 개발하고 미국, 유럽, 일본, 한국, 호주 등 까다로운 시장에 고부가가치 상품 홍보를 강화함. 소비시장을 다양화하고 세관연맹 등 잠재력 시장 개발을 유의함
- 무역사기, 품질 식품안전기준 위반, 불공정 경쟁 등 행위를 공개하여 엄격하게 처리함

□ 기술과학 발전 강화

- 2016년에는 농업농촌개발부의 번호 986/QĐ-BNN-KHCN 결정서와 정부총리의 번호 418/QĐ-TTg결정서에 따른 농업부문 재구축 위한 과학 연구를 지속 발전시킴
- 수출과 재배나무 변환을 부응하기 위한 쌀, 옥수수, 콩나무, 캐슈넛, 커피, 호추, 고무, 용안, 레이지, 용과, 망고, 채소, 화훼 등 주력 나무의 고능류 종자를 집중 연구하여 생산함
- 고무, 캐슈넛, 호추, 녹차, 사탕수수, 과일나무 등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집약농업을 우선하고 고능률 종자로 커피나무를 보식함
- 안전채소 생산을 확보하고 수출을 향하는 고기술 화훼 재배를 증강함

- 재배식물 병해 예보와 식물검역의 우수 기술응용을 연구함
- 생태와 부합하는 돼지, 깃털닭, 산란오리 등 주력 가축 종사 연구를 강화하고 역병안전 농축업 선진 기술을 활용함
- 농축업에 보충사료 등 제조를 연구하고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 농공업부품을 활용함
- 흰 다리새우, 얼룩새우, 메기, 테레피아, 조개, 코끼리조개 등 주력 수산물 종자 번식 기술과 부모종자 기술을 연구하여 개발함
- 새우, 조개, 코끼리조개 등 주력 수산물 발병원인을 확인하고 역병치료 방법을 연구함
- 아카시아, 유칼립투스 등 빠른 생장 산림나무, 큰 사이즈 목재 제조용 나무 등 종자 생산을 개발하고 임산물, 목재 개발 가공제조에 우수기술 규정을 구축함
- 수출용과 건설용 목재 생산에 국내 부품 원자재 생산을 강화함
- 쌀, 커피 등 주력 재배나무 물을 주는 시설에 우수기술 응용을 강화하고 태풍 홍수 방지 위한 종합 관리 해법과 예보 기술응용을 지속 연구함. 수리시설 공사를 효과적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에 선진기술을 적용함
- 주력 상품 조제 및 보관 시설과 기술이전을 연구하고 주요 재배나무 생산의 기계화 부응 기계 설비를 연구하여 제조함
- 농축업, 수산업, 천일염 생산업 등 시설시스템 기술을 완료하고 농산물 가공제조와 보관 부응 자동화 및 전자 기술을 개발함. 농업부품 처리 시설과 기술을 완료하고 심해조업 부응 선박을 현대화함
- 농업분문 성장에 작동하는 소요를 확인하고 성장 확대 대책, 기업의 과학연구와 농업투자 활동 참가 장려 대책 등을 구축하고 원자재 생산에 농업인과 연결하여 농림수산물 소비시장을 확대함. 국제적 협약과 부합한 농업생산을 지원함
- 과학 연구 39개 임무와 기술과학 6개 제안서를 적극적 전개하고 2014~2016년 및 2015~2017년 단계적 주앙권농 35개 제안서를 전개하고 농림수산 자재 품질 관련 부응 127수준 기준을 구축하여 발행함

□ 농업농촌 경영생산 형식 개진 및 개발

- 2016년의 주요 임무: 생산에 연결 협력 모형 확보
 - 효과적이고 상품별 적합한 생산 모형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확대함

- Big field(큰 밭)모형에 따른 연결 협력 확대 정책을 지속 전개하고 농축업, 임산업, 수산업 등 기타분야의 대책을 집중 연구하고 평가함
- 2012년 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재구축을 집중 지도하고 개인적 기업, 농장 모형으로 생산 가정호의 경제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함. 농업보험 시험 대상을 확대함. 실질을 평가하고 더욱 적합 정책을 제출함
- 농림업 기업 개선 구축 확대
 - 정부의 번호 50. 51. 61. 71. 99 등 의정서에 따른 기업 관리를 실시하고 정부총리에게 2015~2020까지 5년 경영생산 계획과 기업들의 매년 경영 계획을 제시하거나 권한에 따라 승인함. 기업의 재정현황 공개·명백 실시 점검을 강화하고 재정분야의 법적 위법 행위를 즉시 발견하여 방해함
 - 농림업 기업의 활동 효과 제고하기 위해 개조, 정리정돈을 지속하고 국영기업의 자본 주식화를 강화하고 국영기업의 정부 투자본금 환급을 지속 실시함
 - 국영기업 재구축에 대한 정부의 번호 06/CT-TT지시서와 농업농촌 개발부의 번호 50/2013/ND-CP결정서를 철저히 실시하고 국영기업의 인력, 임금, 상급 등 관리에 대한 번호51/2013/ND-CP의정서를 엄수하게 실시함
 - 주식회사로 공공기관 일부 변환에 대한 번호 22/2015/QD-TTg 결정서를 전개함
 - 2015~2016년 단계 2년의 투자 환경 개선, 국가적 경제능력 제고 해법에 대한 번호 19 의결서의 일부 임무를 적극적 전개함
 - 기업들의 경영 생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농업경영 기업의 장애 해결 대책을 즉시 제출함
- 농업 자재 품질 및 식품안전 관리 효과 제고
 - 농림수산물 품질과 식품안전에 관련한 정책 시스템을 지속 점검하여 개정함
 -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적 환경 프로그램 임무 실시를 강화함
 - 농업 자재 품질 및 농림수산 식품안전 관리를 실시함:
 - 농림수산물 식품안전 감사, 감시 활동 분담에 대한 번호 14/2011/TT-BNNPTNT 통지서와 번호 1290/QD-BNN-QLCL 결정서에 따른 농업 자재와 농수산물 상품 경영 생산 업체를 점검하여 평가함

- “C” 재분류되는 판매장을 철저히 처리하고 “A, “B”, “C” 분류되는 판매장 공개를 시험하고 안전식품 판매장 인증서를 발급함
 - 오염물질 방해 활동. 식품안전 감시프로그램을 효과적 전개함
 - 사료. 수의약품. 농약. 비료 등 농업자재 품질 감사를 확대하고 농약 사용을 긴밀하게 검사함
 - 국내 식품안전 사고 유럽. 세관연맹.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시장으로 농산물 수출 장벽을 즉시 처리하고 수입 농산물을 원산지 검사와 샘플 시험 증강으로 긴밀하게 점검함
- 관리 능력 제고 위한 인력구축
- 수출용 농림수산물 식품안전 인증서 발급과 자유판매 인증서 발급 규정 안에 대한 농업농촌개발부의 번호 48/2013/TT-BNNPTNT 통지서와 번호 63/2010/TT-BNNPTNT 통지서를 재점검하여 개정함
 - 농림수산물 품질·식품안전 감사원. 관리원에게 전문 업무 훈련·교육 수업을 전개함
 - 시험활동. 인증서 발급의 사회화(일반 기업 같이 실시)를 지속 강화하고 시험실. 인증서 발급기관 평가를 확대하고 지정함. 지정된 시험실 관리를 긴밀하게 관리함
- 국제 협력 강화
- 국제경제 가입에 대한 행동계획을 강화하고 2020년까지 농림어업 분야의 FDI자본금 유도 및 관리사용 제안서를 완료하여 전개함
 - 정부가 결재 후 2030년 비전 2020까지 농업농촌 분문의 국제경제 가입 전략을 전개하고 2020년까지 ODA 유도 계획을 구축하여 전개함
 - 일본의 자본금 대출 5협정과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의 기타 대출 프로젝트를 체결하기 위해 제안서 완료를 급속하고 결재를 완료함. 국제 가입 및 국제협력 각 활동. 프로젝트 등 검사, 감시를 증강함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완료 위한 회담을 증강하고 아세안-홍콩 FTA 협정 협상을 전개하고 유럽. 일본. 아메리카 등과 쌍방협력 활동을 강화함

- WTO, ASEAN, ASEM, APEC, BTA, FTA 등 국제조직의 회원 역할 및 책임과 베트남은 체결한 국제적 각 서약서를 긴밀하게 실시함. 농업농촌에 서약서의 영향을 평가함. 농업농촌 분야의 세금, 비세관, SPSO (식품동식물검역규제), 원산지표기 등에 대한 협상을 강화함
- 인력 품질 제고 개발
 - 정부의 번호 1557/QĐ-TTg 결정서와 공무원 능력 제고 해법일부에 대한 농업농촌개발부의 번호638-NQ/BCS의결서에 따른 “공무원 제도 혁신 강화”제안서를 지속 실시함
 - “2011~2020년 단계 농업농촌 부문 인력 발전 기획”에 대한 농업농촌개발부의 번호 2534/QĐ-BNN- TCCB 결정서; “2014~2020년 단계 농업농촌 부문 인력 품질 제고” 제안서; “새농촌과 같이 농업 재구축 부응 인력 품질 제고”제안서를 전개하기 위해 임무·해법을 실시함
 - 2030년 비전 2025년까지 농업농촌개발부의 교육장제체 기획을 구축하고 인력원 발전 목표를 부응하기 위해 교육장의 능력을 제고를 지속 투자함
 - 농업부문 재구축 부응 위한 권농. 수의. 식물보호. 선장. 선박기계장 등 간부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능력이 있는 젊은 간부를 선정하여 해외 연수를 파견함
- 행정 개선 및 관리 능력 제고
 - 〈법률적 문서 구축〉
 - 수리시설법. 산림업법. 개정 수산업법인 3개법과 재배나무 종자. 개정 가축종자 법령을 지속 구축하여 완료함. 국회가 통과한 수의법을 실시하기 위해 법규문서 구축을 전개함
 - 정부 의정서. 정부총리 결정서 등 90문서인 2015년 법규문서 수립 계획을 전개함
- 농업부문 조직 보강 및 관리 분류
 - 지속적 발전과 부가가치 제고 방향으로 농업농촌 재구축을 부응하는 “농업 부문 조직 시스템 보강” 제안서 내용을 실시하고 타부서, 각 지방과 같이 결합하여 지방과 중앙간 또렷한 지도. 운영에 관련한 규정을 구축함

- 경영환경을 지속 개선함. 국가 경쟁 능력 및 경영환경 개선 주요 해법·임무에 대한 정부의 번호 19/2015/NQ-CP의결서 실시를 강화하고 투자법, 영업법 등과 불부합한 경영 조건을 검사하여 폐쇄시킴
- 공무원조직을 체계화·간략화하고 공무원 근무효율을 제고함

□ 수립 계획 실시위한 재정 증강

- 농업부문 공공 예산 기획
 - 기본 사업예산 : 151.3조동인 예산으로 2016~2020년까 중기적 단계 공공 투자 예산 기획을 수립함
 - 국가예산 : 26.3조동 (가불상환, 부채상환, ODA 등 대음자본금 등 포함)
 - 해외예산 : 57.8조동
 - 정부부채 예산 : 66.1조동
 - 정부의 지도에 따른 02 프로젝트: 1.1 조동
 - 기본 구축 예산 : 16.131조동. 아래와 같이 분류됨
 - 국가 예산 : 3.6조동
 - 대응 예산 : 1.5조동
 - 해외 예산 : 5.6조동
 - 정부채 예산 : 5.4조동
 - 민간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예산 : 820억동

〈아래와 같이 세부 분류〉

- 국가예산 계획 : 2.491조동
- 투자 준비 예산 : 500억동
- 분야별 투자 예산 : 2조동
 - 농림수산업 예산 : 1.5조동
 - 기술 과학연구 예산 : 750억동
 - 교육 예산 : 1540억동
 - 기타분야 : 2340억동
- 목표 프로젝트 투자 예산 : 4310억동
 - 지속적 수산물 발전 프로젝트 : 2940억동

- 지속적 산림업 발전 프로젝트 : 440억동
- 농업 체계화. 천연재해 감소 방지 프로젝트 예산 : 930억동

〈정부부채 예산 계획〉

- 2011~2015까지 단계에는 농업농촌개발부는 28.86조동 예산을 배정됨
 - 2011년 : 3.5조동
 - 2012~2015년 단계 : 17.4조동
 - 2014~2016년 단계 보충 : 5.96조동
 - 2012~2015년 단계 예방보충 : 2조동
- 2015년까지 중기한적 예산을 배정된 69프로젝트 중에 올해에 48개 프로젝트가 완료할 예정이며 2016~2020년 단계 및 2016년에 지속 완료함
- 투자계획부의 안내에 따라 2016년에는 2012~2015년 단계 결재된 제안서에 잔여예산만 배정하고 2014~2016 단계 정부채를 보충함
- 2016년의 중기한적 정부채 잔여예산은 5.37조동임

〈ODA예산〉

- 투자계획부의 안내에 의거하여 농업농촌개발부는 실시중인 ODA 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한 프로젝트와 2016년에 체결할 협정을 통계해야 함
- 2016~2020년 단계 5년예의 후원자의 예산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67.2조동이며. 대응예산이 5.3조동이고 해외 예산이 57.8조동이고 기타 예산 4.2조동임
- 2016년의 예산 계획은 7.1조동이며 대응예산이 1.5조동이고 5.6조동임

〈긴급 프로젝트 예산: 1.120조동〉

- 산림업. 수리시설 공사업. 수산업은 서북지역. 고원지역. 남중부지역 등 수자원 부족 지역 수리시설 프로젝트를 투자하기 위해 8.120억동을 배정함 (Ninh Thuan성 수출용 공업 천일염 경제존 프로젝트 철거작업 배상금: 4.860억동 등)
- 지속적 수산 발전 프로젝트 예산은 1.690억동이며 Binh Thuan성 Phu quay섬의 태풍피해 선박장 공사 프로젝트에 1.240억동 예산을 배정함
- 자연재해 감소·방해 농업경제 구축 목표 프로젝트 예산 : 1.390억동
 - 자연재해 감소 위한 수리시설 구축 프로젝트 : 600억동

- 재배나무 체계 환전 지원 위한 수리시설 프로젝트 : 390억동
- 농업협동조합 모형 구축 지원 프로젝트 : 400억동

※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라. 계획 실시 방향

□ 실시 계획 수립

-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기관들은 실시업무 진도와 부합하도록 분담 업무 계획 수립을 전개함
- 매월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중심적인 임무평가를 실시하고 분기별 기타 임무 평가를 실시함

□ 계획 점검 및 평가 실시

- 2016년의 농업농촌 개발 계획 내용을 근거하여 관련부서가 계획표와 감시 평가치수를 수립하고 점검, 평가를 실시함

□ 점검 및 평가 자료 수집 실시

- 내부 또는 외부기관부터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공급원별 자료수집 업무 분담을 실시함. 통계총국 등 기타기관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는 정기적 조사를 전개함

IV

관세 및 검역제도

1. 관세제도

□ 관세의 종류

- 199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 개정수출입관세법에서는 일반관세, 특혜관세, 특별 특혜관세가 있음
 - ① 일반관세율(Ordinary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적용
 - 특혜관세율 및 특별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
 - 우대관세의 150%에 해당하며, 우대관세율의 170%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② 특혜관세율(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에 최혜국(MFN)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일본, 미국, EU 등 163개국이 적용대상
 - 개념상 특별특혜관세율 적용국가 포함
 - ③ 특별 특혜관세율(Specially 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물품에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
 - 아세안 회원국간 실시하고 있는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협정관세, 중-아세안 자유무역(ACFTA) 협정관세가 이에 해당
- ※ 특혜관세 및 특별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 필요
- 이외 긴급수입제한 조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특별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음

□ 관세 부과대상 및 세율

- 세금부과 대상은 정부허가로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이며 세율은 품질, 성격, 원산지에 따라 결정됨
 - 수출품은 FOB가격, 수입품은 CIF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며 과세가격은 베트남화폐를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임
 - 인보인스가 없는 경우와 정부 또는 관세총국이 정한 최저가격표 금액의 7할을 밑도는 경우, 수입관세는 최저가격표 금액에 기인하여 과세됨
- 일정품목에 대해 1~45%의 관세를 부과함
 - 상품판매 결제가 현금이거나 바터형태이거나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
 - 농산물 수입관세는 30~50% 정도이며 주류, 담배 등은 100~120%로 높음
- 수입관세인하를 위한 제품의 UNDER VALUE
 - 수입관세 인하를 위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 UNDER VALUE 적발시 세관에 비치된 자체 TARIFF기준으로 과세
 - 자체 TARIFF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시장가격을 적용
 - 시장가격조사 및 가격산정까지 소요기간 예측불가로 많은 피해발생

□ 관세 면제

- 재수출을 위한 일시적 상품의 수입, 박람회와 전시회를 위한 상품반입
 - 가공수출을 위한 천연자원 및 기타 원자재의 수입
 - EPZ(수출가공구)에서 수출입되는 물자, 단 EPZ가 국내에서 반입한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제외
 - 인도적 원조, 교육, 연구기관의 연구 및 과학탐구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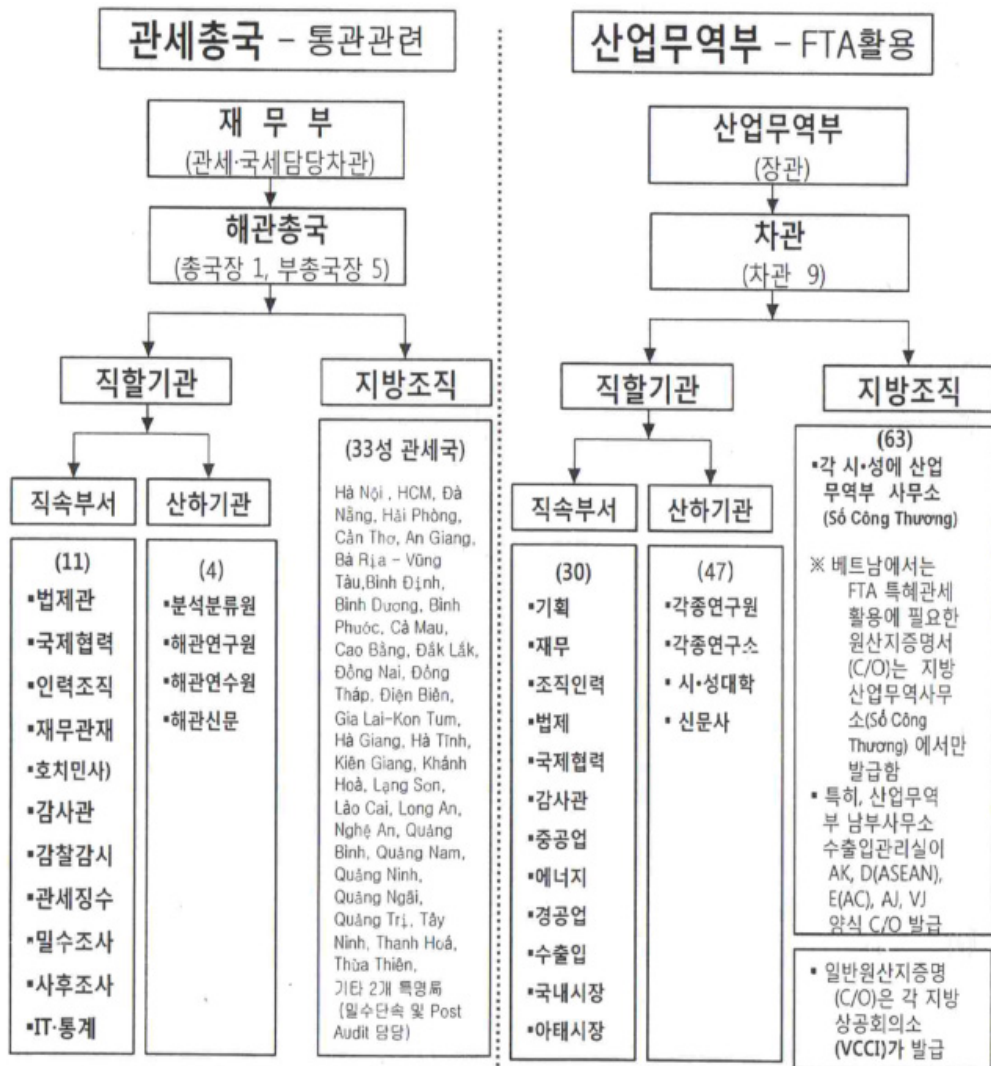
□ 관세 환급

- 외국투자기업의 수출입 상품 및 외국인의 상호 사업협력계약하의 상품 수출입, 기타 투자장려가 필요한 경우
 - 재수출을 위해 항구에 보관된 기관세금과 수입상품 중 수출이 이행된 경우
 - 수출관세를 납품한 상품 중 수출허가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상품
 - 관세율표보다 수출관세가 많이 부과된 수출상품

2. 관세행정조직

□ 조직구조

- 본청(해관총국)-지방청(시·성 해관국)-일선세관(공단 해관지국)의 3층구조
- 전국 63개 시·성중 33개에 해관국 설치



3. 검역제도

가. 신선농산물

- 농업농촌개발부가 발행한 39/2012/TT-BNNPTNT 시행령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신선식품은 수입하기 전에 검역 검사 받아야 함
 - 나무 및 재배에 사용된 나무 종자
 - 신선 과일
 - 잔디 및 잔디 종자 종류
 - 유용한 생물 및 식물 자원에 해로운 기타 생물
 - 목재 및 검역 받지 않은 자른 목재
- 병충해 위험성 검역 검사(Pest Risk Analysis: PRA): 베트남에서 정한 병충해, 혹은 관리가 필요한 병충해인지 확인하고 검사방법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

☐ 범위 및 적용 대상

- 대상 : 베트남에 수입하기 전, 병충해 위험성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할 식물
- 범위 : 국내 및 외국 수입업체와 수입개인업자

☐ 신청서류접수

- 필수서류:
 - 수입식품 검역 신청서 (부록1에 양식 첨부)
 - PRA 분석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한 서류를 제출 (부록2)
 - 농수산 식품은 수입 시 농업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partment)로 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2015년부터 시행

☐ 검역검사 및 결과 통보기간

- 검역기관은 수입품목을 바로 검역검사 한다. PRA 분석 과정은 2006년 12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096/QĐ-BNN-KHCN인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4096/QĐ-BNN-KHCN 규정은 식물 및 수입식물제품 대상 검역 검사 과정으로 식물 검역 기준을 첨부하여 발급됨

- 세부 결과 통보 기간은 부록3 참고

□ 검역 안전증명서를 발급

- 검역 검사결과에 따라 식물검역원은 아래와 같은 검역안전증명서를 발급함
 - 병충해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입식물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 병충해 위험성이 발생 가능하지만 검사 관리할 수 있을 경우: 수입 조건 및 식물 검역방법과 첨부된 수입식물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 병충해 위험도가 높고 국내 농업생산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 식물 검역안전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음

□ 수입허가증 효력 기간 및 양식

- 수입허가증 유효 기간은 1년임. 비슷한 품목 또는 동일한 종자가 있는 품목은 한 번만 검역을 받고 그 결과는 다음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에 적용됨
 - 수입허가증 양식은 부록4 참고
 - 수입 후 (Post Import) 검역 시에는 병충해 위험성 검역 검사 제출이 필요하며 검사가 요구됨
- 수출 시 검역 :
 - 검역 양식서는 Annex IV에 의해 작성
 - 위생검역증 원본 제출
 - 검역 시작 후 24시간 내에 검역증 발급
- 경유 식물 검역 :
 - 위생검역증 제출
 - 2항 7조에 의한 검역에 책임을 짐

* 2015년부터 모든 검역 시 농업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partment)의 국립기술규제(National technical regulation)를 따름

* 검역기간이 끝난 후 agency는 식물 보호 부서(Plant protection department)에 보고함

태 국 <<<

2015 주재국 농업전망

I. 국가개황

II. 경제동향

III. 농업동향 및 농업정책

IV. 관세 및 검역검사제도



I

국가개황

1. 일반 사항

- 국명 : 태국(The Kingdom of Thailand)
- 위치 : 동남아시아(5.37~20.27 N, 97.22~105.37 E)
- 면적 : 513,120 sq km(한반도의 약 2.3배), 농지 41.2%
- 기후 : 열대 몬순
- 수도 : 방콕(927만 명)
- 인구 : 6,798만 명(2015.7. 추정)
- 민족 : 타이족(75%), 화교(14%), 기타(11%)
- 언어 : 태국어(공용어), 영어(상용어), 소수언어 - 중국어, 말레이어
- 종교 : 불교(93.6%), 이슬람(4.9%), 기독교(1.2%)
- 정부형태 :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 지방제도 : 76개 주 및 1개 특별시
- 국왕 : Bhumibol Adulyadej(푸미폰 아둔야뎃), Rama IX
- 총리 : Prayut Chan-o-cha(쁘라웃 찬 오차)
- 표준시 : UTC + 7(한국보다 2시간 느림)

2. 경제현황

- GDP : \$4,048억(2014년 추정)
- GDP 구조 : 1차 산업 10.5%, 2차 산업 36.8%, 3차 산업 52.7%
- 실질경제성장율 : 7.3%(2012), 2.8%(2013), 0.9%(2014)
- 1인당 GDP : \$5,673(2013), \$6,041(2014년 추정)
- 화폐 단위 : baht
- 환율 : 32.89 baht/1달러(2014 평균)

- 물가상승률 : 1.9%(2014)
- 교역량 : \$4,250억(세계 26위), 수출 \$2,248억 수입 \$2,002억(2014)
- 외환보유액 : \$1,571억(2014년 말)
- 실업률 : 0.8%(2014)
- 국가 신용등급 : BBB+ (Pitch)

〈태국 지도〉



3. 한국과의 관계

□ 양국의 관계

- 1958년 10월 수교, 1960년 3월 주태 한국대사관 설치, 1961년 7월 주한 태국대사관이 설치되었으며 1950년 한국전쟁에 UN군으로 참전하였음
- 2012년 11월 정상회담시 한태 전략적 동반자 관계 MOU 체결하여 태국은 한국전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
- 보훈 외교 정책으로 한국전 참전에 대한 보훈 행사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 1975년 북한과도 수교하여 남북한 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
- 태국 내 한국인은 약 20,000명이 있으며 한국 내 태국인은 결혼이주자 약 3,000명, 근로자 약 22,000 여 명이 있음

□ 양국간 체결 협정

- 양국간에 상호 교역 증대 및 외교적 우호와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협정들을 체결하였음

〈한-태간 조약 체결 현황〉

협 정 명	서명일	발효일
무역협정	1961. 9	1961. 9
무역전시품면세통관협정	1963. 5	1963. 5
항공협정(1970.5, 1978.12, 1991.10 개정)	1969.11	1969.11
관용여권 사증 및 수수료 면제협정	1967. 9	1967.10
이중과세방지협정(06.11 개정)	1974. 8	1977. 1
운수소득면세협정	1981. 1	1981. 1
사증면제협정	1981.11	1981.12
과학기술협력협정	1985. 6	1985. 8
투자보장협정	1989. 3	1989. 9
항공협정 개정각서	1991. 1	1991. 1
정부간공동위원회설립협정	1998. 7	1998. 7
범죄인인도조약	1999. 4	2001. 2

협 정 명	서명일	발효일
해운협정	2002. 5	2002. 8
형사사법공조조약	2003. 8	2005. 4
문화교육협력협정	2004. 8	2004. 8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협정 가입의정서	2009. 2	2010. 1
수형자 이송조약	2012. 2	2012.12
민상사 사법공조조약	2013. 5	2015.4.16

* 자료원: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양국 교역 현황

-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4년 기준 130억 달러로 태국은 우리의 17번째 (아세안 국가 중 5위) 수출시장이며, 태국에서는 한국이 6번째 수입대상국이고 15번째 수출 대상국임

〈한-태 교역 규모〉

(단위: 백만불)

구분	2011	2012	2013	2014
수출	4,577.35	4,778.90	4,588.22	4,520.09
수입	9,215.99	9,004.63	9,067.55	8,547.46
누계	13,793.34	13,783.53	13,655.77	13,067.55

* 자료원: 태국 상무부

◦ 주요 수출입 품목

- 주요 수출품은 철강, 기계 및 컴퓨터 관련 제품과 전기 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전기 기계 부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설탕, 목재, 어류 제품 등이 있음
- 2014년 기준 1억 불 이상 거래되는 품목 및 거래량은 아래와 같음

〈대 태국 수출〉

(단위: 천불, 톤)

	품목명	HS코드	수출물량	수출금액
1	철강	72	1,567,914	1,456,880

	품목명	HS코드	수출물량	수출금액
2	기계 · 컴퓨터	84	125,027	1,164,033
3	전기제품	85	42,151	993,819
4	플라스틱	39	228,435	559,340
5	유기화합물	29	233,928	369,249
6	철강제품	73	137,971	311,619
7	광학기기	90	4,012	264,070
8	석유 · 석탄	27	238,700	254,106
9	자동차	87	37,868	199,115
10	고무제품	40	77,746	179,609
11	동(구리)	74	25,876	176,892
12	귀금속	71	657	163,746
13	알루미늄	76	49,340	162,802
14	연(납)	78	48,904	112,867
15	비료	31	343,545	108,148
16	어류	3	82,341	105,915

〈한국 대 태국 수입〉

(단위: 천불, 톤)

	품목명	HS코드	수입물량	수입금액
1	전기제품	85	10,861	1,224,741
2	기계 · 컴퓨터	84	42,065	588,689
3	고무제품	40	219,272	483,944
4	플라스틱	39	100,538	264,701
5	유기화합물	29	154,837	260,621
6	설탕류	17	700,928	233,236
7	석유 · 석탄	27	219,331	203,412
8	목재	44	734,525	174,398
9	동물성제품	16	24,956	126,414
10	동(구리)	74	18,718	123,906
11	종이류와 판지	48	88,895	114,909
12	광학기기	90	1,782	114,453
13	어류	3	18,996	103,217

* 자료원 : 한국 관세청

□ 투자 현황

- 태국은 우리의 직접투자 대상국 중 27위(아세안 국가중 7위)로 대태국 직접 투자 누계는 28.5억불(2014년)에 달하고 있음
- 2014년에는 44건 148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7번째 투자국으로 나타남

〈한국의 대 태국 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분야	2011		2012		2013		2014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농업생산물	-	-	3	265.6	1	85.0	3	992.6
광업/요업	2	1,195.9	1	155.0	-	-	3	10,156.2
섬유/경공업	2	27.8	1	155.7	3	144.1	-	-
기계/금속	7	2,436.2	13	1,336.8	12	1,494.4	6	428.2
전기/전자	15	928.5	15	768.4	16	1,596.0	19	2,634.4
화학/제지	4	558.0	11	692.4	5	157.9	3	95.0
서비스	5	1,877.9	4	614.2	9	153.1	10	553.4
합 계	35	7,024.3	48	3,988.1	46	3,630.5	44	14,860.0

* 자료원 : 태국투자위원회

- 한국에 대한 태국의 투자
 - 2014년 말까지 총 투자 누계는 285건 1,435.5만 달러로 한국이 유치한 총 FDI 115.2억불의 0.02%에 불과함
 - 2014년 태국의 대 한국 총 투자는 13건 198.3만 달러로 전년 대비 건 수는 40%, 투자 금액은 34% 감소하였음

〈태국의 대 한국 투자 현황〉

(단위: 천불)

분 류	업 종	2012		2013		2014		3년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조업		2	20,307	1	96	4	1,211	7	21,614
	비금속광물	1	20,000	0	0	0	0	1	20,000
	전기 전자	1	307	0	0	0	0	1	307
	식품	0	0	1	96	0	0	1	96
	화학	0	0	0	0	2	211	2	211
서비스업		26	2,142	20	2,828	9	772	55	5,742
	도소매 유통	22	1,795	13	1,142	7	571	42	3,508
	음식 숙박	3	248	3	775	1	107	7	1,130
	운수 창고	0	0	1	92	0	0	1	92
	비즈니스 서비스	1	100	2	500	1	94	4	694
	문화 오락	0	0	1	319	0	0	1	319
전기 가스 수도 건설		0	0	1	100	0	0	1	100
	전기 가스	0	0	1	100	0	0	1	100
연간 합계		28	22,449	22	3,024	13	1,983	63	27,456
% 한국 도착 외국인투자 합계			0.21		0.03		0.02		
누계		250	9,348	272	12,372	285	14,355		

* 출처: 산업자원통상부

II

경제동향

1. 경제 지표 및 동향

□ GDP 및 경제 성장률

- 2011년 태국 대 홍수 사태로 경제성장이 0.1%에 머물렀으나 2012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 방콕 시위사태로 주춤하여 2014년 구체적인 GDP 생산은 아직도 발표 기관마다 다르지만 정체 상태를 유지하였음
- 2015년 신 군부의 집권으로 정치적인 안정과 정부 투자 지출을 늘리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조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이 10.5%를 차지하며 2차 산업이 36.8%, 관광 사업을 중심으로 3차 산업이 52.7%를 차지하고 있음

□ 국민 소득

- 2008년 4,072불 달성, 2011년부터 5,000불을 상회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6,041불로 추정됨

□ 물가

- 2014년 1%대 물가상승율을 보이면서 2015년에도 1% 또는 그 이하의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기준으로 2015년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33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실업률

- 계절적 요인이 많으나 평균 30만 명 안팎의 실업자가 존재하며 이는 노동인구의 2% 수준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음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3Q
GDP (억\$)	3,456	3,650	3,880	4,048	
1인당 GDP (\$)	5,112	5,382	5,673	6,041	
경제성장률	0.1	6.5	2.9	0.9	2.7
물가상승률	3.81	3.02	2.18	1.89	△0.91
근원물가	2.36	2.09	1.00	1.59	0.97
실업률	0.7	0.7	0.7	0.8	0.9
외환보유액 (억\$)	1,751	1,816	1,902	1,802	1,555

* 자료원: NESDB, 태국중앙은행

2. 무역 수지

- 연 평균 4,600억 달러 규모의 교역 가운데 최근 5년간 계속 무역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가 하락과 환율 약세 등으로 최근 3년간 수출이 부진한 상태로 매년 줄어 들고 있음
- 2015년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및 그 부품, 전자 부품, 보석류, 고무 제품, 화공 제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연도별 무역 수지〉

(단위: 억 \$)

	2011	2012	2013	2014	2015 3Q
수 입	2,288	2,450	2,504	2,278	1,538
수 출	2,226	2,292	2,285	2,276	1,616
무역수지	-62	-158	-219	-2	78
교역 규모	4,514	4,742	4,789	4,554	3,154

* 자료원: 태국 관세청

3. 관광 산업

- 태국 GDP의 근간을 이루는 관광 산업은 2011년 홍수 사태, 2014년 방콕 시

위, 2015년 방콕 시내 폭탄 사건 등으로 일시적 소강상태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2015년 2,8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11월 20일 2,600만 명을 돌파하여 연내에 3,0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

〈외국인 관광객 및 객실 점유율〉

(단위: 천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3Q
관광객	19,230	22,354	26,547	24,810	22,136
증가율	20.7	16.2	18.8	△6.5	28.3
객실이용율	57.2	60.8	64.9	55.6	62.7

* 자료원: 태국관광체육부

4. 환율

- 최근 3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들어 국제 금융 시장 영향으로 태국 바트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음
- 일부 금융기관은 달러당 36바트를 넘을 것으로 전망 당분간 계속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됨

〈평균 환율〉

	2011	2012	2013	2014	2015 3Q
평균 환율	31.55	30.61	32.86	32.89	35.82

* 자료원: 태국중앙은행

5. 수출입 동향

□ 국가별/지역별 수출 분포 (2014년 기준)

- 아세안 지역이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북미 지역, EU 지역 등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음

- 단일 국가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11%를 넘고 미국 10%, 일본이 9.56%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에 대한 수출은 45.2억 달러로 약 2%를 차지하며 15번째 수출 대상 국가임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분포〉

(단위: 백만\$)

	2011	2012	2013	2014	%	2015 3Q
총 수출	222,575.75	229,105.66	228,504.89	227,523.51	100.00	161,563.16
아세안	54,043.98	56,498.97	59,309.46	59,413.54	26.11	41,406.06
북미	24,771.70	26,044.20	26,287.63	27,363.43	12.03	21,023.73
중국	26,250.38	26,869.78	27,232.73	25,084.40	11.02	17,678.96
EU	24,193.89	21,728.48	22,430.18	23,373.65	10.27	16,519.17
일본	23,869.91	23,465.95	22,235.26	21,740.77	9.56	15,237.38
홍콩	11,952.40	13,097.10	13,189.03	12,609.98	5.54	8,941.32
중동	10,352.01	11,676.82	11,715.23	11,732.96	5.16	7,796.83
호주	7,997.29	9,762.77	10,348.95	9,298.86	4.09	7,230.86
인도	5,181.39	5,473.33	5,181.82	5,614.84	2.47	4,129.20
한국	4,577.35	4,778.90	4,588.22	4,520.09	1.99	3,124.88
남아프리카	2,202.08	2,839.68	2,607.84	2,349.46	1.03	1,581.94

* 자료원: 태국관세청

□ 국가별/지역별 수입 분포 (2014년 기준)

- 아세안 지역,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역내 수입이 전체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8.55%, 미주 7.05%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태국의 6번째 수입 대상국임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분포〉

(단위: 백만\$)

	2011	2012	2013	2014	%	2015 3Q
총 수입	228,786.63	249,115.00	250,406.80	227,748.38	100.00	153,804.74
아세안	37,156.72	40,349.10	41,798.18	41,029.58	18.02	29,924.98
중국	30,501.68	37,120.69	37,727.17	38,498.34	16.90	30,022.80
일본	42,206.38	48,737.55	41,083.00	35,506.61	15.59	23,798.70

	2011	2012	2013	2014	%	2015 3Q
중동	30,413.90	32,315.12	35,755.89	29,065.70	12.76	14,823.25
EU	17,892.00	20,196.46	22,015.27	19,472.75	8.55	13,810.19
북미	15,066.34	14,105.23	16,389.95	16,067.27	7.05	11,652.79
한국	9,215.99	9,004.63	9,067.55	8,547.46	3.75	5,449.44
대만	7,506.03	8,215.84	7,599.91	7,537.46	3.31	5,784.43
호주	7,948.05	5,446.91	5,495.50	5,413.81	2.38	3,110.76
스위스	8,869.78	8,756.76	9,269.31	4,193.28	1.84	2,848.20
러시아	4,519.11	4,056.19	3,529.50	3,708.46	1.63	1,310.12
인도	3,020.17	3,400.44	3,504.34	3,039.49	1.33	2,054.20

* 자료원: 태국관세청

□ 주요 품목별 수출 구조

- 쌀, 고무, 타피오카 등은 세계 제 1 수출국이며 설탕, 파인애플 수출 세계 2위임
- 2014년 기준 농산물 7.9%, 수산물 0.95%, 농수산물가공품 11.92% 등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음
- 식품가공기술이 뛰어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음
-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2011	2012	2013	2014	2015 3Q
농산물	23,675.31	18,215.60	18,216.99	17,972.78	12,080.84
쌀	6,432.29	4,632.27	4,419.98	5,438.69	3,228.34
: 물량(MT)	10,711,548.99	6,734,426.87	6,612,616.53	10,969,370.45	6,610,343.77
고무	12,697.55	8,745.80	8,233.51	6,021.54	3,907.93
: 물량 (MT)	2,997,018.35	2,998,896.90	3,437,042.04	3,409,387.42	2,703,556.97
타피오카	1,923.24	2,097.19	2,477.70	2,812.68	2,169.98
: 물량 (MT)	5,630,358.59	6,929,006.66	8,272,490.01	9,821,768.36	7,923,358.32
과일	911.10	907.10	1,001.83	1,205.24	979.52
: 물량 (MT)	1,162,366.98	1,353,958.84	1,368,341.36	1,397,053.29	1,071,315.39
원예작물	1,355.89	1,288.54	1,461.93	1,574.97	1,053.32
축산제품	355.24	544.71	622.04	919.66	741.76

	2011	2012	2013	2014	2015 3Q
수산물	3,065.98	2,846.78	2,123.66	2,152.58	1,284.36
갑각류	1,786.38	1,531.46	1,020.19	966.31	529.01
: 물량 (MT)	209,795.81	191,605.89	103,639.10	86,728.91	57,361.18
어류	743.59	782.12	629.50	660.28	429.16
: 물량 (MT)	377,056.57	372,131.85	313,461.79	334,731.47	212,041.38
오징어류	415.38	425.21	351.82	365.42	228.01
: 물량 (MT)	62,950.92	62,259.73	58,145.60	63,942.60	41,833.16
수산물제품	120.64	107.99	122.15	160.57	98.18
임산물	1,072.06	1,086.25	1,244.17	1,264.27	884.32
광산물	1,796.88	2,056.57	1,571.66	941.16	396.79
원유	1,378.82	1,662.20	1,163.53	420.97	42.91
광물	418.06	394.37	408.13	520.19	353.87
제조품	186,353.66	197,556.20	201,204.22	201,361.37	143,279.26
농산가공품	27,440.50	28,556.54	27,817.51	27,119.65	19,227.57
식품	16,851.26	17,309.55	16,318.24	15,657.70	11,138.90
설탕	3,676.85	4,003.04	2,913.68	2,791.91	2,094.95
: 물량 (MT)	6,564,546.78	6,913,542.20	6,056,523.79	6,354,341.71	5,724,054.54
수산물가공품	2,937.91	3,435.43	3,388.47	3,060.08	1,994.33
: 물량 (MT)	781,297.73	800,698.42	780,990.39	806,100.76	577,176.48
갑각류가공품	2,104.27	1,763.51	1,419.19	1,223.48	754.17
: 물량 (MT)	215,517.80	184,099.01	130,190.98	101,063.93	72,564.82
축산물가공품	2,051.03	2,122.70	2,152.40	2,073.72	1,597.00
: 물량 (MT)	441,342.68	464,434.70	439,684.43	428,655.47	354,529.09
Pineapple 가공품	666.06	546.44	509.92	509.32	423.22
: 물량 (MT)	641,187.15	586,112.85	564,974.56	528,159.12	367,317.74
기타 과일 및 채소	860.52	793.55	877.30	922.92	701.91
: 물량 (MT)	459,570.33	396,427.45	418,032.43	411,176.03	301,889.69
cereal 가루, 전분	860.59	943.95	1,026.38	1,063.75	851.59
: 물량 (MT)	300,609.21	315,053.08	349,551.63	374,605.45	299,747.64
기타 식품	3,694.02	3,700.93	4,030.90	4,012.52	2,721.72
음료	1,280.59	1,464.10	1,706.11	1,926.58	1,571.68
고무제품	4,929.85	5,063.74	4,953.23	4,456.89	2,649.27

	2011	2012	2013	2014	2015 3Q
총이 제품	1,462.93	1,531.68	1,584.04	1,645.95	1,209.28
목제 제품	949.64	912.25	936.28	1,049.73	762.30
가죽제품	613.73	647.37	704.79	743.27	580.00
동물 사료	933.70	1,085.52	1,150.62	1,226.58	942.59
기타 농산물	418.80	542.34	464.19	412.95	373.55
의류 및 원단 제품	8,334.05	7,333.69	7,598.24	7,578.99	5,254.37
전자 제품	32,713.77	33,003.58	32,740.61	33,314.57	23,832.90
전기 제품	11,286.54	11,530.88	11,800.67	12,305.90	9,210.41
금속 및 철강 제품	9,409.26	11,275.41	10,778.49	9,608.11	6,913.47
자동차 및 관련 제품	23,254.76	29,366.19	31,585.36	31,622.64	24,383.47
기계 및 장비 제품	16,769.47	17,091.07	17,773.32	19,282.75	14,423.16
보석류	6,281.43	6,410.05	6,695.72	7,153.77	5,501.58
화학 제품	8,213.32	8,384.01	9,019.07	8,473.75	4,870.45
석유화학 제품	11,913.73	11,702.87	12,322.18	13,246.72	8,900.85
석유 관련 제품	11,314.78	13,096.03	12,924.63	11,385.49	6,277.65

* 자료원: 태국중앙은행

□ 주요 품목별 수입 구조

- 생산용 원부자재 38.2%,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원료가 20.9%를 차지하고 기계, 장비 등 자본재가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제품은 8.7%에 불과함
- 소비용 식음료, 수산 및 축산 제품은 80억 달러로 3.5%, 원자재용 농산물 제품은 89억 달러로 3.9%에 불과함

〈주요 품군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2011	2012	2013	2014	2015 3Q
소비제	17,045.09	19,237.64	20,083.11	19,740.45	14,971.40
비내구성 소비제	11,136.63	12,417.56	13,115.96	12,764.93	9,496.35
축산 및 수산물	2,962.33	3,328.17	3,433.36	3,066.85	2,091.15
식품 및 음료	4,129.32	4,623.03	5,009.02	4,935.63	3,554.78
의료제품	1,984.34	2,165.15	2,188.66	2,255.74	1,821.65
화장품	1,394.51	1,571.23	1,746.57	1,739.63	1,418.91
기타	666.14	729.97	738.34	767.08	609.87

	2011	2012	2013	2014	2015 3Q
내구성 소비재	5,908.46	6,820.08	6,967.15	6,975.52	5,475.05
가전제품	866.17	1,032.10	949.23	869.52	694.33
의류	1,537.87	1,812.73	1,812.82	1,891.15	1,438.04
보석류	908.70	995.35	845.02	850.95	636.06
약기류	59.06	70.67	53.53	42.26	31.93
가구류	528.72	689.43	753.79	760.43	604.87
세라믹제품 (주방용 등)	353.51	327.44	408.33	369.27	280.98
시계류	319.11	388.57	465.18	458.14	455.36
기타	1,335.31	1,503.79	1,679.25	1,733.80	1,333.48
원부자재	134,699.12	140,876.06	141,514.72	134,567.90	86,510.72
연료	43,258.55	47,358.82	52,021.54	47,506.48	23,759.32
원유	32,898.22	35,843.17	39,345.84	33,216.46	15,595.25
천연가스	3,826.13	4,209.18	4,906.04	4,629.52	3,759.45
석탄류	1,387.97	1,498.44	1,368.58	1,481.63	1,063.00
석유제품	5,146.23	5,808.02	6,401.08	8,178.87	3,341.64
광산물	3,925.89	3,878.23	3,079.24	2,577.03	1,948.73
농산물 제품	8,748.71	9,310.78	8,883.15	8,912.82	7,024.52
비농산 제품	78,765.97	80,328.24	77,530.79	75,571.58	53,778.15
건설자재	3,723.54	4,335.68	4,334.60	4,106.10	2,861.33
기본 금속물	21,546.23	21,866.07	20,764.86	19,552.28	13,018.99
화학제품	14,337.51	13,675.46	13,388.33	13,108.56	9,067.71
플라스틱류	7,129.88	7,894.09	7,541.93	7,594.24	5,640.27
고무 관련 제품	1,440.36	1,681.79	1,464.00	1,326.71	881.30
전기전자 부품	26,967.05	27,135.26	26,458.49	26,280.43	19,716.14
원단 및 원사	1,847.96	1,927.87	1,844.99	1,881.03	1,347.14
기타	1,773.44	1,812.02	1,733.58	1,722.21	1,245.27
자본재	48,630.31	60,366.39	58,247.91	55,041.96	39,160.86
기계 및 장비류	39,387.43	49,965.76	45,426.42	44,299.97	31,223.42
철도 선박 항공 등 구조물	4,867.76	5,507.70	8,069.30	5,771.63	3,969.42
기타	4,375.12	4,892.94	4,752.20	4,970.36	3,968.02
기타	28,412.10	28,634.91	30,561.05	18,398.07	13,161.77
금	16,466.67	12,378.60	15,056.93	6,612.53	4,701.73
자동차 및 부품	9,940.18	14,258.54	13,370.55	9,694.76	6,930.42
	2,005.26	1,997.78	2,133.58	2,090.77	1,529.61

* 자료원: 태국중앙은행

6. 태국의 FTA 현황

- 태국은 다양한 국가와 19개 FTA를 서명 발표 중이거나 협상 중이며 3개 경제협력 협상을 진행 중이며 수출생산기지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음
- 아세안경제공동체 또는 태국 단독으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발효중인 FTA는 아래와 같음(10개)
 - Thailand-Peru
 - Thailand-China
 - Thailand-Australia
 - Thailand-New Zealand
 - ASEAN-Australia
 - ASEAN-India
 - ASEAN-Japan
 - ASEAN-China
 - ASEAN-Korea
 - ASEAN FTA (아세안 10개국간 자유무역협정)
- 협상 서명이 완료되어 발표 대기중인 FTA 는 아래와 같음(2개)
 - Thailand-Chile
 - Thailand-Bahrain
- 현재 협상 중인 FTA 는 아래와 같음(7개)
 - BIMSTEC
 - RCEP
 - ASEAN-Hong Kong
 - Thailand-India
 - Thailand-EU
 - Thailand-U.S.A.
 - Thailand-Japan

7. 아세안경제통합(AEC) 출범과 대응 동향

□ 개 요

- 1967년 방콕선언으로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출범
 -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교육 등 협력, 지역 평화와 안정 촉진을 목표로 함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 주도하여 출범
 - 그 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도 참여하여 현재 10개국으로 구성됨
 - 정치 안보 공동체(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 경제공동체(ASEAN Economy Community), 사회 문화 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3가지 형태의 공동체 구성
- AEC는 아세안 국가간의 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단일 시장 및 생산 기반,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 역내 균형 있는 경제 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등 효율적인 생산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제공동체 형성이 목표임
 - 2007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을 채택하여 2015년 12월 말 출범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 출범 전까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출범 후 계속 단계적으로 협상 추진함
 - ※ 정부에서는 2015년 12월 현재 목표과제 90%가 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80%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
 - 태국에서는 상업부 산하 무역협상국(Dept. of Trade Negotiation)이 주도하고 있음
- 단일 시장 및 생산기지를 건설함
 -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의 추구가 핵심임
 - 특히 12개 우선 통합부문에서의 이동을 집중관리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1차 산업 부문의 대책 마련
 - ※ 12개 부문 : 농산물, 항공교통, 자동차, e-ASEAN, 전자, 어업, 보건, 고무, 섬유 의류, 관광, 목재, 물류 등

- 경쟁정책 구비, 소비자보호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사회기반시설 개발,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전자상거래 도입 등으로 ASEAN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함
- 국가간 격차해소를 위해 특히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지역의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빈곤감소 등을 추진함
- FTA, CEP 등 다국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생산 유통에 국제기준을 도입하여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추진함

□ 추진 경과 현황

- 그동안 자유무역 수준을 높이고 AEC 로드맵의 80%를 달성하였다고 ASEAN은 자체 평가하고 있음
 - 2000년 평균 관세율 4.43%에서 2014년 0.54%(6개국 0.04%, CLMV 1.33%)
- 포괄투자협정(ACIA), 자연인이동협정(MNP), 비관세조치 DB화, 포괄적동반자협정 등을 추진함
 - 역내 관세 제로화(역외 관세 각국 자율), 서비스업 지분 회원국간 70% 인정, 숙련공 인력의 자유 이동 등 달성
 - EU의 역외 관세 동일, 서비스업 지분 100% 인정, 노동인구 자유이동, 단일 통화, 초국가기구 존재 등과 비교됨
- 역내 교역량이 2000년 2조 달러에서 2013년 2.5조 달러로 늘었으며 외국인 투자도 2000년 920억 달러에서 2014년 1,362억 달러로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소통 부족, 통계신뢰 문제 등으로 투자리스크가 크다고 업계에서는 2015년 말 출범이 아직은 비관적이라고 평가함
- 각국별 정책 및 제도 정비이행기제 강화 등이 필요함

□ 태국의 대응 및 준비 현황

- AEC 출범에 따른 경제효과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AEC 기본방향과 부합되는 자체 전략을 수립 추진 중
- 경쟁력 강화를 위해 e-commerce, OTOP 정책, 소득 불평등 해소, 교육 개혁, 국경무역 활성화, 녹색에너지 정책, 공공부문 개혁 등을 추진 중
- 상무부에 AEC Learning Center 를 설치하여 전문 인력을 훈련하고 있음

-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비하여 직업훈련 강화, 숙련공 훈련 등을 추진
 - 기업 현장 교육, 기술력 강화 교육, 해외 교환학생 상호 직업교육 등 실시
- 특히 SW, 통신, animation, network, security 등 IT 분야 전문인력 양산을 위해 직무 표준개발 및 라이선스 제도 도입 예정
- 태국과 ASEAN 국가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함
 - 태국을 아세안 물류 허브로 개발하기 위해 철도, 도로, 항공 인프라 구축에 2조바트를 투자할 예정
 - 2021년까지 태국-인근국가 물류수송을 지원하는 복선철도 건설
- 국경지역에 경제특구 SEZ을 조성하여 각종 투자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경 5개 지역에 설립
 - 법인세 8년 면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혜택과 인접국 외국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인프라 부족 및 고급 노동력 부족 등으로 투자환경이 미비한 실정임

Ⅲ

농업동향 및 주요정책

1. 농업개황

-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이 전체 GDP의 10.5%를 차지하며 농수산 제품이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음
 - 식품 산업은 GDP의 28.3%,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는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19%를 차지함
 - 식품산업에 쓰이는 원재료의 80%가 국내 시장에서 공급
- 주요 농산품으로는 쌀, 카사바, 고무, 옥수수, 사탕수수, 코코넛, 팜유, 파인에플 등이 있으며 쌀, 고무, 카사바 등은 세계 수출 1위국임
- 시장 가격에 따라 쌀, 땅콩, 옥수수, 카사바 등 여러 가지 밭농사를 번갈아 경작하기도 함
 - 중부지방이나 관개수가 연간 공급되는 지방은 연간 쌀만 3모작하기도 함
- 경작지는 211,406 평방km로 전체 국토의 41.2% 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당 평균 4.2ha 를 경작하고 있고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관개농지는 경작지의 약 30%에 해당하는 64,150 평방km로 주로 중부지역에 치중되어 있음

〈토지 분포〉

(단위: 평방km)

국토면적	경작지	임산지	기타
513,120	211,406	190,881	110,834
100.00%	41.20%	37.20%	21.60%

* 자료원: World Factbook

- 15세 이상 총 고용된 노동 인구 3,809만 명 중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는 1,209만 명으로 전체 고용노동인구의 31.74%에 해당함

〈업종별 노동인구 현황〉

(단위: 백만 명)

업 종	노동인구	%
농수산업	12.09	31.74
제조업	6.77	17.77
건설	2.06	5.41
도소매업	6.18	16.22
교통	1.22	3.20
호텔요식	2.67	7.01
금융업	0.54	1.42
부동산	0.22	0.58
공공기관	1.63	4.28
교육	1.18	3.10
건강복지	0.69	1.81
기타서비스업	0.71	1.86
기타	2.13	5.59
합계	38.09	100.00

* 자료원: 태국통계청 (2015.10.현재)

- 농가 소득은 2010년 58,000บาท 수준으로 2011년 정부의 쌀수매가격 현실화로 22.6% 상승하였으나 정부 재고 증가와 수출 부진으로 농가소득이 계속 줄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2.7% 감소 54,529บาท으로 추정됨

〈농가 평균 소득〉

(단위: бат)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상)
소득	71,886	67,932	66,167	62,461	54,528
증감율 %	22.6	-5.5	-2.6	-5.6	-12.7

* 자료원: NESDB

2. 주요 생산품

- 쌀, 카사바, 사탕수수 등 농작물과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등 과일류,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이 주로 생산되고 있음

〈태국 주요 농축산 생산품〉

(단위: 천\$, MT)

	품목	생산금액	생산량
1	사탕수수	3,168,771	98,400,000
2	쌀	9,430,611	37,468,903
3	카사바	2,212,526	29,848,000
4	고무	4,003,423	3,500,000
5	기타 과일	1,085,874	2,730,847
6	망고, 구아바	1,587,793	2,650,000
7	파인애플	755,372	2,650,000
8	팜오일	696,091	1,780,000
9	바나나	464,691	1,650,000
10	닭고기	1,799,537	1,263,358
11	야채	211,996	1,125,000
12	돼지고기	1,638,048	1,065,577
13	우유	332,033	1,064,000
14	코코넛	121,630	1,057,000
15	계란류	1,683,346	1,051,000
16	기타 고기	529,276	195,928
17	고추	158,837	145,000
18	오리고기	136,339	82,752

* 자료원: FAO, 2013

3. 농업 현안

□ 낮은 교육 수준

- 농업 인구의 교육 수준이 초등졸 이하의 문맹자가 71.23%에 달하며 문맹자가 40% 이상에 이름
- 낮은 교육 수준으로 농업 기술 선진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전문가 양성이 어려움

〈농업인구 교육 수준〉

(단위: 천명)

학 력	초등졸 미만	초등졸업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이상	전체
인구	4,802	3,810	1,732	1,325	422	12,090
%	39.72	31.51	14.32	10.96	3.49	100.00

* 자료원 : 태국통계청

□ 노동력 감소

- 2013년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300밧을 적용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어 지방 노동력의 특정 산업지역 집중화가 줄고 있으나 도시 생활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노동자들이 도시 지역 고소득 직종에 집중하고 있음
- 특히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동력 또한 감소하고 있음

□ 천혜의 자연 조건 및 재래식 영농

- 천혜적인 자연 및 기후 조건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수경 농사 및 밭 농사를 동시에 경작할 수 있고 1년에 3모작 경작할 수 있음
- 한 경작지에서 쌀, 땅콩, 고구마 등을 번갈아 1년에 3번씩 경작할 수 있음
 - 쌀과 같이 농수가 필요한 작물은 우기를 전후하여 1-2모작 경작 가능함
 - 중부지역은 관개수 공급이 잘 되어 있어 연간 쌀만 3모작 경작하고 있음
- 재래식 영농법이 유지되고 있어 생산 단가가 높음
 - 연간 생산 공급되는 농산물이 수요보다 많으므로 정부에서도 굳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영농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음
 - 농민들도 선천적인 낙천적 성격으로 신기술 도입이나 개발 등에 소극적임

□ 농가 저소득 및 부채 문제

- 태국통계국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세대별 평균 수입이 330,588밧으로 지역별 및 산업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며 농가 수입은 평균의 16.5% 수준으로 빈곤층에 해당함
- 특히 전체 농가의 49.2%가 소득보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으며 2011년 잉락 정부는 쌀수매가 현실화, 농가부채탕감 또는 부채상환연기 등의 정책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였으나 정부의 고가 수매로 인한 정부 예산 남

용 문제로 잉락 전 총리가 재판에 회부 중이며 농가 부채 문제는 아직도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 있음

□ 제도적 문제

- 산업 발전을 위한 명확한 방향 및 목표 부족
- 효율적인 생산관리 부족
- 생산, 관리, 유통시장에 대한 시장 정보 및 규제에 관한 정보가 부족
- 생산자와 제조업자간의 연결 시스템 부족
- 식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 부족

4. 주요 정책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을 활용하는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관광시장과 연계하여 수출화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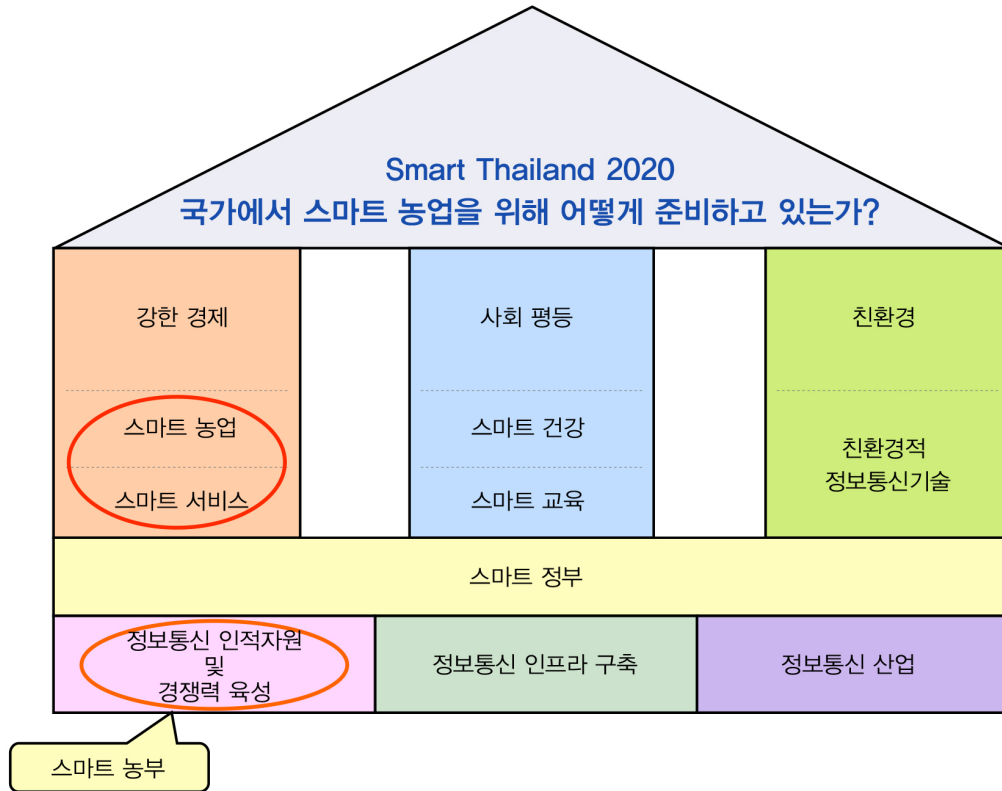
□ Smart Farm 정책

- 기본 목표 -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농민의 고령화, 영농기술 전문가 부족, 노동력 감소, 높은 생산비용 등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장의 세계화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과학기술개발원이 주체가 되어 산하 국가전자통신기술원, 농업 관련 정부 부서, 왕실수로국, 영농 단체 및 대학 등이 협력하고 있음

〈관련 기관 및 단체〉

정부	Department of Seri-culture, Rice Depart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e Research Development Agency, Department of Fisheries
대학교	Mae Jo University, Kasetsart University,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Rajmongkol Technology University,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민간 단체	Koerner Agro, Orchid Exporter Association, Fruit & Vegetable Export Association,
농민 단체	Rice Seed Production Group (Saraburi, Supanburi, Pitsanulok), Longan Growers Association, GAP/Organic Rice Grower Association
국제 협력 기구	FAO, NARO, JAXA, Consortium(APAN, AFITA, SRII)

〈Smart Farm 정책 개념도〉



* 출처: NSTDA

- 농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IT 및 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Digital Agriculture 구현
 - field server를 이용하여 영농 작업을 데이터화하여 관리 및 개발
 - 농산물 출고 및 재고 유통 관리에 정보통신 기술 활용
 - 농산물 유통 및 수출 시장을 인터넷을 통해 추적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
 - 농산물 표준화
 - 식품 안전 관리 체계화
- 정부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소 전문가들이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영농 및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시키고 있음

□ OTOP 정책

- One Tambon One Product 정책으로 탐본(행정단위, 면(面)) 단위로 1개의 특산물 생산 및 가공을 장려하여 농가소득을 꾀함
- 제품 개발, 포장 디자인, 유통 및 판매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
- 정기적으로 OTOP 전시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상품 소개 및 판매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음
-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

IV

관세 및 검역제도

1. 관세제도

-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B.E. 2530(1987)]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에 대해서는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
- 태국은 통일상품분류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 : HS)가입국으로 2008. 7월에 개정된 관세율 표는 HS 8단위 품목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WTO 자료에 따르면 동 개정 관세율표는 총 8,301품목으로 구성
- 태국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실행관세율, 협정관세율 및 할당관세율 등으로 구성됨. 기본세율 및 실행관세율은 태국이 회원인 다자 또는 양자간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WTO 협정세율과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협정세율 그리고 호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있으며,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
-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 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고시만 별도 공표하고 있어 실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함
- 태국 관세청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th)에 Integrated Tariff Databas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 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이 사이트에는 품목분류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수입관세율, 수출관세율, 관세감면세 대상품목, 화학물질목록, 철장제품목록 등이 명시되어 있고 HS Code별, 연도별, 국가별, 관세율 유형별(기본, 실행, 협정세율 등) 통합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가. 법정관세율

- 2003년 이후 태국의 법정 기본세율 체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태국에서는 법정(기본)관세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과정을 거쳐야 함. 반면 태국의 실행관세율(일시 또는 조정세율)은 국회의 비준 없이 재무부 장관이 내각의 승인과정을 거쳐 적용하며 재무부 장관은 필요 시 내각의 승인과정을 통해 관세율 표 상에 게시된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각종 특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
- 태국의 법정관세율 구조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관세율 표는 총 31개 등급의 품목별 종가세율(0~80%)과 19등급의 특별세율, 158개의 대체세율(Alternative duty)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율의 종가세 적용 품목 군에는 민감 품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차, 마른 양판, 오토바이 등 12개 품목(60% 적용)과 65% 적용의 고체형태의 설탕, 80% 적용의 자동차류 15개 품목 등이 포함됨

나. 실행관세율

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 태국은 전체 관세품목 중 73.7%를 최혜국대우(MFN) 품목으로 양허 함. 이에 는 모든 농산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비 농산품의 경우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 69.5%가 종가세, 특별세, 대체세 등의 형태 임. 그리고 태국은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회원국으로서 일부 IT 생산품에 대한 협정관세율(0%) 계상을 2005.1월에 이미 마무리 함
-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에는 소금, Mineral fuels, Chemicals, Fertilizer, 펄스, 운송장비, 고무생산품, 철장 등이 있다. 실행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은 경우 또는 실행세율이 특별세율이고 기본세율이 종가세율일 경우에는 낮은 세율 우선 적용. 실행관세율은 내각의 승인 하에 언제든지 기본관세율 수준까지 조정될 수 있어 이는 관세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② 비종가관세율(Non-ad Valorem Duties)

- 특별세율과 대체세율로 구성되는 비종가관세율은 전체 대상품목의 16.5%를 차지. 비 종가세율에 해당하는 품목은 주로 농산품, 식료품, 플라스틱, 고무, 펄프, 종이, 섬유, 가죽제품 등이고 이는 태국 관세율 상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음

③ 특별관세율(Special Duties or Surchares)

-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해 특별 부과금을 징수함.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 톤당 180Baht의 부과금을 징구하고 Flour, Meal, Pellets of fish, Crustaceans, Mulluscs 등에 대해서는 5%의 종가세율을 부과

다. 한-태 협정관세율 체계

- 한-태 협정관세율 개요
 - 한-태 협정관세율은 기본적으로 한-ASEAN 협정관세율에 근거하며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은 2004.11월 최초 협상개시 이후 총 24회의 협상과정을 거쳐 2006.8월은 상품협정에 서명을 하였으나 당시 태국은 우리나라 쌀, 자동차 등 민감 품목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국내 정치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서명에 불참함. 이후 태국 측 요구에 따라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별도의 협상을 수행하여 왔으며 2007.12월에는 최종타결되어 그 결과 2009.2.27일 태국 후아회에서 양국대표가 정식으로 한-ASEAN 자유무역협정 가입 의정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2010.1월부터 발효됨
 - 2015.8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구체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16.1월부터 발효됨

라. 주요 비관세 장벽

1) 표준 및 품질표시

- 태국의 독자적 인증제도

-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의약품 등 10개 카테고리 85개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 산업표준원(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TISI)이 정한 표준 공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 TISI의 규격을 따를 때만 정부조달 상 특혜를 주고 있음. 다만, TISI에서 인정한 CE마크 등 일부 외국 인증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제출과 함께 수입 통관 시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님
- 태국의 Labeling(Mark) 제도
 - 태국은 공산품에 대해 우리나라의 KS제도와 같은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며 11개 산업 74개 품목이 해당됨
 - 식품류의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전에 원산국 정부 또는 인정받은 민간연구소가 발급한 식품분석 증명서를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5개의 원산지 라벨과 태국어 라벨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

2) 식품안전

- 농산물 및 식품
 - 태국으로의 곡물, 과일 식품 및 그 가공품 수입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 정보까지 요구함. 식품 수입허가에는 통상 300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매 3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 성분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과정도 설명하여야 함

2. 검역제도

가. 식물검역 규정

1) 법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검역법
- 수입금지 및 제한 등은 장관 규칙 또는 공고를 통해서 규정

2) 금지품(Prohibited materials)

-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질비료, 식물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

3) 제한물품(Restricted materials)

- 금지 지역산이 아닌 벼속 식물, 생벼풀, 벼짖,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및 코코넛
- Saccharum속 식물, 커피속 식물, 고구마, 면화속 식물, 담배, 옥수수, 카카오, 바나나속 식물, 감자, 땅콩, 파인애플, 차나무속 식물, 오일팜, 토마토, 파파야, Aleurites속 식물, 타로, 소맥, 대두, mung bean, 수수 및 난과 식물

4) 감귤류 과실의 수입요건

- 수출국은 태국 농업국에 다음 정보를 제공함
 - 감귤병해충의 목록, 효과적인 감귤소독방법
- 태국과 수출국 간에 다음 사항을 합의해야 함
 - 소독처리, 처리된 과실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식물검역증, 수출국에서의 검사방법, 태국의 반입항에서의 검사방법

5) 금지품 수입

- 금지품은 방콕항, 방콕공항 및 방콕우체국을 통해서만 수입하여야 함
- 농업국장이 발부한 수입표찰을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 금지품은 농업국장 앞으로 송부하여야 함
- 사전 수입허가 필요
- 수출국 식물검역증 첨부

6) 제한물품 수입

- 식물검역장을 통해서 수입하여야 함
- 수출국 식물검역증 첨부

7) 비 금지물품 수입

- 비 금지품을 수입한 사람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식물검역관에게 통보해야 함

8) 수수료

- 식물검역관 사무실 밖에서의 업무처리 또는 공휴일이나 일과시간 후에 업무가 수행될 때에는 일정 수수료 및 여행경비를 부과함

나. 동물검역 규정

1) 동물 수입 검역

- 수입 전 절차
 - 수입자 혹은 태국으로 동물 수입을 희망하는 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로부터 수입 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자는 입국항구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연락하여 태국으로 동물 수입 시 필요한 규정과 동물 건강 요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
 - 수입자는 수입일 최소 15일 전에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수입하려는 동물에 대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 신청서는 수입자의 신원확인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함
 - 수입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대리인을 지정하여 수입자와 수입자 대리인의 신원확인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함
 - 가축 개발부는 동물 건강 요건이 포함된 수입 승인 발급 전에 원산지의 동물 질병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권한이 있음
 - 태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동물의 건강 조건은 현 상황과 현 동물 질병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임
 - 수입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의 동물 건강 요건에 따라 수입할 동물들을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고 증명하기 위해 원산지의 수의청으로 수입 승인서를 송부해야만 함
 - 수입 동물과 관련된 장비가 필요한 경우, 수입자는 입국항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정확한 도착 날짜를 도착 전 최소 3일 전에 확정해야 함

◦ 수입 시 절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수입 통관 수속 시에 임시 수입증을 즉시 발급할 권한이 있음
- 원산지 수의청에서 발급된 수입 동물에 대한 공식적인 영문 건강 증명서는 수입 동물이 도착한 후 종합점검 전에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송부될 것임
- 육종을 목적으로 한 수입동물에 대해서는, 수입세를 공제받기 위한 동물 혈통 증명서 혹은 다른 증서를 수입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제출해야 함
- 수입자는 수입할 동물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청구서 사본, 가격 리스트, 패키징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태국 내각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입세를 지불해야만 함

◦ 수입 후 절차

- 도착 시 바로 진행되는 종합검진 이후, 수입동물은 동물 검역 시설로 이동됨
- 검역 기간 동안, 질병에 대한 규정된 검사와 조회를 위해 모든 수입 동물의 샘플이 수집될 것임
- 이동시 혹은 검역 시 수입될 동물이 아프거나 죽는 경우, 모든 관계자 및 부서에 즉시 알려야 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다른 어떤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규제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함
- 최종 수입증서는 모든 수입 동물의 규정된 심사를 통과한 후, 태국의 수입 검역을 완료하여 최종 목적지에 동물들이 풀어질 시점에 발급될 것임

2) 축산물 수입 검역

◦ 수입 전 절차

- 수입자 혹은 축산물을 태국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 태국 가축 개발 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자는 입국항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의 수의청에 연락하여 태국으로 축산물 수입 시 필요한 규정과 동물 건강 요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함
- 수입자는 수입일 최소 15일 전에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수입하려는 축산물에 대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 신청서는 수입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원확인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함

- 태국 가축 개발부는 동물 건강 요건 사항이 포함된 수입 승인서를 발급하기 전, 원산지의 동물 질병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권한이 있음
- 태국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의 동물 건강 요건은 현 상황과 현 동물 질병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임
- 수입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에서 제정한 동물 건강 요건에 준수하여 수입 축산물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원산지 수의청에 수입 승인서를 송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장비 필요시, 정확한 도착 날짜를 수입 전 최소 3일 전 입국항구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확증해야 함
- 수입 시 절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수입 통관 수속시에 임시수입증을 즉시 발급할 권한이 있음
 - 원산지 수의청에서 발급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공식적인 영문 건강 증명서는 수입 동물이 도착되는 대로 종합점검 전에,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송부될 것임
 - 수입자는 수입할 축산물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청구서 사본, 가격리스트, 패키징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태국 내각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입세를 지불해야만 함
- 수입 후 절차
 - 도착 시 진행되는 종합검진 이후, 축산물은 승인된 검역 시설로 이동됨. 검역 기간 동안, 적합한 실험을 거친 검사와 조회를 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샘플이 수집될 것임
 - 최종 수입증서는 수입하려는 축산물이 심사를 통과하고, 태국의 수입 검역을 완료하여 최종 목적지에 축산물이 방출할 시점에 발급될 것임

3) 동물 혹은 축산물 수송 시

- 절차
 - 동물 혹은 축산물을 태국 환승을 통해 다른 나라로 수송하려는 자는 이동하기 최소 3일 전 항만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통보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함

-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은 신청서에 첨부된 공식 건강 증명서, 청구서, 가격 리스트, 패킹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이동 승인을 위하여 확인하여야 함
- 세관 수속을 위한 수송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은 수송할 동물 혹은 축산물의 일반적인 건강 검사와 필요시 소독을 진행하여야 함
- 수송할 동물 혹은 축산물은 검역 시설 이동시 소유자는 모든 비용을 내야함
- 소유자는 동물 전염병과 관련된 태국 내각 규정에 명시된 수송비를 지불 함

4) 동물/축산물 수송 및 수입 시 필요한 서류

- 개 인
 - 수입자 신원확인증 사본
 - 대리자 임명에 대한 공문과 대리자의 신원확인증 사본 (수입자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지 못할 시, 대리자를 임명해야함)
 - 주택 등록증 사본
- 법 인
 - 수입자 신원확인증 사본
 - 법인 등기 증명서 사본
 - 대리인 임명 공문
 - 대리인 신원증명서 사본
- 상업용 목적이 포함될 경우
 - 동물무역허가증(이 허가증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축부에서 적용임)

미 국 <<<

2015 주재국 농업전망

- I. 국가개황
- II. 경제동향
- III.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 IV. 관세 및 검역제도



I

국가개황

1. 일반사항

- 국가명 :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 수도 : 워싱턴 DC
- 면적 : 982만 6,675km²
- 인구 : 3억874만 명(2010년인구조사)
- 기후 : 대체로 온화한 기후이나 지역에 따라 다른 기후 특징을 가짐
- 언어 : 영어
- 종교 : 개신교, 로마 카톨릭교, 유대교 등
- 민족구성 : 백인(79.9%), 흑인(12.8%), 히스패닉계(15.1%), 아시아계(4.4%), 원주민(0.97%) 등
- 정부형태 : 대통령제
- 국가원수 : Barack Obama

2. 경제사항

- 실질GDP성장률 : 2.2%(2013년)
- 명목GDP총액 : 18조 1247억 달러 (2015 IMF)
- 1인당GDP(명목) : 5만 6,421달러 (2015 IMF)
- 소비자물가상승률 : 0.0% (2015.9기준)
- 실업률 : 5.5% (2015.5기준)
- 외환보유액 : 1조 1,964억달러(2015.10.30기준)
- 대외채무 :
- 수출액 : 1조8,990억달러(2015.4기준)
- 수입액 : 2조3,080억달러(2015.4기준)

3. 한국과의 관계

- 수교년도 : 1882년
- 한국교민수 : 173만 4,354명 (2011기준)
- 대한국수출액 : 3,322억달러(2015.9기준)
- 대한국수입액 : 5,494억달러(2015.9기준)
- 한국대미투자 : 613억달러(2015.9기준)

II

경제동향

1. 일반동향

- 3분기 기준 2015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2.1%의 성장을 보임. 2분기는 연율 기준 3.9%의 성장률을 보였었음. GDP 상승의 이유에는 개인 소비 지출 증가, 비거주고정투자, 지방정부소비, 거주고정투자의 증가가 있으며 GDP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이지만 수입 또한 증가함 (온점삭제)

〈미국 GDP 성장률〉

분기	2012	2013	2014	2015 1Q	2015 2Q	2015 3Q
성장률(%)	2.2	1.5	2.4	0.6	3.9	2.1

* 출처: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2014년 전체 미국 성장률은 2.4%로 나타난 바 있음

- 실업률은 2015년 10월 기준 5.0%로 1월 5.7%에 비하여 0.7% 감소함. 2010년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실업률추이〉

	'14 12월	'15 3월	'15 6월	'15 9월
실업률(%)	6.7	5.5	5.3	5.1

* 출처: DepartmentofLabor

- 미국 달러는 연간 큰 폭의 상승/하락을 보이고 있음. 2년여만에 가장 높은 1,200원대에 가까워진 적도 있으며 다시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2015년 최고 1,240원, 2016년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과 그로 인하여 달러 강세가 되어 1,300원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됨
- 민간 소비 지출은 개인 소비 지출의 증가세 둔화로 2015년 10월 기준 0.1% 증가, 152억 달러 증가함. 9월에는 95억달러, 0.1%의 증가를 보임

〈개인소비지출증가율〉

(단위: %)

구분	15.3	15.6	15.9	15.10
소비지출	0.3	0.3	0.2	0.2
재화	-2.8	-2.7	-3.2	-3.10.3
내구재	-2.3	-2.1	-1.9	-2.0
비내구재	-3.1	-3.8	-3.9	-3.7
서비스	1.8	1.9	1.9	1.9

* 출처: DepartmentofCommerce

- 산업 생산은 2015년 2, 3분기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했으나, 전체적으로 2014년과 비교하였을 때 0.3% 증가함

Ⅲ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1. 일반현황

□ 대내외환경

- 미국은 주요 농업 생산국이며 소비국인 동시에 수출, 수입국가
- 농업 생산성의 증가로 농가 수는 감소하였지만 규모는 확대되어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2007년 농업 센서스에 의하면 농가수는 210만호(2007년: 220만), 총 농장 면적은 914 백만 에이커
 - 전체 농지 면적은 314만 에이커로 농경지비중은 34.35%
- 2012년 농업 부문 제품 가치는 3.946억달러

〈부문별생산액〉

(단위: 10억달러)

	1990	2000	2007	2009
농업부문생산액	188.5	220.4	326.5	322.7
곡물	83.2	94.8	150.9	164.2
- 식량작물	7.5	6.5	20.7	14.5
- 사료작물	18.7	20.5	62.0	49.7
- 면화	5.5	2.9	5.7	3.3
- 유지작물	12.3	13.5	31.2	31.7
- 과일, 견과류	9.4	12.4	18.9	17.4
- 채소	11.3	15.5	20.4	21.0
- 기타	15.6	21.0	25.3	26.0
축산물	90.0	99.1	139.7	117.4
- 육류	51.1	53.0	64.7	57.2
- 낙농제품	20.2	20.6	34.8	23.9
- 가금류	15.3	21.9	36.8	32.6
- 임업, 서비스수익	15.3	26.5	42.6	41.1

* 출처: U.S. Census

2. 농업 정책 기본 방향

- 농업 구조의 시기별 변화에 따라 농업 정책도 변화를 거듭함
 - 과거 가격 지지 정책 → 시장 친화적 정책(1985~1990)
 - 식품 안전, 반독점, 유통, 농촌 은행, 선물 거래 → 환경 규제, 기초 영양 섭취, 농업노동자 보호, 농촌 토지 이용 계획
- 시장 실패의 결과로 정부 개입을 지지하지만 위험 관리는 생산자와 책임을 분담
- 매5년 마다 농업법을 보완 및 수정하여 예산에 반영
 - 2014농업 법령(TheAgriculturalActof2014)으로 농업 및 농촌 관련 사업을 규정함
- 농무부 예산은 2015년 현재 17,232백만 달러로 계속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무부예산〉

(단위: 백만달러)

	2013	2014	2015
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22,949	19,555	12,476
Rural Development	2,278	2,960	2,505
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881	877	964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1,139	1,214	1,279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6	8	8
Total	27,254	24,614	17,232

* 출처: USDA

3. 주요 농업 정책

□ 정책의 기본 구조

- 오늘날 대부분의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시대에 수립
 - 1949년의 농업법(The Agricultural Act)은 미국의 물가와 소득지원에 대한 영구적인 법적 틀로 알려져 있음

- 일련의 농업법(The Farm Act) 모두가 농가 소득 문제와 농산물 가격 문제를 지원하는 법률로, 이외에도 농산품 거래 외국 식량 원조, 자연 보호, 산림,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보조, 농식품 조사 및 교육, 농촌개발, 농산물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과 같은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

□ 정책 내용

◦ 작물 지원 정책

- 2008년 농업법에서 새로운 수익 보조 프로그램인 수입 보전 직접 지불제도 도입
- 과거 재배 작물, 산출량, 전국 단위 지불 단가에 따라 생산자에게 매년 지급 (밀,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면화, 쌀, 콩, 유지작물, 땅콩)면화에 대해서는 WTO 면화재정(裁定)에서 브라질이 승소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농업법에서는 새롭게 면화 적상 소득 보장 계획(STAX)가 도입되는 방향임
- 브라질과 미국은 차기 농업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브라질면화협회에 대한 자금 협력을 조건으로 무역 제재를 발동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함. 2008년 농업법의 연장 기간 중에는 이 합의를 유지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비공식으로 합의함
- 단, 브라질은 제112의회 상원 안·하원 안에 대해 WTO 재정에 적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주목됨

◦ 낙농 지원 정책

- 낙농 분야에 대해서는 사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낙농 생산 마진 보호 프로그램(DPMPP)과 낙농 시장 안정 프로그램(DMSP)이 새롭게 도입되어 기존 가격 지원에서마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임
- 주요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격 차별 정책과 통합 제도, 경기 순환 상쇄 생산자 지불 제도, 낙농 제품 구매, 낙농품 수입 제한, 관세 할당 제도, 수출 보조 등

□ 무역 정책

- 농산물 수출은 생산량 대비20%, 생산액 대비18%를 차지하는 중요 부문임
- 낙농 수출 인센티브 프로그램(DEIP)은 미국 시장 가격으로 낙농품을 구매 하여 국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현금을 보조

- 수출 보조 이외에 시장 접근 프로그램, 해외시장개발프로그램, 신흥시장프로그램, 특수 작목 기술 지원 등이 있음
 - Market Access Program(MAP) : 생산자, 수출자, 민간기업, 무역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박람회, 시장조사, 소비촉진, 기술지원, 무역지원, 교육분야에 해당
 -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FMD) : 농산물의 시장 창출, 확대, 장기수출 시장 유지에 지원
 - Emerging Market Program(EMP) : 신흥 시장 수출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에 재정 지원
 - Technical Assistance for Specialty Crops(TASC) : 특수 작목의 수출에 따른 위생검역 등 기술 장벽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에 재정 지원
 - Quality Sample Program(QSP) : 무역기관들이 신흥시장의 잠재적인 바이어에게 보내는 소량의 견본 제품 지원

□ 환경 정책

- 토양 침식의60%, 온실 가스 배출량의6%가 농업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환경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는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받음
 - 농지 휴작 프로그램 : 농지를 일정 기간 휴작함
 - 영농 이용 토지 보존 프로그램 : 환경 보전 설비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
 - 농지확보 프로그램 : 타 용도로 사용 하기위해 농지를 확보하는 경우에 지원
 - 기술 지원 : 환경 영향 요소 개선 지원
 - 환경 보존 : 정부 지원 수혜자에게 습지와 침식이 용이한 토양의 보존 및 보호 의무 부여

□ 농촌 개발 정책

- 농촌 경제의 미미한 농업 비중과도 농가의 후생 경제 지표 격차가 큰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농촌 개발 프로그램 운영
 - 경제 개발 : 농촌 지역에 신규 사업과 고용 기회를 유발
 - 기반 시설 개발 : 농촌 사회의 부족한 기반 시설 및 수준 향상

- 특별 수요 프로그램 : 주택, 보건의료, 건강 등 기본 서비스 향상

□ 에너지정책

- 옥수수, 대두 등 바이오 원료(에탄올, 바이오디젤) 생산자에 대한 조세 우대, 융자, 자원지원, 규제 프로그램
 - 바이오 원료는 조세 정책, 환경 정책과 연관되어 농업법의 범주 밖에 있으나, 2008년 농업법에서 바이오 원료 정제 능력 발전을 위해 2008~2012년 기간 중 12억 달러의 기금 조성 의무를 규정
 -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미 에너지 효율 경제 위원회(ACEEE)에 따르면 상업, 주거, 산업, 교통 등 모든 부문에 걸친 에너지 효율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4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국내 식량 지원 정책

- 단기간의 식량 불안에 노출된 사람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로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영양가 높은 건강 식단 권장, 농업 지원 목적의 농산물 구매 지원
 -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 저소득가구에 식품 구매 지원(Food stamp)
 - 아동 영양 프로그램(CNP)
 - 여자와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조 프로그램(WIC)
 - 농산물 분배 프로그램

□ 유통 정책

- 대량 거래, 단순한 유통 경로, 유통 정보 발달 등으로 유통 효율성이 높음
 - 포장, 운송, 저장의 표준화까지도 이루어짐
- 유통 정책은 유통시설이나 물류지원보다는 공정거래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둠
- 1930년 파카법(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95수정)에 의해 신선농산물의 계약과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
 -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하는 소매상, 도매상, 중개인, 운송업자, 무역업자 등 유통 참가자는 면허를 받아야 함
 - 신속한 대금 지급과 위탁 판매 대금의 정확한 계산
 - 등급, 품질, 원산지 등의 투명성 확보

- 유통 참가 업체 종사자들에게도 파카법에 대한 인터넷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권장
- 연방 또는 주정부의 품목별 자조금 제도 운영
 - 자조금은 소비 촉진을 위한 광고, 교육, 표준화, 마케팅, 품질 향상, 연구 개발에 사용
- 유통 정보 제공
 - 시장 뉴스를 통해 400여개 품목의 수요 공급 및 가격 정보를 수집 제공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조사요원을 고용하여 400종의 보고서를 발간 무료제공
- 검사 업무
 - 표준화 업무와 현장 검품 업무 서비스 제공

□ 차기 농업 법안

- 미국 농무부(USDA: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2008년 개정 농업법 내 레이시법 수정안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식물·나무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세관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2008년 농업법이 9월에 실효 됐지만 대통령선거, 의회 선거 등의 영향으로 차기농업법(2012년 농업법)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3년 1월 2일에 2008년 농업법을 2013년 9월까지 연장하는 법률이 통과됨. 1월 3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의회에서 다시 2013년 농업법으로서 차기 농업 법책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됨
- 2013년 1월 3일 개최된 제112의회에서는 상하 양원농업위원회 지도부에 의해 형성된 차기 농업법의 토대를 답습하면서도 각각 약간 다른 법안 이양의회에 제출됨
 - 상원에서는 상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함. 그러나 하원에서는 하원농업위원회가 농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의 심의가 회의 중에 실시되지 못하고 끝남
 - 차기 농업법 심의는 2013년 1월 3일부터 제113의회에서 다시 시작됨. 단, 제113의회상하양원에서의 심의는 대략 제112의회에서 심의된 각각의 법안을 토대로 하여 시작한 것으로 보임

- 차기 농업법에 의한 재정 적자 삭감을 위한 조치로서 직접 고정 지출 폐지, 가격 변동 대응형지불(CCP)이나 평균작물수입선택지불(ACRE) 등의 농산물프로그램에 포함된 주요 시책이 폐지 또는 축소됨
 - 직접 고정 지출 등의 농산물 프로그램 시책을 폐지, 축소하는 대신 가격 변동이나 재해 등에 의한 소득 손실을 커버하는 새로운 수입 손실 보상제도가 안됨
 - 한편, 최근 재정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작물보험은 보다 확충해나가는 방향임. 농가 지불 보험료에 대한 정부부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기존 내용을 유지하는 위에 보험 면책 부분을 보충하는 보조적인 보험이 도입 될 전망이다
- 직접 고정 지불(10년간 496억달러)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에 따른 지불(ACRE) 및 재해시의 보완 전 소득지원(SURE)의 후속 제도 마련
- 유제품 가격 지지와 우유 부족 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마진 보험과 공급 관리 방안마련
- 작물 보험 예산액 증액
 - 군 단위 소득 손실 보험, 땅콩 수입 보험, 쌀의 신행 보험 등
- 소득에 따른 지불을 주장하는 옥수수, 콩 중심의 중서부와 현행 직접 고정 지불 및 부족지불을 희망하는 땅콩, 쌀 중심의 남부 간의 이해 조정
-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3~2022회계연도에 총 9,930억 달러가 소요됨
 - 주요 항목별 소요액 : SNAP 7,720억달러(78%), 품목 지원 및 보험 1,540억달러(16%), 농업보호 640억달러(6%)

4. 무역동향

□ 수출동향

- 2011년 이후 수출 증가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
특히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2011년과 비교하여 크게 하락
- 주 수출 품목은 원자력 발전기, 전자 제품, 미네랄 연료, 기름, 자동차, 항공기 등
 - 2014년 기준 원자력발전기 219,766백만달러, 전자제품 172,766백만달러, 미네랄연료와 기름 155,608백만 달러, 자동차 135,972백만 달러, 항공기 126,186백만 달러

〈미국의 국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전년대비(%)
합계	1,545,820	1,578,439	1,620,531	2.67
캐나다	292,650	300,754	312,420	3.88
멕시코	215,875	226,070	240,248	6.27
중국	110,516	121,721	123,675	1.61
일본	69,975	65,216	66,827	2.47
영국	54,860	47,348	53,823	13.68
독일	48,802	47,361	49,363	4.23
한국	42,282	41,686	44,471	6.68

* 출처: DepartmentofCommerce

□ 수입동향

- 수입은 2010년에 증가하다 2011년 이후 경기 회복 둔화로 계속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 대지진으로 대 일본 수입이 감소하고 대 한국 수입이 증가한 것이 특징임
- 주 수입품목은 원유, 원자력발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임
 - 2014년 기준, 원유 347,716백만 달러, 원자력발전기 324,309백만 달러, 전자제품 314,770백만 달러, 자동차 261,050백만 달러

〈미국의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전년대비(%)
합계	2,276,267	2,268,370	2,347,685	3.5
중국	425,619	440,434	446,754	1.43
캐나다	324,263	332,557	347,797	4.58
멕시코	277,593	280,555	294,074	4.81
일본	146,431	138,574	134,003	-3.3
독일	109,225	114,349	123,259	7.79
한국	58,898	62,433	69,518	11.352.91
영국	55,005	52,850	54,392	2.91

* 출처: DepartmetofCommerce

□ 최근 무역 정책 동향

- 미국은 외국 시장 개방을 통한 양질의 직업 생산 및 유지, 미국의 권리를 모니터링/집행을 통한 양질의 직업 생산 및 유지, 전략적이고 투명한 정책개발, 무역역의 이득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조직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2013~2017 무역정책의 가장 큰 목표
- 2011년도에 이미 수출입은행, 농무부, 상무부 국제 무역 관리청에 대한 예산확충

□ 기관별 수출 지원 내용

- 농무부
 - 수출 신용 보증 프로그램 : 시장 접근 프로그램, 수출보험
 - 수출 인센티브 프로그램 : 유제품 수출 인센티브 사업, 수출 진흥 프로그램
 - 해외 고객 발굴, 바이어 정보 수집, 마케팅 서비스, 경제 분석, 해외시장조사, 기술적지원, 농무부 주관 박람회 지원, 세미나, 숙박비 지원
- 수출입은행
 - 수출 신용 업무 : 수출 자금, 수출 신용보험, 구매자 금융, 구조금융 및 프로젝트금융, 운송 장비 금융
-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 개도국 및 신흥국 투자 중장기 대출 또는 보증: 중소기업 금융, 보험(비상업적보험)
- 중소기업청(SBA)
 - 중소기업 대출 보증 : 수출 비용 조달 보증, 수출 운전 자금 보증
 - 국제무역 대출 : 고정 자산 확대 자금
 - 지역사무소 운영, 중소기업 개발 센터 운영,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운영
- 미국 투자 전담기구(TDA)
 - 외국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기업 보조금 지급
 - 국제회의, 워크숍주관, 시장정보출간
- 상무부
 - 수출지원 및 마케팅 서비스, 카운슬링, 정보지원
 -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 세계 전역에 비즈니스 정보센터 운영(국제 지역정보 제공), Trade Information Center운영 (미국 정부 정책, 관세 정보 등)
- District Export Council운영(중소기업에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 국방부
 - 시장정보, 시장 기회 조사, 중소기업 대변인 역할 서비스
 - 비즈니스 비자 센터 운영(외국 고객에 대한 비자 접수 절차 편의 제공)

5. 한미FTA동향³²⁾

가.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 정책방향

- 미국의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미무역 대표부(USTR)는 매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추진방향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령에 따라 2015년 3월 3일 “2015년 Trade Policy Agenda”를 발표함. 2015년 Trade Policy Agenda에서는 2014년도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경제 성장 도모’, ‘높은 임금의 일자리 창출’, ‘중산층 부양’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내용 정책 우선순위	주요 내용
일자리를 창출하는 높은 수준 무역 협정 (High Standard, Job Supporting Trade Agreements)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타결 - 미-유럽자유무역협정(TTIP) 협상진척 -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 및 정보통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협상 타결 - WTO를 통한 시장 개방 확대 및 보호무역주의 배격 - 노동 및 환경기준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 - 무역협정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창의성과 혁신지향
무역 관련 집행 강화 (Trade Enforcement)	-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강화 - 부처간 무역집행체(ITEC)의 역할 강화 및 중국의 불공정교역에 대한 대응 강화 - WTO 회원국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위원회 활동 활성화

32) 출처: KOTRA

주요 내용 정책 우선순위	주요 내용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교섭 (Engaging with the Key Trade Partners)	- (한국) 한미 양자간 무역협정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고 APEC, 다자간서비스협정(TiSA) 등에서 협력 - (중국) 지적권 보호, 투자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협상 가속화 - (러시아) WTO 규정 이행여부 모니터링 활동 강화 - (인도) 지적권보호, 미국-인도무역정책포럼 활용 확대 - (아프리카) AGOA, Trade Africa Initiative 등 지원정책강화 - (아시아) APEC,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무역과 개발 (Trade and Development)	- 오바마대통령이제안한(2013. 6.) "Power Africa" 정책을 통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개선 지원 일반특혜 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연장을 통한 개도국 성장 지원 -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재연장 - 오바마대통령이제안한(2013. 6.) "Power Africa" 정책을 통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개선 지원 일반특혜 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연장을 통한 개도국 성장 지원 -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 재연장 및 개선을 통한 아프리카 - 최저 개발국가들의 경제 성장 지원

나. 미국의 FTA 정책 및 체결현황

□ FTA 체결 현황

- 미국은 기존의 다자간 협상의 큰 틀 안에서 지역 간, 또는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해 통상 이익의 극대화 및 전략적·외교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을 2배 이상 늘리는 오바마대통령의 수출진흥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 목표달성과 경기회복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외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15년 4월말 기준, 미국은 20개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

기발호	체결(의회비준대기)	협상중
한국,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과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 콜롬비아, 파나마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미-EU FTA (Transatlantic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

* 주1: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관련 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주2: 2015년 4월 기준

□ 최근동향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태평양 지역의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Pacific 4)이 2005년 체결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SEP)으로 부터 시작됨. 이후 2008년 1월에 조지W. 부시(George W. Bush) 전 미국 대통령이 해당 4개국과 투자 협정을 목적으로 TPSEP에 가입을 원하면서 주변국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해 2008년말 호주, 페루, 베트남이 추가로 참여함. 2009년부터 오바마 행정부 아래 미국이 본격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현재 TPP의 형태로 발전했으며 이후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북아메리카의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여하면서 한층 불어난 몸집은 2013년 일본의 가입으로 전세계 GDP의 37%에 달하는 경제 규모와 세계 교역량의 26%를 차지하는 메가-FTA로 성장함.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 협상은 상품의 관세 철폐를 비롯해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기준, 공기업규제, 디지털교역질서 등 광범위한 합의를 목표로 하는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자유 무역 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은 TPP를 통해 역동적인 아시아 지역 시장을 공략하는 경제적 가치와 중국보다 앞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안보동맹도 강화하는 전략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음
 - 일본 아베 총리는 2013년3월15일 TPP 참여를 선언하였는데, 일본의 TPP 협상 참가에 따라 TPP 협정 체결시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초대형 경제 블록이 탄생할 전망. TPP 협상 참가국 중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90% 이상으로 사실상 미-일 FTA로 평가됨. 협정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TPP 협상에 참가함으로써 일본은 한번에 거대 자유무역 블록에 편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한편, 일본이 TPP협상에 참가함에 따라 미-일간 무역 장벽 철폐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약화가 우려됨.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TPP가 발효되기 전에 최대한 한미 FTA기회를 활용하여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으로 보임. TPP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Re-balance to Asia)의 핵심 전략인 만큼,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TPP의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현지 전문가들은 2015년 중반에는 TPP 협상이 타결되어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 시즌 전에 비준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TPP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이슈는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 촉진 권한(Trade 미국과 일본의 양자협상도 TPP 최종 타결에 중요한 열쇠임. 미국과 일본은 TPP의 아태지역경제 통합 및 높은 수준의 규범설정 등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양자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음. 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일본의 민감 품목에 대한 미국의 시장 개방요구와 자동차 관련 협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음)
- TPP 협상 주요 내용 및 쟁점 사항
 - 관세 분야에서 TPP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또는 10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상 주도국인 미국은 95% 이상의 관세 철폐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하지만, 12개 협상 참가국의 평균 관세율 격차가 큰 편이어서 협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각국의 민감 품목을 인정하는 문제가 협상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음. 비관세분야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과 베트남, 칠레 등 개도국과의 경제수준 차이로 다양한 분야에서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 지적재산권분야에서는 WTO의 지적재산권 규정(TRIPS)보다 강화된 규정 적용여부, 차별요건,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등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 대립이 있음
 - 투자에서는 국내외 투자자 차별금지, 해외송금, 국가투자자 간 소송제도(ISD) 포함 여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음. 노동에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원칙(Core ILO Principle) 준수 및 아동 노동력 사용 또는 노동 착취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거래 제한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상함. 환경에서 불법 벌목, 야생 동식물 밀수 금지, 다자간 환경 협약 준수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신흥국들이 반발하고 있음. 경쟁에서 국영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민간기업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에 대해 국영기업 비중이 높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

다. 한-미FTA 주요 협정

□ 주요 내용

◦ 상품 분야

- 우리나라의 '쌀'을 제외한 양국 간 모든 교역 상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 되는데, 한미FTA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전체 품목의 94%에 대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됨. 우리 측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쌀), 계절 관세 도입(포도, 칩 용 감자 등), 농산물세이프가드(돼지고기, 고추마늘 등 30개 품목), 15년 이상의 관세 존속 기간(사과, 배, 소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감귤 등) 등 예외를 확보해 국내 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와 전기자동차는 2010년 12월 추가 협상을 통해 아래와 같이 관세 인하 일정을 조정함
- 승용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2.5%를 FTA발효 4년에 일괄 철폐하며 우리는 발효 즉시 현행 관세 8%를 4%로인 하하고 4년 후에는 일괄 철폐
- 전기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2.5%)를 4년간 균등 철폐하고 우리는 발효 즉시 8%의 관세를 4%로 인하한 후 4년간 균등 철폐
- 화물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25%)를 한미FTA 발효 후 7년간 유지한 후 2년간 균등철폐하며 우리는 관세(10%)를 즉시 철폐
- 섬유 제품의 경우, 미국측은 수입액 기준61%의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하고 우리 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 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함. 이와 함께 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해서는 의류 및 직물 당1억㎡씩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기준(Yarn-forward)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간은 연장 가능)

◦ 농산물 분야

- 우리측의 주요 민감 품목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개방을 최소화함
 -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 식용 대두, 감자 등에 대한 현행 관세 유지, 쇠고기/돼지고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

· 쇠고기, 설탕, 사과, 배, 고추, 마늘 등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

◦ 정부 조달

- 미국 연방 정부 상품 및 서비스 양허 하한선을 기존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하하였는데, 이로 인해 약 6조원 이상의 시장 개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와 함께, 과거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과거 미국 내 조달 실적을 제출 할 필요가 없게 되어 미국 연방 정부 조달 시장 진출 경험에 없는 국내 업체들의 미국 조달 시장 진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됨

◦ 개성 공단

- 개성 공단 제품은 현재로서는 한미 FTA 특혜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 기준하에 개성 공단 등을 역외가공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향후 개성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미 FTA 특혜 관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음

◦ 서비스/투자

- 우리측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 하되, 사업서비스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하기로 함
 - 사업 서비스 : 법률 서비스는 3단계, 회계 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 추진 합의
 - 방송 서비스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O)의 인허가제도,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 방송 쿼터 등에 대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방송채널용사업자(PP)를 중심으로 일부 자유화 약속

◦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 양국간 교역 원활화를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함. 도착 후 최대 48시간 내 화물 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 전 화물 반출 승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급택송화물의 통관 서류를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 서류 제출 후 4시간 내에 국내 반출을 허용하고 신고 서류의 전자 제출 등을 규정함

- 한미 FTA 특혜 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 분류, 원산지, 쿼터 세율 등 문의 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 판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세관 당국이 사전 판정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판정 결과 통보하도록 규정함.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서는 자율 증명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업체, 생산 업체 또는 수입 업체가 원산지 증명 서류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함.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하여, 국내 업체의 편의를 위해 우리 관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 서식을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한결 용이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미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 서식은 아래 관세청 웹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음
- 원산지 증명서는 4년간 유효하며 대규모 분할선적에 제품에 대해서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1건으로 갈음할 수 있음. 양국은 원산지 현장 검증제도도 마련하였는데,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의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하여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원산지 증빙 서류와 관련해서는 수입 업체, 수출 업체 및 생산 업체로 하여금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역 구제
 - 무역 구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 관련 기관 간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키로 하였고,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합의함.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가드적용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외하기로 합의함

□ 한미 FTA 이행 관련 주요 이슈

-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
 -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ISD 민관전문가T/F'를 구성하여 한미 FTA의 ISD 조항에 대해 제기된 주장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임. 2012년 6월에는 한미 FTA 서비스 투자 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어 우리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미국과 ISD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우리 정부는 T/F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우리 입장을 정리한 후 미국과 서비스 투자 위원

회에서 ISD 이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2015년 1분기 내 후속 논의가 예정되어 있음

◦ 개성 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 한미 FTA 부속서 22-나(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에는 협정 발효 후 1년 후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회의 주기는 추후 최소 매년 1회 또는 상호 협의하는 때에 개최하도록 규정함. 한미 양국은 2015년 1분기 내 개성 공단 원산지 논의를 위해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

- 한미 양국은 2013년 11월 27일 서한 교환을 통해 “HS(Harmonized System) 2002” 기준으로 작성된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규정을 최근 품목 분류 체계인 “HS 2012” 기준으로 개정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함
- 동개정은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최근 품목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변경인데, 한미 양국은 2013년 6월에 협상을 완료하고 그동안 국내 절차를 진행해옴.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품목번호연계표(HS 2002 - HS 2007-HS 2012)를 활용하여 HS 2002에 해당 하는 품목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는데, 원산지 결정 기준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덜게 됨
- 위협요인
 - 지난 4년 간 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상계 관세 심의 및 판정의 급증과 미국내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한국산에 대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2012년 9월 중순부터 시행 중인 연준(FRB)의 3차 양적 완화로 인해 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으로 한국의 대미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됨

IV

관세 및 검역제도

1. 관세제도

□ 수입상품 분류제도

◦ 통합 관세율표 (HTSUS)

- 통합 관세율표는 통합 상품 명세와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세번 분류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이고 세계 관세기구(WCO)가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도 통합 관세율표를 도입하여 개정한 관세법을 집행하고 있음(종합 무역 및 경쟁법인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하여 1989년 1월 1일 시행)
- 도입/집행하는 통합 관세율표의 상품분류규정(HTSUS)은 GATT 산하의 관세협력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통일 상품분류제도를 기초로 하여 이를 미국실정에 맞게 보다 세분화한 것임. HTSUS는 모든 수입상품을 10,000여개로 세목분류하고 각 세목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물론 각 세목은 그곳에 속하는 상품들을 묘사 규정하고 있고 이들 규정은 모두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정들임
- HTSUS에 표기된 관세율이 상품군규정과 직접 연계되어 있고, 상품군 규정마다 독자적인 관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입하는 물품이 어느 상품군 규정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수입자의 이해에 직결되는 문제임. 많은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과는 달리 이는 답이 쉽지 않은 문제임. 수입하는 물품이 어느 상품군 규정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일반적인 차원의 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들 상품군 규정을 해석하고 세목분류를 결정함에 있어 법해석의 일반 판례법원칙이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구함

□ 수입상품의 과세가격 평가제도

◦ 개요

- 대부분의 경우, 수입상품의 관세액은 그 상품의 관세부과 기준액(과세가격)에 적용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됨. 따라서 과세가격의 다과에 따라 관세액의

규모도 달라짐은 당연함. 한편 개개 수입품의 과세가액은 미 정부의 국별 수입액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미국의 통상정책 수립 상 중요한 자료를 구성함

- 이러한 이유로 미 수입통관 시 신고되는 수입품의 과세가격의 내용은 미세관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항목 중의 하나이고 내용의 허위 또는 일부누락은 수입자 또는 그 수입품의 수출자에게 여러 가지 법적 그리고 무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과세가액의 내용에 근거한 세관신고가 정확하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관세액을 법정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과오를 피하는데 있음
- 과세가격 산정원칙
 - 1) 수입상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일반 원칙
 - 수출자/수출판매자와 수입자/수입구매자 간의 수출입거래에서 수출자/수출판매자는 수출 상품을 인도하고 수입자/수입구매자는 그 수입품의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거나 혹은 지불하기로 합의한 금액, 즉 거래가격을 기초로 평가조정을 한 후, 과세가격을 산정함. 어떤 경우에는 수출판매자와 수입구매자간에 형성하는 거래가격과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형성하는 거래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First Sale) 에 어느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 수입품의 거래가격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
 - 수출판매자와 수입구매자 사이가 특수한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가 수입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발견되고 그 수입품의 가격이 동일 또는 유사상품의 가격에 근접하지 않는 경우이며, 미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함. 예를 들어 전체 투표권주식의 5%만 소유하여도 그 소유자는 그 주식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

□ 준법 심사제도(Audits)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수입자의 합리적 주의의무에 기초한 내부통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심사하여 법령준수수준을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 법령준수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령위반에 대한 교정조치는 수입자가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에 따라 자율적 조치 또는 벌칙의 적용 등 강제적 조치로 달라짐

- 합리적 주의의무는 이와 같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일률적인 기준의 설정은 경제 환경이나 수입자, 수입 물품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없을뿐더러 경직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청은 수차례의 내부토론과 외부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입자가 합리적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표(checklist)를 작성하여 1997.12.1 General Notice로 공표하였음

1) 모든 수입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질문

- 첫째, 수입자가세관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도와줄 전문가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관련 규정이나 관세율표, 정부간행물 센터의 “Customs Bulletin and Decisions” 등 간행물을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령이나 규정 등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뢰할만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미 관세청의 Internet website나 전자게시판, 기타 등에 접속할 수 있는지 여부
- 둘째, 수입자가 작성한 통관관련서류의 완전과 정확성을 수입자가 책임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검토했는지 여부, 그리고 동 서류들이 외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되는 것이라면 세관당국에 제출된 그대로 사본을 받은 것인지와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당국이 필요한 수정내용을 적정한 시기에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뢰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 셋째, 세관당국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수입자를 도와줄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수입 시 사전에 그 전문가와 협의했는지, 전문가에게 수입거래와 관련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 넷째, 동일한 거래나 물품이 상이한 세관 간 또는 동일 세관 내 상이한 부서 간에 서로 다르게 취급되었는지 여부와 이 경우 관련 세관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여부

2) 분야별 점검사항

- 첫째, 상품명세와 세번분류 (수입자가 주문한 물품이 어디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아는지 또는 알 수 있는 신뢰가능한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 과세가격평가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가격을 알거나 알 수 있도록 하는 신뢰 가능한 방법을 갖고 있는지 여부, 리베이트나 간접비용, 추가지급이 있는지와 지원의 제공, 로얄티 등의 지급 등 판매조건을 알고 있는지 여부)
 - 원산지 표시(수입자 가 수입상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지적재산권(수입자가 상품이나 그 포장에 상표권, 저작권 또는 특허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사용할 법적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거나 확인할만한 신뢰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 기타 점검사항(통관 전 또는 통관 시 필요한 면허나 허가의 취득 등 귀사의 상품이 타기관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였거나, 이를 확인할 신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귀사의 상품이 반덤핑, 상계관세의 조사 또는 결정대상인지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하였거나 이를 확인할 신뢰가능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지 여부, 대상이 될 경우 통관 시 세관당국에 대한 보고요건에 맞도록 하였거나 맞도록 하는 신뢰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귀사의 상품이 쿼타/비자 대상인 경우 통관 시 정확한 비자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 위한 신뢰가능한 절차가 개발되어 있는지 여부, 귀사가 정확한 통관방식에 따라 통관하였으며 또한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을 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신뢰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 수입자 자율심사(Importer Self Assessment)
- 법규준수도가 매우 높은 업체와 세관이 MOU를 체결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업체는 내부통제 체제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법규 준수도를 높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세관은 감시를 관할하는 대신 업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임
 - 자격요건으로는 법규준수도가 높고 C-TPAT 인증 참가업체이며, 2년 이상 수입실적이 있어야 함. 관세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착, 확립된 경영관행과 우수한 내부통제체제를 확보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함
 - 적용절차는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내부통제를 마련하여 MOU 체결을 요청하며 그 후, 사전검토회의실시 및 세관심사를 거쳐 MOU가 체결되면 우대조치가 제공됨

- 우대조치는 종합심사가 면제되고 수입자 자율심사 컨설팅이 제공되며 사전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세관과 핫라인이 연결되어 세관의 간섭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음. 수입자 자율심사 자격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으나 매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세관당국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오류가 발견되면 자진 신고하여야 함
- 집중심사(Focused Assessment)
 - 기본적으로 합리적 주의 및 더욱 발달된 위험관리 기법을 바탕으로 위험분야만 중점 심사하며, 업체 기록에의 접근개선, 내부통제 평가에 기초함으로써 적은 시간이 소요되고 문서작성도 감소함. 평가절차로는, 첫째 단계인 평가 전 조사 (Pre-Assessment Survey) 절차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수입수량, 반덤핑 등 8개 분야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인하여, 위험이 없으면 심사를 종료하고, 위험이 있으면 둘째 단계인 확인된 위험분야의 건별 확인 (Transaction Testing & Assessment compliance Testing) 절차로 표본추출로 관세탈루 및 법규위반율 산출과 법규준수도 개선계획 권고 및 관세탈루액 추징을 집행함
- 긴급대응심사(Quick Response Audit)
 - 특정 이슈에 대한 단기간 심사를 말하며, 총체적인 집중심사의 반대개념으로 예를 들면 분류규정 위반심사, 지적재산권 위반 심사의 사례를 들 수 있음
- 한미자유무역 협정 특혜 청구의 회사별 종합심사 검증 (Verification/Audit)
 - 세관은 수입회사가 준법기록에 근거하여 중위험이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나, 긴급대응심사 방법을 사용하여, 한미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2. 검역제도

□ 검역절차

- ① 수입허가증신청(수입상 → 농무부 동식물 검역국)
- ② 수입허가(동식물 검역국 → 수입상)
- ③ 도착통지서(수입상 → 부두/공항검역소[CBP])
- ④ 도착통지서 전달/유통경로 통보(부두/공항검역소[CBP] → 동식물 검역국)

- ⑤ 검역절차사항통보(부두/공항검역소[CBP] → 수입상)
- ⑥ 검역(CBP농산물 서비스)
- ⑦ 통관(CBP)

□ 검역기관

- 미국에서 동식물의 검역 및 식품위생에 대한 업무는 농무성 산하의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요임무
 - 항만이나 국경선을 통한 외국 농산물의 해충과 질병 유입방지
 - 유해 외국 농산물의 국내 반입에 따른 긴급조치 및 해소
 - 국내의 동식물 질병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결함 해결
 - 국내의 가축질병과 식물 해충의 퇴치
 - 과학적인 식물위생 규격 설정에 의한 농산물 수출 촉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천연자원, 국민보건 및 안전에 대한 피해 예방
 - 생명공학 및 유전자 조작기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

□ 규제 목적

- 수입 식품 또는 식물이 검역 법규의 식물건강

가. 식물검역

□ 관련법 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이며 구체적인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은 해외검역공고, 법령 등을 통하여 규정됨

□ 식물검역법

- 묘목(Nursery stock)의 경우 농무성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이 미첨부된 경우에는 수입불가(제1조)
- 묘목 : 야외에서 재배된 화훼묘목(Florist's stock), 교목(Tree), 관목(Shrub), 덩굴(Vine), 삽수(Cutting), 대목(Graft), 접수(Scion), 접아(Bud), 과수 및 관상수목의 핵자 및 종자 기타 번식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제6조)

- 다음의 것은 묘목에서 제외됨 : 목초종자, 채소종자, 화훼종자, 화단용식물, 기타 초본식물, 구근(Bulb), 뿌리(제6조)
- 상기 묘목이외의 식물류가 수입됨으로써 유해식물 병충해의 유입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포함(제5조)
 - 이때는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및 해당 국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에 공고 및 입법예고(public hearing)과정을 거쳐야 함
- 미국에 분포하지 않거나 널리 분포하고 있지 않은 나무, 식물, 과실의 병이나 또는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묘목이나 기타 식물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국가로부터의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공포함(제7조)
 - 공고과정은 제5조의 내용과 동일
- 본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Rule), 규정(Regulation)을 제정 공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농무성 장관에게 위임(제9조)

나. 동물검역

□ 위생검사제도(육류검사법)

- 육류 및 가금육의 위생과 안전검사를 위해서 미국 식품안전국(FSIS)의 검사요원이 미국 전역의 6,200개에 달하는 도살장 및 육류가공공장에 상주하면서 현행 법률에 의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검사시 중점을 두고 있는 규칙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도축장과 육류 가공공장은 자체 생산제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HACCP로 불리는 Process Control 시스템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함
 - 모든 도축장은 유해 미생물의 1차적 오염원인인 배설물로 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신들의 공정관리 시스템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E. Coli균속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해야 함
 - 모든 육류 처리공장은 최종제품이 유해 미생물로 부터 오염이 감소된 위생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문서화된 표준작업공정(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을 개발 하고 이행해야 함

다. 유제품검역

□ 검역제도 일반

- 검역조건 : 함유량의 관계없이 미농무성 산하의 동물검역소의 허가를 받아야 됨
- 밀크라 함은 전유 혹은 탈지유(일부 혹은 완전탈지한 것)를 말함. 밀크제품은 밀크에서 얻어지는 제품으로 농축유(Evaporated milk, condensed milk, dry milk), 당분이 들어있는 밀크, 버터, 치즈, 숙성밀크 등임
- 낙농품류 : 미국 수출입 종합편람 제4류(낙농품)의 소호주(additional US notes)와 밀크를 원료로 만들어진 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 2202. 90. 10 ~ 2202. 90. 28로 표현되는 밀크가 일부 포함된 제품을 의미함. 여기에는 밀크류 혹은 크림으로 (흰초콜릿과 비식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유지방 중량이 제품의 5.5% 이상이 되는 제품 즉, 상업용으로 생산되는 제품(제 18류 소호주 2와 소호주 3에 나온 수입쿼터제외)임 ; 건조밀크, 유장, 혹은 버터밀크로(0402.10, 0402.21, 0403.90, 0404.10) 단일재료와 혼합한 재료의 유지방중량이 5.5% 이하인 제품으로 보통 다른 재료들과 혼합되는 제품이나 설탕첨가 여부를 불문; 유지방을 첨가한 제품으로 전체중량의 응고유가 16% 이상 들어있어 차후 가공을 위하거나 직접소비제품이 아닐 경우임
- 제외 : 식료품가운데 밀크 혹은 밀크제품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소량포함(예를 들어 건조밀크-밀크지방건조 그리고 밀크비유지방건조물이 평균5% 미만) 혹은 지금까지 직접소비제품으로 밀크식품산업역사에서 낙농품으로 여겨지지 않을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예: Sugar confectionary, non-sugar confectionary로 빵, 비스킷, 스낵, 전병, 와플과 같은 제품으로 한국 수의과학검역원에서 Health Certificate이나 미국내 동식물검역소산하의 동물검역소(V/S)에서 수입허가(Import Permit)을 받을 필요는 없음
- CBP(국토안보부) 통과요건 : 요구르트는 종류에 따라 쿼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음

□ VS/APHIS 검역요건

- 관련규정

- Animal health protection act(7USC Ch.109)
- VS/APHIS regulations(9CFR Part-94)
- Animal Product Manual
- Import Permit VS 16-3 필요
 - 밀크가 조금이라도 함유된 모든 제품은 즉 낙농품 혹은 비낙농품이라고 해도(설탕이 들어간 제과나 비캔디제과 제외) Veterinary Service(VS)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함

□ FAS 검역요건

- 일부 요구르트, 요구르트류, 요구르트드링크는 수입쿼터에 제한이 있음
- 수입라이선스 불필요

□ FDA 검역요건

- 관련규정
 - Federal Import Milk Act(FIMA:21 USC Ch.4, Subchapter IV)
 - FDA REgulations(21 CFR Part131-Milk and cream and part 1210-FIMA regulations)
 - Food, Drug, and Cosmetic Act(21 USC Ch.9)
 - Compliance Policy GuideCompliance Policy Guide
- FIMA Import Permit은 불필요

프랑스 <<<

2015 주재국 농업전망

- I. 국가개황
- II. 경제동향
- III.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 IV. 관세 및 검역제도



I

국가개황

1. 일반사항

- 국가명 : 프랑스 공화국
- 위치 : 서유럽
- 총면적 : 549,000km²(대한민국의 2.4배)
- 기후 : 대체로 온화하며 대서양쪽은 서안해양성기후, 남부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를 보임
- 수도 : 파리
- 인구 : 66백만
- 주요도시 : Paris(2백24만), Lyon(171만), Marseille(198만)
- 종족 : Gaul족(켈트족의 일파), 로마족, 노르만족, 프랑크족의 혼합
- 공식언어 : 프랑스어
- 종교 : 가톨릭(83~88%), 이슬람교(5~10%), 개신교(2%), 유대교(1%), 기타 (4%)
- 건국일 : 1789년 7월 14일(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 이념으로 한 프랑스 혁명 발발일)
- 정부 형태 : 대통령 중심제(의원 내각제 가미)
- 현 통치자 : 대통령 - François Hollande
총리 - Manuel Valls

2. 한국과 프랑스 관계현황

04/06/1886	우호통상조약 체결로 최초의 외교관계 수립
1906	을사조약으로 인한 외교권 강제 박탈로 외교관계 일시 중단
15/02/1949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재 수교
12/04/1967	사증 면제 협정
22/01/1975	한 불 투자 보장 협정

09/04/1991	한-프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06/12/2004	한-프 사회보장 협정 체결
01/06/2007	한-프 사회보장 협정 발효
01/01/2009	한-프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
03/11/2011	한-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추진 협력 및 창조문화산업 협력 협정
재불 한국 교민	약 2만 명 (파리 거주 교민 약 1만 8000명, 2015년 1분기 말 기준)

3. 주요 경제지표

□ 프랑스 GDP와 GRDP 현황

구분	수치	년도
GRDP	2580.75 십억 USD	2014
GDP/인당	40,445USD	2014
GDP 세계순위	전체 : 10위, 인당: 39위	2014
GDP 성장률	+ 0.9%	2014
분야별 :		
농업분야	1.9%	2014
산업분야	18.7%	2014
서비스분야	79.4%	2014

□ 프랑스 경제활동인구 현황

구분	수치	년도
경제활동인구	약 30 백만 명	2015
분야별 구성비 :		
농업	2.8%	2014
산업	20.6%	2014
서비스	76.9%	2014
평균 급여	26.51€	2014
대도시 실업률	10%	2014
전체실업률(해외 자치령DOM TOM 포함)	10.4%	2014

□ 프랑스 대외교역 현황

구분	수치	년도
대외교역		
수출	436.3 십억 유로	2014
주요 거래국가 : 독일(16.7 %), 벨기에(7.5 %), 이태리(7.5 %), 스페인(6.9 %), 영국(6.9 %), 미국(5.6 %), 화란(4.3 %)		
수입	494.4 십억 유로	2014
주요 거래국가 : 독일(19.5 %), 벨기에(11.3 %), 이태리(7.6 %), 화란(7.4 %), 스페인(6.6 %), 영국(5.1 %), 중국(4.9 %)		

□ 공공재정 현황

구 분	수치	년도
공공재정 현황		
공공예산	1 411 십억 유로	2013
공공지출	1 226 십억 유로	2013
공공적자	4.1% (GDP 대비)	2013
공공부채	95.1% (GDP 대비)	2014

□ 주요 산업구조

산업구조 (2013 년 기준)	농업 2.3%, 광-공업 24.2%[광업-에너지 4.2%, 식료품 4.2%, 공산품15.8% (전기-전자-정보-기계 2.2%, 운송장비 2.9%, 석탄-정유 1.4%, 기타 공산품9.2)], 건설 7.4%, 서비스 66.1%(상품 51.1%, 행정 15.0%) (생산액 기준)
---------------------	--

□ 주요 교역품

교역품 (2015년 1~4 월)	[15 대 수입품목] ① 항공-우주장비, ② 자동차, ③ 원유, ④ 석유제품 ⑤ 의약품 ⑥ 천연, 액화 가스, ⑦ 컴퓨터 및 주변기기, ⑧ 자동차 부품, ⑨ 통신장비, ⑩ 기타 기초 유기 화학제품, ⑪ 철강제품-철 합금 제품, ⑫ 플라스틱 원자재, ⑬ 기타 외의류, ⑭ 의료 및 치과 장비와 그 소모품, ⑮ 기초의약품 [15 대 수출품목] ① 항공-우주장비, ② 의약품, ③ 자동차, ④ 자동차부품, ⑤ 향수·화장품, ⑥ 석유제품, ⑦ 기타유기화학제품, ⑧ 기초 철강제품-철 합금제품, ⑨ 플라스틱 원자재, ⑩ 곡물, ⑪ 포도주, ⑫ 기타 화학제품, ⑬ 측정. 시험. 항해장비, ⑭ 전자부품, ⑮ 낙농제품 및 치즈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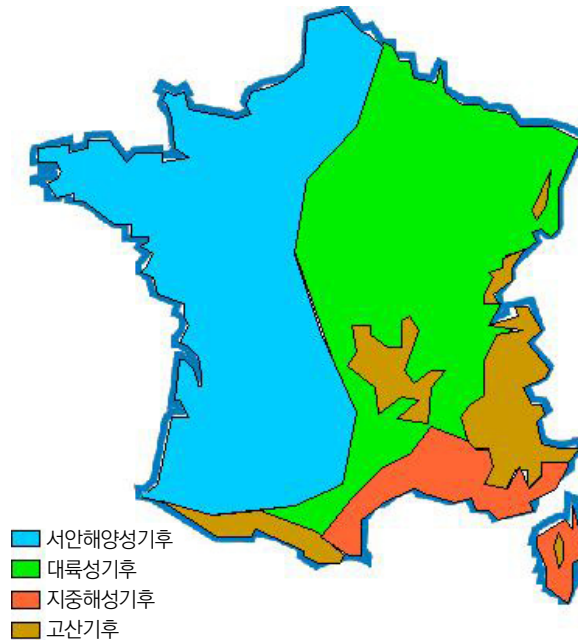
4. 기타 농업관련 요소

프랑스의 농업은 다음의 요소들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음

- 기후
- 구조와 관개
- 토지의 비옥도
- 인구

□ 프랑스의 기후

[그림 1] 프랑스 기후도



- 프랑스의 전체 국토는 농업과 목축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사막지역이 없고 만년설로 덮힌 높은 산악지대가 매우 적음
- 노르망디, 낭트, 보르도 등과 같은 서부지역은 해양성 기후, 알자스, 령스, 뮈루즈 등 동부지역은 대륙성 기후, 니스, 마르세이유, 칸느 등 남부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알프스, 피레네 및 일부 중부지역(갈색)은 산악성 기후를 보이고 있음

□ 구조와 관계

[그림 2] 프랑스 지역별 해발수준 (<200m, 200~500m, 500~1000m, 1000~2000m, >20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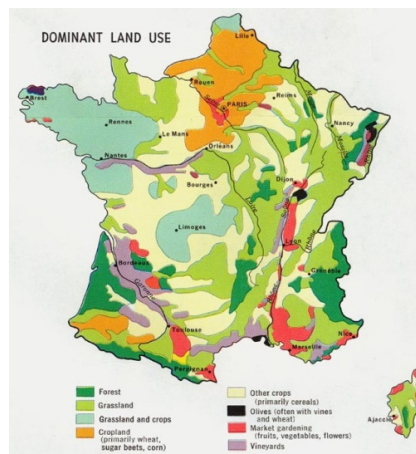


- 서부와 북부의 평편한 지역은 곡류재배와 소목축에 유리한 특성 보유. 나지막한 산악지역들은 포도밭과 과수 그리고 채소 재배에 유리. 해발 2000미터이하의 높은 산악지역은 염소와 양을 목축하는데 적합한 목초지로 되어 있음

□ 토지의 비육도

삼림, 초지, 초지와 작물, 농경지(밀, 사탕무, 옥수수 위주), 기타 작물(곡류 위주), 올리브(와인, 밀 공동 재배 다수), 시판용 원예(과일, 채소, 화훼), 포도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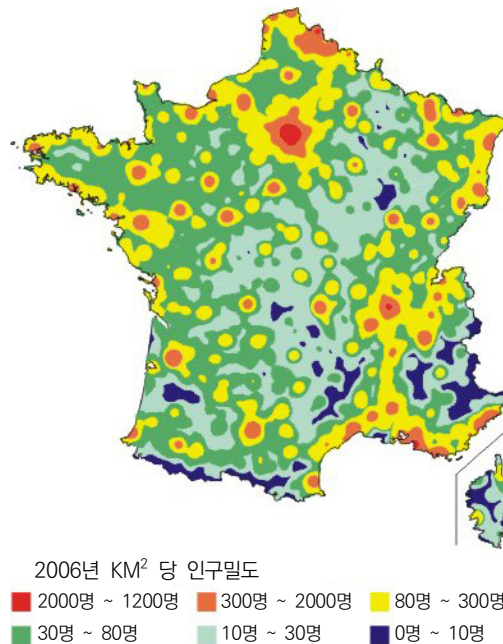
[그림 3] 프랑스의 지역별 토지사용 현황



-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4000년을 거슬러 매우 많은 인구가 군집해 살았던 국가임
- 전 국토는 완만한 평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배수와 개간이 이루어져 왔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농부들이 이 땅을 경작해 옴

□ 인 구

[그림 4] 프랑스 인구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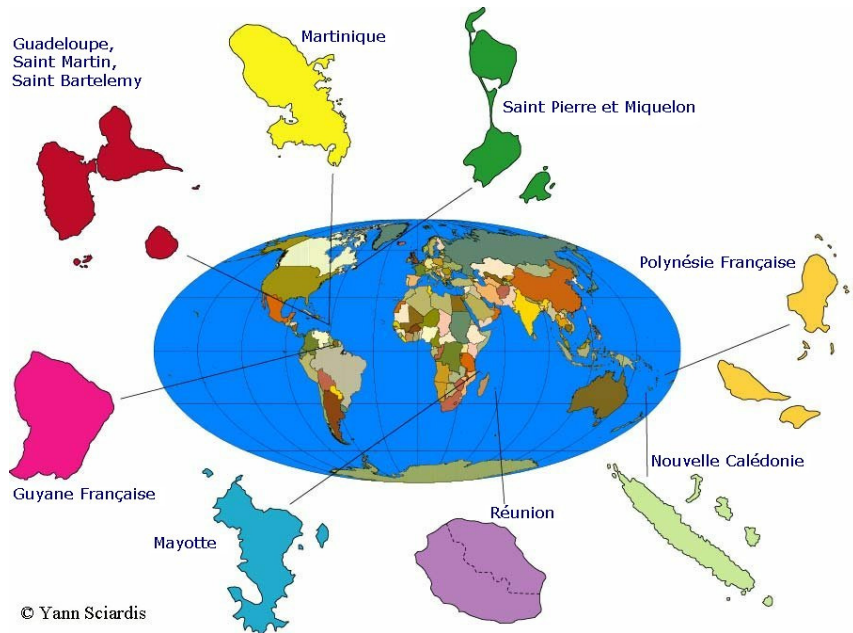
- 파리, 리옹, 마르세이유와 같이 지도상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대 도시를 제외하고 알프스와 피레네지역과 같은 고산지대를 제외한다면, 프랑스의 농촌 인구는 전 국토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즉, m²당 80~300명이 평균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도시(붉은색)는 m²당 2000~12,0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DOM-TOM (프랑스 해외 자치령)

- 프랑스는 전 세계 여러 곳에 과거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음. 이런 지역들은 작거나 적은 인구 분포수준이지만 원자재 생산과 원자재 생산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물생산에서 중요한 지역임

- 예를 들어, 프랑스의 바나나, 사탕수수, 니켈, 열대나무 생산은 프랑스 본토생산은 전무하지만 이들 해외 자치령을 포함한다면 매우 중요한 양을 생산하고 있음

[그림 5]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 현황



II

경제동향

1. 경제현황

가. 환율동향

- 프랑스 정부는 유로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유로 창설시점부터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관리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그리고 동 ECB는 각 회원국에 대해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ECB 관리자와 책임자를 선임하며 동 선임은 각국의 내부정책을 반영하지만 한번 관리자로 임명이 되면 ECB는 개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이것을 통해 각국의 정책적인 움직임에 맞서 유로화의 힘을 보장하게 되는 것임. 반면 이것은 유로화에 안전한 피난처의 힘을 실어주었음. 현 Mr. Mario Draghi ECB 총재에게 중요한 힘을 부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리스, 포르투갈과 같은 한 나라에서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정책은 신속하게 반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조절수단과 같은 통화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ECB는 다수의 이해관계에 주의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됨
- ECB는 현재 주요 3가지 목표를 따르고 있음
 - 남유럽과 프랑스를 포함한 국가에서 특히 심각한 상황인 실업율을 향상
 - 국가의 공공부채를 줄임
 - 시장에 유럽 설립의 안정성, 단합성, 연속성을 시장에 보여 주는 것임
- 이런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투자진작을 위한 낮은 이자율 그리고 시장을 향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하여 ECB는 USD에 대항하여 약한 유로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출처: 재정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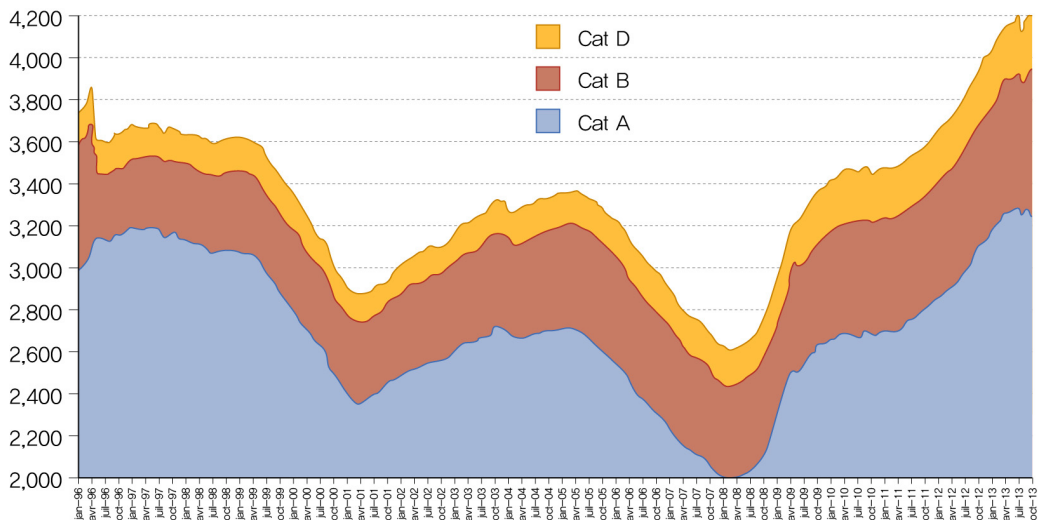
- 2014년 초 1유로에 1.4 USD로 정점을 찍은 이후, 유로화는 현재 1 유로에 1.1 USD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음

나. 경제분석

프랑스 경제의 주요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강점
 - 활력 넘치는 산업분야. 프랑스는 연간 외국인 방문자 수가 75백만이 넘는 전세계 제 1의 관광국임. 항공분야, 방위산업분야, 럭셔리분야, 제약, 전기 및 전자 부품 그리고 크루즈 항해와 유람선, 철도, 자동차와 같은 운송분야에서 프랑스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한 수출 분야이기도 함. 아울러 토지에 기초한 포도주와 치즈와 같은 전통제품도 당연 활력있는 분야임
 - 동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 프랑스 기업 현황.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들은 톱 10에 들어가는 기업이 많은데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특별히 한 분야의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음. 공공 건설분야(BTP), 대형유통, 석유/전기/원자력과 같은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종이와 환경분야에서 두각이 두드러짐
 - 다이내믹한 인구. 프랑스 인구는 규칙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 피라미드상 노령인구를 위해 납부하는 활동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양호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줌

-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전통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음. 만약 인구를 생각하면 프랑스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국가 20위 국가에 자리함. 하지만 역사상 프랑스의 역할은 특별히 UN 창설과 EU 창설에 참여하여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고 지금도 간과할 수 없는 경제적 유익을 누리고 있음
- 약점
 - 프랑스인은 물론 정책과 정부가 겪는 가장 우선순위 과제는 고용파괴와 실업문제임. 경제활동 인구의 11.5%가 실업상태로 약 3.5백만 명이 실업자수로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여기에 선택받지 못한 일하고 싶어하는 시간제 노동인력을 포함하면 실업율은 더욱 늘어나고 있음



* 출처: 노동고용부

- 2006~2008년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실업은 2000년에서 20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 표에서 볼 수 있음. 상기표는 월 78시간 이하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노동청 산하 기관에서 조사된 실업 현황임

- 재정적자 문제

프랑스 재정은 1974년 이래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년 공공 적자는 경제학자들이 정한 GDP대비 3%의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이는 정부가 긴축을 해야 하고 각종 조치나 대책을 실시할 여지를 약화시키는 한계를 가져오게 됨

- 기업투자 문제

일반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런데 프랑스 기업투자가 늘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음

- EU 측에 권한위임 문제

경제관련 조치들, 특히 유로화 기축문제는 더 이상 프랑스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님.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 및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 경험한 심각한 문제들과 독일과 같은 북유럽 위치 국가의 성공 사례 간에는 프랑스 경제의 특정문제들은 우선순위가 아님

다. 국제교역 진흥

- 2012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무역수지의 재 균형이란 중요한 목표를 설정함. 사실 이같은 무역수지 균형은 수년간 적자상태에 있었음
- WTO는 2013년에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하는 나라 중 6위에 자리한 것으로 발표함. 만약 2014년도 무역수지 적자액 53.8십억 유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3년 연속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2014년에 전년대비 11.5% 이상 감소한 수치임
- 특별히 프랑스 기업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동반한다는 부분에서 정부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음
 - Business France 창립과 해외 존재하는 공공기관들(Business, 상공회의소, 무역 자문가들의 네트워크)의 역할분담과 함께 해외 진출 서비스의 최대 효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출관련 6가지 전략 품목군에서 확인된 타겟 국가를 위해 수출기업 협회가 구성되었음
 - 이런 차원에서 대외교역을 담당하는 국가수석은 외무부와 국제개발부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동 조치 중 가장 중요한 점은 Business France를 창립하여 기업의 국제 개발, 수출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과 같은 모든 공공 서비스분야를 통합한 것임
- 동 Business France의 주요 수단과 도구는 COFACE, VIE 그리고 내부 자원들임
- Coface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수출업체는 COFACE에 수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분담금을 지불
 - 손실 또는 미수금사태 발생시 보험은 손실부분을 환급해줌. 이런 보장들은 시장 조사 보험, 수출위험보험, 중장기 수출신용 보험, 환 및 투자보장 보험 등과 같이 일반 민간시장에서는 부보가 안되는 위험들이 포함됨.
- VIE는 수출 기업과 Business France 사이에 18~28세 해당 청년 고용 계약에 대한 것임
 - 청년 피고용자는 기업을 위해 6~24개월 외국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파견됨. 이때 급여와 사회보장 부분은 Business France 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임. 기업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해외에 보낼 자원을 얻는 것이고 젊은 인력은 국제경험을 쌓게 되고 돌아 왔을 때 고용이 거의 보장되는 장점이 있는 것임
- Business France 기본현황 및 실적
 - Business France 기본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총 1500명 인력, 전 세계 85개 국 지사 설치
 - 년 1,500회 방문 및 해외 사절단 접수
 - 15,000 건의 VIE 계약 (18세 이하 청년층 고용계약)
 - 50,000개의 수출기업 지원
 - Business France 조직 및 주요 지표
 - 참고로 대외무역 진흥은 기본적으로 수출에 대한 것임. 하지만 CCIP와 같은 파리 상공회의소 등은 프랑스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를 역시 제공하고 있음. 이는 한국의 KOTRA와 유사기관으로 보면 됨

라. 프랑스 경제정책 기본방향

□ 성장전략과 새로운 경제조치

- 미디어와 오피니언 리더들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인 방향이 부재하다고 특징짓고 있음
-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프랑스에서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음
 - 정치적 변화 : 20년 이래 매번 대선에서 집권당은 거부되고 이전 야당은 이후 다수당이 됨. 매 정부는 이전 정부의 결정에 대해 되돌리기를 시도함. 그리고 이후 정부에 의해 파기되기 전 결과를 보여 줄 시간도 없이 자신들의 개혁정책을 시행함. 즉 어떤 정책이 시간을 갖고 추진되는데 정치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임
 - 노조와의 대화 부재 : 기업주와 노동자 노조는 자신들의 영역에서는 매우 강력하며 여러 점에서 정치적 반대입장에 있음. 특히 타협을 거부하고 합의와 협상을 이끌어 내지 못함. 따라서 새로운 개혁정책이 제안되더라도 기업에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임
 - 대기업들 : 프랑스의 대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이나 유망시장에 대한 국제 투자를 선호함. 이런 정책들은 프랑스내 고용을 파괴하는 것임. 정책이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될때 대기업들은 국제경쟁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임. 결국 정책은 뒷걸음질 치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임
 - 유럽 : 유럽의 질서차원에서 프랑스는 자국기업에 유리하도록 할 권한이 없음. EU 모든 기업들 간에는 자유롭고 거짓되지 않은 공정경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일부 개혁들은 EU 집행위로 부터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제재를 이미 받아 범칙금을 문적도 있음
 - 공공분야의 중요성 : 공공분야는 프랑스 경제활동인구의 ¼에 해당하는 6백만 명을 고용하고 있음. 모든 기업선호 정책들은 공공분야의 자원을 뺏고, 따라서 근로자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함

□ 기업관련 핵심조치

- CICE라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금공제 정책»이 2014년에 채택됨
- 이 정책은 총 급여의 6% 수준에 이르는 기업의 세금을 인하하는 것임. 모든 기업들이 이 정책의 수혜자들임.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한데, 우선 법인세는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소가 아니고 기업들은 법인세 감소에 익숙하다는 것임
-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은 여러 방법으로 활용되는데 마진향상, 가격인하, 급여인상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는 정부 정책의 목표인 투자와 고용이 지금 까지는 한계적이라는 것임
- «VAT 인상»으로 2015년 1월 부로 부가세를 당초 19.6%에서 20%로 인상 조치하여 EU에서 허용하는 재정부채 비율을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함.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가계소비에 찬 물을 끼얹고 경제 성장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연구관련 세금신용 CIR» 2007년 도입하여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고 R&D 비용의 1/3을 감면해 주는 시스템임. 기업들은 동 정책에 적극 참여했으며 동 정책에 투입된 비용만도 지금까지 50억 유로에 달하고 있음
- «조세시스템»으로 2007-2012년 집권한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책 중 상징적인 것이 있음. 이는 소득세율을 50%까지 제한 한다는 것임. 동 조치는 2009년에 586 백만 유로, 2010년에 678 백만 유로의 비용이 든 조치이며 소득 수준이 높은 가계만이 혜택을 보는 제도로 전체 비용의 60%가 프랑스 상위 7%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감. 결국 동 조치는 2011년 국회에서 폐지됨
- «Auto-Entrepreneur 기업형태» 가 새롭게 2009년에 도입되었는데, 동 제도는 사회 부담금의 한도를 두면서 모든 사람들은 추가 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제 도입. 이는 저임금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하지만 실시 결과는 찬반이 양존함. 이런 조치덕분에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지하소득이 공식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BTP와 같은 공공건설과 관련한 분야의 기업들은 이런 새로운 기업들의 출현으로 비공정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도 함

□ 프랑스 산업전략

◦ 주요개요

- 2012년 프랑스 정부는 산업 재건을 위한 새로운 플랜을 도입하였음. 이는 기술과 미래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프랑스의 국가경쟁력과 관련이 있음. 이는 총 34개 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34개 산업재건 플랜은 경제 및 산업의 여러 주체들을 한가지 공통의 목표 하에 통합하여 이런 국가차원의 계획에 필요한 도구를 동원하고 새로운 프랑스와 경쟁력 있는 산업구축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프랑스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임
- 이 가운데 일부 플랜은 농업부문과 관련되어 있는데, 플랜 13의 바이오화학과 바이오 연료, 플랜14번의 목재산업, 플랜 20번의 보증되고 안전하며 지속적인 식품을 위한 혁신 제품, 플랜 21번의 물과 물자원 보존 등과 관련한 부분이 있음
- 2014년 7월 신임 마크롱 경제부 장관이 동 플랜을 다소 수정하여 총 34 플랜을 기술 분류 방식이 아닌 타겟시장 분류방식에 기초한 10개 전략부분으로 조정하였음. 농업과 관련한 플랜들은 «인텔리전트 식품»으로 1 부분으로 묶이게 되었음
- 이런 조치들은 정부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기존 상공회의소와 같은 존재하는 기구들을 움직여 관련 산업의 필요를 듣게 하는 데 있음. 동 플랜의 진행에 대한 후속조치를 비영리 협회에 맡기고 있고 동 협회는 «미래의 산업을 위한 연합»이란 이름으로 기업과 공공분야로 부터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방식임

◦ 34플랜 세부항목

-
- 1) 비접촉 서비스
 - 2) 바이오 메디칼
 - 3) 원격조정 가능 이동수단 및 일반용도의 드론(Drone)
 - 4) 친환경 향해
 - 5) 재활용 및 친환경 재료
 - 6) 신재생 에너지
 - 7) 나노전자
 - 8) e-Education
 - 9) 빅데이터
 - 10) 로봇
 - 11) 무인 자동차
 - 12) 미래 TGV
 - 13) 바이오화학 및 바이오연료
 - 14) 목재산업
 - 15) 혁신단열 건축
 - 16) 디지털 헬스
 - 17) 건강관련 신장비 및 장치
 - 18) 사물인터넷
 - 19) 기능 및 지능 섬유
 - 20) 안전, 건강, 친환경 식품을 위한 혁신 제품
 - 21) 수질 및 수자원 보호
 - 22) 클라우드 컴퓨팅
 - 23) 통신관련 프랑스기술 확대
 - 24) 사이버 보안
 - 25) 가상현실 기술
 - 26) 미래공장
 - 27) 지능전기네트워크
 - 28)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 29) 초능력 PC
 - 30) 100Km에 2 리터사용 자동차
 - 31) 전기 충전소
 - 32) 고성능 배터리
 - 33) 전기 항공기
 - 34) 전기 추진 위성
-

Ⅲ

농업동향 및 주요 농업정책

1. 농업동향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 동향

□ 주요 품목별 대외교역

〈주요 흑자품목〉

(단위: 백만 유로)

	2000년	2010년	2012년	2013년
음료, 포도주 그리고 주류	7,216	8,717	10,888	10,677
곡물	3,824	5,108	6,259	7,407
우유와 우유제품	1,836	2,741	3,074	3,004
살아있는 동물	1,160	1,504	1,690	1,581
설탕 및 설탕제품	1,283	1,089	1,489	1,235
밀 제품	585	648	734	790
곡물로 만든 제품	-77	347	590	651

〈주요 적자품목〉

(단위: 백만 유로)

	2000년	2010년	2012년	2013년
생선 및 갑각류	-1,702	-2,597	-2,552	-2,653
과일	-986	-1,874	-2,111	-2,466
채소로 만든 제품	-865	-1,389	-1,638	-1,633
커피, 차, 양념	-704	-1,178	-1,646	-1,449
담배	-1,155	-1,109	-1,354	-1,320
육류와내장	271	-807	-963	-1,097
육류와 생선으로 만든 제품	-72	-671	-786	-933
화초	-765	-999	-858	-859

* 자료원: 프랑스 관세청

- 프랑스는 포도주, 우유 및 곡류 부문에서 무역 흑자를 주로 실현하고 있으며, 생선과 해산물, 과일, 커피, 담배 그리고 육류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주요 국별 대외교역 현황

〈2013년도 프랑스의 주요 수출국〉

(단위: 십억 유로)

2013년	프랑스의 수출액
독일	6.9
벨기에	6.5
영국	5.6
이태리	5.5
스페인	4.8
화란	3.8
미국	2.8
알제리	1.7
중국	1.6
스위스	1.5
일본	1.1
싱가폴	1.0

* 자료원: 프랑스 관세청

〈2013년도 프랑스의 주요 수입국〉

(단위: 십억 유로)

2013년	프랑스의 수입액
스페인	6,3
화란	5,7
벨기에	5,6
독일	5,6
이태리	3,6
영국	2,3
스위스	1,4
브라질	1,2
폴란드	1,2
미국	0,9
모로코	0,8
아일랜드	0,8

* 자료원: 프랑스 관세청

- 프랑스의 대외 교역은 주로 EU 역내국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 수출과 관련한 EU 역외국 주요 수출국가는 미국, 알제리 그리고 중국임
 - 수입과 관련한 EU 역외국 주요 수입국가는 브라질, 미국 그리고 모로코로 나타남

□ 프랑스의 대한민국 농산물교역 현황

- 프랑스는 EU 국가 가운데 독일에 이어 한국의 17번째 식품 공급국임
- 한국의 프랑스산 식품수입은 2013년 대비 13% 감소한 312백만 유로를 나타냄
- 이런 감소추세는 옥수수 문제로 기인한 것이며 프랑스 식품의 수입은 음료 +8%, 유제품 +37%, 육류와 가공육 +46%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함
- 대한민국 프랑스 주요 수출품은 고가의 요리관련 제품임. 예를들어 부르고뉴와 보르도 산 포도주, 거위 및 오리간, 치즈 등으로 이런 제품들은 높은 부가가치를 생성함
- 한국내 식품관련 기진출 프랑스기업들은 제조업 뿐 아니라 유통샵, 에이전트 등 다양 한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그 기업의 내역을 보면 모에안느시, 페르노 리카르, 막시엄, 카스텔, 다논, 벨, 브리오쉬 도레, 로얄카넵, 로제트, 코르동 블루 등이 있음
- 참고로, 프랑스에서 현재 수입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팜오일, 저가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와 같은 육류와 우유이나 동 품목은 한국과 무관함

나. FTA 협정과 기타 교역장벽관련 프랑스정부의 입장

□ EU와 한국 FTA 협정체결에 우호적인 입장

- FTA 협정에 싸인하는 시점에서 EU 국가들이 가장 우려한 사항은 자동차산업 (특별히 이태리의 피아트 자동차)과 관련한 부분이었음. 소비자들은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고 프랑스도 프랑스산을, 독일도 독일산을 선호함
- 한국의 기아와 현대차와 같은 브랜드는 FTA 협정 이전부터 판매율이 상당히 증가한 상태이지만 현지산 브랜드와는 시장 점유율 면에서 아직 경쟁상대가 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임
- EU입장에서는 동 FTA협정을 통해 한국을 상대로 수출할 수 있는 산업분야, 서비스 분야가 무엇인지에 더욱 흥미가 있음. 반대로 전자, 통신과 같은 분야

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 인데, 생산기지 이전으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에서 생산하면서 FTA 무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교역관련 다른 장벽

- EU 창설국이기도 한 프랑스는 EU 내부규칙을 정함에 있어 그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반면 프랑스는 이런 EU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여타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함. EU 내부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가 중재권한을 가짐
- 프랑스는 UN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임. 이는 UN의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히 경제제재 조치와 같은 부분에서 더욱 그러함. 종종 이런 것은 프랑스가 중요한 무기 수출국이며 따라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에 관여한 것을 볼 때 매우 역설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함
- 반덤핑 규제조치에 부분이 있는데, 프랑스는 매우 중요한 경제 재 분배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임. 사회보장제와 세금 그리고 조세는 매우 중요하며 반대 급부로 교육, 의료 및 은퇴관련 각종 무상의 공공서비스는 아주 탁월한 수준임
 - 하지만 이런 것들은 노동단가를 높이게 하고 결과적으로 프랑스내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을 높이게 됨
 - 이로 인해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곳에서 생산되는 저가생산자들과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됨. 프랑스는 따라서 일부 산업부분에서 EU가 취하는 반덤핑 조치를 채택하고 있음

□ 프랑스에 유망한 한국식품

- 프랑스에서 유망한 한국 식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버섯으로 프랑스에서 매우 평가가 좋으며 일부 품종은 프랑스에서 재배가 불가능한 것도 있음
 - 바이오 «노리»와 같은 김
 - EFSA 경감혜택을 볼 수 있는 한국산 홍삼
(즉, 제품 라벨링시 «반 산화 및 기력강화 제품»이란 라벨링을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 한국의 녹차와 같이 고가의 희귀한 맛을 선호하는 현 추세를 감안한 녹차
- 국수, 국과 같은 탈수제품, 다만 한국제품은 유럽인들의 생활습관상 너무 맵고 뜨겁고 자극적인 면이 있음
- 바이오관련 참고사항
 - «bio»란 규정에 따라 재배된 제품은 비행기로 운송될 경우 운송이란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바이오란 라벨링을 상실하게 됨. 어떤 경우엔 해상운송은 역시 «bio» 라벨링을 잃게 되며 가격 또한 너무 부담스럽게 됨

2. 주요 농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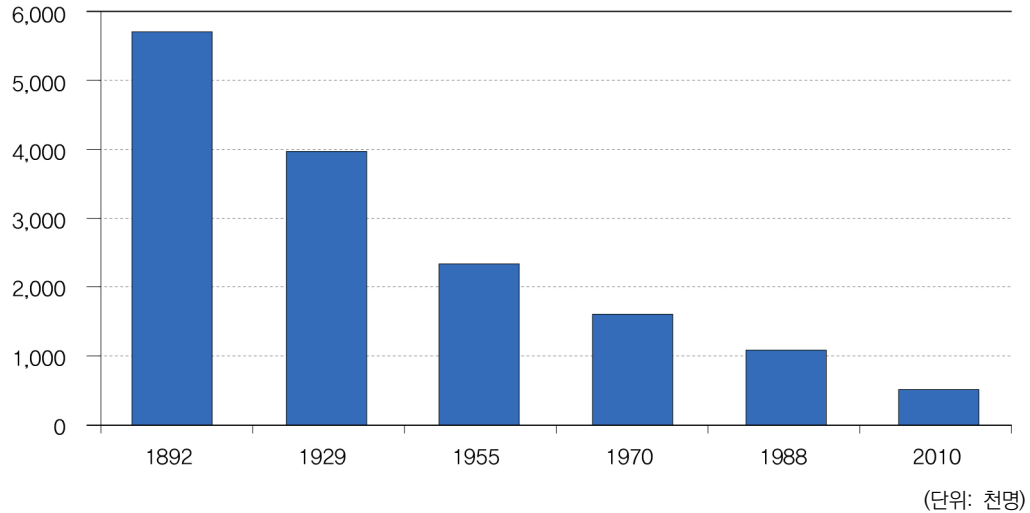
가. 농업분야 환경변화

□ 역사적 개요

- 프랑스는 20세기 초반 2번의 세계대전으로 인상적인 시기를 맞음
- 동 시기는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낸 시기이기도 하지만 19세기 말 이후 농촌의 활력과 농업구조 차원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농업생산의 한계를 가진 시기이기도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시기는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혁신을 준비하던 시기로 2차 세계 대전이후 및 20세기 후반 내내 농업의 주요한 격변기를 맞게 된 시기로 평가됨
- 1945년 이후, 사실상 농업 종사자 숫자가 5배 줄고 농장의 평균 규모는 3배 증가하는 농업의 구조변형을 가져옴
- 최근 농업분야의 주요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농업 종사자들은 점차 숫적으로 줄고 있음
 - 농장의 규모는 점차 늘고 있음
 - 생산성과 수율은 매우 크게 증대되고 있음
 - 교역규모는 점점 중요시되고 있음
 - 농부들은 현대화되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점점 부채는 늘고 있음
 - 바이오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이런 변화의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농민수

[그림 6] 프랑스 농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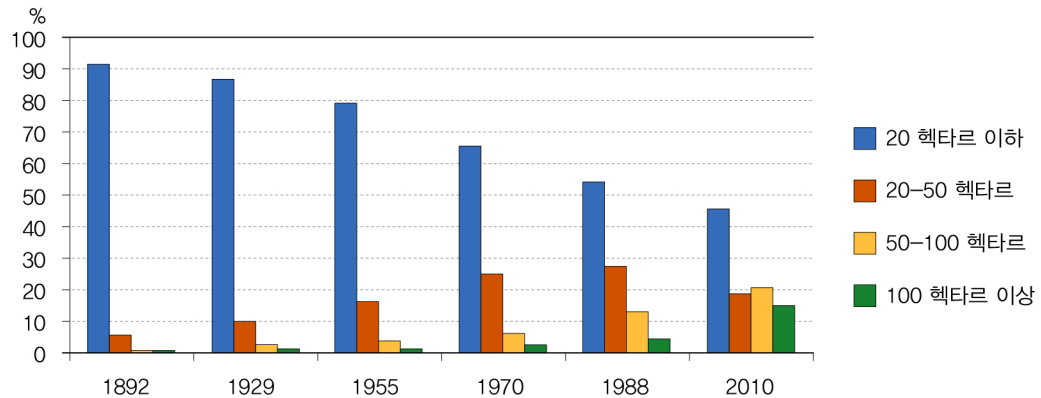


*출처: 농업부

- 농업 종사자들의 숫자는 20세기 하반기에 매우 큰 폭으로 줄었으며 전체 경제 활동인구 대비 증가율도 크게 줄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농장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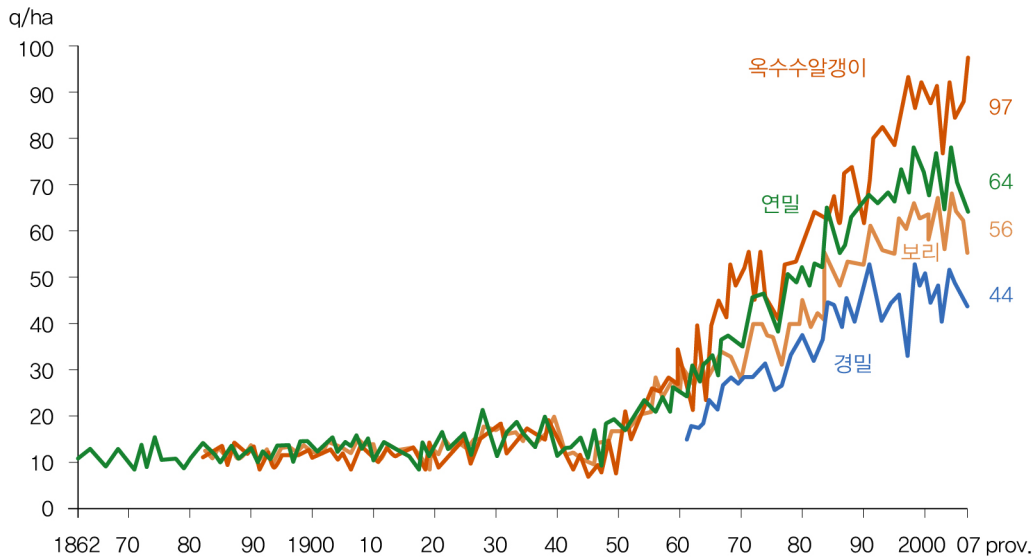
[그림 7] 프랑스 농장의 규모 변화추이



- 1892년 과거 20 헥타르 이하의 농장에 해당하는 푸른색의 소규모 농장은 전체의 90%를 차지하였던 것이 2010년에는 최소 50%를 나타내고 있음
- 한편, 녹색의 대규모 농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도의 경우 전체 15%를 나타내고 있음

□ 프랑스 농업의 생산성과 수율

[그림 8] 프랑스 농업 생산성과 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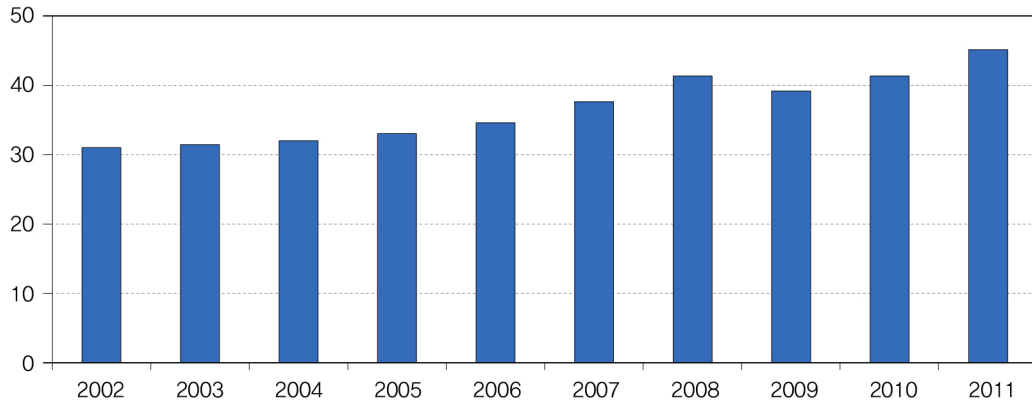


- 헥타르당 100 킬로그램으로 계산되는 수율은 50년 까지는 매우 안정적이고 이후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
- 그림에도 불구하고 수량 면에서 증가세의 흐름이 종료되고, 제품의 품질 기준과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보호 기준이 등장하는 90년대 이후 일정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대외교역 규모

[그림 9] 프랑스 농산물 대외교역 규모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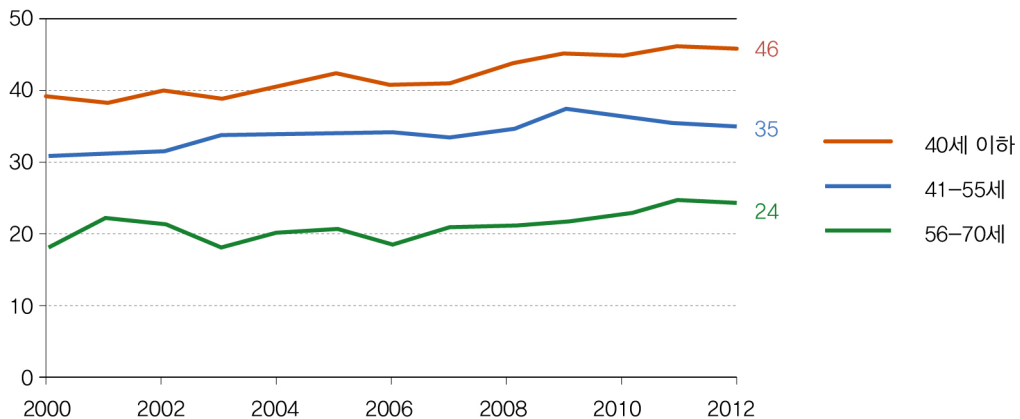


- 전통적으로 전 세계 농업 종사자들은 자체 소비를 위해 재배를 하고 잉여 농산물을 지역시장에 판매함
- 프랑스에서는 농업 생산이 구조적으로 소비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상세 내용은 2항에서 제품별 및 국가별 분석내용을 볼 수 있음

□ 프랑스 농업 종사자들의 투자와 부채현황

[그림 10] 2011년도 프랑스의 연령별 농업생산 부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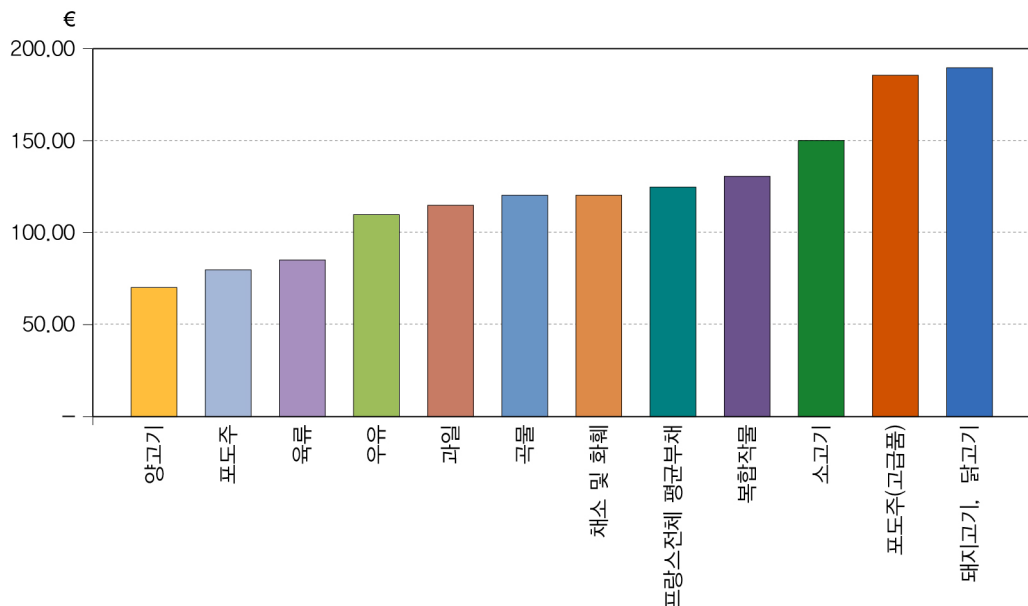
(단위: %)



- 부채의 감가상각과 부채 상환을 해야 하는 시점을 가진 녹색으로 표시되는 가장 나이가 많은 농업 종사자들은 부채율이 전체 매출대비 25%에 이르는 정도로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붉은 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가장 젊은 층의 농업 종사자들은 나이 많은 농업 종사자들보다 2배 높은 전체 매출의 50%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문 농업 종사자들의 평균 부채는 125,000 유로에 이룸. 이런 평균부채는 80년대 말에 높게 증가했고 90년대 이후 증가율 정도가 다소 줄고 있음. 이런 부채율은 경제규모 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밭 150 헥타르와 그 이상을 경작하는 수준의 대규모 및 초대형 농업 종사자들은 숫적으로는 전체의 22% 수준인데 반해 프랑스 농업 종사자들의 전체 부채 비중은 4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 농사이외 돈사육이나 양계사육과 같은 특별 농업 종사자들은 과중한 투자를 요구하며 더욱 부채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아울러, 고급 포도주 재배 농민들도 자신들의 포도주 생산 품질을 위해서 과중하게 투자하는 높은 부채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11] 농업 분야별 평균 부채현황

(단위: 천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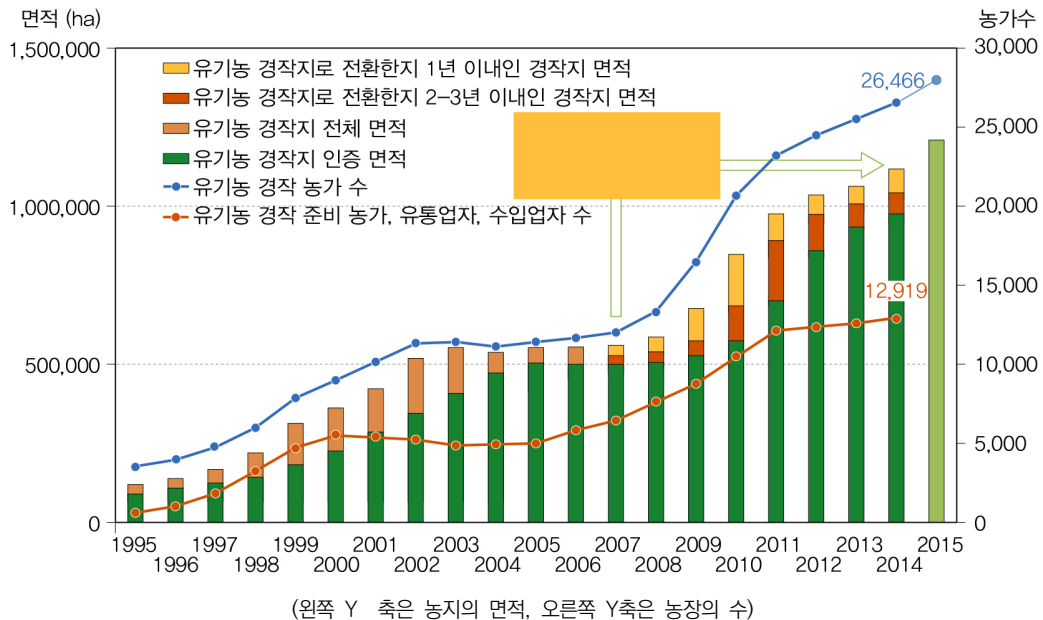


* 자료원 : 농림부

- 돼지사육과 양계와 같은 분야의 농업은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분야로 부채 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남. 포도농사 역시 제품의 품질을 위해 과증하게 투자하는 «고급품»에 속함
- 반면, 과일, 소, 채소 등과 같은 농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 부담이 돼지나 닭 그리고 포도농사 보다는 적음

□ 바이오 분야의 중요성

[그림 12] 프랑스 바이오 농작물 변경 추이



* 출처: Agence BIO/OC

- 상기 표는 기존 농지를 바이오 농작물 경작지로 변경하고 있거나 변경을 완료하고 공식 인증을 받은 현황을 나타내는 표임
중요한 것은 푸른색 곡선인데 이는 많은 바이오 농장이 1996년과 2014년 사이 2700개 에서 27,000개로 10배 이상 숫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2014년 말 바이오 경작지 규모는 1,118,190 헥타르로 2013년 대비 5.4% 증가함. 전체 농업생산의 경우, 바이오농업 증가추세에 따라 프랑스 전체 사용가능한 농지면적 가운데 바이어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4.14%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

나. 농업관련 정책(역사적 관점)

□ 농업의 근대화 작업착수

- 2차 대전이후 식량의 자급자족 수준을 신속히 높여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으로 인해 정부는 농업개발을 장려하는 자발적인 일련의 조치를 취함
- 마샬플랜의 경제원조를 힘입어 프랑스 농업은 대대적인 농업 근대화에 착수하게 됨
- 런 변화는 1차적으로 농업분야의 구조와 기술발전에 관한 것으로 1945년 부터 농업은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것들을 기초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 예를들어 공동생산을 하는 농업협동조합, 농업신용관련 은행, 농업관련 사회보험인 MSA(동 보험은 농민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제도로 수확보, 가족생계보 조금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것) 그리고 CGA와 같은 농업 노동조합이라는 4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됨
- 기계들을 기부하거나 특별 이자율로 대출하거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실습교육을 시키는 등 현대기술과 기계화에 대한 젊은 청년 농업인력 교육들이 크게 장려됨
- 한편 프랑스 농경제학 국립연구소인 INRA가 1946년에 창립되어 생산기술과 식물 및 동물의 유전적 선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그리고 국가와 농업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모든 연구,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 젊은 농민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들

- 50년대 부터는 농업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농업구조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대두되기 시작함
- 1960년과 62년 농업정책관련 법들은 개발모델로서 두 사람을 평균으로 구성된 가족농가를 구축할 목적으로 나이가 많은 농민들은 물론 직업적으로 농업으로 전향하거나 젊은이들의 정착을 도우기 위한 보조금 제도와 같은 동반정책을 도입됨

□ EU 공동농업정책(CAP)

- 1962년에 설립된 EU 공동농업정책(CAP)는 현 EU의 창립자들의 실행중의 하나였음
- 동 정책은 각 국가들이 취하던 조치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고 또한 전략 제품의 가격보장, 시장의 공동조직과 과잉생산을 관리할 수있는 수출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 동 정책은 많은 고객과 대외적 보호 그리고 금융을 제공하면서 중요한 진전을 보게 됨
- 식량의 자급자족은 곡물의 경우 50년대, 일반 식량은 70년대 부터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런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프랑스 및 유럽 농업은 같은 농업정책을 유지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한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며 생산형 개발모드를 지속하기로 함
- 농식품분야는 구조적으로 1974년 이래 농식품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국제무역 수지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함

□ 새로운 도전

- 농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농민들의 수입을 보장해야 하고 농가의 경제성을 보장해야 하는 도전이 부과됨
- 농산물의 양적 증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점점 더 감가상각으로 인한 무거운 투자 부담을 유지하면서 농가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은 힘겨운 생산성과 규모에 대한 경쟁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 더구나 농업의 집중화 현상은 경지 가격의 높은 인상을 초래하고, 부동산 시장은 농지가격의 비 정상적인 상승율을 가져오는 현상발생
- 이런 현상은 여전히 주거와 도시 인프라와 경쟁을 부추기는 도시 외곽지역에서 특별히 부각되고 있음

□ 수정된 EU 공동농업정책

- 1980년부터 CAP 공동농업정책으로 초래되는 유럽의 과잉생산과 예산비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1984년에 우유 생산쿼타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1992년 CAP 개혁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함

- 의무 휴경지와 초지수당을 도입하면서 과잉생산을 제어하고 CAP 공동 농업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적자예산을 없애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 동 정책으로 농작지 규모를 확대하는 헥타르별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생산 관련 직접적인 가격 지원제를 줄여가고 2003년에 도입된 지원과 생산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1992년부터 시작된 CAP의 조치들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농산물 가격을 다시 떨어뜨리게 됨
- 또한 유럽 국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국제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시스템을 비난하는 WTO의 비난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음
- 연속적인 이런 개혁은 유럽 보조금에 대한 유럽 농민들의 수익 의존도가 높고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생산성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하는 매우 취약한 유럽 농민들위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냄
- 한편 프랑스에서는 이같은 EU차원에서 운영되던 생산모델(생산량에 집중하는 모델)은 일반 시민들로 부터 점차 의문점을 삼
- 사실 식품의 품질(위생안전, 표준화 등) 또는 농촌지역에 관한 문제들과 함께 환경에 해로운 결과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EU 정책의 기능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함
- 더우기 역동적인 확장에 직면하여 호의적인 일련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노령화되고 젊은층의 정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21세기 초반의 프랑스 농업상황

- 21세기 초반에 농업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즉 농업은 더 이상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위치를 유지할 수 없고 새로운 농촌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임
- 농민들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것과 같이 생산적, 주거적, 여가적, 친환경적인 분야의 공간사용과 환경적, 식량적, 경제적, 토지적인 차원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농업이 가는 길은 매우 다양화하고 예전과 달리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현대 농민들은 생물학적이고 전통적이며 또는 GPS의 지원을 받는 정확성을 가진 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들은 농민들로 하여금 과거와 달리 직접 제품을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짧은 코스 또는 농민들이 제품을 변형하

- 고 포장해서 판매하는 통합 산업화하는 코스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됨
- 마찬가지로 농민의 기대와 정책적인 선택으로 간주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법도 예전의 한가지 목소리에서 지금은 다양한 목소리로 표현되게 됨
 - 또한 과거에는 한 조합만 존재하던 것이 이제는 여러 형태의 조합들이 혼합 존재하게 됨
 - 일정 성과를 거두기도 했던 50년대의 이전 모델, 즉 농업분야와 일반사회 사이에 존재했던 사회계약 역시 새로운 도전 앞에 의미를 상실했으며 과거 가족 단위 농가에 의해 달성된 상당한 발전도 사회와 함께 수정 및 공유하는 프로젝트 서비스로 양상이 재편되는 양상임

다. 농업정책의 기본방향

□ EU 공동농업정책에 기초한 프랑스 농업정책

- 프랑스 농업정책은 주로 CAP에 의해 영향을 받음
- 따라서 유럽의 창립에 근거한 CAP는 독일산업의 발전을 도우는 조건으로 프랑스의 농업발전을 도운다는 상호간 협의된 요구사항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프랑스의 농업과 관련하여 CAP는 보호막이며 보조금의 근원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원임
- 이것은 프랑스가 CAP 차원에서 유럽에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실을 의미함
- 프랑스 정부는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기를 원하며 마찬가지로 프랑스 농민과 농촌을 보호하기를 원함
- 프랑스의 농가와 요리 그리고 삶의 방식과 관광적인 매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프랑스는 농업분야에서 만큼은 보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 요리와 농업은 매우 부가가치가 높고 농업부분에서의 세계화에 대한 거부반응은 매우 강함
- 프랑스는 일반국민은 물론 정부는 역사와 전통요리와 같은 자신들의 유산을 보호하기를 강하게 원함

□ 주요 이슈

- 1990년 베를린 장벽붕괴 이후 EU 농업 기초확립 애로
 - 최근 동 유럽으로 EU 회원국 확대는 많은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업 종사자 14백만의 50%가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같은 개도국이며, 이들 소규모 농업 종사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
- 지중해 연안국가들 문제
 - 인구증가와 농업 생산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EU는 이들 국가들을 이주 증가의 위험 앞에 무관심한 입장을 취할 수 없는 상황임
- 과잉인구 문제
 - 2050년 까지 예상하는 추가 30억 인구의 식량해결 문제
 - 그리고 식물연료를 통해 유가와 점진적으로 연계되는 식량가격의 증가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임
- 세계화 문제
 - 통신수단의 발달과 관세장벽의 제거는 농민들로 하여금 외부 경쟁자들이 아닌 자신들에게 부담되는 비용과 제약에서 바라볼 때 불공정 경쟁에 직면함. 즉 사회적 비용과 세금, 안전관련 규격과 환경 준수, 인건비 등과 같은 비용 측면 에서 보면 불공정 경쟁이라고 여길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임
- GMO에 반대하는 문제
 - 유럽 전역에 GMO에 반대하는 분위기이지만 특별히 프랑스에서 강하게 나타남
 - 이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안감에 이유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GMO 기술은 바이오 기술 대기업들에 농민들의 의존도를 초래하는 것임
 - 대부분의 바이어 기술보유 대기업들은 미국 국적기업임
 - 더구나 한 농부가 GMO를 사용하려고 결정한다고 해도 다른 모든 농부들도 오염의 가능성과 벌들의 교차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 다 함께 GMO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임

□ CAP 개혁 일반개요

- 2014년에서 2020년 동안 새로운 CAP정책이 검토되고 있음

- 유럽 위원회는 2013년 12월 16일로 이에 대한 법규의 최종 채택을 진행하였음
- 개혁은 EU의 공동 농업정책의 근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는 EU 소비자들과 전 세계 여타 지역 소비자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향상된 품질의 식량을 공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마찬가지로 개혁은 동물과 환경의 웰빙에 관련된 EU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며 유럽 농업 종사자들의 균형 있는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

□ CAP 개혁의 방향

- 이는 특별한 친환경의 가치와 영구초지의 최소면적을 제시하면서 풍경의 요소의 보존과 경작의 다양성과 같은 환경에 유리한 경작방법을 도입하는 농업방식의 친환경화 조치
- EU내 농민들이 받는 수익에 대한 보조금의 수준간의 가장 큰 차이를 줄일 목적으로 보조금 배분내에서의 형평과 대형농가를 위한 일정 금액이상에 대한 지불축소에 대한 조치
- 특별히 젊은 농업 종사자들, 수익이 저조한 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자연환경의 제약에 노출된 지역 농민들과 같이 가장 많은 필요를 가진 농업 종사들에게 유리한 수준으로 보조금 재배정 조치
- 2015년 부터 우유쿼터제는 삭제되며 2017년부터 설탕 쿼터도 삭제. 포도밭 경작권은 유지

□ CAP 예산

- 2014~2020년 CAP 예산은 EU 전체 예산의 38% 정도를 차지할 것이며, 향후 7년간 CAP 이름으로 예상되는 지출의 총액은 408.31 십억 유로에 달할 것임
- 연간 예산은 2014~2020년 동안 지속 감소될 것이며, 약속한 대로 2020년에 CAP 예산은 2013년 예산대비 15% 하향 조정되어야 할 것임

□ EU 농업 정책의 또 다른 중심축

- 1999년 3월 24일과 25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EU 위원회는 농촌개발에 특화된 또 다른 제 2의 중심축을 통해 농업가격과 시장지원을 포함하는 EU 농업

- 정책의 제 1중심축에 해당하는 CAP 의 내용을 보충하는데 합의함
- 구체적으로 2차 예산에 관련된 것인데 EU 회원국이 먼저 납부하고, 이어서 경제추체에 해당하는 농민들에게 재 배분되는 것으로 CAP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예산과 관련된 것임
 - 제 2 중심축이 다루는 중요한 사안들은 다음과 같음
 - 농업의 경쟁력과 다양한 기능성의 향상
 -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임업조치를 포함한 농업에서의 환경보호 장려
 - 농촌지역의 개발에 참여
 - 제 2 중심축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체로 기후변화, 농업환경, 유기농, Natura 2000(EU 지역의 야생식물 및 동물보호 구역 지정)에 관련된 구역 그리고 물과 관련한 EU 기본 지침에 따른 수질 시스템, 재조림, 관개조치 그리고 수확에 대한 보험지급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상됨
 - 제 2 중심축은 예산관련 합의방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동 재정이 지원될 것이지만 이자율에 있어서는 차등적용될 것임
 - 재정합의는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제 1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CAP예산의 15%를 제 2중심축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가능성도 있음

라. 주요 농업정책

□ 농업정보의 강화

- 전통적으로 농업이란 직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하는 형식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생물학을 관리하며 상호 글로벌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매우 요구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농업관련 부처에서 2014년 발표한 주요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음
 - 800개의 농업관련 학교가 있고, 500개의 성인 교육, 훈련 기관이 있으며, 4년제 대학 이상의 고급 교육기간이 20개 있음. 동 교육과 관련한 경작지는 총 18,000 헥타르에 이름
 - 46만 명의 학생과 이중 50%는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16,000 명은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부과세 (Plan Ecotaxe)

- 동 세금의 기초는 EU에서 나온 것으로 관계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들이 오염을 줄이도록 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임. 이는 EU 각 국가에서 동 법안을 실행해야 할 의무를 가짐
- 프랑스는 동 세금을 도로 주행 화물차에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환경 오염 주체들로 하여금 철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며 또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에서 들어오는 저가산 농산물의 수입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음.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도로에 화물차를 통제하고 세금을 매기기 위한 카메라 장치를 설치하고 있음



- 그럼에도 동 조치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유는 프랑스의 농산물 생산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나타남. 예를들어 브르타뉴 지방에서 농민들이 매우 많은데 철로는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농산물은 부득이 화물차로 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결국, 동 조치는 보류상태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를 평가할 만한 통계치는 아직 없는 상황임

□ INAO 창설(원산지 명명 국가 연구소 : 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INAO의 2015년 연간 예산은 2,300만 유로)

- 동 연구소는 농업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품질 라벨링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며 농민들로 하여금 동 라벨링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



소비자를 위한 공식 품질 인증 라벨 종류 :

* 원산지 보호 (Garantie de l'origine)

- AOC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 원산지 통제 명칭
- AOP (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 원산지 보호 명칭
- IOP (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 : 지리적 표시 보호

* 고품질 보증

- Label Rouge

* 전통 레시피 보증

- ATG (Spécialité traditionnelle garantie) : 전통 특산물 보증

* 친환경 및 동물보호 보증

- EU유기농 인증 마크
- 프랑스 유기농 인증마크

◦ 그림에서 보는 대로 AB는 유기농, R은 최고수준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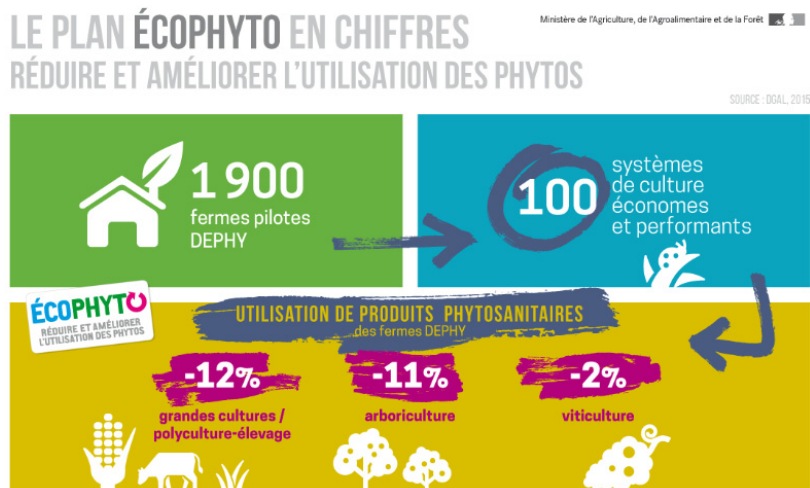
□ «Agro-Ecologie 친환경 농업» 개념의 발전

- 농업부는 여러 «모범사례»를 자료로 발간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장려함. 동 실행들은 바이오 농업보다 덜 제약적인 것이긴 하지만 환경보호란 측면이 강조됨
- 예를들면,
 - 그룹 정보 : 블로그나 SNS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한 공유와 농민들 사이의 상호지원은 공동 프로젝트와 공동 투자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토양 생물 다양성 : 땅 속의 곤충과 미생물을 재투입하는 것과 관련된 것임. 수년간 농약사용으로 제거되었으나 어떤 종류의 곤충과 미생물들은 식물재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거나 비료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농림업 : 동 기술은 경작농지와 나무들을 공동 서식하도록 하는 것임. 이렇게 함으로써 조류와 설치류와 같은 야생동물이 나타나게 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다 줌

□ 친환경 살충제(Plan écophyto)

- 동 정책은 농약과 같은 살충제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임. 시범 농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300명의 정부 관료들이 동시범농가를 측면지원하여 농민들을 교육하고 농민들의 선택에 조언하는 것임



숫자로 보는 에코퀴토 계획

살충제 사용의 축소 및 개선

시범농가 1900개 →경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작 시스템100곳→ 살충제 사용 : 대형 경작 또는 축산업 -12%, 수목재배 -11%, 포도재배 -2% 감소

- 동 정책을 통해 1900 시범 농사 중 11~12%는 이같은 살충제 사용을 축소하였음. 이런 긍정적인 결과에 힘입어 정부는 «ecophyto 2» 정책을 2015년 11월에 시행하였으며 동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현 시점에서 가능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의 일반화와 최적화를 추진하여 지금부터 2020년까지 25%까지 살충제 사용을 줄이는 목표
 - 생산 시스템 분야의 근원적인 변화를 통하여2025년 까지 추가적으로 살충제 사용을 25%까지 줄인다는 목표

◆ 농업관련 주요 현안사항

여러 제품에서 시장가격,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의 구매가격은 프랑스 생산업체들의 원가에 못 미침. 이는 여타 EU 국가들의 동종업종 생산업체들 보다 훨씬 큰 제약사항에 놓여 있는 상황임. 특별히 우유와 돼지고기 부문에서 제약사항이 크며, 두 제품의 생산에는 높은 투자를 요구함

이처럼 2015년 프랑스에서 우유생산업체들과 돼지고기 생산업체들이 분노하여 수많은 시위와 때로는 과격한 시위가 일어 난 사태를 목격한 바 있음

2014년 초,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교역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EU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여 거래선을 상실한 수많은 나라들은, 특히 동유럽국가들에게 다른 수출 출구를 찾도록 부추겼고, 이로 인해 육류와 우유에 대한 구매가격이 폭락하는 데 까지 이르게 됨

말고기 파동은 또 다른 헤프닝이며, 동 사건은 100% 소고기 대신 말고기를 담은 Findus라는 상표의 라자냐에 대한 통제를 통해 밝혀 졌음. 일반대중은 도축, 중간상, 가공업체 등을 포함하여 유럽 식품유통체인의 복잡함과 불투명함을 알게 되었음

- 2014년 11월 14일 조사는 Spanghero사와 다른 화란의 2개 중간 업체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남. 동 사기 사건은 가공육류 제품 추적과 관련한 지속적인 통제 시스템의 부재라는 문제를 드러내었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정보들에 대한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되었음

IV

관세 및 검역제도

1. 프랑스 관세현황

□ 기본개요

- 1992년 이래 프랑스 관세는 유럽협정에 의거하여 적용을 받고 있음. 이에 추가되는 세금은 없으며 유럽에서의 상품이동은 완전 자유로움
- 마찬가지로 유럽 역외상품에 대해서는 유럽에 진입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틀 안에서 다루어 짐
- EU와 한국간 FTA 자유무역협정은 2011년 7월 1일 발효에 들어감
- 약 98.7%가 향후 5년 이내 수입관세 부과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거의 모든 품목의 대 EU수입에 있어 무관세 처리되게 되어 있음. 그리고 통신, 환경보호 서비스, 해상운송, 금융서비스 및 법률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교역도 자유화되었음
- 동 협정은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되지만, 농식품은 예외가 적용됨

□ 관세 기본원칙

- EU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 한국 농업보호 차원에서 쌀에 대한 관세는 유지됨
 - 일부 돼지고기 수출은 냉동 삼겹살과 같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0년 과도 기간을 가진 후 2016년 부터 관세가 철폐됨
 - 2014년 이후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위스키에 대해서는 3년간 관세를 유지함
 - 면세는 매우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치즈와 같은 제품의 경우 제품의 도입 양에 근거하여 한정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있음
- 한국에서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 담배와 알콜에 대한 특정 장벽이 남아 있는데, 이는 관세라기보다 소비세에 해당하는 것임
 - 왜냐면 동 제품들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어 관할 관청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 에 제동을 걸기 때문임

2. 동식물 검역제도

□ 동물검역

- EU는 EU 역내로 들어오는 제 3국산 동물을 위한 수의학 검사 절차를 정하고 있음. 동 검사는 모든 살아 있는 동물 단위별로 EU의 국경 검역기관에서 실시됨
- 상세내용을 보면 1991년 7월 15일자 91/496/CEE 위원회 규칙에 의거하여 EU 역내로 들어오는 제 3국산 동물을 위한 수의학 검사기관과 그 원칙을 정하고 있음
- 관련 규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제 3국에서 들어오는 살아있는 모든 동물은 EU 역내 도입에 앞서 수의학 검사를 받아야 함
 - 동 검사는 공인 수의사의 관할하에서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서 국경 검사소에서 이루어 짐
- 국경 검사소 시행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매 동물에 수반하는 수의학관련 자료 또는 인증서 확인과 같은 서류 검사
 - 동물과 서류 또는 인증서간의 부합에 대한 단순 외관검사에 의한 확인관련 내용확인 그리고 동물에 표시되어야 하는 표시의 부합성과 표시존재 여부에 대한 내용 확인을 의미함
 - 실질적인 검사, 즉 동물 자체 샘플채취하여 검사, 동 샘플의 분석실 시험, 그리고 검역 중 보충 검사를 의미함
- 수입자들은 동물을 보여 주어야 할 국경 검역소 수의사에게 하루 전에 수량과 동물의 성질 그리고 예상 도착시점을 알려 주어야 함
- 동물은 바로 공식 검사단계하에 들어가 국경 검역기관 또는 필요시 다른 한 검역소에 보내 짐
- 동물들은 수의학적 검사가 이루어지는 국경 검역기관이나 검역소에서 떠날 수 없으며 검사 비용은 청구되며 필요시 동 비용을 보증하는 보증금을 먼저 지불해 야하기도 함

◦ 주요사항 요약

관련제품	살아있는 동물
검열진행 사항 :	
장소	EU 국경검사국
책임자	공공수의사
제출서류	수의관련 인증 및 서류
검역작업	수입된 매 Lot 별 제품
검역기간	검사에 필요한 기간은 상황에 따라 차이
검역장소	국경검사국 또는 검역국내 (국경검사국 팀 부재시) 진행
비용	수입자 부담

□ 식물검역

- EU는EU 역외국 또는 제 3국에서 들어오는 식물과 식물로 만든 제품에 대해 인체 유해한 해충의 도입이나 확산을 막는 조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검사조치와 보호지역 설정을 마련하고 있음
- 세부사항으로 식품 또는 식물로 만든 제품에 유해한 해충의 EU내 도입 및 내부 확산을 저지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2000년 5월 8일자 위원회 규정 2000/29/CE 마련함
- 규정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EU 역내 도입시점에서 부록 V, 파트 B항에 언급한 제 3국으로 부터 들어오는 특정 식물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동 검사는 특별히 서류 검사, 정체성 검사와 식물위생 검사를 포함하고 있음
 - 서류검사는 발송과 단위묶음, 특히 식물위생 인증서를 수반하는 인증서류들과 각종 서류확인을 말함
 - 이 인증서는 원산지국가의 권한 있는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제품들이 적합하고 충분한 검열을 받았음을 확인하여야 함
 - 정체성 검사는 발송과 인증서안에 신고한 식품 및 관련 제품사이에 부합성의 확인을 하는 것임
 - 식물위생 검사는 식물과 관련 식물이 해충에 의해 오염된 증거가 없음을 전수 또는 샘플 검사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임

- 검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조치 내용
 - 만약 검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한번 또는 여러 차례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음
 - 즉 EU 진입 거부, EU 역외지역으로 반송, 발송중 오염된 제품 제거, 파괴, 추가 단계로 검역부과, 적절한 별도 처리(동 조치는 예외적이며 매우 정확한 특정 상황의 경우에만 가능한 조치) 등이 취해짐
- 특기사항 :
 - EU 전체에 적용되는 유럽 관련 여타 문구에 반하여 동 검역조치는 «지역» 개념을 포함함
 - 매 «지역»의 개념에는 회원국가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지형적이고 관련 식물에 유해한 해충에 대한 특별한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음
 - 이같은 보호장치는 해충의 번식에 유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구분을 통해 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데 의미가 있음
- 주요사항 요약

관련제품	식물 및 식물제품
검열진행사항 :	
서류심사	인증서 확인
식별 검열	신고사항과 상품 간 부합성 확인
식물위생관리	오염 및 인체유해 물질 검사
검역작업	검사가 부정적일 경우에 한해 진행
검역기간	검사에 필요한 기간은 상황에 따라 차이
비용	수입자 부담

2015 주재국 농업정책 전망

발 행 일 2015.12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http://www.aT.or.kr>

자료문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수출정보부

061)931-1114, 0875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